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006-01

2010 광주아시아포럼

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전망과 모색:

희망의 패러다임

3rd Workshop
on the Human Rights
Perspective
of a Local Autonomous
Ordinance

- 일시: 2010.5.19~20
-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세미나 C홀
- 주최: 2010 광주아시아포럼
2010 Gwangju Asia Forum
- 주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Gwangju Regional Office of NHRC of Korea

진행일정



○ 첫째날 19일(수)

시 간	내 용	주 관
11:30~12:00(30분)	접수 및 등록	
12:00~13:00(60분)	오찬	
[session 1] 패러다임 (사회 : 안 진)		
13:00~13:10(10분)	[인사] 광주인권사무소장	이정강
13:10~13:20(10분)	[축사] 1,2	
13:20~14:20(60분)	[특강] 한·일간 지역 네트워크 : 패러다임의 모색	양미강
14:20~14:30(10분)	휴식	
[session 2] 일본사례와 전망 (사회 : 김중섭)		
14:30~15:10(40분)	[발제1] 일본 인권조례경험과 지역간 연대	토모나가겐조
15:20~16:00(40분)	[사례1] 사카이시의 시민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체계	야기노리유키
16:00~16:20(20분)	티타임	
16:20~16:40(20분)	쉽(찬조출연)	
16:40~17:20(40분)	[사례2] 미에현의 시민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체계	오오타니토오루
17:20~18:00(40분)	질의 응답	
18:00~19:00(60분)	만찬	
[session 3] 국내사례와 전략적 모색 (사회 : 이상갑)		
19:00~19:15(15분)	[발제2] 광주광역시 인권조례	조상균
19:15~19:25(10분)	[동향1] 진주시 인권조례	이기동
19:25~19:35(10분)	[동향2] 전라북도 인권조례	정영선
19:35~19:45(10분)	[동향3]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오동석
19:45~19:55(10분)	[동향4] 전라남도 장애인권조례	장 미
20:00~20:30(30분)	질의 응답	
20:30~22:00(90분)	숙소이동 및 친교	

○ 둘째날 20일(목)

시 간	내 용	주 관
[session 4] 인권도시 : 인식 · 비전 · 연대 (사회 : 흥기룡)		
08:00~09:30(90분)	조찬 및 세미나장 이동	
09:30~10:30(60분)	[토론] 분과토론 (네트워크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가자
10:30~11:00(30분)	[발표] 조별발표	참가자
11:00~11:20(20분)	티타임	
11:20~12:00(40분)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결의)	참가자
12:00~13:00(40분)	오찬 및 폐회	

목 차

[특강]

동북아 사회 문화 협력의 걸림돌과 디딤돌 9

[일본사례와 전망]

일본 인권조례 경험과 지역간의 연대 23
사카이시 인권시책 추진계획 57
사카이시 인권신장을 위한 인권체계 209
미에현의 시책 217
미에현 인권신장을 위한 인권체계 233

[국내 사례와 전략적 모색]

광주광역시 인권기본조례의 의의와 과제 251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 추진현황 265
전북지역 인권조례 제정 추진경과와 향후 과제 283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의 제정경과와 쟁점 그리고 전망 299
전남지역 장애인 인권조례 제정 사례와 시사점 323



동북아 사회문화 협력의 걸림돌과 디딤돌

- ▶ 동북아 사회문화 협력의 걸림돌과 디딤돌
 - SWOT 분석과 S-T 협력사례

동북아 사회문화 협력의 걸림돌과 디딤돌

- SWOT 분석과 S-T 협력사례

양 미 강(세계NGO역사포럼 운영위원장)

1. 왜 동북아시아의 사회문화 협력을 말하는가?

현재 한중일 3국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회문화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3국간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차원의 해결방법보다는 비정치적인 차원의 사회문화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문화 협력이란 일방적인 요구로 가능한 일이 아니며,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동북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갈등의 고리를 점차 끊어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3국의 지역적, 국가간, 시민들의 이해가 심화되면 될수록 국가간, 지역간 문화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가 좁혀지고 문화적 소통과 가능성이 그만큼 확장된다.¹⁾

오래전부터 한중일 3국은 상호교류와 협력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을 둘러싼 세계정세와 그에 대응하는 공동체적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고대부터 한중일 3국은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문화를 교류하고 있었으며, 3국을 특징짓는 언어권이나 종교권에 있어서 한자와 불교, 유교 등 문화적 요소를 공유해왔다.²⁾

그러나 근대 이후 한중일 3국은 상호협력과 교류의 역사를 대신하여,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한 갈등의 역사가 대치되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상호간의 갈등은 교차되고 심화되면서 현재까지 해결국면을 맞기는커녕 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한중일 3국에 존재하는 갈등은 곧바로 국가 간의 갈등으로 연결되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그 예가 2005년 한일, 일중간의 갈등을 첨예화하게 만든 과거사 문제와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이다. 일본 우익세력에 의한 역사왜곡이 일어나자 한중일을 둘러싼 국가 간의 정치적 관계 악화는 물론 대중문화와 사회문화의 교류도 감소하였다. 이같은 사례는 결코 국가간의 갈등과 사회문화 갈등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 한중일의 사회문화 협력을 위해, 먼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SWOT(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분석을 통해 한국을 둘러싼 내부요인과 한중일을 둘러싼 외부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환경 속에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걸림돌과 디딤돌을 선별하여 걸림돌을 극복하고 디딤돌을 초석으로 삼아 동북아의 사회문화 협력을 어떻게 이루어내야 할지를 생각하고자 하는데 있다.

- 1) 이우영 외,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 - 거버넌스 관점에서”(경제사회인문연구회 협동연구과제 2006)
- 2) 전성훈은 동북아 3국에서 불교의 자비정신을 매개로한 공동체성 창출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동북아평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지공동체 활성화 방안”(경제사회인문연구회 협동연구과제 2006)

2. 동북아 사회문화 협력을 둘러싼 환경요인

동북아의 환경을 분석하는 것은 강점을 극대화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며 기회요인을 충분히 활용하고 위협요인을 극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내부 요인으로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요인으로 기회요소와 위협요소를 구분할 수 있다. 내부요인은 한국을 그 분석 대상으로 하며, 외부요인은 한중일을 둘러싼 3국을 분석대상으로 한다.³⁾

2-1 강점(Strength)

1) 동북아 평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동북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03년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출범시켰다. 동북아경제중심위원회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번영을 통한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후 2004년 내부역량 강화 뿐 아니라 동북아와의 대외협력을 적극적으로 추동하기 위해 명칭을 동북아시아위원회로 변경하고, 사회문화협력팀을 출범하여 본격적으로 동북아시아를 열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이것은 동북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유럽통합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시 나치가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과거청산의 노력 역시 독일 정치지도자들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런 점에서 정권교체기인 오늘날, 차기 정권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의 정책적 기조를 계속 이어갈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2) 역동적 국가 이미지

2002년 한일 월드컵은 역동적인 한국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였다. 특히 시청 광장 앞에서의 열띤 응원엔 세계에 한국의 이미지를 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공동 주최국인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아는데 기여를 했다. 이웃나라인 한국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일본인들이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고, 한일관계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을 보면 문화적 교류가 한일 양국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

이뿐 아니라 겨울연가, 대장금 등 한국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한류라는 대중문화의 흐름이 아시아를 석권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류를 통해 아시아인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2004년 일본 내각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에 친밀감을 느낀다는 답변이 전년도 대비 1.7% 증가한 56.7%로 집계된 것은 그동안 통계치에 비춰볼 때 사상 최대치이며, 이것은 한류 열풍의 효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조사한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아시아 지역의 해외여행자 10명 중 7명이 한국을 여행지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가 한류

3) 이 분석들은 동북아시아위원회 사회문화협력위원회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만든 내부보고서의 내용을 골간으로 하였다.

4) 2002년 7월 동아일보와 아사히신문 공동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에 대한 친근감이 2001년 11월 46%에서 2002년 7월 53%로 증가하였고, 한일관계에 대해 10명 중 8명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때문이었다고 답한 것을 보면 한류가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류의 긍정성은 영원하게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 한류를 일방적인 문화수출이 아닌 아시아와의 상호성을 전제로 하지 않을 경우 언젠가지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그럴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역한류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동북아의 사회문화 협력을 통해 이질성을 극복해야할 과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⁵⁾

3) 시민사회의 활동성

한국 시민사회의 활동성은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정도로 우수하다. 그것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사회를 개혁하는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고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1990년대부터 눈에 띄는 정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이르러 폭발적으로 숫자가 증가하였다.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2000년 총선연대의 활동이다. 시민들의 힘으로 부패한 정치인들을 낙선시킨 총선연대의 활동은 주변 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경이감을 갖게 하였다, 또한 2001년 일본역사왜곡에 대응하여 일본의 왜곡 교과서의 채택을 저지했던 한국 시민사회 노력 역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가 비판만이 아닌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성으로 인정받은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이나 일본의 시민사회는 각자의 활동성은 가지고 있지만, 오피니언 그룹으로 사회를 개혁하거나 주도적인 흐름을 만들지 못한다. 중국은 공식 등록단체는 약 100만개 정도가 되나 대부분이 관변단체이고 자발성에 근거한 시민사회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최근 중국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학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시민운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은 현재 공식 추산 62만개이지만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는 단체는 약 1.8%인 1만개 정도이며, 대부분 지역활동에 근거를 둔 분산적 활동이 주를 이루어 정부를 비판적으로 견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2 약점 (Weakness)

1) 장기 전망의 부재

사회문화 협력은 무엇보다도 중장기적인 비전이 수립되는 것이 필수요소다. 장기적인 비전 속에서 이 비전을 추진하는 구심력을 확실히 만들고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목표와 사업, 그리고 전략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연속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획이 준비되고, 체계적으로 그 기획을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문화 협력을 위한 가장 큰 약점은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에 치중한다는 것이다. 일회성과 이벤트성 사업은 장기 비전의 부재를 드러내고, 이것은 과정이나 결과 모두 축적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지방자치체의 경우 자매결연 사업 등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는 편이나, 정작 교류내용은 관행적인 행정부문에 편중되어 있는 등 사회문화 협력에 대한 치밀한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목표 자체가 분명하지 않으면, 진행하는 행사가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관심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예산 배정도 저조하고, 예산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부실하게 되며 장기 전망 자체를 수립하기 어렵게 된다. 이것은 결국 악순환을 가져와 사회문화 협력의 약점을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다.

5) 이우영은 포괄적인 사회문화협력을 통해 한국의 정체성을 아시아의 문화국가로서 한국으로 재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위의 글, 166)

2) 아시아 인식의 부재

우리의 전반적인 교류정책은 아시아 국가와의 상호교류 보다는 서구에 대한 일방적인 교류에 초점을 맞춰왔다. 예로부터 한국은 선진문명을 받아들인다는 명목으로 미국이나 유럽을 선호하였다. 그 결과 해외 박물관에서 한국을 알리는 한국학을 설치하는 경우, 6개국 14개처에 한국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동아시아 박물관에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 역시 학술진흥재단 누적 통계를 보면 미국이 54.2%, 일본 16.3%, 중국 2.1%로 드러났다. 서구 전문가에 비해 동아시아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보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아시아에 속해 있으면서도 다른 아시아인에 대한 우월의식이 내재화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편이지만, 이는 주로 연구자와 시민운동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 스스로 아시아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이 미흡하여 다른 아시아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국내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아시아의 반한감정이 노골화되고 있어 태국의 경우 반한폭력단체가 나타날 정도가 되었다.

3) 국제적 마인드의 부재

이 문제는 사회문화 협력을 위해 고려해야할 중요한 점이다. 앞서 지적한대로 우리나라는 사회문화 협력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사회문화 협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연대망인 국제네트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제연대는 고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제네트워크를 위한 마인드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렵다. 한국의 시민사회 역시 국내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국제적 연대를 형성하는데 역량이 부족하며 이때 국제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는 실질적인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⁶⁾

또한 국제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한일, 한중 등 양자간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차원의 협력관계도 주로 서구 중심의 양자관계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네트워크가 아직 발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하루빨리 한중일 등 적어도 동북아 사회문화 협력을 위한 주요한 나라를 포괄하는 다자간 협력관계로 하루빨리 전환해야만 한다. 다자간 협력관계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협력의 내용과 범위를 넓히고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뢰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⁷⁾ 이럴 때 타국 문화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나 우리 문화를 일방적으로 소개하고 전파하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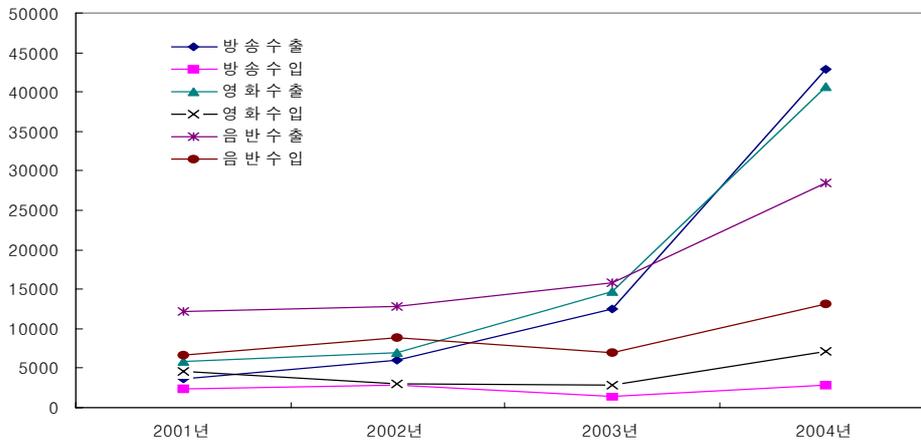
2-3 기회요인(Opportunity)

1) 문화 교류의 확산

- 6) 일본의 경우 국제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단체가 약 17%를 차지하고 일본정부 역시 국제교류 표창제도, 외무성 내 NGO 담당대사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7) 역사갈등 이외에도 한중일 3국의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주제는 환경문제로, 한중일 환경정보 공유 프로젝트(Enviro Asia)를 만들어 공동의 환경현안, 각국의 정보공유를 위해 2년에 한번씩 한중일 동아시아 환경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 동북아를 둘러싼 관광교류, 스포츠 및 대중문화 교류가 확대되면서 문화교류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래의 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대일 대중 문화상품의 수출입이 현저하게 상승하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과 일본은 2002년 한일공동 월드컵 개최, 2005년 한일우정의 해와 한일 공동방문의 해로 정하여 한일 양국간의 활발한 문화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양국 역시 정부 차원에서 2000년 6월 한중 관광교류 합의각서 체결을 통해 중국인들의 한국방문을 허용하였고, 한중 우호의 밤, 한중 문화관광 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양국간 문화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한중, 한일 정부간의 문화교류 지원은 실제로 해외 방문객의 수를 증가시켰는데, 1992년 323만명인데 반해 10년 후인 2002년에는 534만명으로, 2년 후인 2004년에는 582만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단순 방문이나 관광, 대중문화 뿐 아니라 한국과 동아시아와의 인적 교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동아시아인과의 국제결혼의 증가와 동아시아 노동자의 유입, 그리고 국내에 유학중인 아시아계 학생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표 1> 한국의 대일, 대중 문화상품 수출입 추이 (단위:백만불)⁸⁾



동북아시아대위원회가 2004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동북아시아 사회문화 교류협력 실태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방자치체, 민간단체들의 동북아 나라들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전체 조사대상의 30.4%가 현재 교류를 진행 중이었으며, 평균 교류회수는 연 6.2회로 나타났다. 그중 중국과의 교류협력 (82.3%)이 압도적이었으며, 일본(49.7%), 그리고 러시아(6.6%)와 몽고(6.6%) 순서로 나타났다. 주로 교류협력의 내용은 문화교류(53건), 자매결연(48건), 친선교류(31건), 스포츠교류(25건), 청소년교류(19건) 순으로 나타났다. 각 단체들의 동북아 국가들과의 교류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약 64.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불만족한다는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이 예산부족과 정보, 법규제 등을 꼽았다. 열거한 불만족 요소를 해소한다면 만족도는 더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⁹⁾ 이러한 현실은 문화교류가 동북아 사회문화 협력의 주요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협력 시스템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만들어낼지에 달려있다.

2) 심화되는 경제의존

한중일 3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 한중일 3국간의 교역이 동북아 총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2년간 12.5%에서 22.4%로 거의 두배 증가하였고, 2005년 현재

8) 동북아시아대위원회, 2006년 6월 보고서 중에서.

9) 동북아시아대위원회, “동북아시아 사회문화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2005.12, 24-25)

중국은 한국의 최대교역 대상국으로 제1위 수출대상국이자 제1위 무역흑자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역시 중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으로 제2위 투자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또한 각각 상대국에 대해 제2위 교역대상국의 위치를 갖고 있다.¹⁰⁾ 이같이 3국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통합도 모색되고 있다.

이같이 3국간의 경제협력이 강화된 배경에는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이 작용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앞으로 20년간 6-7%의 고도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어 동북아의 경제협력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의 기능적 경제통합은 교역 및 투자 이외에도 에너지 공동개발, 환경협력, 수송 및 물류관련 사업, 금융협력, 도시 및 지방간 협력사업, 두만강 지역 개발사업 등 각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한중일 3국간의 역내 교역 및 투자의 활성화는 동북아 경제통합 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한중일 3국간 경제의 제도적 통합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자유무역지대(FTA)형성을 위한 공동연구도 진행 중이다.¹¹⁾

2-4 위협요인 (Threat)

1) 안보 위기

동북아는 현재 세계 최강들의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화약고와 같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부딪치면서, 냉전 체제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채 경제협력은 심화되고, 군비경쟁은 증가하는 구조적인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분류되고 미국과 일본의 견제를 받고 있다. 중국이 동북아의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은 1990년대 중반이후 동맹관계를 재정비 강화하였다. 2005년 2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적 활동 범위를 미국과의 협력 아래 전 세계로 확대한다는 공동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 그후 일본은 주일 미군과 자위대의 변혁과 재편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고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를 저지하기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오고 있다. 그 결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¹²⁾ 이같이 동북아 지역에서 향후 동북아 전략구도를 염두에 둔 군비경쟁이 강대국들에 의해 강화됨에 따라 안보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 속에서 위협변수로 떠오르는 것이 북핵문제이다.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고 북한이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로 선화하면서 이를 계기로 6자 회담의 틀이 그 효력을 상실하면서 동북아는 여전히 안보위협에 처해있다. 이외에도 동북아 지역내 영토 및 자원확보 경쟁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간의 양안 문제, 중일간의 조어도 문제, 일본과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 등은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잠재적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2) 불균형한 시민사회

한중일 시민사회는 그 형성배경부터 많이 다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른바 재야라고 하는 오랜 기

10) 김국신 외,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3)”(경제사회인문연구회 2006, 5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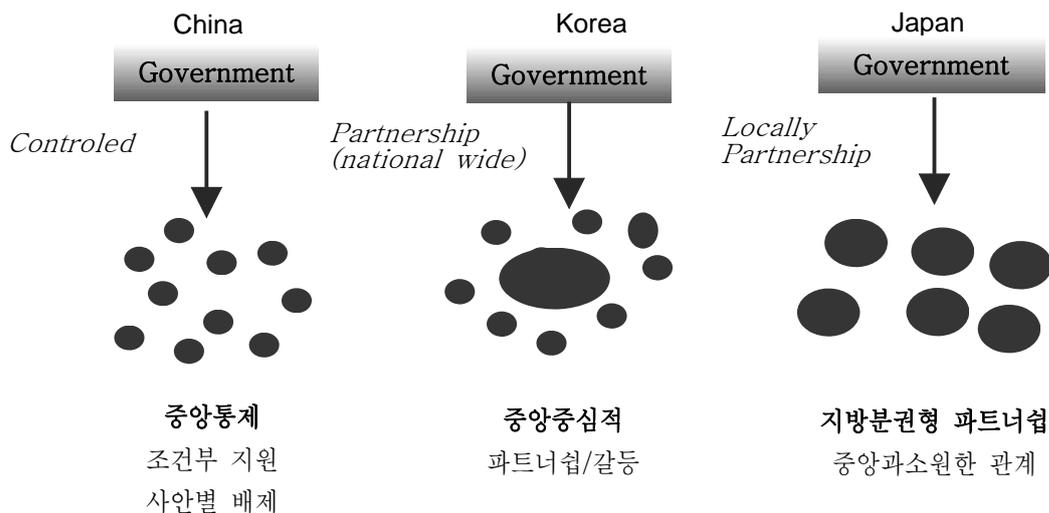
11) 최태욱, “보편적 구상으로서 동북아 시대와 지역협력방안”(‘동북아를 보는 눈’ 심포지엄 자료집, 2007, 198-199)

12) 국방연구원 “2005-2006 동북아군사력”(국방연구원, 2006, 50-59). 김우준 외, “동북아 문화공동체에 대한 한중일 시각 비교와 협력방안 모색”(경제사회인문연구회 협동연구과제 2006), 55 재인용

간 독재정권에 대한 국가권력과의 싸움이라는 틀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1960년대 안보투쟁 이래로 국가권력이 아니라 지방에서의 생활정치를 활성화시키는데 더 큰 초점을 두어왔다. 이에 반해 중국은 시민단체 라기보다는 관이 주도하는 관변단체가 주를 이루고 있고 1995년 북경 세계여성 대회를 계기로 정부와 다른 시민사회라는 조직이 구성될 수 있다는 사회적 통념이 비로소 생겨났다.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층도 매우 다르다. 한국의 경우 주요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대학과 종교집단에서 충원되는 반면, 일본은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관심 영역별로 조직하여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달리 변호사, 교사, 언론인 등 지식인 그룹에서 활동가들을 배출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활동의 범위 역시 3국이 다르다. 중국은 전국적 차원이 존재하기 어려운 반면, 한국은 전국적 차원의 운동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이루고 있다. 일본은 중앙집중적인 운동은 거의 전무하며 지방에서 조직이 튼튼하게 자리잡고 있는 형편이다. <표2>는 한중일 3국의 시민운동과 중앙, 지방과의 활동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정부와의 관계가 중국은 중앙통제형, 한국은 중앙집중형 파트너쉽, 일본은 지방분권형으로 분다. 이같이 3국의 시민사회가 처한 조건과 내용이 많이 다름에 따른 비균형적인 구조는 3국 시민사회의 연대를 형성하는데 어려운 조건이다.¹³⁾

<표 2> 한·중·일 각 국의 시민운동단체들과 중앙과 지방에서의 활동관계¹⁴⁾



3) 역사인식 갈등

21세기 한중일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은 20세기 유산인 침략과 억압이라는 과거사의 흔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세기 전반 일제가 저지른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 원폭피해자들이 엄존하고 있고 아직까지 식민지 피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20세기 냉전시대는 아픈 기억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치유와 화해를 통해 동북아의 평화를 이룩해야 할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지 못하고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과거사 청산이 본격화된 것은 냉전체제의 와해와 무관하지 않다.

13) 이기호 외, “동북아 사회문화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과 모색”(경제사회인문연구회 2006, 11-14) ; 서남포럼이 펴낸 ‘2006 동아시아 연대운동단체 백서’(2006, 서남포럼) 에서 각국별로 시민운동이 불균등하게 발전한 탓에 골고루 시민운동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4) 위의 글, 14에서 인용

냉전의 해체에 따라 한반도 주변의 대국들은 자국중심주의의 강화를 내걸면서 동북아 질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탐색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일본은 패전 이후 살아남은 군국주의자들의 후예들이 식민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하면서 역사왜곡을 조장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과 정치적 발언권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국가론’을 내세우며 일본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국익, 내셔널리즘을 강조하면서 평화헌법, 교육기본법, 국기국가법의 제정을 통해 국내체제를 정비해가고 있다. 중국 역시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내 체제의 이완을 수습하기 위해 내부 국민통합의 일환으로 국가 프로젝트인 동북공정 등을 시작하여 한중 관계의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다. 3국간 역사갈등의 대립은 역사적 차원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3국의 정치적인 문제와도 연결된다. 또한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경험, 냉전시대의 전쟁 경험을 통해 한중일 3국간의 국민들의 정서 속에서 민족의식이 대립하면서 자국중심주의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3. 걸림돌을 디딤돌로 : S-T 협력 사례

이상에서 동북아 사회문화 협력이 처한 환경 분석을 하였다(표3). 이같은 환경 분석에서 우리는 걸림돌인 약점과 위협요소를 어떤 식으로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강점과 기회요인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한국이 갖고 있는 강점(S)을 가지고 동북아의 위협요인(T)을 극복하는 것이다. 또한 동북아 3국에서 이루어지는 기회요인(O)을 적극 활용하면서 한국의 약점(W)을 극복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향후 구체적인 과제는 다른 발표를 통해 보충하되, 여기서는 동북아 사회문화 협력을 위한 디딤돌로 한국의 강점(S)으로 동북아의 위협요인(T)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S-T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과제를 살펴보는데 한정하도록 한다.

<표 3> 사회문화 협력 SWOT 분석 종합

	내부요인		외부요인
강점 (Strength)	정책적 의지	기회요인 (Opportunity)	문화교류 확산
	역동적 국가이미지		심화되는 경제의존
	시민사회의 활동성		
약점 (Weakness)	장기적 비전 부재	위협요인 (Threat)	안보위기
	아시아인식 부재		불균형한 시민사회
	국제적 마인드 부족		역사인식 갈등

그렇다면 현재 동북아 3국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물론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동북아 3국에서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3국간의 역사갈등 문제이다. 이것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한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지막 연도 협동연구과제 13개 중 사회문화협력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연구주제 6개를 살펴본 결과, 현 단계 동북아 3국의 평화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공통적인 걸림돌로 역사갈등을 뽑았다.¹⁵⁾ 이같은 사실은 그만큼 역사갈등 해결이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선결과제라는 보여준다.

15) 김국신, 송정호, 이교덕, 정정숙, “동북아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 이기호, 양미강, 임성모, “동북아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 발전방안과 모델”, 이우영, 김재철, 전영선, 정정숙, 윤철경, 이우승,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 - 거버넌스 관점에서”, 김우준, 김예경, 최운도, “동북아 문화공동체에 대한 한중일 시각 비교와 협력방안 모색”, 전성훈, 민병원, 배정호, 이근신, “동북아 평화 문화 형성을 위한 인지 공동체 활성화 방안”, 오해섭, 이민희, “동북아 청소년 문화공동체 모형 정립과 교류 협력 모델 개발”

한중일을 비교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다음 <표 4>에서 본 것과 같이 한중일 3국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있어 공통적으로 역사인식의 차이와 영토분쟁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중일 모두 공동체 구상이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에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문화의 영역을 ‘사상으로서의 문화’와 ‘활동으로서의 문화’로 구분하면서, ‘사상으로서의 문화’는 밑으로부터 3국이 공통의 역사인식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중일 3국은 모두 각자의 문화적 개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통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는데 의견이 수렴되고 있으나, 문화공동체 형성이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는 3국간의 역사인식의 차이를 가능한 좁히는 노력과 아울러 3국이 수용할 수 있는 공통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것이야말로 문화공동체를 향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표 4> 지역공동체 형성에 대한 한중일 시각 비교¹⁶⁾

	한국	중국	일본
공동체구상	문화경제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경제공동체
지역범위	동북아/동아시아 (한/중/일/러/몽/ASEAN)	동아시아/아시아 (한/중/일/러/몽/ ASEAN)	동아시아/아시아 (한/중/일/호/뉴/인/러/대만/ 북한/미국 ASEAN)
장애요인	중일과의 역사인식 차이, 영토분쟁	일본과의 역사인식차이, 영토분쟁, 미국의 개입	한일과의 역사인식 차이, 영토분쟁, 미국의 반대
공통의 정체성	유교, 지리적 인접성 등	한자, 유교, 중화문명 등	중산층 문화, 혼성적 정체성

그만큼 역사갈등의 문제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장애요인이 된다면, 이 최대의 걸림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동북아 고유의 문제를 넘어서 서구에서도 서서히 주목받는 주제가 되고 있다. 2007년 7월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관련 121호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한중일이 상호 연관되어 있는 야스쿠니 문제, 독도 등 영토문제 등과 관련하여 미국이 선불리 개입하기도 어렵지만 더 이상 외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될 경우 동북아 질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러한 역사문제가 동북아 고유의 문제라기보다는 보편적인 문제, 인권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대의 걸림돌 중의 하나인 동북아 역사갈등 문제를 어떻게 동북아 평화질서를 위한 디딤돌로 재구성하고 재정리하면서 가야할지에 대한 고민이 남다르다. 동북아 질서의 미래는 역사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는 문제제기는 귀 기울일만하다. 역사갈등을 갈등의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적극적 소재로 만들어가면서 동북아 지역 질서를 위한 공동의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논의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는 것은 그 한 이유라 할 수 있다.¹⁷⁾

16) 김우준 외, 위의 글, 52에서 인용

17) Suh, JJ "War-like history or diplomatic history?",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2007.8)

그러면 역사갈등이라는 동북아의 걸림돌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대부분의 연구서는 역사를 통한 공동인식의 함양에 주목한다.¹⁸⁾ 지식인 공동체의 초국가적인 연대망 형성, 균형잡힌 역사관과 타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¹⁹⁾. 그러나 동북아의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현재 한중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한국의 경우,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정책적 의지와 시민사회의 활동성이 결합되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걸림돌을 디딤돌로 가기 위한 S-T 사례의 하나로 볼 수 있다.

2001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으로 불거진 한일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은 2002년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발족을 가져왔으며, 그 성과에 대한 다양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2007년 제2기를 출범시켰다. 2기는 시작부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적어도 조직상으로 보면 1기에서 다루지 못했던 한일 양국의 교과서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또한 2004년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본 역사왜곡 문제와 아울러 한일, 한중 역사갈등과 영토갈등에 대한 종합적 대응과 연구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04년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하였고, 2006년 고구려연구재단을 흡수통합한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 역사갈등 해결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동아시아사를 선택과목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 하였다. 사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는 정부가 역사문제에 어떻게 개입할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올 수는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구체화하고 실천한 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도 다양한 차원에서 동북아 역사갈등을 풀어내기 위한 성과를 만들었다. 그것은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인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보여준 것이며, 동시에 비판이 아닌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역사갈등을 역사대화로 적극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2005년 이후 한중일 시민사회의 역사대화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내셔널리즘이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투영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우파들은 일종의 자학사관으로는 현재 민족주의의 폭발기를 맞이하고 있는 동북아 상황에 대처하기 적절하지 않으므로 자랑스런 일본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내셔널리즘의 쉼표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수단으로 역사교과서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우익교과서가 교과서 시장에 진출하여 자신의 새로운 내셔널리즘을 마케팅화 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일본 우파들의 역사인식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공동의 역사인식을 담은 근현대사 교과서 [미래를 여는 역사-한중일 3국의 근현대사]를 만 4년의 작업 끝에 만들었다. 이것은 동북아의 다자간 협력사례의 모델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대구와 히로시마의 교사들이 중심이 된 [조선통신사], 한국과 일본의 교사들이 함께 만든 근대 이전의 공동교과서 [마주보는 한일사], 한일 여성학자들이 중심이 된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 한일 교수와 교사들이 함께 쓴 [한일 교류의 역사] 등이 출판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역사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의 역사인식을 만들어 가기 위한 귀중한 성과였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으로 민관협력의 거버넌스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역사갈등이라는 첨예한 문제에 대응하는 민과 관의 공동의 목표가 일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2007년 제1회 역사엔지오 세계대회를 시민사회와 동북아역사재단이 공동주최하여 21개국, 약 5000명이 참여하였다.²⁰⁾ 이 대회는 다양한 영역의 역사갈등을 세계가 한 자리에 모여 어떻게 역사화해로

18) 전성훈 외, 위의 글.

19) 이우영 외, 위의 글.

20) 2007 역사엔지오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21세기 역사화해를 향한 시민사회의 역할”자료집(2007)

이끌어낼 것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된 걸림돌은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토론한 장이다. 이같은 세계대회가 개최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동북아라는 공동의 위협요인을 가진 특수성과, 한국이라는 역동성을 가진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4. 마무리하면서

이상과 같이 동북아 사회문화 협력을 위한 제반 환경을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분석을 통해 우리가 확보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며, 어떤 실천사례를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이룩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사회문화 협력은 궁극적으로 공동체 형성이라는 복잡한 영역까지 가기 위한 대단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체 형성은 공동의 인식을 담아내지 않고는 결코 이룩하기 어려운 일이며, 공동의 인식을 저해하는 요소가 바로 역사갈등이라는 위협요소가 우리 안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의 사회문화 협력은 국가와 지방자치제, 민간 섹터의 3자가 연계하여 공동의 목표 아래 체계적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확대해야만 한다.²¹⁾ 국가는 지속적으로 동북아 공동체와 사회문화 협력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천명하고 법률을 통한 안정적 토대를 마련해야만 한다. 또한 각 영역별 지원을 통해 사회문화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지방자치제는 장기적인 비전 수립을 통해 양자간 협력을 발전시키고, 다자간 협력을 확대하여 그 내용이나 범위에 있어서 확대해야만 한다. 시민사회는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협력사업을 전개해가야 하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협력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21) 배진수는 동북아 역사갈등 해결을 위한 모델로 국제기구까지 포함한 GPPN 모델(시민사회-정부-기업-국제기구 파트너십)을 제시하였다. "동북아 영유권 분쟁과 그 의미"(‘동북아를 보는 눈’ 심포지엄, 2007, 122-124)



일본 사례와 전망

- ▶ 일본의 인권조례와 지역간의 연대
- ▶ 사카이(堺)시 인권 시책 추진 계획
- ▶ 사카이(堺)시의 인권신장을 위한 인권 체계
- ▶ 미에현의 시책
- ▶ 미에현 인권신장을 위한 인권체계

일본의 인권조례와 지역간의 연대

日本の人権条例と 地域間の連携

友永健三
部落解放・人権研究所理事
反差別国際運動事務局次長

1

일본의 인권조례와 지역간의 연대

토모나가 겐쥬(友永健三)
부락해방·인권 연구소 이사
반(反) 차별 국제 운동 이사국 차장

1,はじめに

- 昨年は、日本における人権条例の制定の経過、現状、課題を報告させていただいた。
- 本年は、日本における人権条例の制定の経験、とりわけ地域間の連携について報告する。
- 韓国での人権条例制定の参考にしていただきたい。
- 同時に韓国における人権条例制定からも学びたい。

2

1. 들어가기

- 작년에는 일본의 인권조례 제정의 경과, 현상, 과제를 보고 했다.
- 올해는 일본의 인권조례의 제정의 경험, 그 중에서도 지역간의 연대해 대해 보고 한다.
- 한국의 인권조례제정에 참고 했으면 좋겠다.
- 동시에 한국의 인권조례제정에서도 배우고 싶다.

2, この報告での人権条例について

- 人権条例とは広範な内容を含んでいるが、この報告では、以下の限定をおこなう。

- 1, 部落差別調査規制条例
- 2, 部落差別撤廃、人権条例または部落差別をはじめあらゆる差別を撤廃するための条例
- 3, 人権尊重社会づくり条例

3

2, 이 보고에서의 인권 조례에 대해

- 인권조례는 광범위한 내용을 품고 있는데 이 보고에서는 이하로 한정한다.

- 1, 부락차별 조사 규제 조례
- 2, 부락차별 철폐, 인권조례 또는 부락차별을 비롯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례
- 3, 인권 존중 사회 만들기 조례

3, 人權條例の制定状況 (資料①)
(2009年6月12日現在)

(1) 都道府県レベル
47 都道府県中 16 府県 17 条例

(2) 市 区町村レベル
1804 市区町村中 410 市町村
410 条例

4

3, 人權條例의 제정상황 (자료①)
(2009년 6월 12일 현재)

(1) 도도부현(都道府県) 레벨
47 도도부현(都道府県) 중 16부현 17조례

(2) 시구정촌(市区町村) 레벨
1804 시구정촌(市区町村) 중 410시정촌
410 조례

4, 條例の名称による分類
(2007年1月29日現在)

① 人權尊重の社会づくり 条例
222(53.8%)

② 部落差別をはじめあらゆる差別撤廃条例
122(29.5%)

③ 部落差別撤廃・人權擁護 条例
41(9.9%)

④ その他 28(6.8%) 5

4, 條例의 명칭에 의한 분류
(2007년 1월 29일 현재)

① 인권존중의 도시 만들기 조례 222(53.8%)

② 부락차별을 비롯한 모든 차별 철폐 조례 122(29.5%)

③ 부락차별 철폐·인권옹호조례 41(9.9%)

④ 그 이외 28(6.8%)

5, 部落差別と部落解放運動

○日本における人權條例制定には、部落解放運動が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ため、部落問題と部落解放運動について簡単に説明する。(資料②)

○部落差別は、韓国における「白丁」に対する差別と酷似しているし、第2次世界大戦前には、水平社と衡平社との連帯が模索された。

6

5, 부락차별과 부락해방 운동

○ 일본의 인권 조례 제정에는, 부락해방 운동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어, 부락문제와 부락해방 운동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다.(자료②)

○ 부락차별은 한국의 '백정'에 대한 차별과 비슷한 것으로, 제 2차 세계 대전 전에는 수평사와 형평사의 연대가 모색되었다.

6. 部落問題について・概説①

(1965年・内閣同和对策審議会答申より)

「いわゆる同和問題とは、日本社会の歴史的発展の過程において形成された身分階層構造に基づく差別により、日本国民の一部の集団が経済的・社会的・文化的に低位の状態におかれ、現代社会においても、なおいじめるしく基本的人権を侵害され、とくに、近代社会の原理として何人にも保障されている市民的権利と自由を完全に保障されていないという、もっとも深刻にして重大な社会問題である。」

注・同和問題＝部落問題の行政用語

7

6. 部落問題について・概説②

(1965年・内閣同和对策審議会答申より)

「 모든 동화문제는 일본사회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신분 계급의 구조에 근거한 차별이며, 일본국민 일부의 집단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낮은 위치의 상태에 놓여, 현대사회에서 현저하게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하고, 특히 현대사회의 원리로써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완전히 보장받고 있지 않은,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사회문제이다.」

주・동화문제 = 部落문제의 행정용어

部落問題について・概説③

「その特徴は、多数の国民が社会的現実としての差別があるために一定地域に共同体的集落を形成していることにある。最近この集团的居住地域から離脱して一般地区に混住するものも多くなってきているが、それらの人々もまたその伝統的集落の出身なるがゆえに陰に陽に身分的差別のあつかいをうけている。集落をつくっている住民は、かつて「特殊部落」「後進部落」「細民部落」など蔑称でよばれ、明らかな差別の対象となっているのである。」

8

部落問題について・概説④

「 그 특징은 다수의 국민이 사회적 현실로서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일정 지역에 공동체적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최근 이 집단적 주거 지역에서 이탈하여 일반 지구에 혼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 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그 전통적 집단의 출신이라는 이유로, 음으로 양으로 신분적 차별을 받고 있다. 집단을 이루고 있는 주민은 「특수부락」「후진부락」「세민부락」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분명한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部落問題について・概説⑤

「すなわち、同和問題は、日本民族、日本国民のなかの身分的差別をうける少数集団の問題である。同和地区は、中世末期ないしは近世初期において、封建社会の政治的、経済的、社会的諸条件に規制せられ、一定地域に定着して居住することにより形成された集落である。」

注・同和地区＝(被差別)部落の行政用語

9

部落問題について・概説⑥

「 즉, 동화문제는 일본 민족, 일본 국민 속에서 신분적 차별을 받는 소수 집단의 문제이다. 동화지구는 중세말기부터 근세초기까지 봉건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인 여러 조건으로 규정되어 일정 지역에 정착해서 거주하는 것에 의해 형성된 집락이다.」

주・동화지구 = (피차별) 부락의 행정용어

7, 部落問題について・概況

1. 全国36府県、1081市町村に、4442地区の同和地区(被差別部落)が存在

注・市町村数は1993年時点のもの。

2. 同和関係住民(部落民)の戸数は29万8385戸で、人口は89万2751人(なお、同和地区にすむ同和関係住民以外の人々を含むと、戸数は73万7198戸、人口は215万8789人)

(1993年の政府の「同和地区生活実態等把握調査」より)

・なお、この調査は、同和对策事業を実施している地区の調査に限定されていて、同和对策事業を実施していない地区は対象とされていない。また、同和地区から出て、同和地区外で生活している部落出身者も、調査の対象とはされていない。

10

7. 部落문제에 대해•개요설명

1. 전국 36부현, 1081시정촌(市町村)에, 4442지구의 동화지구(피차별 부락)이 존재
주•시정촌(市町村) 수는 1993년 시점의 것

2. 동화관계 주민(부락민)의 호구 수는 29만 8385가구로 인구는 89만 2751명(아직도 동화지구에서 사는 동화관계 주민 이외의 사람들을 포함하면 가구 수는 73만 7198가구, 인구는 215만 8789명)

(1993년 정부의 「동화 지구 생활 실태 파악 조사」에서)

• 아직도 이 조사는 동화 대책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구의 조사에 한정되어 있고 동화 대책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지구는 대상이 안 된다. 또 동화지구에서 나와서 동화지구 외(外)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락출신자도 조사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다.

8, 部落解放運動について

○1922년3월 全国水平社創立

注・水平社宣言は日本の人権宣言とよばれている。

(資料③)

○1946년2월 部落解放全国委員会として
再建

○1955년8월 部落解放同盟と名称変更
今日に至る。

注・現在37都府県連に1809支部があり、同盟員数は6万5000人

11

8, 部落해방 운동에 대해

○1922년 3월 전국 수평사 창립

주•수평사 선언은 일본의 인권 선언이라 불리지 않는다
(자료③)

○1946년 2월 부락해방 전국 위원회로써 재건

○1955년 8월 부락해방 동맹이라 명칭변경, 오늘에 이른다

주•현재 37도도부현(都道府県)에 1809지부가 있고, 동맹 인수는 6만 5000명

9, 部落問題にとりくむ人々の拡がり

●教員・・・全国同和教育研究協議会結成

1953年

●研究者・・・部落解放研究所創立 1968年

1998年に部落解放・人権研究所と名称変更

●労働組合・・・部落解放中央共闘会議結成

1975年

●企業・・・同和問題に取り組む全国企業連絡会
結成 1985年

大阪(1978年)、東京(1979年)など
各地でも結成

12

9, 部落문제와 싸우는 사람들의 확대

●교원... 전국동화 교육 연구 협의회 결성 - 1953년

●연구자... 부락해방 연구소 창립 - 1968년
1998년에 부락해방•인권 연구소라고 명칭 변경

●노동조합... 부락해방 중앙 공동(공동 투쟁)회의 결성
- 1975년

●기업... 동화 문제에 대처하는 전국 기업 연락회 결성
- 1985년

오사카(1978년), 도쿄(1979년) 등, 각 지역에서 결성

●宗教・・・『同和問題』にとりくむ宗教教団連帯会議
1981年

64教団、3協賛団体(新日本宗教団体連合会、全日本仏教会、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が加盟

●部落解放基本法制定要求国民運動中央実行委員会 1985年

2002年から部落解放・人権政策確立要求中央実行委員会へと名称変更

注・各都府県にも同様の実行委員会が存在している。

13

●종교... 『동화문제』를 위해 싸우는 종교 교단 연대회의
- 1981년

64교단, 3협찬단체(신 일본 종교 단체 연합회, 전 일본 불교회, 일본 크리스티교 협의회)가 가맹

●부락해방 기본 법 제정 요구 국민 운동 중앙 실행 위원회
- 1985년

2002년부터 부락해방·인권 정책 확립 요구 중앙 실행 위원회로 명칭 변경

주·각 시도현에도 같은 실행 위원회가 존재한다.

10, 部落差別調査規制条例の制定

○背景：部落地名 総鑑差別事件の発覚



14

10, 부락차별 조사 규정 조례의 제정

○ 배경 : 부락 지명 총감 차별 사건의 발각



○事件の概要 (2005年12月まで) ~ その①
(資料④)

④)

- ①今日までの究明活動の中で、法務省の発表でも8種類の「部落地名 総鑑」が存在。
- ②部落の名前、所在地、戸数、主な職業などが記載 (全国およそ5300カ所)
- ③作成・販売者は興信所・探偵者などの調査業者
- ④購入者は、のべ223社(人)、大半は企業。

15

○사건의 개요(2005년 12월까지)~그①

(자료④)

- ①오늘까지의 구명 활동 중에, 법무성의 발표에서도 8종류의 「부락 지명 총감」이 존재
- ②부락의 이름, 소재지, 호구 수, 주요 직업 등이 기재 (전국 약 5300곳)
- ③작성·판매자는 흥신소·탐정 등의 조사 사업
- ④구매자는 233사(명), 대부분은 기업

事件の概要

~その②

⑤販売時期は、1970年前後と1975年前後の2つの時期に集中している。

⑥販売価格は、安くて5000円、高い場合は4万5000円。(当時の価格)

⑦法務省は、1989年、この事件の「終結宣言」を発表したが、いまだに真相が解明されていないだけでなく、同様の事件が続いている。

【注】2005年12月から2006年1月にかけて「地名総鑑」が3冊回収された。内2冊は新種) 2006年9月、電子版「地名総鑑」が回収された。

16

사건의 개요

~그②

⑤판매시기는 1970년 전후와 1975년 전후의 2가지의 시기로 집중되고 있다.

⑥판매 가격은 싸게는 500엔, 높은 경우는 4만 5000엔(당시의 가격)

⑦법무성은 1989년 이 사건의 「종결선언」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진상이 해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같은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주】2005년 12월부터 2006년 1월에 걸쳐 「지명총감」이 3권 회수되었다.(그 중 2권은 신종) 2006년 9월, 전자판 「지명총감」이 회수 되었다.

○大阪府で興信所・探偵社による「地名総鑑」の販?や部落差別調査を規制する条例が制定された。(1985年3月)

(資料⑤)

※その後、熊本県(1995年)、福岡県(1995年)、香川県(1996年)、徳島県(1996年)でも部落差別調査を規制する条例が制定された。

○これらの条例制定には、部落解放同盟の全国大会での方針提起や、部落解放研究全国集会等での問題提起が役立った。

注・いずれも年一回開催されている。 17

○오사카 부에서 흥신소, 탐정에 의한 「지명총감」 판매나 부락차별 조사를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다.

(1985년 3월) 자료⑤

▶그 후, 구마모토 현(1995년), 후쿠오카 현(1995년), 가가와 현(1996년), 도쿠시마현(1996년) 에서도 부락 차별 조사를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다.

○ 이 조례 규정은 부락해방 동맹의 전국 대회에서의 방침 제기나 부락해방 연구 전국 집회에서의 문제제기가 도움이 되었다.

주•모두 연 1회 개최되고 있다.

11, 部落差別撤廃・人權擁護 条例等の制定

○背景

①1985年

部落解放基本法の制定を求めた運動の開始

②1990年代初頭

国の壁が厚いため、足元から部落解放基本法制定を求めた運動を展開

18

11, 부락차별 철폐・인권옹호 조례의 제정

○ 배경

①1985년

부락 해방 기본 법의 제정을 구한 운동 개시

②1990년대 초

국가의 장벽이 두꺼워져 기초에서 부터 부락해방 기본 법 제정을 위한 운동을 전개

○1993년 6월
 徳島県阿南市で阿南市部落差別撤廃・
 人権擁護に関する条例制定
 (資料⑥)

○1993년 9월
 大阪府泉佐野市で泉佐野市における部
 落差別とあらゆる差別をなくす条例制
 定 (資料⑦)

19

○1993년 6월
 도쿠시마(徳島)현 아난(阿南)시에서 아난(阿南)시 부락
 차별 철폐·인권 옹호에 관한 조례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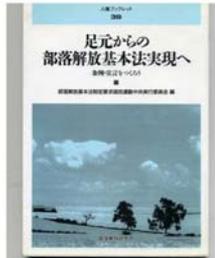
자료⑥

○1993년 9월
 오사카(大阪) 부 이즈미사노(泉佐野)에서 이즈미사노(泉
 佐野)의 부락차별과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례 제정

자료⑦

○条例制定にむけた取り組み

・部落解放・人権研究所で
 条例案の検討、出版物の
 発行(1993년 3월)



20

○조례 제정을 위한 대책

・부락해방·인권연구소에서
 조례안 검토, 출판물의 발행
 (1993년 3월)



○各種集会での提起

・部落解放基本法制定要求
 国民運動中央実行委員会
 の集会
 ・部落解放同盟の全国大会
 ・部落解放研究全国集会
 ・条例制定のための独自の
 集会など



1994년 7월 발행

21

○각종 집회에서의 제기

・부락해방 기본 법 제정 요구
 국민 운동 중앙 실행 위원회
 의 집회
 ・부락해방 동맹의 전국 대회
 ・부락해방 연구 전국 집회
 ・조례제정을 위한 특자의 집회 등



12, 人權尊重の社會づくり條例の制定の經驗

○背景

- ① 人權教育のための國連10年
(1995~2004年)
- ② 1996年5月 地域改善対策協議会
意見具申
部落問題解決を他の人權課題の解決と
結びつける方向が提案される。
- ③ 地方分権の流れ

22

12, 인권 존중의 사회 만들기 조례의 제정 경험

○배경

- ① 인권 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 10년
(1995~2004년)
- ② 1996년 5월 지역 개선 대책 협의회 의견 구신
부락 문제 해방을 다른 인권 과제의 해결과 연결시키는
방향이 제시된다.
- ③ 지방 분권의 흐름

- 1996年8月
鳥取県人權尊重の社會づくり條例の
制定 (資料⑧)

- その後
三重県(97年)、大阪府(98年)、
大分県(08年)等においても制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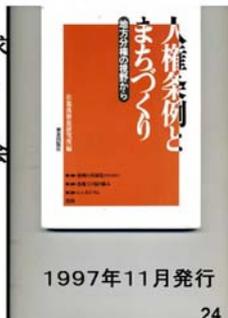
23

- 1996年8월
시마토리(島鳥)현 인권 존중의 도시 만들기 조례 제정
자료⑧

- 그 이외
미에(三重)현(97년), 오사카(大阪)부(98년), 오이타(大
分)현(08년)에서도 제정

○各種集会での提起

- ・部落解放基本法制定要求
国民運動中央実行委員会
の集会
- ・部落解放同盟の全国大会
- ・部落解放研究全国集会
- ・条例制定のための独自
の集会など



24

○各種集会에서의 제기

- 부락 해방 기본 법 제정 요구
국민 운동 중앙 실행 위원회
의 집회
- 부락 해방 동맹의 전국 대회
- 부락 해방 연구 전국 집회
- 조례 제정을 위한 독자 집회



13, 各地の経験から...三重県の場合

- 伊賀町等市町村での条例の制定
- 三重県での条例の制定
- 三重県による市町村段階での条例制定の支援
例:ブロック別研修のテーマに人権条例を設定

25

13, 각 지역의 경험에서... 미에(三重)현의 경우

- 이가(伊賀) 등, 시정촌(市町村)에서의 조례 제정
- 미에(三重)현에서의 조례 제정
- 미에(三重)에서 시정촌(市町村)단계에서의 조례 제정 지원

예: 블럭별 연수 테마로 인권 조례를 설정

14, 各地の経験から...大阪府の場合

- 大阪府泉佐野市等での条例の制定
- 部落解放同盟大阪府連、各支部から自治体への要請
- 世界人権宣言大阪連絡会議からの要請
- 部落解放研究大阪集会での提起

26

14, 각 지역의 경험에서... 오사카 부의 경우

- 오사카(大阪) 부 이즈미사노(泉佐野)에서 조례 제정
- 부락 해방 동맹 오사카부연, 각 지부에서 자치체 요청
- 세계인권선언 오사카 연락회로 부더의 요청
- 부락 해방 연구 오사카 집회에서의 제기

○世界人権宣言大阪連絡会議の取り組み

- 1984年に世界人権宣言の普及・宣伝具体化のために創立
- 2010年4月時点で、48団体、19大学、51地域連絡会が加盟
- 代表: 上杉孝實 (識字・日本語連絡会代表)
事務局長: 友永健三 (部落解放・人権研究所理事)
- 活動の柱に「大阪におけるすべての自治?での人権条例の制定と具体化」を掲げている。

資料⑨、⑩、⑪

27

○ 세계 인권 선언 오사카 연락회의의 대책

- 1984년에 세계 인권 선언의 보급, 선언 구체화를 위해 창립
- 2010년 4월 시점에서, 48단체, 19대학, 51지역 연락회가 가맹.
- 대표: 우에스기 다카미치(上杉 孝實)
(식자, 일본어 연락회 대표)
- 사무국장: 토모나가 겐조(友永健三 - 부락해방, 인권연구소 이사)
- 활동의 이념으로 '오사카의 모든 자치체에서의 인권 조례 제정과 구체화'를 들고 있다.

자료⑨⑩⑪

15. おわりに～今後の課題

○未制定自治体での条例制定

○条例が制定された自治体での条例の具体化

- ・実態調査の実施
- ・審議会の開催、答申
- ・基本方針、基本計画、実施計画の策定
- ・評価と計画の見直し
- ・人権のまちづくりとの結合

28

15. 끝으로～ 이후의 과제

○미 제정 자치체에서의 조례제정

○조례가 제정된 자치체에서의 조례의 구체화

- ・실태조사의 실시
- ・심의회의 개최, 답신
- ・기본방침, 기본계획, 실시계획의 책정
- ・평가와 계획의 재검토
- ・인권 도시 만들기의 결합

○条例制定・具体化を求めた取り組み



29

○조례제정・구체화를 구한 대책



○個別人権条例の制定

例：男女平等条例、子どもの権利条例
障がい者権利条例等

○国のレベルでの人権侵害救済法、差別禁止法、人権基本法の制定、人権省の設置

○国際連帯

例：ユネスコが提唱している「反人種主義国際都市連合」、「包括的な社会をめざす差別撤廃のためのアジア・太平洋地域都市連合」等への参加

資料⑫、⑬

30

○개별인권 조례의 제정

예: 남녀 평등 조례, 어린이의 권리 조례
장애인 권리 조례 등.

○국가 레벨에서의 인권 침해 구제법, 차별금지법, 인권 기본법의 제정, 인권 생(省)의 설치

○국제연대

예: 유네스코가 제창하고 있는 「반 인종 주의 국제 도시 연합」, 「포괄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차별 철폐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도시 연합」 등의 참가

자료⑫,⑬

참고자료(1~13)

資料①

自治体における人権条例の現状把握調査 2009年6月12日現在

都道府県	条例	市区町村数	条例
北海道		180	0
青森県		40	0
岩手県		35	0
宮城県		36	0
秋田県		25	0
山形県		35	0
福島県		59	0
茨城県		44	0
栃木県	人権条例	31	3
群馬県		38	0
埼玉県	趣旨選択	70	0
千葉県		56	0
東京都		62	0
神奈川県		33	0
新潟県		31	0
富山県		15	0
石川県		19	0
福井県	人権条例	17	1
山梨県		28	0
長野県	請願採択	81	76
岐阜県		42	0
静岡県		37	0
愛知県		61	0
三重県	人権条例	29	22
滋賀県	人権条例	26	23
京都府		26	1
大阪府	人権条例/規制条例	43	43
兵庫県		41	3
奈良県	人権条例	39	20
和歌山県	人権条例	30	10
鳥取県	人権条例	19	19
島根県		21	0
岡山県		27	1
広島県		23	4
山口県		20	0
徳島県	規制条例	24	24
香川県	規制条例	17	16
愛媛県	人権条例	20	14
高知県	人権条例	34	9
福岡県	規制条例	66	50
佐賀県	人権条例	20	18
長崎県		23	0
熊本県	規制条例	47	33
大分県	人権条例	18	17
宮崎県		30	0
鹿児島県		45	3
沖縄県		41	0
合計	17条例	1804	410

(注)

・都道府県と市区町村の条例の合計427条例

部落の歴史と部落解放運動の歩み

<中世の被差別民>

被差別部落の歴史的源流は、文献上1000年頃から散見される。このころ、「河原者」、「屠者」、「穢多」、「清目」等と呼ばれ、河原などに住み、死牛馬の処理、皮革の製造、神社仏閣等の清掃、造園、芸能等に携わっていた。これらの人びとは、「賤民」として、周りの人びとから被賤視されていたが、特別の能力を持つ存在として畏敬の対象でもあった。また、その身分は、固定されたものでなく流動的であった。これらの人びとが、被賤視されたこと背景には、日本の土着信仰である神道や、日本に伝わってきた仏教（ヒンドゥー教の影響を受けた大乘仏教）の考え方（とりわけ「ケガレ」という観念やと畜業者に対する忌避観念）が少なからぬ影響を与えた。（注1）

【注1】日本は、稲作を基本としているが、水田耕作にとって不可欠な牛馬は輸入した貴重な役畜であった。このため600年代以降、時の政権は牛馬のと畜、食肉を禁止した。

<近世の皮多>

15世紀後半から、日本は、「戦国時代」に突入する。戦国大名は、鎧甲等重要な武具の材料である皮革を安定的に確保するために、城下に皮革職人を集め住ませた。これらの人びとは「皮多」と呼ばれることが多かった。「皮多」の人びとは死牛馬の処理をし、皮革を製造し戦国大名に上納した。

1600年頃から、日本の封建制は後期封建制の時代に移行（徳川幕藩体制）し、中央集権的な様相を強め、身分制度を強固なものとした。こうして中世の「河原者」などの被差別身分の人びとや、「かわた」などの皮革職人たちの居住区が、被差別部落として制度的に固定され、一般に皮多村と称された。「皮多」と呼ばれた人びとは、皮革の製造や雪駄と呼ばれる履き物製造などに取り組むとともに、荒れ地を開墾するなど農業などにも力を入れていった。また、役負担としては、徳川幕府や諸大名から皮革の上納とともに牢番、犯罪の取り締まり、刑の執行の際の下級刑吏としての任務が命じられた。

徳川幕藩体制のもとで、商品経済が発展していき、次第に身分制にほころびが生じてきた。これに対する反動として、法制面で身分制は強化され、被差別部落地区を竹垣などで囲むこと、服装や髪型などにも規制が加えられた。

死牛馬の処理、皮革の製造を命じられたり、それらを中心的に担ってきた「皮多」と呼ばれた人びとは、徳川幕藩体制下では、「穢多」と呼ばれることが多くなってきた。以前は、被賤視されるだけでなく畏敬の面でも見られていたが、この時代になると被賤視の面に加えて不浄視の面が強まった。また、死牛馬の処理や皮革の製造以外の芸能に従事していた人びと、さらには何らかの理由で農村を離れ都市に流入してきた人びとは、「非人」等の身分に位置づけられた。

徳川幕藩体制下では、身分、職業、居住地は三位一体であり、身分を超えた結婚や身分間の移動は原則として禁止されていた。但し、「非人」は、「穢多」身分よりは、地域によっては下位に位置づけられていたが、一定の条件を満たせば町人や百姓等もとの身分に戻る事ができた。

徳川幕藩体制も末期の1800年代にはいると、身分制の引き締めに対する被差別部落の人びとの抵抗運動（1856年の「渋染め一揆」など）が見られるようになってくる。また、徳川幕藩体制を打倒する討幕運動が活発になり、内戦状況が生じてくるが、その中で、被差別部落の人びとは、身分解放と引き替えに様々な活躍（1863年、長州藩の「維新団」や「一新

組」など) をするようになる。

<明治維新と部落>

1867年 明治維新が行われ、徳川幕藩体制が倒れ日本は近代社会への参入を開始した。1871年、徳川幕藩体制下にあった賤称が廃止され、身分職業とも平民と同様であることを謳った公布が布告(「賤称廃止令」)された。しかしながら、およそ260年に及ぶ幕藩体制下で定着させられてきた差別意識を払拭するための教育・啓発は実施されなかったし、被差別部落の人びとが、伝統的な職業以外の職業に進出していくための方策も講じられなかった。他方で、伝統的な部落産業であった皮革産業や、新たな産業として登場してきた食肉産業に大資本が参入してきた結果、被差別部落の人びとの貧困化は急激に進行した。この結果、被差別部落の人びとの多くは、農村部では、ごくわずかの農地しか持たない小作として、都市部では、日雇い労働で生計を維持する停滞の失業者として生活することを余儀なくされた。

その一方で、明治政府は、天皇を頂点とする貴族制度を創設した。新しく創設された身分制度のもとで、被差別部落の人びとは、社会的に、当初は、「元穢多」、「新平民」、やがて、「特種(特殊)部落民」と呼ばれ、就職や結婚、日常生活上の交際等において差別されることとなった。

<全国水平社の創立と闘い>

国内的には「大正デモクラシー」と呼ばれる民主主義の確立を求める運動、国際的にはロシア革命や国際連盟下で高まった民族自決を求める運動の高まりに影響されて、1922年3月3日全国水平社が創立された。この全国水平社創立大会で採択された「水平社宣言」は、日本における最初の「人権宣言」と高く評価されているが、「人間はいたわるべきものではなく、尊敬すべきもの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全ての人びとが光り輝く存在として解放されることをめざしたものである。

全国水平社は、当時日常的に公然と存在していた差別の不当性を指摘する闘い＝「糾弾闘争」を果敢に展開した。これは、軍隊内や裁判における差別にまで及んだ。全国水平社の運動に押されて時の政府は部落を改善するための予算を計上し、住宅の改善や道路の拡幅等一定の改善事業を実施した。しかし、それは全国水平社の運動のない部落に事業を実施する等全国水平社の盛り上がりを牽制する目的を持って行われた。

政府は、部落差別に基づく差別行為を法的に禁止しない一方で、全国水平社の差別に対する抗議行動としての糾弾闘争を犯罪視し弾圧した。

政府は、1935年を起点とする「部落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10ヵ年計画」を策定し実施し始めたが、日中戦争から太平洋戦争へのめり込む中で立ち消えとなった。戦時体制下で、全国水平社への弾圧は厳しく、最後まで抵抗したものの、ついには戦争に協力することを強いられることとなった。痛恨の歴史である。

<敗戦と運動の再建>

1945年8月、日本は、周辺諸国に多大な被害を与え、自らも原爆の投下に象徴される被害をこうむり敗戦した。この戦争を深く反省することの中から、1946年11月、戦争放棄、主権在民、基本的人権の尊重を原理とする日本国憲法が制定された。この憲法の第14条では、「人種、信条、性別、社会的身分または門地に基づく差別」が否定され、第24条では、「婚姻は、両性の合意のみに基づいて成立」することが明記された。これらの条文は、1946年2月に再建された部落解放全国委員会のリーダーたち、特に松本治一郎委員長(初代参議院副議長、1887年～1966年)の働きかけもあって盛り込まれたものであった。

憲法には、部落差別を一般的に否定する条項が盛り込まれたが、これを具体化するための法制度の整備はなされなかった。このため、部落差別は撤廃されなかった。そのみならず、敗

戦後の混乱の中で、多くの被差別部落民の生活は困窮を極めた。

1951年10月、京都の被差別部落を舞台にした差別小説が掲載されるという事件が発生した。(オール・ロマンス糾弾闘争)この差別事件を糾弾する過程で、被差別部落の劣悪な住環境と、被差別部落民のおかれている無権利な生活実態が明らかにされていった。この小説が、京都市の臨時職員によって書かれたこともあって、京都市の責任が鋭く問われることとなった。この事件に対する糾弾闘争の中から、①差別事件が生じてくる背景には部落と部落民が置かれている劣悪な実態があること、②この実態の改善なくしては部落差別の撤廃はおぼつかないこと、③そしてその実態を放置し続けてきた責務は差別行政にあることが明らかにされた。この事件を反省することの中から、一般施策では部落差別の実態の改善ができないため、京都市は部落の実態に見合った特別の施策を本格的に開始することとなった。この施策の中には、部落の住環境の改善、地域のセンターの設置、義務教育未就学者の根絶等が含まれていた。(尚、この部落には在日韓国・朝鮮人も居住していて、被差別部落民と同じように劣悪な状況下におかれていた。また、差別小説にも在日韓国・朝鮮人が差別的に描写されていた)

<部落解放同盟への改称と行政闘争>

京都におけるこの戦いの経験が、全国に広まっていった。その中で、いくつかの自治体で、部落問題を解決していくための審議会が設置されるとともに、総合調整・企画立案を担当するセクションが設けられた(同和対策部・課、同和教育課など)。やがて、地方自治体の取り組みだけでは、財政面や制度面などで限界が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きた。

一方、部落と部落民がおかれている劣悪な状況を改善する戦いに部落解放運動が取り組むことによって運動に参加する部落大衆が増加し、1955年8月、部落解放全国委員会は部落解放同盟と名称を変更した。

1958年1月、部落解放同盟はもとより、労働組合や地方自治体の代表者等が東京に集まり、部落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国の取り組みを求める運動が本格的に開始されることとなった。(国策樹立請願運動の開始)1960年8月、国として部落問題解決に取り組むために専門家の意見を聞く機関として内閣同和対策審議会を設置するための法律が制定された。その後、国策樹立を求めた九州から東京までの全国大行進に代表される闘いが展開された。

<「同対策」答申と「特別措置法」に基づく施策の実施>

1965年8月、内閣同和対策審議会は時の内閣総理大臣に対して答申を提出した。この中で、部落問題が日本社会におけるもっとも深刻な社会問題であることが指摘されるとともに、「この問題の早急な解決の責務は国にあり、同時に国民的課題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された。そして「答申」は、部落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①住環境面の改善、②社会福祉の増進、③教育の向上、④産業・職業の安定、⑤人権の擁護(差別に対する規制・救済を含む)等の総合的な取り組みと、これを裏付ける法制度の整備の必要性を指摘した。

1969年7月、同和対策事業特別措置法が制定された。この法律の特徴は、同和対策事業を実施するに当たって、国が地方自治体に対して特別の財政的な支援をすることを定めたものであった。この法律は、被差別部落の住環境面の改善には役立つものではあったが、差別意識を撤廃するための教育・啓発については位置付けが弱く、差別事件を禁止するとともに差別の被害者の効果的救済に関する条文は盛り込まれていなかった。1974年4月には、総理府の中に、総合調整・企画立案機能を持った同和対策室が設置された。(後に総務庁内の地域改善対策室に改組)

2002年3月末まで、名称や内容の変更を伴いながら一連の「特別措置法」に基づき、部落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施策が実施された。この結果、①被差別部落の道路、住宅などの住環境面の改善は前進した。②また、地域のセンターや保育所(大規模部落では、青少年会館、老人センターなども)が整備されていった。③高校進学率も「答申」が出されたころは、全国平

均の半分（75パーセントに対して40パーセント程度）程度であったものが、4ないし5ポイントの差（95パーセントに対して90パーセント）まで接近した。

2002年3月末で、33年間続いてきた「特別措置法」に基づく特別施策による部落問題解決の方式は終了した。しかしながら、このことは、部落問題が解決したことを意味するものではない。

<96年5月「地対協」意見具申による提案>

1996年5月、国の諮問機関である地域改善対策協議会から、今後の同和問題解決に向けた基本方策に関する意見具申が出された。この中では、同和問題に関する基本認識として、①同和問題はこれまでの取り組みによって解決に向けて進んでいるものの依然として日本における重大な社会問題であること、②同和問題をはじめ日本に存在する人権問題の解決は国際的責務となってきたこと、③同和問題の解決の責務は国にあり、同時に国民的課題であるとした1965年の同和対策審議会答申の基本精神は、引き続き踏まえる必要があること、④同和問題を人権問題という本質から捉え、解決に向けて努力する必要があること、⑤同和問題解決にむけた今後の取り組みを人権にかかわるあらゆる問題の解決につなげていく必要があること、が指摘された。

さらに、同和問題の現状として、①住環境面の改善はおおむね解決されてきた、②被差別部落民のおかれている教育、産業・労働面の実態はなお格差が存在していること、③差別意識は解消へ向けて進んでいるものの結婚問題を中心に根深く存在していること、④差別事件はなお継続しており、それに対する現行の救済制度等には不十分な点があること、⑤（実態に見合った施策にするなど）適正化対策が不十分であること、が指摘された。その上で、同和問題の解決に向けて今後求められる基本法策として、①教育、産業・労働面等でなお残されている格差の是正に取り組むこと、②差別意識を撤廃するために教育・啓発を推進すること、③差別事件を根絶するために人権侵害救済等に取り組むこと、④施策の適正化に取り組むこと、の4点が提起された。

<部落解放基本法の制定を求めた運動の展開>

一方、部落解放同盟を中心とする部落問題の根本的な解決を求めた人々は、「特別措置法」に基づく取り組みでは限界があるため、1985年5月、部落解放基本法案を発表しその実現を求めた取り組みを開始した。この基本法案の内容は、①部落問題解決の重要性を明らかにした「宣言法的部分」、②部落と部落民がおかれている劣悪な実態を改善するための「事業法的部分」、③悪質な差別を禁止するとともに被害者の救済を定めた「規制・救済法的部分」、④差別意識を撤廃していくための「教育・啓発法的部分」、⑤国と自治体に部落問題を解決していくためのセクションを設置するとともに専門家の参画を得た審議会を設置することを定めた「組織法的部分」、の5つの構成部分から構成されている。この基本法案は、先に紹介した内閣同和対策審議会答申と国連の採択した人種差別撤廃条約の考え方を踏まえたものである。

<「人権教育・啓発推進法」の制定>

1996年12月、人権擁護施策推進法が制定された。（5年間の時限立法）この法律では、①部落差別をはじめあらゆる差別を撤廃し人権侵害を撤廃するためには、人権教育・啓発の推進と人権侵害の救済が必要であること、②人権教育・啓発の推進と人権侵害の救済が国の責務であることが明確にされるとともに、③これらのより効果的な推進方策を検討するために人権擁護推進審議会が設置することが盛りこまれた。

1997年5月、人権擁護推進審議会が設置され99年7月、人権教育・啓発のあり方についての答申が出された。この答申では、人権教育・啓発の推進に際して国が行・財政的な措置をすることの必要性は盛りこんだものの、法的措置の必要性まで踏み込んだものではなかった。

しかしながら、本格的に人権教育・啓発を推進していくためには、法的根拠を明確にする必要があるとの世論が、部落解放基本法の制定を求め人々を中心とした取り組みによって盛り上がり、2000年12月、「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が公布・施行された。この法律は、①部落差別をはじめあらゆる差別と人権侵害の撤廃を目的に、②あらゆる分野で人権教育・啓発の推進を求め、③国、自治体、国民の責務を定め、④基本計画の策定と年次報告の提出を求め、⑤国の自治体への財政的支援を盛りこんでいる。この法律は、部落解放基本法案に盛りこまれた「教育・啓発法的部分」が、人権という広がりをもって実現したものである。

<「人権侵害救済法」の制定を求めた闘い>

人権擁護推進審議会から、2001年5月に人権侵害救済制度のあり方に関する答申、同年11月には人権擁護委員制度のあり方についての追加答申が出された。これらの答申の中で、日本においても人権委員会を設置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こと、現行の人権擁護委員制度の改革が必要であることが指摘された。

2002年3月 人権擁護法案が、閣議決定され通常国会へ上程された。この法案には、新たに人権委員会を設置することが盛りこまれた。しかしながら、この人権委員会が、①法務省の影響下におかれたもので独立性がないこと、②中央レベルの人権委員会だけで実効性に問題があること、③マスメディアも一定の強制力を持った調査の対象に盛りこまれたことによって、メディアの取材や報道の自由を脅かす危険性があること、等の問題があり、抜本修正が各方面から求められた。

この人権擁護法案は、1993年に国連総会で採択された国内人権機関の設置に関する原則（パリ原則）にもとるものでもあった。部落解放基本法の制定を求めた人びと、日本弁護士連合会、マスコミ関係者、地方自治体関係者等によって、人権擁護法案の抜本修正を求めた粘り強い働きかけが展開されたが、2003年10月、衆議院が解散され総選挙が行われることとなったためこの法案は廃案となった。

今後、人権擁護推進審議会からの答申、パリ原則、さらには人権擁護法案の抜本修正に向けたこれまでの議論の積み上げ等を踏まえ、真に差別撤廃と人権侵害の救済に役立つ法律の早期制定が求められている。なお、この取り組みは、部落解放基本法案に盛りこまれた「規制・救済法的部分」の実現に関わった課題である。

<一般施策（改変、創設含む）を活用した部落の実態の改善>

被差別部落の人びとの教育や産業・職業面で残された格差は、今後一般施策を活用して是正されていく必要があるが、このためには、①これまで「特別施策」として実施されてきたものを一般施策へと移行すること、②既存の一般施策を改善し、部落差別の実態を改善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③新たな一般施策を創造すること等が求められている。この内、①については、2002年4月以降、高等学校へ行くための奨学資金制度に関して、従来「特別施策」と実施されていたものが、一般施策へと移行して継続されることとなった。

<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運動の展開>

部落差別が、優れて地域に対する差別であるという特徴（注2）を考えたとき、被差別部落に住む人々とその周辺地区に住む人々との連帯を構築していくことは、極めて重要な意義を持っている。

注2 2000年11月、大阪府によって同和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実態調査が実施された。その中で、大阪府民に、「世間では、どのようなことで『同和地区出身者』と判断していると思いますか」を訊ねたところ、「本人が現在、同和地区に住んでいる」（56.5%）が最も多く、「本人の本籍地が同和地区にある」（47.9%）、「本人の出生地が同和地区である」（44.3%）、「父母あるいは祖父母が同和地区に住んでいる」（39.2%）、「父母あるいは祖

父母の本籍地が同和地区である」(37.3%)と続いている。ちなみに、「職業によって判断している」は22.1%にとどまっている。(回答は複数回答)このことから、今日、部落差別は、優れて地域に対する差部となってきたことが分かる。

このことの重要性は、「ねたみ差別」の克服が重要な課題となってきたことから指摘できる。これまで、部落と部落民がおかれている劣悪な実態が、部落差別の原因と考えられてきた。しかしながら、「特別措置法」を活用した取り組みによって部落差別の実態が一定改善されてきても、差別がなくなるどころか「なぜ部落ばかり良くなるのだ。われわれの方が逆に差別されているではないか」という「ねたみ差別」(「逆差別」)意識が生じてきたのである。このことは、部落は、劣悪な状況にあればあれで差別され、良くなれば良くなったで差別されるという部落の人々と部落外の人々がおかれている関係性の中に部落差別の原因が存在していることを教えている。このことをふまえて、「ねたみ差別」が生じてきた原因を分析すれば、一つの原因は、なぜ「特別の施策」を実施してきたかについての教育・啓発が決定的に弱かったことにある。もう一つの原因は、部落の周りに、部落とさほど変わらない困難な状況におかれている人々が存在していたことによる。このことをふまえるならば、「ねたみ差別」を克服するためには、教育・啓発を強化するとともに、部落が良くなるとともに部落とさほど変わらない状況に置かれている周辺地区の人々の状況も改善するための取り組み＝「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が必要であることが分かる。

こうした観点から、近年、部落解放運動は、「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運動」を展開してきている。これは、被差別部落を含む小学校区域、若しくは中学校区域全体を人権が尊重されたまちに作り替えていくための運動である。このためには、被差別部落の人々だけでなく周辺地域の代表も参加した「まちづくり委員会」が組織され、当該地区の住環境面の改善のみでなく、生活、教育、産業・職業の安定に向けた総合的な計画が策定されてきている。

<部落差別撤廃・人権条例の制定と具体化>

2000年4月、地方分権一括推進法が施行された。このことによって、日本の国と自治体の関係は質的な転換をし始めている。明治維新以降2000年4月までの日本は、中央集権上意下達型社会であった。つまり、大多数のことがらが国が決定し、地方自治体は、これに従っていたのである。しかしながら、この法律が施行されたことによって、国と自治体の関係は法的には対等の関係となり、これまで国が行っていたいくつかの事業は自治体にゆだねられることとなってきた。つまり、分権型社会への転換である。もっとも、税財政面の分権化が今後の課題として残されているが……。

このため、部落解放運動は、自治体に対する働きかけを強め、2009年6月時点で、420を超す自治体で、部落差別撤廃・人権条例、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が制定されてきている。この条例を活用し、いくつかの自治体では、実態調査の実施、審議会の設置、審議会からの答申、基本方針や基本計画の策定が行われてきている。また、人権室や人権教育課など人権行政や人権教育を推進していくためのセクションが自治体内に設置され、それらの重要な柱に部落問題の解決が位置付けられてきている。

<実態を明らかにし、総合的な計画策定が必要>

一方、政府は、2003年4月以降、それまで総務庁の中にあつた地域改善対策室を廃止してしまった。しかしながら、部落差別の実態、自治体の取り組み等を踏まえたとき、政府としても、①今日の部落差別の実態を明らかにするための調査を行うこと(1993年11月以降、政府は実態調査を実施していない)、②内閣府の中に部落問題が解決するまで総合的な施策を実施していくために総合調整・企画立案機能を持ったセクションを設置すること、③部落問題の根本的な解決に向けた基本方針と基本計画を策定すること、④自治体レベルの部落問題解決に向けた取り組みを支援すること、⑤特に、「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を支援すること、

⑥以上のことを効果的に推進していくための法整備を行う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

〈国連の人権活動との連携〉

1970年代の後半に入り、部落解放運動は、国連の人権活動との連携を本格化させ、国際人権規約の批准運動に取り組み1979年6月に批准を実現した。その後、人種差別撤廃条約の批准運動にも取り組み1995年12月に加入を実現した。その後、これらの条約を活用し部落問題をはじめとして、日本に存在する差別問題、人権問題の解決に向けた取り組みを強めてきている。

1988年1月、全世界から一切の差別を撤廃することをめざして反差別国際運動（IMADR）が結成されたが、その際、部落解放同盟とともに部落解放研究所（当時）が大きな役割を果たした。

反差別国際運動を始めとする国際人権NGOの活動によって、今日、日本の部落差別は、インドをはじめ南アジア各国に存在しているダリットに対する差別、さらにはアフリカにも存在する同様の差別とともに「世系（descent）に基づく差別」あるいは「職業と世系に基づく差別」として把握され、これらの差別が国際人権法によって禁止される差別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されてきている。

こうして、21世紀に入った今日、部落問題の解決は、全国的な課題であるのみならず、国際的な課題としても注目さ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

※ 本稿は、国連「職業と世系に基づく差別」に関する特別報告者が実施したアンケートによる調査において、NGOとして反差別国際運動日本委員会（IMADR-JC）、部落解放同盟中央本部、部落解放・人権研究所が共同で行った回答（2006年1月提出）の一部を抜粋し、さらに編集者の方で見出しを入れてデータを新しくしたものである。

【用語解説】

1. 差別を受けている地区・・・被差別部落（行政用語では同和地区）
2. 差別を受けている人・・・被差別部落民（行政用語では同和関係者）、被差別部落出身者（被差別部落を出て他の地域で暮らしている人びとのこと、行政用語では同和地区出身者）
3. 被差別部落の箇所数等、
 - 3-1 1993年総務省地域改善対策室による同和地区実態把握等調査結果による
同和地区数・・・4,442地区
同和関係者数（もともとの居住者数）・・・892,751人
同和地区居住者（来住者数を含む）・・・2,158,789人
 - 3-2 部落解放運動関係者、部落問題の研究者の主張
被差別部落数・・・6000カ所
被差別部落民及び被差別部落出身者数・・・300万人

【注】1993年の政府の実態調査結果は、地域改善対策特別措置法を適応していた対象地域に限定したもので、諸般の事情でこの法律が適応されていない被差別部落は少なくない。ちなみに、1975年11月に発覚した「部落地名総鑑」には、およそ5300カ所の被差別部落が掲載されていた。

(資料③)

せん げん
宣 言

せい こく さん さい わ とく しゅ ぶ らく じん だん けつ
全國に散在する吾が特殊部落民よ團結せよ。

長い間虐められて来た兄弟よ、過去半世紀間に種々なる方法と、多くの人々によつてなされた吾等の爲めの運動が、何等の有難い効果を齎らさなかつた事實は、夫等のすべてが吾々によつて、又他の人々によつて毎に人間を冒瀆されてみた罰であつたのだ。そしてこれ等の人間を勤めるかの如き運動は、かへつて多くの兄弟を墮落させた事を想へば、此際吾等の中より人間を尊敬する事によつて自ら解放せんとする者の集團運動を起せるは、寧ろ必然である。

兄弟よ、吾々の祖先は自由、平等の渴仰者であり、實行者であつた。陋劣なる階級政策の犠牲者であり男らしき産業的殉教者であつたのだ。ケモノの皮剥ぐ報酬として、生々しき人間の皮を剥取られ、ケモノの心臓を裂く代價として、暖い人間の心臓を引裂かれ、そこへ下らない嘲笑の唾まで吐きかけられた呪はれの夜の悪夢のうちにも、なほ誇り得る人間の血は、涸れずにあつた。そうだ、そして吾々は、この血を享けて人間が神にかわらうとする時代にあつたのだ。犠牲者がその烙印を投げ返す時が来たのだ。殉教者が、その荊冠を祝福される時が来たのだ。

吾々がエタである事を誇り得る時が来たのだ。

吾々は、かならず卑屈なる言葉と怯懦なる行爲によつて、祖先を辱しめ、人間を冒瀆してはならぬ。そうして人の世の冷たさが、何んなに冷たいか、人間を勤はる事が何んであるかをよく知つてゐる吾々は、心から人生の熱と光を願求禮讃するものである。

水平社は、かくして生れた。

人の世に熱あれ、人間に光あれ。

たい じゅう じゅう いち たい さん がつ
大正十一年三月

すい へい しゃ
水平社

(資料④)

宮内省地名総覧監事(件)一覽表

(1989年7月28日法務省人権擁護局発表資料をもとに作成)

番号	1	2	3	4	5	6	7	8
発覚時期	75. 11. 19	76. 2. 4	75. 12. 16	76. 1. 19	76. 3. 12	76. 7. 29	76. 7. 23	78. 5. 12
図書名	人事権秘・ 部落地名総覧	全国特殊部落一覽	全国特殊部落リスト	大阪府下同和地区現況	日本の部落	特別調査報告書	(特) 分布地名	同和地区地名総覧・全国版
発行所	企業人材リサーチ協会・企業防衛懇話会	労政問題研究所	労働問題研究所	労働問題研究所	労政経済研究会	フリサーチ・センター	H探偵社	——
発行者	A (78. 3. 22 死亡) 仮名 権 征一・ 京極 公大	B 仮名 北沢 隆	C 仮名 長岡 和夫 D (75. 7. 7死亡)	C 仮名 長岡 和夫	販売者 E 仮名 木村 利男	販売者 G	I	J、K、L
体裁	赤表紙タイプライ印刷	手書きをコピー	手書きをコピー	印刷物のコピー	草表紙 タイプライ印刷	手書きをコピー	クリーム色表紙タイ 印刷及びコピーの2種類	白表紙タイプライ印刷及び タイ打ちのコピーの2種類
作成部数	500	11	54	35	不明	1	135	204 200-J、3-K 1-L
販売時期	75. 4~75. 11	75. 2~75. 5	70秋~71秋 (1次分) 75. 1~75. 6 (2次分)	72. 12 ~73. 3 (1次分) 75. 4~75. 6 (2次分)	69~72	74春	76. 2~76. 11	75~80ころ
販売価格	3万円、3万5千円 4万円、4万5千円	2万5千円	2万円 (1次分) 3万円 (2次分)	3万円 (1次分) 2万円 (2次分)	5千円 1万円	1万円	1万5千円 2万円	3万円 3万5千円
購入者	53	11	54 13 (1次分) 41 (2次分)	34 3 (1次分) 31 (2次分)	51	1	14	5
回収冊数	447	10	42 7 (1次分) 35 (2次分) うち、コピー1	23 3 (1次分) 20 (2次分)	16 うち、コピー1	1	112	12
発行者等に 対する処理	Aは、79. 5. 25打ち り	Bは、89. 7. 15勸 告	Cは、89. 7. 21勸告	Cは、89. 7. 21勸告	Eは、89. 7. 17中 止	Gは、79. 12. 26 勸告	Iは、89. 7. 17勸告	Jは、89. 7. 18 勸告 Kは、89. 7. 17 勸告 Lは、89. 7. 18 勸告

注1 番号8の事件の発行者欄について、Jは白表紙タイプライ印刷した図書の発行者、Kはタイ打ちのコピーした図書の発行者、LはJの発行した図書をコピーした図書の発行者を指す。

注2 購入者欄について
(1) 購入者数は、延べ223社 (A)
(2) 同一図書を2冊購入し、又は購入後コピーした購入者の重複数を差し引くと215社 (A)
(3) 数種の図書の購入社の重複数を差し引くと206社 (A)

注3 回収冊数欄について
(1) うち、コピー数とは、購入者が作成 (コピー) したものをいう。
(2) 回収冊数は、663冊であり、うち、コピーを差し引くと660、又は661となる。
番号8の事件については、発行者・販売者及び購入者のほかに、次のとおり関係者がいる。

注4 あ・・・原資料の作成者 (89. 7. 20勸告)
い・・・原資料の転売者 (89. 7. 23打ちり)
え・・・タイ打ちのコピーの転売の仲介者 (89. 7. 13中止)
お・・・タイ打ちのコピーの転売の仲介者 (89. 7. 17指示)
この一覽表には、1978年11月11日、部落解放センターに送られてきた、いわゆる「投票のリスト」を始めその後発見してきた「地名総覧」は含まれていない。
注5 この一覽表には、2005年12月以降回収された「地名総覧」は含まれていない。

資料⑤

○大阪府部落差別事象に係る調査等の規制等に関する条例

昭和六十年三月二十七日

大阪府条例第二号

大阪府部落差別事象に係る調査等の規制等に関する条例をここに公布する。

大阪府部落差別事象に係る調査等の規制等に関する条例

(目的)

第一条 この条例は、同和地区に居住していること又は居住していたことを理由になされる結婚差別、就職差別等の差別事象(以下「部落差別事象」という。)を引き起こすおそれのある調査、報告等の行為の規制等に関し必要な事項を定めることにより、部落差別事象の発生を防止し、もって府民の基本的人権の擁護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定義)

第二条 この条例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用語の意義は、当該各号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 一 同和地区 歴史的社会的理由により生活環境等の安定向上が阻害されている地域をいう。
- 二 興信所・探偵社業 府の区域内において、他人の依頼を受けて、個人調査、法人調査その他いかなる名目の調査であるかを問わず、特定の個人についてその信用、資産、経歴、素行その他の個人に関する事項を調査し、かつ、報告する営業をいう。
- 三 興信所・探偵社業者 興信所・探偵社業を営む者をいう。

(府、興信所・探偵社業者及び府民の責務)

第三条 府は、国及び市町村と協力して、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必要な啓発に努めるものとする。

2 興信所・探偵社業者は、その営業について、社会的責任を自覚し、の目的に反する行為をしない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3 府民は、の目的に反する調査又は調査の依頼をしない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適用上の注意)

第四条 この条例の適用に当たっては、興信所・探偵社業者及び府民の自由と権利を不当に侵害するようなことがあつてはならない。

(自主規制)

第五条 興信所・探偵社業者の組織する団体は、その構成員である興信所・探偵社業者に次に掲げる事項を遵守させるため必要な規約を設定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特定の個人又はその親族の現在又は過去の居住地が、同和地区にあるかないかについて調査し、又は報告しないこと。

二 同和地区の所在地の一覧表等の提供及び特定の場所又は地域が同和地区にあることの教示をしないこと。

2 興信所・探偵社業者の組織する団体は、その構成員である興信所・探偵社業者に前項の規約を遵守させるため必要な指導を行う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3 興信所・探偵社業者の組織する団体は、第一項の規約を設定したときは、速やかに、当該規約の内容その他の規則で定める事項を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届出に係る事項を変更し、又はその届出に係る規約を廃止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届出)

第六条 興信所・探偵社業を営もうとする者は、あらかじめ、次に掲げる事項を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法人にあつては、その代表者の氏名

二 営業所の名称及び所在地

2 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興信所・探偵社業者は、同項各号に掲げる事項に変更を生じたとき、又はその営業を廃止したときは、その日から十日以内に、その旨を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遵守事項)

第七条 興信所・探偵社業者は、その営業に関し、各号に掲げる事項を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興信所・探偵社業者は、その営業に関し従業者に各号に掲げる事項を遵守させるため必要な指導及び監督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帳簿等の備付け)

第八条 興信所・探偵社業者は、規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営業所ごとに、その営業に関する帳簿及び従業者名簿を備え、規則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指示、営業停止及び聴聞の特例)

第九条 知事は、興信所・探偵社業者が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は、当該興信所・探偵社業者に対し必要な指示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知事は、興信所・探偵社業者が前項の指示に従わないときは、当該興信所・探偵社業者に対し、一月を超えない範囲内で期間を定めて、その営業の全部又は一部の停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3 知事は、前項の規定による処分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の規定による意見陳述のための手続の区分にかかわらず、聴聞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七条例三・改正)

(指導及び助言)

第十条 知事は、興信所・探偵社業者の組織する団体に対し規約の設定について、興信所・探偵社業者に対し指導及び監督について必要な指導及び助言をすることができる。

(報告の徴収等)

第十一条 知事は、の規定の実施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興信所・探偵社業者に対しその営業に関し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求め、又はその職員に、興信所・探偵社業者の営業所に立ち入り、帳簿及び書類(これらの作成又は備付けに代えて電磁的記録(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の他人の知覚によっ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録であっ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をいう。)の作成又は備付けがされ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電磁的記録を含む。)の検査をさせ、若しくは関係者に質問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立入検査をする職員は、その身分を示す証明書を携帯し、関係者に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七条例四・一部改正)

(規則への委任)

第十二条 この条例の施行に関し必要な事項は、規則で定める。

(罰則)

第十三条 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者は、三月以下の懲役又は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平四条例三・一部改正)

第十四条 の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せず、若しくはの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について虚偽の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し、又はの規定による検査若しくは質問を正当な理由なく拒み、

妨げ、若しくは忌避した者は、三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平四条例三・一部改正)

第十五条 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者は、科料に処する。

一 の規定に違反してあらかじめ届出をせず、又はの規定に違反して変更若しくは廃止の日から十日以内に届出をしなかつた者

二 の規定に違反した者

(両罰規定)

第十六条 法人の代表者又は法人若しくは人の代理人、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が、その法人又は人の業務に関して前三条の違反行為をしたときは、行為者を罰するほか、その法人又は人に対しても、各本条の罰金刑又は科料刑を科する。

附 則

(施行期日)

1 この条例は、昭和六十年十月一日から施行する。

(経過措置)

2 この条例の施行の際現に興信所・探偵社業を営んでいる者に関する第六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あらかじめ」とあるのは、「昭和六十年十一月三十日までに」とする。

附 則(平成四年条例第三号)

この条例は、平成四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 則(平成七年条例第三号)抄

(施行期日)

1 この条例は、平成七年十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 則(平成一七年条例第四号)抄

(施行期日)

1 この条例は、平成十七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平成5年9月17日

(目的)

第1条 この条例は、すべての国民に基本的人権の享有を保障し、法の下での平等を定める日本国憲法の理念及び同和対策審議会答申の精神にのっとり、市民の責務、市の施策等その他部落差別撤廃・人権擁護に関し必要な事項を定めることにより、部落差別撤廃・人権擁護を図り、もって平和な明るい地域社会の実現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市民の責務)

第2条 市民は、部落差別及び人権侵害に関す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2 市民は、相互に基本的人権を尊重し、国及び地方公共団体が実施する部落差別撤廃・人権擁護に関する施策に協力す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市の施策等)

第3条 市は、部落差別の撤廃のために必要な環境改善対策に関する事業を迅速かつ計画的に実現させるとともに、就労対策、産業の振興、教育対策、啓発活動及び人権擁護に関する施策を積極的に推進す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住民の自主性を尊重し、自立向上の意欲を助長するよう配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市の施策等の推進)

第4条 市は、前条の諸施策を推進するため、総合的な計画を策定する。

(実態調査等)

第5条 市は、この条例の施行時点において、地域改善対策特定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昭和62年法律第22号）の適用を受ける地域とされている地域の実態等について継続的に把握するため、5年ごとを目途に必要な調査を行うこととし、その結果を市の施策の策定及び推進に反映させる。

(行政組織の整備)

第6条 市は、部落差別撤廃・人権擁護に関する施策を推進するため、行政組織の整備に努める。

(審議会)

第7条 市は、部落差別撤廃・人権擁護に必要な施策の策定及び推進に関する重要事項を調査審議するため、部落差別撤廃・人権擁護に関する審議会をおく。

2 審議会の組織及び運営については、別に規則で定める。

附則

この条例は、平成5年9月1日から施行する。

資料⑦ 泉佐野市における部落差別撤廃とあらゆる差別をなくすことをめざす条例

平成5年9月28日

泉佐野市条例第28号

市及び市民は、国際的な人権尊重の潮流を踏まえ、「すべての国民が基本的人権を享有し、法の下での平等」を保障している日本国憲法及び「すべての人間は、生まれながらにして自由であり、かつ、尊厳と権利とについて平等である。」とした世界人権宣言を基本理念とし、部落差別をはじめ、在日外国人、障害者、女性等への差別など、あらゆる差別をなくし、人権意識の高揚を図り、差別をしない差別を許さない世論の形成や人権尊重の社会的環境の醸成に努めるため、この条例を制定する。

(目的)

第1条 この条例は、重大な社会悪である部落差別をはじめ、あらゆる差別により今なお人間の尊厳が侵されていることに鑑み、根本的かつ速やかにあらゆる差別をなくし、市民一人ひとりの参加による人権擁護都市の建設をめざし、もって差別のない明るい国際都市・泉佐野市の実現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市の責務)

第2条 市は、前条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必要な施策を積極的に推進するとともに、行政のすべての分野で市民の人権意識の高揚に努めるものとする。

(市民の責務)

第3条 すべての市民は、相互に基本的人権を尊重し、部落差別をはじめ、あらゆる差別をなくすための施策に協力するとともに、自らも差別及び差別を助長する行為をしない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

(施策の総合的かつ計画的推進)

第4条 市は、部落差別をはじめ、あらゆる差別をなくすため、生活環境の改善、社会福祉の充実、産業の振興、職業の安定、教育文化の向上及び人権擁護等の施策を、総合的かつ計画的に推進す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

(実態調査等の実施)

第5条 市は、前条の施策の策定及び推進に反映させるため、必要に応じ、実態調査等を行うものとする。

(啓発活動の充実)

第6条 市は、市民の人権意識の高揚を図るため、啓発媒体の活用、人権啓発指導者の育成及び人権関係団体等との協力関係の強化など、きめ細かな啓発事業の取組と啓発組織の充実に努め、差別を許さない世論の形成や人権擁護の社会的環境の醸成を促進するものとする。

(推進体制の充実)

第7条 市は、部落差別をはじめ、あらゆる差別をなくす施策を効果的に推進するため、国・府及び人権関係団体等との連携を強め、推進体制の充実に努めるものとする。

第8条 削除

付 則

1 この条例は、平成5年12月1日から施行する。

2 泉佐野市同和对策協議会条例(昭和43年泉佐野市条例第16号)は、廃止する。

附 則(平成12年12月25日泉佐野市条例第34号)抄

(施行期日)

第1条 この条例は、平成13年4月1日から施行する。

附 則(平成13年12月26日泉佐野市条例第22号)

この条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資料⑧

鳥取県人権尊重の社会づくり条例

(前文)

すべての人間は、生まれながらにして自由であり、かつ、尊厳及び権利について平等であり、人間として尊重され、基本的人権の享有が保障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は、人類普遍の原理であり、自由と正義と平和の基礎であり、かつ、法の下での平等及び基本的人権の保障を定めた日本国憲法の本質にかんがうものである。

この理念の下に、お互いの人権が尊重され、誇りをもって生きることができる差別と偏見のない社会が実現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こに、我々鳥取県に暮らすすべての者は、豊かな自然に抱かれ、歴史と文化を育んできたふるさと鳥取の地で、共に力を合わせてこの使命を達成することを決意し、真に人権が尊重される社会とするため、この条例を制定する。

(目的)

第1条 この条例は、人権尊重に関し、県、市町村及び県内に暮らすすべての者の果たすべき責務を明らかにするとともに、その施策の基本となる事項を定めることにより、同和問題、女性の人権に関する問題、障害者の人権に関する問題などの人権に関する問題への取組みを推進し、差別のない真に人権が尊重される社会づくりを図ることを目的とする。

(県の責務)

第2条 県は、前条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人権尊重の社会づくりに関する施策(以下「人権施策」という。)を積極的に推進するとともに、県行政のあらゆる分野で人権に配慮し、人権尊重の社会的環境づくりと人権意識の醸成及び高揚を促進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県は、人権施策を推進するに当たっては、国、市町村及び関係団体と連携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県は、市町村が実施する人権施策について、必要な助言その他の支援を行うものとする。

(市町村の責務)

第3条 市町村は、県が実施する人権施策に協力するとともに、自らの行政分野で人権尊重に配慮し、人権意識の醸成及び高揚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県内に暮らすすべての者の責務)

第4条 県内に暮らすすべての者は、相互に人権を尊重し、自らが人権尊重の社会づくりの担い手であることを認識し、人権意識の向上に努めるとともに、県が実施する人権施策に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基本方針)

第5条 知事は、人権施策の総合的な推進を図るため、人権施策の基本となるべき方針(以下「人権施策基本方針」という。)を定めるものとする。

2 人権施策基本方針は、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ものとする。

一 人権尊重の基本理念

二 人権に関する意識の高揚に関すること。

三 差別実態の解消に向けた施策に関すること。

四 相談支援体制に関すること。

五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人権尊重の社会づくりのための重要な施策に関すること。

六 同和問題、女性の人権に関する問題、障害者の人権に関する問題などの人権に関する問題における分野ごとの施策に関すること。

七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人権施策を推進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

(鳥取県人権尊重の社会づくり協議会)

第6条 人権施策基本方針その他人権施策に県内に暮らすすべての者の意見を反映させるため、地方自治法(昭和22年法律第67号)第138条の4第3項の規定に基づき、鳥取県人権尊重の社会づくり協議会(以下「協議会」という。)を設置する。

2 知事は、人権施策基本方針を定めるに当たっては、あらかじめ、協議会の意見を聴くものとする。

3 協議会は、人権尊重の社会づくりに関する事項に関し、知事に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第7条 協議会は、委員26人以内で組織する。

2 委員は、人権に関し学識経験を有する者のうちから、知事が任命する。

3 委員の任期は、2年とする。ただし、補欠の委員の任期は、前任者の残任期間とする。

4 委員は、再任されることができる。

5 前各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協議会の組織及び運営に関し必要な事項は、規則で定める。

附則

この条例は、平成8年8月1日から施行する。

(資料⑨)

大阪府内自治体における部落差別撤廃・人権条例制定状況

2010年3月31日現在

自治体名	名称	施行年月日	改定年月
大阪府	大阪府人権尊重の社会づくり条例	1998年11月1日	
	大阪府部落差別事象に係る調査等の規制等に関する条例	1985年10月1日	2005年3月29日
大阪府大阪市	大阪市人権尊重の社会づくり条例	2000年4月1日	
大阪府堺市	堺市平和と人権を尊重するまちづくり条例	2007年1月1日	
大阪府岸和田市	岸和田市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2005年12月27日	
大阪府豊中市	人権文化のまちづくりをすすめる条例	1999年4月1日	
大阪府池田市	人権を大切にすまちづくりの推進に関する条例	1997年7月1日	
大阪府吹田市	吹田市人権尊重の社会をめざす条例	2000年4月1日	
大阪府泉大津市	泉大津市人権を尊ぶまちづくり条例	1994年12月21日	
大阪府高槻市	高槻市人権尊重の社会づくり条例	2001年4月1日	
大阪府貝塚市	貝塚市人権擁護に関する条例	1994年12月1日	
大阪府守口市	守口市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2004年4月1日	
大阪府枚方市	枚方市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2004年3月15日	
大阪府茨木市	茨木市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1998年12月24日	
大阪府八尾市	八尾市人権尊重の社会づくり条例	2001年4月1日	
大阪府泉佐野市	泉佐野市における部落差別撤廃とあらゆる差別をなくすことをめざす条例	1993年12月1日	2001年4月1日
大阪府富田林市	富田林市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2001年7月1日	
大阪府寝屋川市	寝屋川市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2008年4月1日	
大阪府河内長野市	河内長野市思いやりとぬくもりのある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2001年3月28日	
大阪府松原市	松原市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2002年1月7日	
大阪府大東市	大東市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2001年9月28日	
大阪府和泉市	和泉市人権擁護に関する条例	1997年8月1日	
大阪府箕面市	箕面市人権のまち条例	2003年4月1日	
大阪府柏原市	柏原市人権条例	2001年4月1日	
大阪府羽曳野市	羽曳野市人権条例	2000年6月23日	
大阪府門真市	門真市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2004年4月1日	
大阪府摂津市	摂津市人間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1997年4月1日	
大阪府高石市	高石市人権擁護に関する条例	1998年8月1日	
大阪府藤井寺市	藤井寺市人権を守るまちづくり条例	2001年4月1日	
大阪府東大阪市	東大阪市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2004年7月1日	
大阪府泉南市	泉南市部落差別などあらゆる差別の撤廃と人権擁護に関する条例	1995年6月1日	
大阪府四條畷市	四條畷市人権文化をはぐくむまちづくり条例	2003年12月11日	
大阪府交野市	交野市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2004年4月1日	
大阪府大阪狭山市	大阪狭山市人権文化をはぐくむまちづくり条例	2001年6月26日	
大阪府阪南市	阪南市人権擁護に関する条例	1994年4月1日	
大阪府島本町	島本町人権擁護に関する基本条例	1985年3月20日	
大阪府豊能町	豊能町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1998年1月1日	
大阪府能勢町	能勢町人権擁護に関する条例	1996年4月1日	
大阪府忠岡町	忠岡町人権擁護に関する条例	1996年1月1日	
大阪府熊取町	人権擁護条例	1995年6月1日	
大阪府田尻町	田尻町人権擁護に関する条例	1995年4月1日	
大阪府岬町	岬町部落差別の撤廃と人権擁護に関する条例	1994年12月1日	
大阪府太子町	太子町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2002年1月1日	
大阪府河南町	河南町人権をまもるまちづくり条例	2001年12月20日	
大阪府千早赤阪村	千早赤阪村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2001年12月11日	

資料⑩ 大阪府内における「男女平等推進」に関する条例の制定および「子どもの権利に関する条例」の制定状況

2010年3月31日現在

市町村名	男女平等推進に関する条例の制定状況		「子どもの権利に関する条例」の制定状況
	条例名称	制定状況	
大阪府	大阪府男女共同参画推進条例	2002.3.29公布、'02.4.1施行	大阪府子ども条例（2007.4制定）
大阪市	大阪市男女共同参画推進条例	2003.12.49公布、'03.1.1施行、一部'03.7.1、'03.8.29施行	
豊中市	豊中市男女共同参画推進条例	2003.10.10公布、施行一部'03.11.7、'12.19施行	
池田市	池田市男女共同参画推進条例	2002.9.27公布、'02.8.27施行、一部'03.4.1施行	池田市子ども条例（2005.3制定）
吹田市	吹田市男女共同参画推進条例	2002.10.9公布、'02.11.1施行、一部'03.4.1施行	
高槻市	高槻市男女共同参画推進条例	2005.12.20公布、2006.4.1施行	人権施策を総合的に推進するための「行動計画」に基づき、「(仮)子どもの権利に関する条例」について調査・研究中
茨木市		研究中	
箕面市		検討中	子ども条例（1999.10制定）
摂津市		検討中(時期未定)	
島本町	島本町男女共同参画推進条例	2006.2.8公布、2006.4.1施行	
豊能町		検討中	
能勢町		検討中	
守口市	守口市男女共同参画推進条例	2009.12.21公布、2010.4.1施行	
枚方市	枚方市男女共同参画推進条例	2010.3.30公布、2010.4.1施行	
寝屋川市		検討中	
大東市	大東市男女共同参画推進条例	2007.3.23公布、2007.4.1施行	子ども基本条例（2007.10制定）
門真市	門真市男女共同参画推進条例	2005.3.31公布、2005.4.1施行	
四條畷市	四條畷市男女共同参画推進条例	2006.6.27公布、7.1施行、一部'12.1施行	
交野市		検討中	
八尾市	八尾市男女共同参画推進条例	2009.12.25公布、2010.4.1施行	
富田林市		検討中	
河内長野市	河内長野市男女共同参画推進条例	2005.9.29公布、2006.1.1施行	
松原市		制定も含め検討	
柏原市	柏原市男女共同参画推進条例	2006.12.25公布、2007.4.1施行	
羽曳野市		時期も含めて検討中	
藤井寺市		検討中	
東大阪市	東大阪市男女共同参画推進条例	2004.7.1公布・施行、一部2005.2.1施行	
大阪狭山市	大阪狭山市男女共同参画推進条例	2006.12.22公布、2007.4.1施行	
太子町		2010年3月策定の推進計画の施策の実施状況などを踏まえて検討	
河南町		検討中	
千早赤阪村		検討中	
堺市	堺市男女平等社会の形成の推進に関する条例	2002.3.29公布、'02.4.1施行、一部'02.10.1施行	子ども青少年の育成に関する条例（2008.4.1施行）
岸和田市		2010年度以降の制定を目的に検討中	
泉大津市	泉大津市男女共同参画のまちづくりを推進する条例	2007.12.14公布、2008.4.1施行	
貝塚市		研究中	
泉佐野市		研究中	
和泉市	和泉市男女共同参画推進条例	2007.7.11公布、8.1施行、一部10.1施行	
高石市		研究中	
泉南市		2010年度以降の制定を目的に検討中	策定に向けて検討中
阪南市		2011年度以降の制定を目的に検討中	
忠岡町		検討中(時期未定)	
熊取町		研究中	
田尻町	田尻町男女共同参画推進条例	2005.3.24公布、2005.4.1施行	
岬町		2010年度以降の制定を目的に検討中	
合計	1府18市2町0村(新規網かけ)		1府4市0町0村

※注：出典：大阪府男女共同参画推進センター

資料⑩ 大阪における「人権教育のための国連10年」行動計画の後継計画の策定状況

2010.3.31現在

市町村名	「人権教育のための国連10年行動計画」の後継計画の策定状況				
	後継計画	計画期間	根拠	推進体制(庁内)	推進体制(庁外)
大阪府	大阪府人権教育推進計画	2005年4月～2015年3月	法律/条例	大阪府人権施策推進本部	大阪府人権教育推進懇話会
大阪市	大阪市人権行政推進計画～人権ナビゲーション	2009年2月～	法律/条例	大阪市人権行政推進本部	大阪市人権施策推進審議会
豊中市	[無し]				
池田市	池田市人権教育推進プラン	[期間の定め無し]	その他	[無し]	[無し]
吹田市	吹田市人権施策基本方針	[期間の定め無し]	条例	吹田市人権施策推進本部	[無し]
高槻市	人権施策を総合的に推進するための高槻市行動計画	2005年4月～2015年3月	法律/条例/その他	高槻市人権擁護推進本部	高槻市人権施策推進審議会
茨木市	茨木市人権施策推進基本方針	[期間の定め無し]	法律/条例	茨木市人権擁護対策推進委員会	[無し]
箕面市	箕面市人権のまち推進基本方針	2005年4月～2010年3月	その他	箕面市人権行政推進本部会議	[無し]
摂津市	[無し]				
島本町	検討中				
豊能町	豊能町人権行政推進計画	[期間の定め無し]		[今後設置予定]	豊能町人権まちづくり協会
能勢町	検討中				
守口市	守口市人権行政基本方針	[期間の定め無し]	条例	[無し]	守口市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審議会
枚方市	枚方市人権教育・啓発基本計画	[期間の定め無し]	法律	枚方市人権擁護推進本部	枚方市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審議会
寝屋川市	[無し]				
大東市	大東市人権行政基本方針	[期間の定め無し]	その他	大東市人権行政推進本部	大東市人権擁護施策推進審議会
門真市	門真市人権教育・人権啓発推進基本計画	[期間の定め無し]	法律	門真市人権教育推進本部	[無し]
四條畷市	検討中			四條畷市人権施策推進本部	四條畷市人権協会
交野市	[無し]				
八尾市	八尾市人権教育・啓発プラン	2006年4月～2016年3月	法律/条例	八尾市人権施策推進本部	施策の具体化に向けて研究検討する場としてフォーラム等の開催
富田林市	富田林市人権行政推進基本計画	2009年度～2018年度		富田林市人権行政推進会議	[無し]
河内長野市	河内長野市人権施策基本方針 河内長野市人権施策推進プラン	2008年7月～2018年3月	法律/条例/その他	河内長野市人権施策推進本部	河内長野市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審議会 河内長野市人権協会
松原市	松原市人権施策基本方針 松原市人権施策行動計画	[期間の定め無し]	法律/条例/その他	松原市人権啓発推進会議	世界人権宣言松原連絡会議 松原市人権啓発推進協議会
柏原市	柏原市人権行政基本方針・同推進プラン	[期間の定め無し]		柏原市人権施策推進本部	柏原市人権擁護審議会
羽曳野市	検討中				
藤井寺市	藤井寺市人権教育・啓発のための推進プログラム	2005年10月～2015年3月31日	法律/条例	藤井寺市人権行政推進本部	藤井寺市人権のまちづくり協会
東大阪市	人権教育のための国連10年東大阪市行動計画	2003年～2012年		東大阪市人権教育のための国連10年推進本部	
大阪狭山市	検討中			大阪狭山市人権施策推進本部	[無し]
太子町	太子町人権行政推進プラン	[期間の定め無し]	条例/その他	太子町人権施策推進本部	[無し]
河南町	河南町人権行政基本方針・同推進プラン	[期間の定め無し]	法律/条例	河南町人権擁護に関する庁内検討委員会	[無し]
千早赤阪村	千早赤阪村人権行政推進プラン	[期間の定め無し]	条例等	同和問題解決(部落解放)・人権政策建立要求千早赤阪村推進本部	千早赤阪村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審議会
堺市	堺市人権施策推進計画	2006年10月1日～2016年3月31日	法律/その他	堺市人権施策推進本部	[無し]
岸和田市	岸和田市人権施策推進プラン	[期間の定め無し]		[無し]	[無し]
泉大津市	泉大津市人権教育・啓発推進計画	[期間の定め無し]	法律	泉大津市人権施策推進本部	泉大津市人権協会
貝塚市	貝塚市人権行政基本方針	[期間の定め無し]	条例	貝塚市人権擁護施策推進本部	貝塚市人権擁護審議会
泉佐野市	泉佐野市人権教育推進計画	2005年4月～2010年3月	法律/条例/その他	泉佐野市人権対策本部/人権教育推進委員会	
和泉市	人権教育のための新計画	2007年度～2016年度	法律/その他	和泉市人権擁護施策推進本部	和泉市人権擁護審議会
高石市	高石市人権推進基本方針	[期間の定め無し]	条例	高石市人権施策推進本部	高石市人権擁護審議会
泉南市	検討中			泉南市人権政策推進本部	[無し]
阪南市	阪南市人権施策推進基本方針	[期間の定め無し]	法律/条例	阪南市人権行政推進本部	阪南市人権擁護に関する審議会
忠岡町	検討中			[無し]	[無し]
熊取町	検討中				
田尻町	検討中			[無し]	[無し]
岬町	[無し]				
合計	1府25市3町1村(新規網かけ)			1府25市2町1村	1府16市1町1村

作成：世界人権宣言大阪連絡会議事務局

資料⑫ ユネスコ、「反人種主義・差別撤廃国際都市連合」を結成

ユネスコは、08年6月30日から7月3日までフランスのナントで開かれた第3回世界人権フォーラムの開会式の場において、を結成しました。結成式には、ユネスコ人文・社会科学局のピエール・サネ局長および世界6地域で組織されている都市連合の代表が参加し、国際都市連合に賛同する署名が行われました。

これにより、ユネスコが2004年以来設立に取り組んできた各地の地域連合が、国際都市連合として結実することとなりました。同連合は、差別と闘い多様性や相互の尊敬と対話を促進するための施策を発展させるための経験交流に関心のある都市のネットワークを構築することを各地域に対して要請していきます。

各地域の都市連合は、教育、居住、雇用、文化活動などの分野における自治体施策において、それぞれ10項目行動計画を実施しています。

結成日の6月30日、ユネスコはアフリカ（南アフリカのダーバン市）、アラブ（モロッコのカサブランカ市）、アジア・太平洋（フィジーのスバ市）、北米（カナダのトロント市）、ヨーロッパ（ドイツのニュルンベルグ市）、ラテンアメリカ&カリブ（ウルグアイのモンテビデオ市）からの各地域連合の代表を招いて円卓会議を開催しました。会議では、人種主義や差別と闘うことや、地域ごとの10項目行動計画の具体的実施、実施の際に障害となることなどについての課題を議論しました。

出所：

・ An international coalition of cities against racism launched at the Nantes World Forum on Human Rights (英語)

参考：

ユネスコ、「反人種主義・差別撤廃アラブ地域都市連合」設立
ヒューライツ大阪・ニュースインブリーフ (2008年6月)

資料⑬ 国際人権ひろば No.74(2007年07月発行号)

アジア・太平洋の窓

ユネスコの「反人種主義・差別撤廃アジア・太平洋地域都市連合」が「包括的な社会をめざす差別撤廃のためのアジア・太平洋都市連合」に改称

藤本 伸樹 (ふじもと のぶき) ヒューライツ大阪研究員

■ より肯定的なニュアンスの名称へ

ユネスコがアジア・太平洋地域の自治体に呼びかけて2006年8月に設立した「反人種主義・差別撤廃アジア・太平洋地域都市連合」の加盟都市の増加と活性化をめざした第1回暫定運営委員会の会合が、07年6月5日?6日にカンボジアのプノンペンで開かれた。正式加盟の手続きとして意思表明書に署名をした自治体や自治体連合・連盟に加え、この都市連合の取り組みに関心を示す自治体やNGO、専門家などが参加した。

設立後約10ヵ月を経て、都市連合に加盟しているのは、プノンペン、バンコク、スバ(フィジー)、マカティ(フィリピン)、クルネガラとマータレ(スリランカ)、インチョン(韓国)の各都市のほか、都市・自治体連合-アジア太平洋支部、全インド地方自治体協会、タイ全国自治体連盟、フィリピン自治体連盟と合計11都市・自治体連合にとどまっている。

今回の会合で最初に議論となったのは、都市連合の名称についてであった。アジア・太平洋地域の多くの国や自治体関係者のあいだで、「人種主義」という概念じたいが十分に認識されていなかったり、自分の国や自治体において「人種主義など存在しない」といった声がしばしば聞かれることから、都市連合に対する賛同が拡がりにく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現状が確認されたのである。また、「反人種主義・差別撤廃」という文言を使用している都市連合の現名称が否定的なニュアンスに響くことから、もっと肯定的な名称に変更す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意見が多く出たのである。

そうした問題提起を受けた議論の末、「反人種主義・差別撤廃アジア・太平洋地域都市連合」として発足した都市連合は、「包括的な社会をめざす差別撤廃のためのアジア・太平洋都市連合」へと改称することでコンセンサスに達したのである。

ただ、発足時に合意された10項目のコミットメント(行動計画)に関しては変更されることなく、都市連合がめざす骨格と方向性はそのまま維持されたのである。

ちなみにヨーロッパでは、「反人種主義ヨーロッパ都市連合」として04年に発足し、すでに67都市が加盟しており、07年5月にはドイツのニュルンベルグで第1回総会が開催されるなど拡がりを見せている。都市連合の取り組みを担当するユネスコ人文・社会科学局人権・反差別部の諸橋淳さんによれば、ヨーロッパでも当初はたとえば、「文化的多様性のための...」といったもっと肯定的なタイトルの方が促進しやすいのではないかと、という意見があったものの、そうしたポジティブなタイトルに至るまでに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つまり人種差別の問題を無視することになりはしまいかという意見が圧倒的に強く、結局は現在のタイトルに落ち着いたという。

■ 「世界都市連合」の結成に向けたアジアでの地盤固め

会合のなかで、「アジア・太平洋都市連合」は今後、さまざまな機会を利用してより多くの自治体に対して、加盟を求めめるために努力することを確認した。とりわけ、都市・自治体連合(UCLG)の第2回世界大会が07年10月28日から31日まで韓国の済州島で開催されることから、同アジア太平洋支部は、ユネスコおよび済州特別自治道と協力してその機会に「アジア・太平洋都市連合」の周知と加盟都市数の拡大を図るための企画を練ることとした。

今回の会合には日本からは、06年の発足式に続き、堺市人権局から2名の担当者が参加している。堺市は「アジア・太平洋都市連合」には未加盟であるものの、会合ではユネスコの要請を受けて、同市の女性や外国人をめぐる課題をはじめとした人権施策について報告を行った。

09年8月14日から80日間の日程で世界都市博覧会を開催するインチョン市を先頭に韓国の諸都市がメンバーになりつつあるなか、同じく東アジアの日本の自治体が加盟することへの期待も徐々に高まっている。

ユネスコの「都市連合」の取り組みは、ヨーロッパとアジア・太平洋地域に加え、アフリカ、ラテン・アメリカとカリブ地域、北米(カナダ)においても結成されており、アラブ地域も準備のプロセスにある。

ユネスコでは、世界人権宣言60周年にあたる08年の7月3日?4日にフランスのナント市で開催が予定されている「第3回世界人権フォーラム」(World Forum on Human Rights)の場において、各地域都市連合を象徴的に集約するかたちで「世界都市連合」のネットワークを構築する計画である。

「反人種主義・差別撤廃アジア・太平洋地域都市連合」(Coalition of Cities against Racism and Discrimination in Asia and the Pacific)から「包括的な社会をめざす差別撤廃のためのアジア・太平洋都市連合」(Towards an Inclusive Society : Coalition of Cities against Discrimination in Asia and the Pacific)へと改称された。

10項目のコミットメントの骨子は、次の通りである。①人種主義と差別に関する現状把握および自治体政策のモニタリングを行う、②差別や社会的排除の問題と取り組むために、自治体および地域社会における政治的リーダーシップを実践する、③インクルーシブな社会の促進、④人種主義や差別の被害者に対する支援の強化、⑤情報へのアクセスを通じて市民の広範な参加とエンパワメントを促進する、⑥機会均等の雇用者およびサービス提供者としての都市(行政)を促進する、⑦機会均等実践の積極的な支持者としての都市(行政)を促進する、⑧教育を通じて人種主義や差別に対抗する、⑨文化的多様性の促進、⑩人種主義者による扇動および関連する暴力を予防し克服する。

都市・自治体連合は、「世界各国における民主主義及び地方自治の促進」「グッド・ガバナンス、持続可能な発展、ソーシャル・インクルージョンという原則の基に、経済、社会、文化、職業、環境における発展を促し、公的サービスを促進すること」「人種及び男女平等を促進し、あらゆるかたちで現れる差別や偏見に立ち向かうこと」などの目的を枠組みとして掲げた世界の自治体の連合体である。日本は、浜松市が加盟している。

人間の安全保障

人間の安全保障とは、「人間の生にとってかけがえない中核部分を守り、すべての人の自由と可能性を実現すること」を言い、日本政府は、2005年(平成17年)に策定したODA中期政策で、人間の安全保障を「一人ひとりの人間を中心に据えて、脅威にさらされ得る、あるいは現に脅威の下にある個人及び地域社会の保護と能力強化を通じ、各人が尊厳ある生命を全うできるように社会づくりをめざす考え方である。」と定め、人々の脅威について、紛争、テロ、犯罪、人権侵害、難民の発生、感染症の蔓延、環境破壊、経済危機、災害といった「恐怖」や、貧困、飢餓、教育・保健医療サービスの欠乏などをあげている。

地球市民

平和、環境、貧困など地球規模の課題の解決に向けて、地球に暮らす一員として、日々の生活の中で考え、自分にできる身近なことから行動していく人々のこと。

① これまでの国内での取り組み

基本的な人権は、日本国憲法で侵すことのできない権利として規定されています。しかしながら、現在、国内においても同和問題をはじめ女性、子ども、高齢者、外国人の人権等さまざまな人権課題が存在しており、これらの問題に直面している人たちの人権を具体的に保障するために日本国憲法や国際的な枠組みを踏まえて、各課題に対する個別の法整備が進められています。

また、人権教育・啓発に関する施策の推進についても、「人権教育のための国連10年国内行動計画」(1997年(平成9年)策定)に基づき、人権教育・啓発に関する国、地方の責務を明らかにした「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を2000年(平成12年)が施行され、国、地方それぞれの取り組みが進められています。

さらに、現に人権侵害を受けている、または受けるおそれのある人に対して迅速に適切な保護・救済を受けることのできる実効的な救済制度が求められており、2002年(平成14年)の通常国会に人権擁護法案が提出されました。2003年(平成15年)に廃案となりましたが、現在も国等において、法の内容や運用方法、制度等について検討が続けられています。

② 現在の国際的な枠組み

■人間の安全保障の実現

ヒト、モノ、情報が国境を越えて活発に行き交うグローバル化が進展し、我々の生活が豊かになった反面、紛争やテロ、感染症の発生、環境破壊、経済危機など、さまざまな脅威がこれまで以上に人々の生活を脅かすようになり、国家の枠組みだけでは完結できない問題が深刻化してきています。

このような中、一人ひとりの人間を中心に据え、脅威にさらされ得る、あるいは現に脅威の下にある、個人や地域社会の保護と能力強化を通じ、尊厳ある生命を全うすることのできる社会づくりをめざす「人間の安全保障」の考えが必要となっています。市民をはじめ、さまざまな主体が地球市民として、平和、人権、環境等地球規模の課題について日々の中で考え、行動していくことが「人間の安全保障」の実現に結びつきます。

■ミレニアム開発目標(MDGs)

2000年(平成12年)9月に開催された国連ミレニアム・サミットでは、21世紀の国際社会の目標として国連ミレニアム宣言を採択しまし

ミレニアム開発目標
(MDGs) の8つの
目標

MDGsは、2015年(平成27年)までに達成すべき目標として以下の8つの目標を掲げている。

- (1) 極度の貧困と飢餓の撲滅
- (2) 普遍的初等教育の達成
- (3) ジェンダーの平等の推進と女性の地位向上
- (4) 幼児死亡率の削減
- (5) 妊産婦の健康の改善
- (6) HIV/エイズ、マラリア、その他の疾病の蔓延防止
- (7) 環境の持続可能性の確保
- (8) 開発のためのグローバル・パートナーシップの推進

人権文化

国連の「人権教育のための国連10年行動計画」により呼びかけられたことば。一人ひとりが人権尊重の態度を習慣として身につけ、仕事や日常生活において実践することが、当たり前となっているような社会のありようのこと。

た。同宣言は、平和と安全、開発と貧困、環境、人権とグッド・ガバナンス(良い統治)、アフリカの特別なニーズなどを課題として掲げ、21世紀の国連の役割に関する明確な方向性を示しました。そして、同宣言と1990年代に開催された主要な国際会議やサミットで採択された国際開発目標を統合し、一つの共通の枠組みとして「ミレニアム開発目標(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がまとめられました。MDGsでは、2015年(平成27年)までに達成すべき8つの目標を掲げています。この目標は、国際社会がとるべき行動の指針であり、グローバル化の進む中、国際社会が連帯して取り組ま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です。

■人権教育のための世界プログラム

人種、民族、性、宗教、文化、国籍などの違いをこえた人権という普遍的文化を構築するために、1994年(平成6年)第49回国連総会において「人権教育のための国連10年(1995年(平成7年)～2004年(平成16年))」が決議されました。以後、国連の行動計画に基づいて、国連はもとより、国際レベル、国レベル、地方レベルでの人権教育への取り組みが推進されてきました。

これらの取り組みにより、人権教育の重要性が国際的、国内的にも高まってきていることや人権教育を総合的、計画的に実施していくための手がかりを得られたことは大きな成果です。しかしながら、現在も、部落差別や外国人差別などが依然として存在し、また、児童虐待やいじめ、インターネットによる悪質な書き込みなどが後を絶たないなど、人権文化を創造するためには、今後も一層、行政のみならず市民一人ひとりがたゆまぬ活動を続けていくことが必要です。

2004年(平成16年)には、国連人権委員会で「人権教育のための国連10年のフォローアップに関する決議」が採択され、あらゆる分野で人権教育プログラムの実施が維持、継続されるよう、連続的な段階で構成された人権教育のための世界的プログラムの開始の勧告がなされ、2004年(平成16年)に「人権教育のための世界プログラム」の第一段階(2005年(平成17年)～2007年(平成19年))として「初等中等学校制度における人権教育への取り組み」への行動計画が示されました。2007年(平成19年)には、計画期間を2009年(平成21年)まで延長することが国連人権理事会で決議されました。このことは、世界的枠組みの中で実施される人権教育が今後とも継続されていくことを示しています。

同プログラムでは、「人権を享受する子どもの能力を強化し、かつ適

切な人権の価値観が浸透した文化を促進するような教育」を受ける権利を子どもが有しているとし、このような教育を「人生の過程でバランスのとれた人権に馴染んだ対応を達成する上で、すべての子どもにとって不可欠の手段」と位置付けています。そして、質の高い教育は、権利に根ざし、「民主的な市民性、価値観および連帯を重要な成果として包含するもの」であるとし、さらに「他の諸価値—とくに正義及び公正—の支持と、われわれは他の人と運命を共有しているという意識を強化するような教育が必要である」と示し、社会構造や価値観、人間関係が多様化、複雑化し、さまざまな格差、排除、孤立が広まる様相を見せる現代社会において、すべての人々が社会の構成員として、自立し、共生する社会づくりをめざす教育が進められようとしています。

■持続可能な開発のための教育

現代社会は、地球温暖化などの環境問題、人権侵害などの社会的問題、貧富格差をはじめとする経済問題など、互いに関連しあうさまざまな課題に直面しています。これまでの人間活動のあり方は、このような課題を生み出すとともに、将来世代がその能力を開花するために必要な資源を残すことができないおそれがあります。

我々が、直面するさまざまな課題を解決し、すべての人々が現在から将来にわたって安心して暮らすことのできる社会をつくるためには、社会的公正の実現や自然環境との共生を重視した「持続可能な開発」のあり方が求められています。

「持続可能な開発」とは、将来の世代のニーズを満たす能力を損なうことなく、現在の世代のニーズを満たすような社会づくりのことを意味しています。このためには、すべての人々が健康で文化的な生活を営むための取り組みが必要であり、貧困を克服し、保健衛生を確保し、質の高い教育を確保することなどが必須であり、性別、人種等により差別されず、公平に向上するよう取り組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また、これらの取り組みを資源の有限性、環境容量の制約、自然の回復力などを意識した節度あるものとし、将来世代へと持続する社会づくりと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さらに、戦争や紛争は、難民を生み、環境を破壊するため、平和への取り組みも必要です。

以上を踏まえると、世代間の公平、地域間の公平、男女間の平等、社会的寛容、貧困の軽減、環境の保全と回復、天然資源の保全、公正で平和な社会などが持続可能性の基礎となっており、環境の保全、経済の開発、社会の発展を調和の下に進めていくことが「持続可能な開

発」です。

「持続可能な開発」を進めていくためには、あらゆる国・地域において官民がこぞって取り組みを行う必要があります。これを促進していくためには基礎教育、高等教育、教員教育、環境教育等を充実させ、市民の啓発活動を粘り強く展開していくことが必要です。そして単に個人がこれらについて知識を網羅的に得ることだけではなく、「地球的視野で考え、さまざまな課題を自らの問題として捉え、身近なところから取り組み (think globally, act locally)、持続可能な社会づくりの担い手となる」よう個人を育成し、意識と行動を変革するという視点が重要です。このような認識に立ち、日本は、2002年(平成14年)のヨハネスブルグサミットにおいて「持続可能な開発のための教育の10年」を提言し、同年12月の第57回国連総会で採択され、2005年(平成17年)からスタートしました。日本においては、2006年(平成18年)3月に国内実施計画が示され、国、地方自治体をはじめさまざまな主体による取り組みが進められようとしています。

ヨハネスブルグサミット

持続可能な開発に関する世界首脳会議。2002年(平成14年)8月に南アフリカのヨハネスブルグで開催され、世界各国の首脳、関係閣僚、国際機関の長が参加。各国首脳の持続可能な開発に向けた政治的意志を示す文書「持続可能な開発に関するヨハネスブルグ宣言」及び実施計画を採択。

欧州理事会

欧州連合(EU)の首脳会議。EU首脳会議やEUサミットと呼ばれることもある。従来は毎年、議長国の都市で開催されていたが、2004年(平成16年)から原則として、EU本部のあるブリュッセルで開催されている。

デジタルデバイス

パソコンやインターネットなどの情報技術(IT)を使いこなせる者と使いこなせない者の間に生じる経済的格差や機会の格差。

③ 新たな社会的要請を踏まえた視点

■ソーシャル・インクルージョンのまちづくり

グローバル化、市場経済や労働市場等経済環境の変化、都市(地域)社会の変化、家族の縮小などを要因として、貧困をはじめ、社会的ストレスやアルコール依存などの「心身の障害」、路上死や外国人の排除などの「社会的排除や摩擦」、孤立死、自殺、家庭内暴力などの「社会的孤立や孤独」といった問題が重複・複合化しており、低所得者や障害者、高齢者、ひとり親世帯、外国人労働者、ホームレス、ニートなどの人々をめぐる問題がクローズアップされています。

こうした状態にある人々を援護し、健康で文化的な生活の実現につなげ、すべての人々を社会の構成員として受け容れ、支えあう「ソーシャル・インクルージョン」のまちづくりが求められています。

2000年(平成12年)のニース欧州理事会で承認された「貧困と社会的排除と戦う諸目的」では、「雇用への参入と万人の資源、権利、財及びサービスへのアクセスを容易にすること」、「社会的排除のリスクを予防すること」、「最も弱い立場の人を支援すること」、「あらゆる関係者を動員すること」を掲げ、社会的孤立・排除に対して、雇用、社会保護をはじめ、住宅、教育、保健、文化など多くの分野が関わっていくことの必要性を示しています。

これらの問題は、見えない形をとりやすく、問題の把握を一層困難にしており、孤立死や自殺という極端な事象が起こったときに顕在化

2 人権施策の推進

1 人権の視点でまちづく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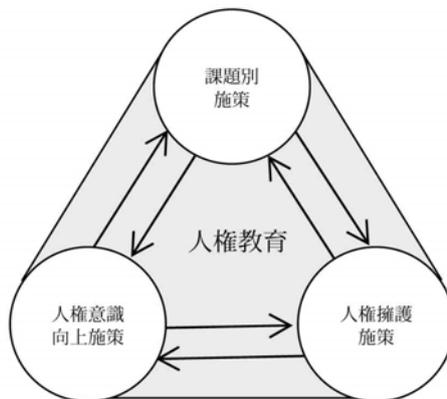
人権のまちづくりは、単に道路・建築物等の環境整備のみならず、市民一人ひとりが社会に参加・参画しながら自己実現を達成することをめざした、すべての人のためのまちづくりであることが必要です。

「平和と人権を尊重するまちづくり条例」及び「堺市人権施策推進基本方針」の基本理念実現のためには、個別の人権の課題に取り組むとともに、「まち」全体を見据えた総合的な取り組みが求められます。

人権施策は、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をめざして、さまざまな施策に人権の視点を反映させながら、人権の擁護に努め、人権の課題への取り組みを進めていく施策であり、まちづくりの観点に立った総合的な施策です。

「堺市人権施策推進基本方針」においても、人権施策を3つの施策に分類しています。すなわち①基本理念を踏まえて人権の各課題別に取り組む施策②人権の意識向上を図る施策③人権擁護を図る施策であり、3つの施策を柱に、人権問題について実態を把握しながら総合的な施策を推進していきます。そして、それぞれの施策が国際的な規準に立った人権教育を基礎にした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は必要不可欠です。

人権施策



●●● 2 まちづくりの担い手（コミュニティの形成） ●●●

地域福祉の推進

社会福祉法第4条（地域福祉の推進）
地域住民、社会福祉を目的とする事業を営業者及び社会福祉に関する活動を行う者は、相互に協力し、福祉サービスを必要とする地域住民が地域社会を構成する一員として日常生活を営み、社会、経済、文化その他あらゆる分野の活動に参加する機会が与えられるように地域福祉の推進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1 資料54ページ

行政など公的主体と地域住民が協働・補完の関係にあり、地域の活動が多様な主体によって担われている多元的な社会が活力ある社会であり、ひいては、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につながります。このような協働関係を基盤にしたコミュニティの重要性は、2000年（平成12年）に改正された社会福祉法において「地域福祉の推進」の中でも述べられています。

また、2000年（平成12年）に実施した大阪府の「同和問題の解決に向けた実態調査（以下、実態等調査）」において「同和問題学習経験別同和問題解決に重要なこと」の問いに対して「同和地区と周辺地域の人々が交流を深め、協同してまちづくりを進める」ことが重要と思う人が65%に達しています。^{※1}

この実態等調査などを受けて2004年（平成16年）に改訂した「堺市同和行政基本方針」においても「部落差別を解消し、すべての人の人権が尊重される豊かな社会の実現をめざし、同和地区内外の住民が協力して自らのまちづくりを進めていくための協働関係を構築し、一体となったコミュニティの形成を図る」と記しており、このことは、ハード面だけではなくソフト面も含めた総合的なまちづくりが重要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ます。

コミュニティの形成に関しては、公的分野への住民参加・参画という流れの中で次の視点が大切です。

- ① 地域社会のニーズに合わせた活動を行うこと
- ② 地域の諸活動は、一定のプログラムの基に実施され、協調したものであること
- ③ 地域の活性を高めていく啓発を通じ、地域住民の参加を促進していくこと
- ④ 地域の中で個々の活動の指導者を見出し、また将来の指導者を育てていくこと
- ⑤ 活動の活性化と拡大を目的として、幅広い年齢層の参加を促進すること
- ⑥ 民間の資源・活力を充分に取り入れること

これら諸原則を基に総合的なまちづくりのあり方について検討するとともに、人材育成や活動支援等に努めていきます。そして、コミュニティの形成に際しては、例えば、同和問題の解決に向けては、差別意識の解消、人権意識の向上、地域住民の自立と自己実現達成、同和地区内外の交流促進の条件整備など、といったように人権の各課題別に諸条件を整備していく必要があることにも留意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平和社会実現への取り組みは、現在から未来へとすべての人々が安心して暮らすことのできる持続可能な社会をめざす取り組みであり、環境、社会、経済の問題など広範なアプローチにより取り組まれるべきものです。

環境の問題も貧困、不公正、紛争といった世界で困難で長期間継続している問題と分かちがたく関連しています。地球温暖化によってもたらされる大規模な気候変動による生態系の変化、大規模な自然災害、干ばつ、感染症の拡大などの影響により、貧困や飢餓が起り、地域紛争に発展するなど、人々の生命や身体に脅威を及ぼすことが予測されています。気候変動の原因となる温室効果ガスの蓄積は、圧倒的に先進国をはじめ豊かな国や人々の活動によるもの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最も深刻に影響が現れているのは、貧困国や貧困地域です。このような国や地域では、地球規模の課題に対処する余裕もなく、環境資源を適正に管理し、保護することができず、さらなる環境破壊を生じさせてしまうなど環境の悪化と貧困の悪循環を生んでいます。

このように気候変動の問題は、世界がこれまで取り組んできた貧困や飢餓撲滅、保健、医療、教育水準の向上などの平和社会実現にむけた取り組みを停滞又は退行させてしまうおそれがあります。

グローバル化の進展した世界では、世界で起きている事象と私たちの行動とはさまざまなかたちで影響しあっています。私たちは、地球に暮らす一員として、国際的な視野に立ち、自らの行動は、平和、人権、環境などの地球的課題に対して影響力を持つとともに、私たちの一つひとつの取り組みが、国際社会の普遍の願いの実現につながっているという認識を持って日々の生活の中で考え、行動することが必要です。

その結果、住環境整備をはじめ、地区住民の生活の安定・向上、教育文化の向上など着実な成果を上げてきましたが、今日においても、就職や結婚における差別や教育の問題など解決すべき課題が依然として残っています。最近では、行政書士等による戸籍等の不正取得事件が発覚したり、電子版を含む新たな部落地名総鑑が調査業者から回収されるなどしています。

このような状況の中、2007年（平成19年）には、「戸籍法」及び「住民基本台帳法」が相次いで改正され、戸籍謄本、住民票の交付制度の厳格化が図られました。

法律に基づく特別措置が2002年（平成14年）3月末に終了し、同和対策は一般施策による総合的な取り組みへと大きな転換を迎えました。これまでの成果を踏まえた新たな同和行政の展開が求められています。

堺市における課題と取り組み

本市においては、早くから人権部局を設置するなど同和問題の解決を市政の最重要課題と位置付け、同和問題の解決のために堺市同和対策協議会（現堺市同和行政協議会）を設置し、より広く市民の理解を得て総合的かつ効果的な同和行政を推進するとともに、同和対策事業の早期達成を図るため、堺市同和対策推進特別委員（現堺市同和行政推進委員）を設置し、事業の推進に努めてきました。

また、市民共通の課題として同和問題に対する正しい理解の促進と人権尊重意識の普及を図るための人権教育・啓発を積極的に進めてきました。

さらに、これまでの同和対策事業の成果を踏まえ、人権の視点から総合的な行政を推進するため、1998年（平成10年）3月には、「堺市同和行政基本方針」を、1999年（平成11年）3月に同方針の具体化のための「堺市同和行政推進プラン」を策定し、同和対策事業の改革に取り組んできました。

これらの同和行政の推進により、地区住民の生活や健康の向上、就労の安定、教育水準の向上などの一定の成果が見られ、市民の同和問題に関する理解の進展や市民全体の人権意識の向上にもつながってきました。

しかし、2000年（平成12年）に実施した大阪府の実態等調査においては、中途退学等の教育の問題や失業率の高さ、不安定就労等の就労の問題、府民の同和地区に対する忌避意識による結婚差別等の問題が残されている状況が明らかになっています。^{※2}

※2 資料54ページ

世界女性会議

女性の地位向上を目的として、国連の主催で開催される会議。
第4回の北京会議では、実質的な男女平等の推進とあらゆる分野への女性の全面的参加など38項目からなる「北京宣言」と貧困、教育、健康、女性に対する暴力、経済、人権などの分野における戦略目標及び行動を提示した「行動綱領」が採択された。

※5 資料56ページ

ジェンダーギャップ指数

世界経済フォーラムが毎年公表している世界115ヵ国・地域の男女格差を表す指数。指数は、経済、教育、健康、政治の4つの分野を対象にしている。経済では、労働人口、賃金、管理職、専門職などの男女比、教育では、識字率と初等教育、中等教育および高等教育の就学率の男女比、健康では平均寿命と出生時の男女比、政治では議会議員、閣僚などの人数の男女比をもとに計算されている。2008年（平成20年）、日本は、調査対象130ヵ国中98位

※6 資料57ページ

※7 資料57ページ

※8 資料58ページ

「ジェンダーと開発（GAD）」が、1980年代以降重視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
た。GADは、開発におけるジェンダー不平等の要因を女性と男性の関係と
社会構造の中で把握し、両性の固定的役割分担やジェンダー格差を生み
出す制度や仕組みを変革しようとするアプローチです。1995年（平成7
年）第4回世界女性会議（北京会議）以後、GADを定着させる方法と
して、すべての政策や事業の計画立案、意思決定の段階にジェンダー平
等の視点を組み入れる「ジェンダー主流化」が国際社会で重視されるよ
うになりました。

わが国においては、ジェンダー平等の意識は徐々に向上しているもの
の、経済、教育、健康、政治分野における男女の格差を表すジェンダー
ギャップ指数にも見られるように、依然、女性の地位は、世界的水準から
見て低い位置にあるという状況です。※5

わが国の法律や社会制度・慣行の中には、男女格差や固定的な性別役割
分担意識が根強く残っています。男性の家事、育児、介護への参画は、妻
が有職、無職に関わらず低く、女性の労働力率は、育児期にあたる30歳台
前半で低くなり、40歳台で再び増加するM字型を描いています。※6

働く女性が増加し、労働内容も多様化していますが、男女間の賃金格
差は依然として大きく、女性の就業形態はパートなどの不安定労働が多
くなってきています。※7 政策決定の場への女性の参画率は、少しずつ上
昇しているものの、まだまだ低い状況にあります。また、性別による固
定的な役割分担等に基づく税制・社会保障制度・年金制度などが女性の
社会参加を阻み、結果として男女間の格差を生み出す一因にもなってい
ます。

さらに、女性に対する暴力（セクシュアル・ハラスメント、配偶者・
恋人等からの暴力、ストーカー行為等）についても深刻な被害状況が顕
在化してきています。※8

こうした状況の背景には、社会に存在する性別分業や、性差による向
き不向きといった偏見や思い込み、さらには経済的・社会的にアンバラ
ンスな力関係が潜んでいます。性による不平等な慣習や慣行、制度は、
個人の多様な生き方を狭め、今なお多くの女性の経済的自立を困難にす
るとともに、家庭や地域社会とのつながりが希薄な男性が孤立してしま
うなど、女性にとっても男性にとっても生きにくい社会を形成してしま
います。

社会経済状況が大きく変化している中、1999年（平成11年）に施行さ

れた「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では、その前文において、「男女が、互いにその人権を尊重しつつ責任も分かち合い、性別にかかわらず、その個性と能力を十分に発揮することができる男女共同参画社会の実現は緊要な課題」と明記され、「21世紀の我が国社会を決定する最重要課題」と位置付けられました。

この「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の理念を具現化すべく、以後さまざまな法整備がなされました。2003年（平成15年）7月に「次世代育成支援対策推進法」が制定され、労働者が仕事と子育てを両立できるよう次世代育成支援のための行動計画の策定を事業主に義務付けるとともに2007年（平成19年）には、仕事と育児・介護との両立をさらに支援するため「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育児・介護休業法）」が改正されました。「雇用の分野における男女の均等な機会及び待遇の確保に関する法律（男女雇用機会均等法）」も2006年（平成18年）に改正され、性別による差別禁止の範囲が拡大（間接差別禁止も含む）されたほか、男性に対するセクシュアル・ハラスメントについても対象とすることなどが盛り込まれました。

また、2001年（平成13年）に制定された「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に関する法律（配偶者暴力防止法）」では、夫婦間や家庭内の問題として潜在化し放置されてきた配偶者に対する暴力が犯罪となる行為をも含む重大な人権侵害であると位置付けられ、その後、2004年（平成16年）、2007年（平成19年）に改正され、保護命令制度の拡充や基本計画策定と配偶者暴力支援センター業務の実施が市町村の努力義務とされるなど、被害者保護と自立支援策の充実が図られました。

さらに国では、2005年（平成17年）12月にこれまでの取り組みを評価・総括した新しい基本計画である「男女共同参画基本計画（第2次）」を策定し、特に政策・方針決定過程への女性の参画を進めるため、「社会のあらゆる分野において、2020年（平成32年）までに指導的地位に女性が占める割合が少なくとも30%程度に」との目標を掲げています。

また、近年、女性も男性も誰もが仕事、家庭生活、地域生活、個人の自己啓発などさまざまな活動を自らが希望するバランスで展開する「仕事と生活の調和（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の推進が求められています。政府の少子化と男女共同参画に関する専門調査会は、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を推進し、仕事と家庭の両立支援や働き方の見直しを図ることが、男女共同参画の推進と少子化対策にとって重要であると示しています。

堺市における課題と取り組み

本市では、1981年（昭和56年）、市議会の「女性に対するあらゆる形態の差別の撤廃に関する条約」の早期批准に向けての要望決議や、市民からの要望など女性差別撤廃の気運の高まりを受け、1983年（昭和58年）に女性問題を総合的かつ効果的に解決するため、「第1期堺市婦人問題行動計画」を策定、さらに1993年（平成5年）に「第2期女性問題行動計画」を策定し、男女平等社会の実現をめざした施策の推進に取り組んできました。

1995年（平成7年）1月には、総理府（当時）と共催で「男女共同参画宣言都市奨励事業」を実施し、市民自らが行動目標として「女と男がいきるのやS A K A I宣言」を行い、全国初の「男女共同参画宣言都市」となりました。これを記念し、その翌々年から、宣言を行った1月21日を含む1週間を「さかい男女共同参画週間」と定め、期間中に男女共同参画社会の実現に向けた取り組みを集中的に展開しています。

また、2002年（平成14年）2月に「第3期さかい男女共同参画プラン」を策定し、「男女共同参画に向けての社会システムの変革」、「労働の分野における男女平等の確立」、「職業と家庭、地域活動との両立支援」、「女性の人権の尊重」という4つの基本課題を掲げ、男女共同参画社会の実現に向けた施策を推進しています。

2002年（平成14年）3月には、大阪府内の市町村で初めて「堺市男女平等社会の形成の推進に関する条例」を制定し、男女共同参画施策を推進する上での市の基本姿勢を明確に示しました。同年10月には、同条例に基づく堺市男女平等推進審議会を設置し、同審議会によって「第3期さかい男女共同参画プラン」が同条例に規定する基本計画として承認されました。また、男女平等相談委員による苦情相談処理制度を開始し、市が行う男女平等推進施策に関する苦情や性別による権利侵害の相談の申出に応じています。

2006年（平成18年）には、新たに政令指定都市となった本市のまちづくりの指針となる「自由都市・堺 ルネサンス計画」を策定し、重点施策として「人権尊重社会、男女共同参画社会の実現」を掲げ、女性の雇用機会の拡充や審議会等への女性の参画推進などに積極的に取り組んでいます。

2007年（平成19年）に「第3期さかい男女共同参画プラン」が中間年度を迎えたことから、これまで実施してきた施策を踏まえ、策定以後の社会情勢の変化等による新たな課題に対応し、目標年度に向けて実効性

11年) 11月に施行され、2003年(平成15年) 9月には、「インターネット異性紹介事業を利用して児童を誘引する行為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出会い系サイト規制法)」が施行されました。

さらに、多発するいじめやいじめが原因の自殺が深刻な社会問題となっており、2007年(平成19年)には、いじめの定義が見直され、学校におけるいじめられた児童・生徒の立場に立った実態把握や、いじめの防止、早期発見及び適切な対応を図ることのできる体制づくりが強化されました。^{※9}

※9 資料58ページ

一方、急速な少子化の進行に歯止めをかけ、次代の社会を担う子どもが健やかに生まれ、かつ、育成される環境の整備等を図るため、地方公共団体及び事業主による行動計画の策定を義務付けた「次世代育成支援対策推進法」が2003年(平成15年) 7月に施行されました。

また、子どもの社会性豊かな人間性を育む観点からボランティア活動等の社会奉仕体験活動や自然体験活動などの体験活動を積極的に推進するため、2001年(平成13年)に学校教育法及び社会教育法が改正されました。

堺市における課題と取り組み

本市において取り扱われる子ども虐待の件数は年々増加しており、中でも母親による虐待が多くなっています。また、子ども相談所の虐待相談件数は、0歳から就学前までの乳幼児への虐待及び小学生への虐待がそれぞれ4割強を占めています。^{※10}

※10 資料59ページ

その原因として、育児負担が母親一人に過大に偏り育児不安が増大することや母親が社会的に孤立してしまいがちになることなどが考えられるほか、経済的に困難な状況にある家庭における児童虐待の発生が増加が指摘されています。

虐待の防止には、こうした背景を踏まえた取り組みが必要であるとともに、被虐待児へのケアはもちろんのこと、虐待する親への支援を講じるとともに、子どもを権利の主体者としてとらえ、一人ひとりの子どもの尊厳を確保し、その力を引き出すことが大切です。

本市では、2000年(平成12年)に虐待の発見から援助にいたるまでさまざまな場面で連携・協力し、子ども虐待に対応するネットワークとして、子どもに関わる団体や関係機関等が参画した「堺市子ども虐待等連絡会議」を設置しました。

また、2006年(平成18年)の政令指定都市移行に伴い、大阪府から権限の委譲を受け、子ども相談所(児童相談所)を設置するとともに、24

時間体制で虐待の電話相談を受け付ける「子ども虐待ダイヤル」を開設したほか、「堺市子ども虐待等連絡会議」を「堺市子ども虐待連絡会議」と名称を改め、「堺市子ども虐待等支所区域会議（各支所設置）」を児童福祉法に規定された要保護児童対策地域協議会である「堺市区子ども虐待連絡会議（各区設置）」へ移行しました。さらに、2007年（平成19年）8月には、子ども相談所の分室として一時保護所（愛称：キッズステーションさかい）を設置しました。

いじめ・暴力防止 (CAP) プログラム

子どもが自分自身の大切さを自覚するとともに、危機的状況を自分で切り抜けるための知識や方法を学び、たくましく生きるための力を養う。
(CAP = Child Assault Prevention)

ピアサポートリーダー派遣事業

いじめ問題の早期発見・早期解決のため、具体的な事象が発生し、支援を必要とする小学校に臨床心理士をめぐらす大学院生を派遣し、いじめに対する子どもの悩みや不安を受け止めて相談に応じる。(ピア：peer仲間)

SAFEプログラム

イラストボードを使って、子どもと教員が対話型で学習を進める教育プログラムで、子どもの安全を大人が守るだけでなく、子ども自身が自らを守るため、潜在的な危険を察知し、危機的状況の中で何ができるかを考える力を養う。

子ども虐待防止のネットワークが効果的に機能するよう、保健福祉総合センター、子ども相談所、保育所（園）・幼稚園、学校、地域社会、福祉・医療機関等が連携し、早期発見、早期対応に向けた取り組みを進めていきます。さらに、子ども虐待の未然防止や早期発見の重要性について、市民一人ひとりの理解を深めるための啓発を積極的に進めています。

また、学校園でのいじめ等への取り組みとして、1999年（平成11年）から「いじめ・暴力防止 (CAP) プログラム事業」に先進的に取り組んでいるほか、2006年（平成18年）からは、教育センターに設置するいじめや心の悩み等の電話相談である「こころホーン」を24時間体制にしました。さらに、2007年（平成19年）には、小学生を対象としたピアサポートリーダー派遣事業やSAFEプログラムの実施とともに、これまで中学校、高等学校に配置していたスクールカウンセラーを小学校にも拡大するなど、いじめ・不登校に対する取り組みを進めています。

学校の教職員をはじめ、子どもたちに関わるすべての人は、いじめの被害にあった子どもからの相談を十分に聴き、気持ちを受けとめるなど、一人ひとりの子どもが、明るく楽しい学校生活を送れるよう努める必要があります。

一方、予防的視点からも子どもの人権を尊重していく上で、学校園での教育の果たす役割は大きく、2000年（平成12年）には、「人権教育基本方針」及び「人権教育推進プラン」を策定し、人権教育の推進を図っています。子どもの権利や立場を最大限に尊重しながら、人権感覚を育む教育や自分を大切にすることを基本にして相手の立場を考えた行動や命の大切さを学び、豊かな人間性の育成や人格の形成に向けた教育、個性と想像力を育む教育、時代の要請に応える教育をより一層推進していきます。

近年、登下校時を中心とした不審者の出没や子どもが犯罪被害者となる事件が社会問題化しており、警察をはじめとする関係機関や学校、家庭、地域等が連携しながら、子どもが安心して暮らせる環境づくりを進める必要があります。

1997年（平成9年）からは「こども110番の家事業」、2005年（平成17

基本的自由について定めた上で、この人権及び基本的自由を確保し促進するための措置をとること等を定めた「障害者の権利に関する条約」が採択され、わが国も2007年（平成19年）9月に署名しました。

しかし、今も障害者の社会参加を拒むバリアとして、道路、建築物等のまちづくりの「物理的バリア」、障害を理由に資格から排除する「制度的バリア」、文化に接する機会や必要な情報が行きわたらない「文化・情報のバリア」、障害に対する正しい理解と認識の不足から生じる「意識上のバリア」等が存在しています。

真のバリアフリー社会を築くため、1994年（平成6年）9月には、「高齢者、身体障害者等が円滑に利用できる特定建築物の建築に関する法律（ハートビル法）」、2000年（平成12年）11月には、「高齢者・身体障害者等の公共交通機関を利用した移動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交通バリアフリー法）」が、2002年（平成14年）には、身体障害者が補助犬を伴って社会で活動できるように支援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身体障害者補助犬法」が施行されました。

さらに、2006年（平成18年）には、高齢者、障害者の円滑な移動、建築物の利用の確保に関する施策を総合的に推進するために、交通バリアフリー法をさらにすすめ、建築物の構造や設備基準の策定のほか、高齢者、障害者等の計画段階からの参加の促進を図るための措置などを定めた「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バリアフリー新法）」が施行されました。

施設コンフリクト

社会福祉施設等の設置に際し、地域住民の反対運動が起こり、施設の整備が停滞したりする地域との摩擦。

しかしながら、就職における差別や入居拒否、施設コンフリクトの問題等が依然存在し、一部の職場や施設においては、職員による知的障害者等に対する虐待事件等も起こっています。障害のあるなしを問わず、すべての人が社会の一員として生活するためには、物理的バリアの除去だけでなく、社会構成員一人ひとり意識上のバリアを取り除くことが重要です。

1995年（平成7年）には、これまで福祉サービスの対象となっていなかった精神障害者に対して精神保健法から改正された「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精神保健福祉法）」が施行され、精神障害者の医療、福祉に関するもののほか、精神障害者の社会復帰や自立の支援とともに、地域住民の精神障害に対する関心や理解を深めることに努めることなどが定められました。

また、2005年（平成17年）4月には、LD（学習障害）、ADHD（注意欠陥・多動性障害）、高機能自閉症等の発達障害者の自立、社会参加、生活支援を目的とする「発達障害者支援法」が施行されています。

これまでの福祉サービスは、利用者の申請により行政が判断し、受給者やサービス内容を決定する措置制度がとられてきましたが、2003年(平成15年)4月から利用者が自分で事業者やサービス内容を選択し、契約を結ぶ支援費制度(利用者契約制度)がスタートしました。障害者をサービスの利用者としてとらえ、救済的な施策の対象とする考え方から、利用者一人ひとりの人格を尊重し、自己決定権の確保を図る考え方への変換は、人権尊重の視点からも重要な意味を持ちます。

このように障害者に関する施策の整備が図られているところですが、あわせて知的障害者や精神障害者等の意思決定を尊重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民法に基づく成年後見制度や社会福祉法に基づく地域福祉権利擁護事業などの利用者の権利擁護やサービス利用を支援する仕組みづくりも行われています。

さらに、2006年(平成18年)4月には、障害者の自立を支え、障害者が地域で安心して暮らせる社会の実現をめざして、身体障害者、知的障害者、精神障害者の福祉サービスの一元化、就労支援の強化、地域生活支援事業の実施、市町村、都道府県の障害者福祉計画の策定などを定めた「障害者自立支援法」が施行されましたが、利用者負担や就労支援等さまざまな問題点を指摘されており、真に障害者が地域で自立して生活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同法施行後3年間を目途とする抜本の見直しに向け、検討が進められています。

堺市における課題と取り組み

本市では、2006年(平成18年)に策定した「第3次堺市障害者長期計画」に基づき、「地域での自立生活の促進」、「相談体制の整備と利用者支援」、「共生社会づくりの推進」を基本方針として施策を推進しています。

また、障害者福祉の拠点施設として、重症心身障害児施設のほか、専門相談機能や診療機能、スポーツ活動支援機能、職業リハビリテーション機能、社会参加のための生活リハビリテーション機能等を有する「(仮称)健康福祉プラザ」の開設に向けた取り組みを進めています。

障害者を阻む「物理的バリア」解決に向けた取り組みは、2001年度(平成13年度)から交通バリアフリー法に基づく「交通バリアフリー基本構想」を段階的に策定し、すべての人が安心して公共交通機関等を利用できるように市内の主要駅舎や周辺地区のバリアフリー化を進めるなど、着実に推進しており、また、「バリアフリー新法」等の法整備もあまってバリアフリー化や障害者をはじめ誰もが利用しやすい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の普及も進んできています。一方、障害者施設建設に際しての施設コンフリクトの問題等、依然として「意識上のバリア」が存在し、心

のバリアフリーに向けた取り組みが必要です。

本市では、2006年（平成18年）の政令指定都市移行に伴い、「精神保健福祉法」に基づいて、こころの健康センター（精神保健福祉センター）を設置し、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の福祉に関する知識の普及、精神障害者の社会復帰支援、ひきこもりに関する専門相談などを行っています。

また、障害者更生相談所を設立し、障害者の自立と社会参加を進めるために、医師、ケースワーカー、心理判定員等が専門的な立場から相談を受けたり、必要に応じて医学的、心理学的及び職能的判定を行っています。

2007年（平成19年）11月には、「発達障害者支援法」に基づき、発達障害者支援センターを開設し、発達障害者及びその家族、関係機関への相談支援、発達支援、就労支援、啓発及び研修などを行なっています。

本市は、全国に先駆けて市立養護学校を設立し、また、市立小・中学校内に支援学級を漸次設置し、特別支援教育を推進してきました。地域の学校園での障害児の就学環境の整備とともに専門的な教育がなされる支援学校の就学環境の整備など障害者一人ひとりのニーズに応じたサポート体制も重要です。また今なお、卒業後の就労、生活面での課題も多く、地域をはじめ教育・医療・労働・福祉等の各分野の関係機関が官民をこえてさらなる連携を図っ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

さらに学校園においては、障害者理解教育を積極的に進めるとともに、新たな課題としてLD（学習障害）、ADHD（注意欠陥・多動性障害）、高機能自閉症等の子どもに対する理解や支援についての取り組みの充実を図っています。

少子高齢化や都市化に伴う家族形態の変化や地域のつながりの希薄化等さまざまな社会の変化により、本市においても障害者一人ひとりが抱える問題は多様化し、既存の施策だけでは解決が難しくなっています。これからの障害者福祉は、従来のように限られた人を保護、救済するだけではなく、子育てや介護等すべての人に関わる生活課題と同様に障害者が抱える課題についても地域全体で相互に支えあう仕組みの中で、一人ひとりの主体性を尊重し、解決を図っていくといった新しい福祉のあり方が求められています。障害者等が地域で自立した生活を送るには地域の理解と協力が不可欠であり、施設コンフリクトの問題についても、地域全体で支えあうという視点からの人権教育の推進が必要です。

堺市における新しい福祉のあり方を示し、その実現の方策を示すものとして、誰もが人としての尊厳を保ち住み慣れた地域で自分らしく誇りをもって暮らすことができる地域づくりを実現することを目的に、2009

権や公権力行使公務員の任用などに制限を受ける。このような在住資格を持って日本に暮らし続けている人たちのほかにも、日本国籍を取得(帰化)し、日本人として在住している人も多く日本に在住しており、これらの人たち(一部の無年金者を除く)には、制度的な差別は存在しないが、そのルーツや民族に対する偏見や差別を受けることがある。また、定住者と永住者は、「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入管法)」に基づき、法務大臣に許可を与えられた人のことで、定住者には一定の在留期間があるのに対し、永住者は、在留期間が無期限である。こちらも参政権などはない。

等や歴史的経緯及び外国人に対する誤解や偏見から、不当な差別や人権侵害を受けることがあります。

日本には、多くの在日韓国・朝鮮人等が暮らしています。在日韓国・朝鮮人等の多くは、過去の朝鮮半島等の植民地政策の中で労働等に従事するため渡日したり、また渡日せざるを得なかった人たちで、終戦後、さまざまな事情により引き続き日本で住むようになった人やその子孫として日本で生まれ育った人たちです。在日韓国・朝鮮人等の人権課題解決については、歴史的背景を正しく学ぶことも大切です。

在日韓国・朝鮮人等に対する差別や偏見は、依然根強く、差別発言や差別文書の送付等の事象も発生しています。こうしたことから、今なお、本名ではなく、日本名(通称名)で生活せざるを得ない人も多いという状況にあります。

2000年(平成12年)4月に「外国人登録法」の一部改正により、指紋押捺が廃止されるなど、法制面で改善が図られてきていますが、このような人たちに対する地方参政権、制度的無年金等の問題が存在しています。

また、近年は、中国からの残留孤児家族の帰国、南米等からの日系労働者のほか、新たに労働等のために在住する外国人が増加しており、今後もますます外国人が増加すると予測されます。

しかし、外国人に対する就労や入居に対しての差別や公衆浴場、飲食店等への入店拒否などの問題が今なお存在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問題は、大きな原因として、日本人、外国人双方の言語や文化、習慣等に対する理解不足や間違った認識などから生まれていると考えられます。

また、近年、日本人と外国人との国際結婚の急増に伴い、外国人の母親が妊娠、出産や育児に関してさまざまな不安を抱えている状況が見られます。こうした外国人の母子の保健ニーズに対応し、安心して出産、育児ができる環境づくりも求められます。

さらに、新たに入国した外国人労働者が不当に低賃金や過酷な労働を強いられていたり、不法な方法で入国し、違法な労働に就かされたりするなどの状況もあります。

堺市における課題と取り組み

本市の外国人登録人口は、12,283人(2009年(平成21年)3月末現在)で、そのうち5,335人が在日韓国・朝鮮人です。^{※13}

本市の外国人の子どもたちの就学状況については、市立小・中学校に478人(2008年(平成20年)5月現在)が在籍しており、さらに市内の高等学校等にも進学しています。また、日本で暮らす外国人の子どもたち

国際結婚

日本人の総婚姻件数に占める夫妻の一方が外国人の婚姻件数の割合
 1970年(昭和45年) 0.5%
 1980年(昭和55年) 0.9%
 1990年(平成2年) 3.5%
 2000年(平成12年) 3.5%
 2007年(平成19年) 5.6%
 (厚生労働省人口動態統計)

※13 資料62ページ
資料63ページ

民族講師

府内の公立小中学校において、課外時間(民族学級等)に朝鮮の歴史、文化、言語等を教える常勤講師。現在府内11校11人が配置。堺市内では、少林寺小学校に配置。

の状況はさまざまであり、それぞれの民族の文化・習慣を学び、教育を受けることも大切です。

市立学校園においては、在日外国人・国際理解教育を積極的に推進するため、民族講師の活用や民族学級の設置等を行ってきました。また、自立支援日本語指導員による中国や海外から帰国・渡日した子どもへの日本での適応支援を実施してきました。堺市在日外国人教育研究会とも連携を図りながら、学校や地域の中で自らの民族的・文化的アイデンティティを大切に生きていくことのできる教育を今後とも推進していきます。

民族学級

府内の公立小中学校において、在日韓国・朝鮮人児童生徒が、課外の自主活動として、母国の歴史、文化、言語等を学ぶ場。

また、制度的無年金の問題については、本市独自に対象者に特別給付金を支給していますが、抜本的解決のためには、国による救済措置が必要であり、地方参政権についても、国の動向を注視していきます。

近年、本市においても中国、東南アジア、南米をはじめとして世界中のさまざまな国や地域から渡日した多くの外国人が生活しています。これらの人々は、日本語の理解が不十分なことや文化、習慣等への戸惑いなどから地域で孤立するなど社会生活上のさまざまな問題を抱えています。

今後、留学生や短期労働者を含め、本市で暮らす外国人は、ますます増えると考えられ、このような人たちが生活しやすい環境を整備するために多言語による各種情報提供や相談機能の充実とともに、日本語や生活習慣を習得したり、それぞれの文化を学びあい交流したりする機会や場の拡充を図る必要があります。

これまで本市では、国際人権規約、人種差別撤廃条約等の国際人権基準の趣旨を広め、すべての人が尊重される地域社会の実現をめざし、「ちがいを豊かさ」という視点から歴史、現状などを理解するためのセミナー等を開催してきました。

また、本市に転入してきた外国人に多言語による生活ガイドブックを配付したり、妊婦に外国語版母子健康手帳を交付するとともに、ボランティア通訳の協力を得て、子どもを持つ家庭への訪問や乳幼児健康診査や予防接種の受診、育児相談などに対応しています。

内なる国際化

多様な文化や価値観、個性を理解し尊重することにより、地域内の外国人と共生していかうとする考え方。

本市では、2008年(平成20年)8月に策定した「堺市国際化プラン」において、「多文化共生のまちづくりの推進」を国際化施策推進の柱の一つに掲げ、その重点的取り組みとして「外国人が快適に暮らすことのできるまちづくりの推進」、「国際的な人材の育成と国際理解の強化」を設定しており、今後も国際人権基準を念頭に多様な文化、習慣、価値観等を尊重し、互いを認め合いながら暮らすことのできる多民族・多文化共生のまちづくりを進めるため、「内なる国際化」の推進に努めていきます。

●●● 7 高度情報化社会に伴う人権 ●●●●●●●●●●

現 状

情報処理技術の急速な発達に伴い、行政機関や企業等が個人情報を大量に収集・蓄積し、利用するようになるにつれ、その取り扱いの適正化を図るとともに濫用の可能性から個人の人権を守る必要が生じてきています。住民基本台帳ネットワークシステムの導入に際しても、個人情報保護の重要性が指摘されました。

近年のIT革命と言われる情報処理、通信技術革新は、日常の生活にも多くの利便性をもたらしました。とくにインターネットの普及は、市民が自由に意見や情報の発信・交換ができるなど、「表現の自由」を保障する手段として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います。しかし、それに伴いプライバシーをめぐるさまざまな問題が生じてきています。

また、プライバシーの概念も消極的な「みだりに干渉されない権利」からより積極的な「自らの情報を自らが管理する権利」へと広がっており、自己情報コントロール権として保障する必要があります。さらには、収集された情報がデジタルデータとして保存され、利用される「デジタル・プライバシー」としての問題性も出てきます。それらがネットワーク化されると情報の広がり、ますます加速することになり、大きな人権侵害につながるおそれがあります。

このように個人情報に対する関心が高まる中、個人の人格尊重の理念のもと、個人情報の適正な取り扱いを図るべく、2003年（平成15年）5月に「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が一部施行され、2005年（平成17年）4月から全面施行となりました。

また、インターネット上の電子掲示板やホームページに他人を誹謗中傷する内容や差別を助長する表現等を掲載したり、個人情報が流出したりするなどの人権に関わる問題が発生しています。

このような状況を踏まえて、「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プロバイダー責任制限法）」が2002年（平成14年）5月に施行されました。これらの問題は、不特定多数の利用者に向けた情報発信や発信者に匿名性があるという特性から大きな人権侵害につながるおそれがありますが、有効な対策が困難という状況にあります。

さらには、情報化に伴い、デジタルデバイドの問題も生じており、社

の理解や支援も重要です。

一方、犯罪の被害者やその家族等が、犯罪による直接的な被害のほか、捜査や裁判の過程、行き過ぎた取材、報道等によるプライバシー侵害、また、社会からの心無い言葉等による二次的被害を受けることがあります。刑事裁判手続きでの加害者の権利保障に対し、被害者の権利保護が立ち遅れていることから2000年（平成12年）11月に「犯罪被害者等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き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犯罪被害者保護法）」が施行され、また、2005年（平成17年）4月には、犯罪被害者の権利保護を図る「犯罪被害者等基本法」が施行されました。警察、検察、裁判所、マスコミを含めた関係機関と興味本位の好奇心で事件を見る多くの人たちの一層の意識改革が求められています。

性同一性障害、同性愛、両性愛、先天的に身体上の性別が不明瞭であるインターセックス等の性的マイノリティの人々に対する知識や理解は、まだまだ低い状況にあります。このような中、「性同一性障害者の性別の取り扱いの特例に関する法律」が2004年（平成16年）7月に施行され、一定の条件を満たす人について戸籍の性別変更が可能となりました。多様な性のあり方を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る社会の構築が必要です。

※14 資料63ページ

バブル経済崩壊後の長期不況の中、都市部を中心に野宿生活者（ホームレス）が増加してきました。こうした野宿生活者の人々の中には、自立の意思がありながらも、野宿生活を余儀なくされている人が多数存在しています。^{※14} また、野宿生活者を対象にした襲撃事件なども後を絶ちません。2002年（平成14年）8月には、「ホームレスの自立の支援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が制定されました。野宿生活者の人権に配慮し、かつ、地域社会の理解と協力を得つつ必要な施策を講ずることが必要です。

※15 資料64ページ

また、経済不況やそれに伴う格差の広がり、多様かつ複雑化する社会を背景に自殺者数が高い水準で推移していることも大きな社会問題となっており、2006年（平成18年）10月には、「自殺対策基本法」が施行されました。^{※15} 自殺を個人的な問題としてのみとらえるのではなく、その背景にさまざまな社会的要因があることを踏まえ、自殺の実態に即した社会的な取り組みとして、自殺対策を総合的に推進し、健康で生きがいを持って暮らすことのできる社会づくりを進めることが必要です。

2002年（平成14年）の日朝首脳会談におい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北朝鮮）は、日本人の拉致を認めました。日本政府は、2008年（平成20年）10月現在17人を拉致被害者に認定していますが、このほかにも拉致の可能性を否定できない事案があるなど、依然として多くの問題が残されています。拉致問題は、人間の尊厳、人権及び基本的自由の重大かつ明白な侵害であり、早急に被害者の即時帰国、真相究明を図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ます。2007年（平成18年）6月には、「拉致問題その他北朝鮮当局による人権侵害問題への対処に関する法律」が施行され、国際社会と連携し、拉致問題の解決をはじめ、北朝鮮当局による人権侵害問題の実態を解明し、その抑止を図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ます。

アイヌ民族は、日本とロシアにまたがる北方先住民族で、北海道、千島列島、サハリンなどを生活圏としていました。このような人々に対する差別や偏見も今なお根強く残っています。1997年（平成9年）には、アイヌの人々の民族としての誇りが尊重される社会の実現をめざして、「アイヌ文化の振興並びにアイヌの伝統等に関する普及及び啓発に関する法律」が施行されています。さらに、2008年（平成20年）6月には、「アイヌ民族を先住民族とすることを求める決議」が衆参両院で採択されています。

このほかにも、婚外子に対する制度的不平等や偏見が存在するほか、沖縄出身の人々への偏見や差別なども残っています。

また、近年には、急速な遺伝子工学の発達によるクローン問題等新たな人権課題も生まれてきています。

さらには、さまざまな環境問題が深刻化し、特に地球温暖化は、われわれ人類を含めた地球上の数多くの生物の生命を脅かす状況になりつつあります。このような状況に対応すべく、「気候変動枠組条約」に基づいて京都議定書が1997年（平成9年）に議決、2005年（平成17年）に発効されました。これを受けて日本でも「京都議定書目標達成計画」が策定され、2006年（平成18年）には「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が改正されました。地球温暖化は、人類をはじめ地球上のすべての生物に関する重要な課題であるとの認識が地球規模で高まってきていると言えます。

このように人権課題は、非常に広範囲にわたって、存在しており、また、科学技術の進展や社会環境、生活様式の急速な変化、グローバル化

の進展などにより、新たな人権課題も生起しています。これらの人権課題の解決には、正しい知識と理解が何よりも重要です。

堺市における課題と取り組み

後天性免疫不全症候群（エイズ）をはじめ感染症については、誤った情報やそれぞれの感染症に対する理解不足から生じる人権侵害が発生しています。こうした問題に対し、保健所や保健センターが中心となって正確な医学情報の迅速な提供に努めるとともに、感染症に関する正しい知識の普及啓発を行っています。

性的マイノリティの人々に対する人権の問題に関しても、まだまだ正しい認識が普及しているとは言い難く、当事者との協力、連携を図りながら、正しい知識や認識の普及に努めるとともに、相談体制の整備を図っていきます。

本市においても、多くの野宿生活者が存在していますが、野宿生活者に対する誤った認識から生まれる偏見や差別意識からいやがらせなどの事件が発生しています。このため、「堺市野宿生活者に関する庁内連絡会」を設置し、関係機関の連携を図るとともに、「大阪府・市町村ホームレス自立支援推進協議会」の一員として、大阪府及び堺市以南8市4町と協力して、2004年（平成16年）2月に「ホームレス総合相談推進事業」を、2005年（平成17年）3月には、入所施設で就労による自立を支援する「ホームレス自立支援事業」をスタートするなど、野宿生活者の実状に応じた施策展開に努めています。

自殺対策については、「堺市自殺対策連絡懇話会及び庁内連絡会」を設置し、関係機関との連携を図り、啓発や相談事業を実施するとともに、各相談窓口担当者を対象に研修事業なども行っています。2009年（平成21年）3月には、自殺を社会的な問題として認識し、市民及び関係者が連携・協力の視点で総合的に取り組むことを目的とした「堺市自殺対策推進計画」を策定し、社会の実状に即した効果的な施策展開に努めています。

拉致問題をはじめとする北朝鮮当局の人権侵害問題に対しては、市民の関心と認識を深めることを目的に、12月の「北朝鮮人権侵害問題啓発週間」を中心として広報活動や関係団体と連携した啓発事業を実施しています。

本市では、地球温暖化の原因とされる温室効果ガスの排出量を削減するため、2003年（平成15年）に「さかい省エネアクションプラン ～堺市地域省エネルギービジョン～」を策定し、市民・事業者・行政の各主体やその連携・協働による取り組みを積極的に推進しています。さらに、2007年（平成19年）から、これまで実施してきた「堺市環境マネジメントシステム」、「さかいしCO₂スリム作戦」、「大阪府温暖化の防止等に関する条例」に基づく対策計画、「堺市グリーン調達基本方針」を統合し、効果的かつ効率的に運用する堺市独自の環境マネジメントシステム「S-E M S」を開始するなど、全庁的な環境配慮の取り組みを進めています。

さらに、2009年（平成21年）1月には、温室効果ガスの大幅な削減にチャレンジする自治体として、国から「環境モデル都市」に認定されるとともに、同年3月には、「快適な暮らし」と「まちの賑わい」が持続する低炭素都市の実現をめざした「堺・クールシティ宣言」を行いました。環境問題、特に地球温暖化をはじめとする地球規模の問題には人権問題と密接な関係にあることを踏まえ、環境配慮をより積極的に行ってまいります。

このほかにもさまざまな人権に関する問題が存在していますが、これらの問題解決に向け、さまざまな機会や媒体等を活用して正しい情報の提供や知識の普及啓発に努めていきます。

今日、従来からの主要な人権課題に加え、新たな人権課題も生起しており、法整備をはじめ対応が図られつつあります。国際化、情報化、少子高齢化、地域における人間関係の希薄化などさまざまな要因が絡み合い人権課題も多様化、複雑化しています。

今後も社会情勢、生活環境の変化に伴い、新たな人権課題が発生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それぞれの課題に的確に対応した施策展開に努めていきます。

4 人権意識の向上を図る施策

1 人権教育の意義と必要性

すべての人の人権が尊重され、お互いを認め合い共生する平和で豊かな社会を実現するためには、一人ひとりが人権尊重の精神の涵養を図ることが不可欠であり、そのために行われる人権教育は、非常に重要です。

2000年(平成12年)、人権擁護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人権教育及び啓発の推進にかかる国、地方公共団体の責務を明らかにし、必要な措置を定めた「人権教育及び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が施行されました。同法では、その基本理念として、「国及び地方公共団体が行う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は、学校、地域、家庭、職域その他の様々な場を通じて、国民がその発達段階に応じ、人権尊重の理念に対する理解を深め、これを体得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多様な機会の提供、効果的な手法の採用、国民の自主性の尊重及び実施機関の中立性の確保を旨として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第3条)と規定しています。

また、2005年(平成17年)、本市が実施した人権意識調査において、人権が尊重される社会を実現させるために必要な取り組みへの問いに対し、「個人個人が自ら人権意識を高めるように努める(51.7%)」、「学校などにおける人権教育を充実させる(46.0%)」、「人権意識を高めるための啓発を充実させる(26.5%)」という結果が出ており、市民レベルにおいても人権尊重の精神の涵養並びに人権教育及び啓発の必要性を示しています。

2 人権教育の推進

人権感覚あふれたまちを実現するためには、行政をはじめ企業、地域、学校、N G O・N P O等が人権教育を積極的に推進する必要があります。

① 「人権教育のための国連10年」 基本的枠組みの継続

人権教育は、「人権教育のための国連10年」決議において、「単に情報提供だけにとどまらず、あらゆる発達段階の人々、あらゆる社会階層の人々が、他の人の尊厳について学び、また、その尊厳をあらゆる社会で確立するための方法及び手段を学ぶための生涯にわたる総合的な過程である。」と定義されており、また、同行動計画で「研修・宣伝・情報提供を通じて、知識や技能(スキル)を伝え、態度を育むことにより、人権文化を築く取り組みである。」と記されました。

本計画においても「人権教育のための国連10年堺市行動計画」に引き続き、この定義を用いることとします。また、人権教育は、長期にわたるプロセスであることを踏まえて「国連10年」の基本的枠組みを継続し

ていきます。改めてここに「国連10年」の基本的枠組みを列挙します。

- A) 自由権や社会権などさまざまな人権は分離できるものではないこと（人権の不可分性）と個々の人権は互いに支えあっていること（人権の相互依存性）を理解しながら、人種・民族・性別・宗教・文化・国籍の違いをこえた共通のものである人権という普遍的文化の創造をめざします。
- B) 人権教育は、国際社会が協力して進めるべき基本的課題であることに理解を求めています。
- C) 社会は、さまざまな人々で構成されており、そしてそれぞれの人々が独自の文化、個性を持っていることを理解し、生活することが自然の状態であることに理解を求めています。
- D) 世界人権宣言などの人権関係国際文書の趣旨に基づく人権の概念及び価値への理解を促進していきます。
- E) 人権の重要課題への積極的取り組みを継続していきます。
- F) 人権にかかわりの深い特定の職業に従事する者に対する取り組みを強化していきます。
- G) 人権について、あらゆる場を通じて訓練、研修、広報、情報提供を実施していきます。
- H) 一人ひとりの人権意識を高め、他者の価値を尊重する意識・態度を育てていきます。

これらの柱を軸に3つの次元で推進していきます。

- ア. 知識
人権及び人権擁護のための仕組みについて情報を提供していきます。
- イ. 価値観・信念・態度
人権を大切にするような価値観、信念及び態度を育てることにより、人権文化の創造を促進していきます。
- ウ. 行動
人権を守り、人権の確立に向けて行動することを促進していきます。

②人権という普遍的文化の創造

人権という普遍的文化は、すべての人権の不可分性と相互依存性を認識するところから出発した、人種・民族・性・宗教・文化・国籍などの違いをこえた人権についての共通の文化を言います。

戦争、差別、環境破壊、貧困をなくす生き方を世界中に育むためには、この人権の普遍的文化を創造し、日常生活において人権感覚が満ち溢れる状態を世界の人々とともに享受できるように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せん。そのためには、市民一人ひとりが日常の生活において、人権に関わるいろいろな問題に気づき、学び、行動していくことが人権文化の創造につながっていきます。

2004年（平成16年）4月に国連人権委員会で採択され、その後、国連経済社会理事会と国連総会で承認された「人権教育のための世界プログラム」は、2005年（平成17年）から始まった新たな人権教育に関しての世界的枠組みです。

このプログラムの特徴は、すべての分野で人権教育の履行を維持し発展していくことや、数年を時間的枠組みとする一つの段階として括り、その期間とくに焦点を当てる特定分野を各国共通のものとして設定して実施していき、このサイクルを繰り返していくことが示されていることです。

第一段階の行動計画では、2005年（平成17年）～2007年（平成19年）に「初等・中等学校制度における人権教育」が特定されましたが、2007年（平成19年）9月の国連人権理事会において、2009年（平成21年）まで延長する決議を採択しました。本市は、国連の動きを注視しながら国、大阪府と連携を図り、人権教育に関しての世界的枠組みを維持・発展させることに努めます。

③ 国際社会の基本的課題としての人権教育

国際的な人権基準や人権条約は、それぞれの地域的・国際的な取り組みが発展する中で成立してきた側面を持っています。そのことから国際基準等を各国・地域の課題解決に活用していくことは当然であり、また、そのように活用され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例えば、わが国では、1979年（昭和54年）に国際人権規約（社会権規約・自由権規約）を批准し、1995年（平成7年）人種差別撤廃条約に加入しました。これらの国際的な人権基準は、国内において人権基準の向上に効果的な役割を果たしてきています。このように地球的規模の英知を積極的にとり入れていくことは、人権教育の推進において重要です。

i 持続可能な社会の確立

開発を自然の保全と対峙するものとして捉えるのではなく、先進工業国、発展途上国双方における人間の権利と尊厳・自立・社会正義を実現していくための個人と社会のよりよい変化と捉えることが開発教育の基本的な考え方です。低開発を人類の共通課題としてその諸相と原因を理解し、開発のための積極的に参加しようとする態度を養うことをめざすこの教育は、1960年代から数次にわたり国連により提唱されてきました。しかし南北問題は未だ解決されておらず、このために2005年（平成17年）1月から新たに「国連持続可能な開発のための教育10年」が始まりました。

これは、環境問題、資源・エネルギー問題、食料・人口問題、人権や平和の問題等の解決には、「地球全体として資源は有限であり、人類の活動自体も地球環境との調和をめざしたものになる」という考え方を基盤とした持続可能な社会の確立をめざすものです。

持続可能な社会の確立には、経済的不平等の問題(世代内の公正)、次世代以降の人々に豊かな自然や資源をどう引き継いでいくか(世代間の公正)、環境倫理の問題(自然と人間の関係の公正)の3つの視点を踏まえた人間活動を求め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

よりよい他人との関係、自然との関係を構築していくためには、ともに他の存在に配慮することからはじまります。持続可能な社会においては、環境と人権と開発を結びつけた取り組みが求められています。

ii 国際理解教育の推進

開発、環境といった地球規模の諸課題を解決していくことは、人間が人間らしく生きていくことのできる世界を築いていくために欠かせないことです。このためには、人権を世界の人々の中にしっかりと根付かせ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つまり、人権教育は地域社会・国家をこえた世界的視点を持った国際的な教育として実施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民族、文化、価値観、生活様式に対する理解と尊重、諸民族及び諸国民の間に世界的な相互依存関係への理解、国際的な連帯及び協力についての理解を内容とする国際理解教育は、人権教育を世界的課題として理解することに役立ちます。

また、人権が尊重された社会を実現するためには、積極的に平和の大切さを市民の間に醸成していく施策の検討を行う必要があります。

iii 多文化共生社会への理解(ちがいを豊かさに)

経済活動の地球的拡大に伴い、人々のあらゆる交流も世界規模で広がっています。誰もが、民族、文化、価値観、生活様式が異なる隣人を持つ可能性を有し、また逆に異なる社会の中で暮らす可能性もあります。このような国際化の進んだ社会では、他国民、他民族に対する偏見や先入観、固定観念を払拭し、互いの価値観や人権を尊重する意識・感覚を育てていくことは、必要不可欠であり、多文化共生社会構築のための基本です。

本市は、「ちがいを豊かさに」をテーマにこれまでもこれらの課題についての人権教育を推進していますが、今後も他者を大切に、お互いの多様な生き方を認め合うことの重要性を踏まえて推進していきます。

iv 多様性への理解

「共生」の心を醸成するためには、多様性概念に対する理解も必要です。人間の個性は、人種、国籍、外見・容姿、障害、学歴などさまざまな要素の集合体であり、身体的特徴などは一人の人間の個性を構成する要素の一部に過ぎず、その一つだけが個性として他人・社会から強制されたときに、偏見、差別の問題が表出します。他人が一部の個性の要素にステレオタイプ・偏見を押し付けることは、一人のトータルな人間として見ないことであり、そこからは、「共生」の心が生まれるはずもありません。人は等しく尊い人権概念を基本にして、さらに人は皆違うからこそ尊いとの認識に立つことが必要です。

ただ、多様性概念を理解するだけでは、社会の中に今なお残る差別や偏見の問題を正しく理解することにはなりません。これら差別を受ける人々は、社会の中で構造的に弱い立場に立た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の理解も必要であり、それが社会構造上、人権の問題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ているかを見定める視点も必要です。

④ あらゆる場を通じての人権教育

人権教育は、「人権教育のための国連10年」の決議において「生涯にわたる総合的な過程である」と定義されており、これは、人権教育には空間的・時間的な制限はないことを意味しており、学校教育ばかりではなく、地域、家庭、職場などあらゆる場所で人権教育を実施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また、学校教育や職業・専門学校を通じた定型的学習、家庭や市民社会の諸機関を通じた無定型学習においても、すべての年齢層、あらゆる人々が参加できるようにする必要があります。

さらに、人権教育にあたっては、学習者の日常生活と関連付けた方法をとることが効果的であることを踏まえるとともに、プログラム・教材等の開発・整備に引き続き努めます。人権教育の形式も学習者のさまざまな価値観に触れ、自己の価値観を見直していける参加・体験型研修等を今後も推進していきます。

i 学校園等での人権教育

2000年(平成12年)、堺市の教育分野において人権教育を推進するために「人権教育基本方針」を策定しました。この中で、1. 人権についての理解、豊かな人権感覚をもって行動する人間の育成 2. 自立、自己実現、豊かな人間関係づくり 3. 地域社会における人権教育・学習の充実、振興 4. 熱意ある指導者の育成 を掲げ、人権教育を推進してきました。

学校園は、人権教育の基礎を培う場であり、堺市では、幼児期から高等学校まで人権教育プログラムにより段階的に学べるシステム

を構築しています。それぞれの発達段階に応じ、人権についての主要な概念、主要な技能、問題や課題を理解することを目標にプログラムが組まれています。

幼稚園では、遊びや体験を通して、友達を大切にする心や生命の尊さに対する感性を育てることに努め、小学校・中学校・高等学校では、学校生活や日常生活の場での仲間づくりを通して、豊かな感性、生命や人権を尊重する心、社会生活のルールを大切に、違いを認め合い、友達を大切にする態度や行動力を育てることに努めています。

2002年度(平成14年度)から実施されている教育課程においては、基本的な考え方として「生きる力を育成する」ことを主眼においたものになっています。この「生きる力」とは、自ら課題を見つけ、自ら学び、自ら考え、主体的に判断し、行動し、よりよく問題を解決する資質や能力を育てること、自ら律しつつ、他人とともに協調し、他人を思いやる心や感動する心など、豊かな人間性を育むこと、そしてたくましく生きるための健康や体力を身につけることを内容とするものです。

この「生きる力」の基盤は、自尊感情を育てていくことです。子どもたち一人ひとりが自分に自信を持ち、自分が肯定的に受けとめられていると実感することが必要です。このような感情の育成は、自分と他人との関係において「感情の受けとめ方」を養うことにもつながっています。また、「コミュニケーション力の養成」にも積極的に取り組んでいます。

さらにいじめ・暴力防止(CAP)プログラムをとり入れることにより、子どもたちに「安心・自信・自由」を大切にする心を育み、子どもたち自らの力を引き出すことにも努めています。このことも自尊感情を育むことにつながっています。

また、近年、情報化社会が進展する中、携帯電話やインターネット等が急速に普及し、情報収集及び発信の利便性が飛躍的に発展しました。しかし一方で、プライバシーの侵害や有害情報へのアクセス、ネット上での誹謗中傷の書き込みなどが社会問題となっています。

学校教育においても、情報化の進展に対応した情報教育が進められていますが、この中で生徒・児童一人ひとりが人権の視点から「権利と責任」を認識し、情報活用能力を向上させるアプローチが不可欠です。生徒・児童の情報リテラシーを向上させ、情報に対する判断力や処理能力、管理能力を高めるとともに、人権意識の向上を図り、情報モラルの涵養に努め、生徒・児童が誤った情報や有害な情報に惑わされることなく、必要な情報を自ら取捨選択し、社会的なルールやマナーを尊重して情報発信できる能力を身につけるため

情報リテラシー

情報や情報機器を主体的に選択し、活用するとともに情報を積極的に発信することができる知識や能力

情報モラル

情報社会において適正な活動を行うための基となる道徳や倫理、人生や社会に対する精神的態度や規範的意識

の取り組みが求められています。

人権教育プログラムをより効果的に進めるためには、情報交換、経験交流を行う必要があります。幼稚園・小学校・中学校・高等学校でプログラム実施に伴う情報交換などを行い、連携を深めることも有効です。

2002年（平成14年）には、国が策定した「人権教育・啓発に関する基本計画」において、学校における指導方法の改善を図るため、人権教育の充実に向けた指導方法の調査研究や情報収集を推進する必要性が謳われ、2003年（平成15年）に人権教育の指導方法等に関する調査研究会議が設置されました。同会議は、2004年（平成16年）6月に「人権教育の指導方法等の在り方」について第1次とりまとめを公表し、人権教育の目標を「自分の大切さとともに他の人の大切さを認めることができ、それをさまざまな場面等で態度や行動に現れるようにすること」と示し、その後、2006年（平成18年）1月に第2次とりまとめ、2008年（平成20年）3月に第3次とりまとめを公表し、人権教育の指導方法等の工夫・改善のための理論的指針を提供し、その具体的な実践事例等を示しています。本市においても、この報告内容を活用して、人権教育に取り組んでいます。

ii 生涯学習としての人権教育

単位制高校、専門学校など義務教育後の就学形態の変化、また、人々の価値観の多様化、高齢社会の到来、余暇時間の増大などにより生涯学習の重要性が増す中で、1992年（平成4年）に生涯学習審議会答申において「生涯学習社会の実現」が打ち出され、現代的学習課題の一つとして人権が示されました。この中で生涯学習社会とは、「人々が生涯いつでも自由に学習機会を選択して学ぶことができ、その成果が適切に評価されるような社会」と記されています。さらに1999年（平成11年）に同答申として「生涯学習の成果を幅広く生かす」ことが述べられ、個人のキャリア開発、ボランティア活動の推進、生涯学習による地域社会の活性化の推進等の提言がなされました。本市では、2006年（平成18年）に「堺市新生涯学習推進プラン」を策定し、「生涯学習社会」の実現に向けて、本市における生涯学習推進の総合的かつ基本的な指針を明らかにしています。

あらゆる生涯学習は、人権尊重の基盤の上に存在するものであり、また、生涯学習によって人権が尊重される社会の実現が可能になります。学習は生活の場を広げるとともに、人生における選択の幅を広げていきます。学習によって人は成長し、よりよい社会となっていくのです。

人々が生涯を通じて学習し、学習を通じてふれあうことで、人権尊重の心を育み、市民一人ひとりの人権が尊重され多様な価値観を

認め合うことのできる社会となるよう、学習環境づくりに取り組んでいかななくてはなりません。

また、人権教育には、いつでも常設の展示物に接することができる場を設け、人権や平和について身近に学習する機会をつくることも重要です。本市では、2006年(平成18年)4月に舳松人権歴史館(旧称:舳松歴史資料館)と平和と人権資料館をリニューアルオープンして展示内容を拡充し、市民等の積極的な利用促進を図っています。

さらには、生涯学習として人権教育を実施する主体である各個人や団体、機関、行政などの間にネットワークを構築し、有益な情報や経験を確認し、分かち合うことも重要です。このようなプロセスにより人権教育教材、指導方法などの開発、改善が期待されます。

iii 企業の取り組み

これまで企業活動に持続可能な発展を求める議論は、地球環境問題についてなされてきましたが、今日では、人権問題や社会問題などを含んだ社会的側面についても議論されています。

企業と何らかの利害関係を有する主体(ステークホルダー)の範囲は、これまでの顧客、株主、雇用者、取引先だけでなく、地域住民、求職者、投資家、金融機関、政府や行政にまで拡がり、これらのステークホルダーとそれぞれとの関係をこれまで以上に大切に、具体的かつ実効性のある配慮行動が求められるマルチ・ステークホルダー・エコノミーと呼ぶべき時代が到来しています。

こうした流れを受けて、企業の長期的な安定性や成長性を企業の社会的責任(CSR)の観点から評価をして投資する社会的責任投資(SRI)も広まりつつあります。SRIの評価は、企業単体で完結するものではなく、系列企業、取引企業、仕入企業にまで及ぶものであり、これは、経済活動の地球的拡大が進む大企業ばかりでなく、中小の企業も社会的責任を全う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意味します。

社会的責任の中で世界的に等しく大きな位置を占めるものの一つが「人権尊重の概念」です。「人権教育のための国連10年」で世界人権宣言、国際人権規約などの国際人権基準の普及と実施に力点をおいてきた努力は、その重要性を増してきています。

今後はさらに企業は、それぞれ関係を有するさまざまなステークホルダーに対して人権尊重の精神を具体化する活動を行う必要性があります。そのためには、個々の企業が主体的に人権に関する行動規範(国際人権基準レベルのもの)を持つ必要があり、経営者、従業員ともどもその規範に基づき社会的責任を果た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社会システムの中で企業の占める割合は高く、人権尊重社会を構

社会的責任投資(SRI)

企業を評価する基準に財務面だけでなく、企業の社会的責任の実践を取り込む投資方法。例えば、財務的な評価を前提として、新たな評価基準として企業統治、マーケット(消費者対応、調達先対応)、雇用(雇用責任、人権)、環境、社会的貢献などがあげられる。

築するためには、企業の動きが重要性を有しています。私たちは、企業を取り巻く新たな動きであるCSRの高まりに呼応して企業活動を評価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

堺市人権教育推進協議会企業部会は、公正採用選考をはじめ差別のない社会をめざして、参画企業が主体となりさまざまな啓発活動を展開しており、人権尊重の普及・促進に多くの実績と経験を有しています。従って、企業が人権に関する行動規範を作る際にも多くの有益な示唆、援助をすることができる可能性を有しています。

iv 人権推進団体との連携

本市には、数多くの人権推進団体が人権課題解決のために積極的な活動を展開しています。

その中の一つである堺市人権教育推進協議会は、あらゆる差別を撤廃することを市民自らの課題として捉え、市民運動として人権教育を行い、差別のない明るいまちづくりをめざして1979年（昭和54年）に発足しました。同協議会は、市内の各種団体（36団体）、企業（542社）、宗教者（386法人）が参画し、多様な人権教育活動を展開しています。また、加盟する団体、企業、宗教においても、それぞれに即した人権教育を推進しています。

とくに、企業、宗教関係者においては、協議会の中に部会を設置し、独自の取り組みを行っています。企業部会は、公正採用選考人権啓発推進委員を中心に就職差別撤廃に向けた取り組み等、さまざまな啓発活動を推進しています。就職は、一人ひとりの人間にとって生活基盤の安定のためだけでなく、自己実現を図り、豊かで人間らしい社会生活を営む上で極めて大切なことがらです。基本的人権を尊重した公正な採用選考が行われ、就職の機会均等が保障されることは重要な意義を持っています。

宗教部会においては、宗教が個人の内面活動にアプローチしていくことから、宗教者の人権教育活動は、大きな伝導性を有しているという特性を生かして宗教、宗派の違いを越えて活動しています。

人権文化を構築するためには、広範な市民参画を得てそれぞれの日常生活に人権尊重を当然のこととする意識を浸透させていくことが肝要です。市民主体で組織された堺市人権教育推進協議会をはじめ、各人権推進活動団体は、人権教育施策を展開していく中で欠くことができないパートナーであり、今後とも連携を深め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

v NGO・NPO等との連携

私たちが生きている社会を本当に暮らしやすい、すべての人がい

きいきと輝いて生きることのできる社会にしていくためには、行政のみならず、企業やNGO（民間の非政府組織）、NPO（民間の非営利団体・グループ）との連携は不可欠です。環境破壊、戦争、飢餓、貧困等人権問題と関係ある取り組みには、NGOやNPOがそれぞれに特色ある活動を展開しています。これは世界的流れであり、「人権教育のための国連10年」やこれからの「人権教育のための世界プログラム」の策定にもその存在が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ます。

本市では、2003年（平成15年）に「市民活動団体との協働マニュアル」を作成し、行政と市民活動団体との連携に努めていますが、今後はさらに地域での人権教育の推進にこうした人たちが市民活動団体の特色でもあるそれぞれのミッション性（社会的使命性）、先駆性を発揮しながら草の根人権教育の実施主体として大きな役割を担っていることを踏まえ、人権教育の一層の効果的な実施を図る観点から連携を強化し、人権教育に関する情報等が相互に交換できるようにしていきます。

vi マスメディア等との連携

新聞、テレビ、ラジオ等マスメディアを通じた情報提供は、広い範囲にわたって多くの人に情報を伝達することができるうえ、さまざまな手法を使って効果的に発信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特性を持っています。

また、インターネットも随時、更新できたり、大量の情報を提供できるなど、今後も情報伝達においてますます重要度が高まると考えられます。

一方で、マスメディアは、世論の形成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ことから、マスメディア関係者は、報道等で個人の名誉を傷つけたり、プライバシーを侵害したりすることのないよう、人権の視点から報道を行うことが求められます。

高度情報化社会の中、マスメディアは、人権尊重社会を形成していく上で、極めて大きい役割を持つことから、各メディアと連携し各種媒体を活用して人権に関する情報提供を積極的に行い、人権教育・啓発を推進していきます。

⑤ 人権の重要課題への積極的な取り組み

人権教育を推進していく上で被差別の立場にある人々の人権を重視していくことは、人権尊重社会の構築のために必然的な手順です。

本計画では、人権の重要課題として「同和問題」、「女性の人権」、「子どもの人権」、「障害者の人権」、「高齢者の人権」、「外国人の人権」、「高度情報化社会に伴う人権」、また「さまざまな人権」として、特定の病気（HIV感染症、ハンセン病等）に関わる課題、刑を終えて出所した人、犯罪被害者、性的マイノリティ（同性愛、両性愛、性同一性障害、先天的

に身体上の性別が不明瞭であるインターセックス等)、野宿生活者、自殺問題、北朝鮮による拉致問題、アイヌ民族、婚外子、沖縄出身者、クローン問題、環境問題等をあげています。

それぞれの人権の現状と課題については、課題別に取り組む施策で記していますが、人権教育にあたっては、これら人権の固有の問題点からアプローチする学習とともに「法の下での平等」、「個人の尊重」といった普遍的視点からアプローチしていく学習にも留意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また、知識面ばかりでなく、価値観、信念、態度、行動の各次元で人権教育を推進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このようなプロセスで推進される人権教育は、急速な生活環境の変化や社会の進展とともに人権問題が多様化、複雑化し、さらに新たな問題が発生したときに、思い込みや先入観の排除など人権侵害の予防につながる態度を育むことができます。

⑥ 職員などへの人権教育の推進

人権教育の推進にあたっては、本市職員の姿勢が市民、企業、各種団体などへ与える影響が大きく、職員一人ひとりの自覚と指導力を高め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本市では、職員に対して人権主体者を中心とした職場研修をはじめ、さまざまな研修の場で人権教育を積極的に実施しています。

市町村行政は、まさにゆりかごから墓場までといった市民のライフサイクルと密接に関わっており、人権の視点に立って行政施策を企画・立案・実施す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ます。人権行政は、特定の部局のみが実施するものではなく、福祉、教育、医療、住宅、道路整備などすべての行政分野において、すべての職員が市民の立場に立って人権行政を遂行する責任を有しています。

職員一人ひとりが人権尊重意識に根ざした生き方を確立し、市民の立場から仕事を見直す姿勢を持ち、より高度な施策や事業の展開ができるように働きかけています。その中でもとくに教育部門・福祉部門・衛生医療部門・消防部門等は市町村行政の中でも人権に関わりの深い職域であり研修の充実に努めます。

また、就学前教育・学校教育は、人権意識を育み、培う場であることを踏まえ、人権意識の向上と効果的な人権教育を推進するために保育所(園)職員・教職員の人材の育成や指導力の向上を図ります。

5 人権擁護を図る施策

1 被害救済の必要性

すべての人が人権を尊重され、安心して暮らすことのできる社会の実現のためには、人権教育と並び人権侵害に対する実効的な救済を図ることは、重要な課題です。

現在、わが国において、人権侵害に対しては、司法的救済や個別法に基づく行政的救済等により対応が図られているところですが、人権侵害事例は、多様かつ緊急性を有するものも少なくありません。今後さらに人権侵害に対する救済を充実させるためには、被害者の視点から、簡易・迅速で利用しやすく、柔軟な救済を行う国内人権機関を設置した人権救済制度の確立が求められています。

2 人権相談

① 人権相談の意義

人権救済制度の具体的役割の一つが、人権侵害の被害者からの相談に応じることです。人権相談は、被害者が自ら守ることが困難な状況におかれている差別、虐待といった人権侵害の態様に着目して対応するものです。

2001年（平成13年）に国の人権擁護推進審議会より「人権救済制度の在り方について」の答申が出され、この中で「相談は、適切な助言等を通じて、人権侵害の発生や拡大を防止し、当事者による紛争解決を促すなどそれ自体が有効な救済手法である」としています。人権相談は、より積極的な救済手続きへの導入機能や他の救済に関わる制度等を利用すべきものについて、紹介・取次ぎ機能を有しています。

② 人権相談窓口の役割

人権相談は、人権救済のために直接的に相談者に行政サービスを提供するものではなく、相談内容に応じた必要とする情報を提供することやサービスの実施機関や制度に的確に導くことです。人権相談窓口は、あらゆる人権侵害について、その救済のための窓口となり、救済の道筋を示すことが求められています。改めて人権相談窓口の役割を整理すると以下のとおりです。

○人権相談窓口の役割

- A) 人権に関する情報の提供
- B) カウンセリング機能
- C) ケースワーク機能

また、次の点に留意しながら相談窓口を設置・運営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

ア. 身近な相談窓口

被害者の救済に関わる専門の相談機関が置かれている分野のみならず、あらゆる人権侵害を対象とする総合的な相談サービスを提供するためには、市民がいつでも、どこでも、だれでも、気軽に相談できるように、身近なところに人権相談の窓口を設置することが必要です。本市では、この視点から各区役所及び人権ふれあいセンターにおいて人権相談窓口を設置しています。

イ. 相談者のエンパワメント

人権侵害の被害者となった市民が自らの抱える問題を整理し、問題解決に向け、自らは何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を考え、答えを導き出せるようにすることは、人権相談の大きな目的です。相談者自身のエンパワメントに留意することは、重要な視点です。

③ 人権相談ネットワーク

人権相談は、積極的な救済手続きへの導入機能や他の救済に関わる制度等を利用するべきものについては、紹介・取次ぎを行うことであり、このためには、システムとして各相談窓口との密接な連絡調整と事例集積に努めることが必要です。また、複雑化した社会の中で、相談事例も単一の窓口では対応できないケースもあることから相談窓口のネットワークは必要不可欠です。

本市においても、各相談窓口と子ども相談所、保健福祉総合センター、学校、堺市人権地域協議会等各関係機関との連携を強化し、効果的、効率的な相談ネットワーク機能の充実を図っていくことが必要です。

④ 相談窓口担当者の資質向上

相談窓口担当者は、それぞれの人権問題とその解決に関する専門知識の取得が必要です。さらに相談自体がカウンセリングの機能を果たすことから、そのためのスキル習得も要求されています。このため、相談窓口担当者に対する体系的な研修を実施するなど、日常的に窓口担当者の資質の向上に努めていくことが必要です。また、これらの業務は、従事者の多大な精神的負担を伴うことになるので、カンファレンス会議等の開催により従事者の精神的負担の分散化にも心がけることが重要です。

また、人権相談窓口は、人権に関わる悩みや心配事など相談者の個人情報に関することから取り扱うことから、相談業務を通じた秘密の保持に対しては、とくに厳格であることが求められます。他機関への紹介などに際しても各相談窓口担当者は、相談者本人の了解を受ける必要があります。また、報告書への記述についても相談者が特定できる情報を削除する必要があります。このような秘密の保持は、相談者自身の個人情報の保護措置ですが、このような措置が人権相談システム自身の信頼性の保持にもつながります。

⑤ 人権施策へのフィードバック

さまざまな分野の人権の課題に対応し、人権侵害を未然に防止するための人権施策を推進するために、人権相談に寄せられた事例から市民ニーズを把握し、それらの情報を人権施策推進本部や人権施策推進審議会等に報告し、各施策にフィードバックすることによって今後の人権施策をより効果的に推進していくことが可能になります。また、新たな人権の課題の発見も期待され、対応する人権施策を延滞することなく実施することができます。

6 国際平和への貢献を図る施策

1 国際平和貢献への自治体の役割

ガバナンス支援

その国が安定して発展するために、その国の資源を効率的に、また国民の意思を反映するかたちで、投入、配分、管理できる社会づくりを支援すること。

平和とは戦争のない状態はもちろんのこと、すべての人びとの人権が尊重され、地域社会で安心して幸せに生活できる状態のことを言います。

近年、ヒト、モノ、カネ、そして情報などが国境を越えて盛んに行き来し、国際社会の相互依存がこれまで以上に強まってきています。それに伴って、地域的な紛争、テロや感染症（HIV/AIDS、SARS等）などの脅威が、国境を越えて、今まで以上に人々を脅かすようになっていきます。

平和市長会議

世界の都市が緊密な連携を築くことにより、核廃絶の市民意識を国際的な規模で喚起し、核廃絶の実現をめざすとともに、飢餓、貧困、難民、人権、環境などの諸課題の解決に努め、世界恒久平和の実現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設立され、活動している。
加盟都市数134カ国・地域2,963都市
(2009年(平成21年)7月1日現在)

こうした新しい様相を見せる深刻な世界の状況に対応するためには、国家の安全保障のように国を単位とした従来の枠組みだけでは不十分であり、人々に直接焦点を当てた人間の安全保障すなわち「人間の生にとってかけがえのない部分を守り、すべての人の自由と可能性を実現すること」が今日必要となってきています。

国連では、平和構築の概念は、紛争予防、平和創造そして復興支援までを網羅する全体的なアプローチであり、基本的には、国家の政策にかかわる重要な問題である多国籍軍や国連PKO等の軍事的枠組みや予防外交、軍縮、調停等の政治的枠組みに開発援助を加えた3本の柱による包括的な取り組みであると示されています。

開発援助を通じた平和構築への取り組みは、ガバナンス支援や人道支援、人間の安全保障の実現をめざす活動など、さまざまな主体による人権、福祉、保健、医療、教育、環境など幅広い分野にわたるものです。

ダーバン宣言・行動計画

国連主催で2001年(平成13年)に南アフリカ・ダーバンで開催された反人種主義・差別撤廃世界会議で、国際社会、国際機関、国家、企業や市民社会が人種主義、人種差別の撤廃、防止、被害者の保護、救済に向けてとるべき行動や措置などをあげた同宣言・行動計画を採択した。

平和、環境、貧困など地球規模の課題の解決に向けて、地球に暮らす一員として、日々の生活の中で考え、自分にできる身近なことから行動していく人々のことを地球市民と言います。そして、このような認識を持った市民の身近な活動も平和の実現に貢献していると考えられます。

国際社会の相互依存が進む中、地域住民と直接に接しながら、平和・人権尊重を基本として、地域における行政を広く担う地方自治体は、平和構築に関して国家とともに大きな役割があります。

現在においても、平和市長会議やダーバン宣言・行動計画などにも見られるように、世界では、都市の国際的な連帯のもと、平和構築に向けたさまざまな活動が進められています。

●●● 2 国際平和実現への取り組み ●●●●●●●●●●

本市では、平和社会の実現に向けて市民の意識向上や活動を推進するため、さまざまな取り組みを行っています。

1983年（昭和58年）には、非核平和都市宣言に関する決議を行い、非核平和都市として核兵器の廃絶をめざして市内の主な箇所に「人権擁護宣言都市」とともに「非核平和宣言都市」と表示した啓発標語塔を設置して啓発に努め、また、他の国が行った核実験に対してはその都度抗議文を送付しています。

また、平和と人権、環境についての常設展示を行う平和と人権資料館を設置し、市民が身近に学習する機会を提供しています。さらに、毎年8月には平和と人権展を開催し、戦争の悲惨さ、平和の尊さ、人権の大切さを広く市民に対して啓発展示しています。

また、交流などの活動を通して平和を促進する事業として、姉妹都市提携（姉妹都市2都市、友好都市1都市）、姉妹友好都市協議会への補助、外国青年招致事業、アジア留学支援制度などを実施しているほか、歴史文化交流会議を開催するなど、文化を通じて平和促進の取り組みを進めています。

さらに、貢献活動を通して平和を促進する事業として、高い国際感覚と人権意識を持った青年を育成するために設立され、発展途上国において国際貢献活動を行っているインターユース堺（IYS）に対して支援を行っています。

2007年（平成19年）には、堺市国際平和人権基金を設置するとともに、国際的な平和貢献活動を行った個人や団体を表彰する「自由都市・堺 平和貢献賞」を創設しました。

この賞を通じて、平和と人権尊重の重要性を国内外に発信するとともに、市民をはじめ多くの人に国際平和貢献や協力活動に対する理解や認識を深めていただき、国際貢献、国際協力活動を推進することを通じて、地方自治体として世界平和の実現に向けて貢献していきます。

7 計画の推進

1 推進体制の充実

ユネスコ（国連教育科学文化機関）

国連の経済社会理事会の下におかれた、教育、科学、文化の発展と推進を目的として、1945年（昭和20年）に採択されたユネスコ憲章に基づいて1946年（昭和21年）に設立された国連の専門機関。教育、科学、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等の分野における国際的な知的協力（専門家の国際会議、国際学術事業の調整、情報交換、出版など）及び途上国への開発支援事業を行っている。ユネスコでは、前述のダーバン宣言・行動計画を具体化するために、都市を単位とした「反人種主義国際都市連合」の結成を呼びかけ、2008年（平成20年）には、世界6地域で組

- ① 総合的な人権施策を積極的に推進するため、庁内の横断的組織として市長を本部長とし、各局（区）長で構成する「堺市人権施策推進本部」を設置しています。また、教育委員会においては「教育部会」を設置し、学校教育・社会教育等人権教育に係る施策を積極的に推進しています。
- ② 各部署が所管する民間部門団体や各種市民団体とも連携を深め、人権施策が市民の主体的な取り組みへと広がるよう働きかけるとともに、積極的な支持に努めます。
- ③ 平和や人権に関する各分野の有識者等で構成された「堺市人権施策推進審議会」の提言を得ながら、人権施策を推進します。
- ④ ユネスコ（国連教育科学文化機関）やユニフェム（国連女性開発基金）等の国連機関をはじめ、世界の都市や国内外のNGO、NPO等との連携、ネットワークの構築による情報交換、情報共有を進め、グローバルな視点をもった人権施策の推進を図ります。

2 人権意識調査結果の反映

織される都市連合からなる国際都市連合が結成された。

ユニフェム（国連女性開発基金）

国連世界女性会議の呼びかけに応じて1976年（昭和51年）、国連総会決議に基づき、国連女性の10年基金として設立され、1985年（昭和60年）に現在の名称に改められる。国連の中

人権意識調査は、「人権擁護宣言都市」にふさわしいまちづくりを推進するために、市民の人権課題全般に関する意識を把握し、今後の人権施策の方向性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1985年（昭和60年）からおおむね5年に一度実施し、これまで5回の調査を行いました。（第5回は、2005年（平成17年）に実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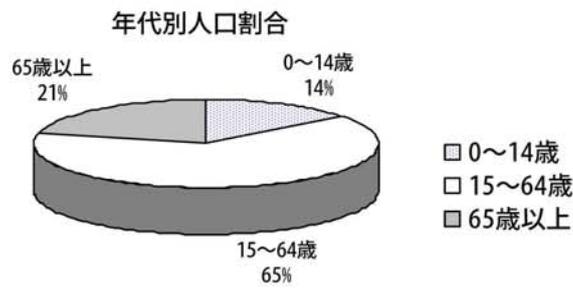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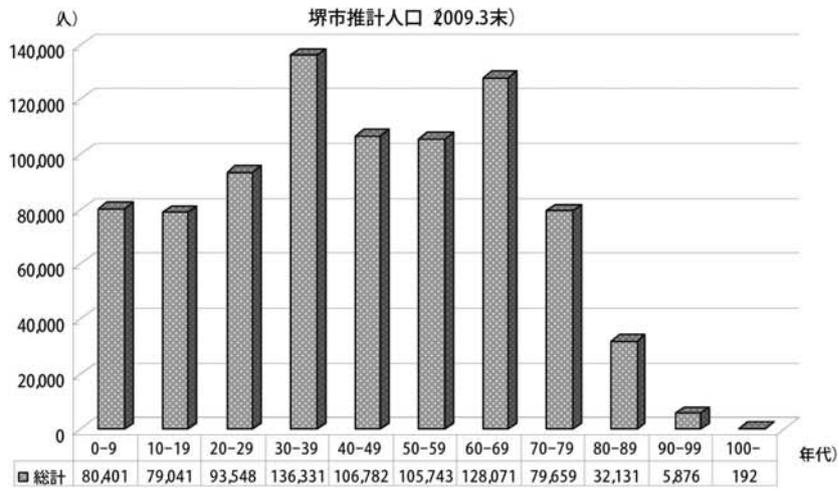
この調査で得られた市民の人権の課題に対する意識の推移を把握し、それぞれの課題を踏まえた人権施策の推進を図ります。

3 堺市平和と人権を尊重するまちづくり条例の推進

で国連開発計画（UNDP）と連携関係にある独立機関で、開発途上国の女性の自立支援を目的とす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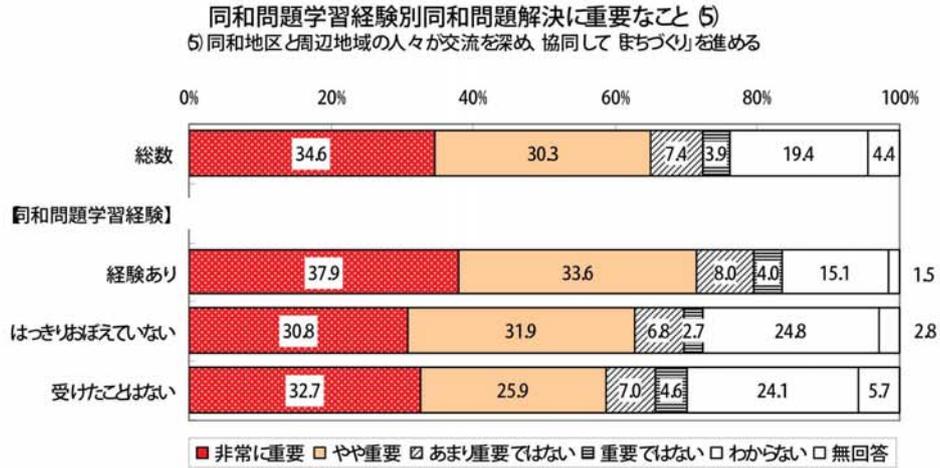
すべての人間が固有の尊厳を有し、かつ、基本的人権を尊重することは、人類普遍の原理であり、世界人権宣言及び日本国憲法の理念とするところです。

■堺市の人口構成



■同和問題

(1) 同和問題に関する府民意識



(2) 就業者の割合

	男		女	
	同和地区	大阪府	同和地区	大阪府
15～19歳	22.8%	20.5%	20.2%	18.3%
20～24歳	74.2%	72.6%	63.5%	69.4%
25～29歳	85.2%	92.5%	66.0%	55.6%
30～34歳	87.5%	94.9%	55.1%	47.1%
35～39歳	87.3%	95.8%	65.5%	52.7%
40～44歳	84.3%	96.1%	67.9%	58.8%
45～49歳	82.7%	95.7%	57.8%	64.0%
50～54歳	84.9%	95.5%	60.3%	59.5%
55～59歳	77.6%	92.9%	55.3%	51.5%
60～64歳	51.9%	65.9%	33.2%	35.6%
65～69歳	32.4%	47.0%	15.2%	21.8%
70歳以上	17.0%	27.9%	7.1%	10.6%

「同和問題の解決に向けた実態等調査」(大阪府：平成12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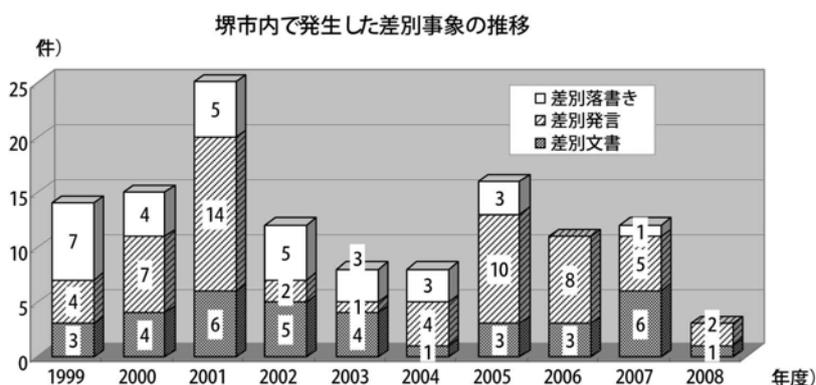
(3) 高校・高専の中退の状況（最終学歴高校卒業以上回答者及び高校中退回答者数）

	該当数	最終学歴高校 卒業以上	最終学歴高校 中退
総数	3,810 100.0%	3,265 85.7%	545 14.3%
18～19歳	153 100.0%	135 88.2%	18 11.8%
20～29歳	1,021 100.0%	879 86.1%	142 13.9%
30～39歳	966 100.0%	811 84.0%	155 16.0%
40～49歳	740 100.0%	637 86.1%	103 13.9%
50歳以上	930 100.0%	803 86.3%	127 13.7%

注) 18歳未満の回答者を除く

「同和問題の解決に向けた実態等調査」(大阪府：平成12年)

(4) 差別事象の状況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差別落書き	7	4	5	5	3	3	3		1	
差別発言	4	7	14	2	1	4	10	8	5	2
差別文書	3	4	6	5	4	1	3	3	6	1
合計	14	15	25	12	8	8	16	11	12	3
内訳※	部落差別	11	11	19	9	5	7	11	9	11
	障害者差別	1	1	1		1			1	
	外国人差別	3	3	6	3	3	1	3	2	2
	その他							2	1	

※ 1件の事象の中に複数の内容が含まれている場合はそれぞれにカウントしています

(堺市人権推進課)

■男女共同参画の状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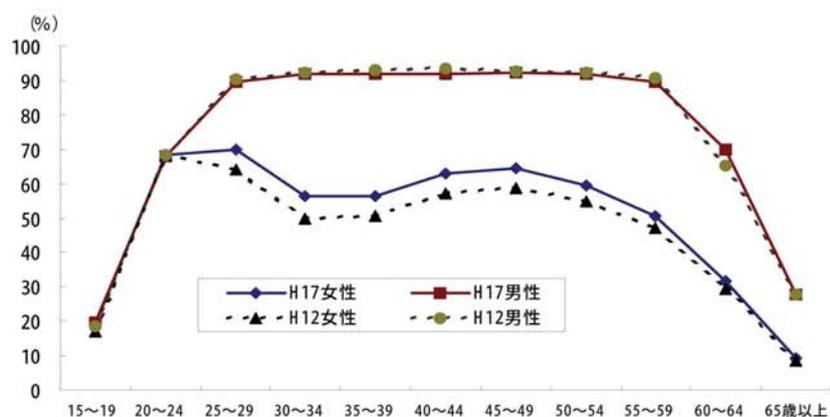
(1) ジェンダーギャップ指数順位 (2006~2008年)

本文15ページ参照

国名	2008					2007	2006
	総合	経済機会 ・参加	教育	健康	政治	総合	総合
ノルウェー	1	6	1	53	2	2	2
フィンランド	2	19	1	1	1	3	3
スウェーデン	3	5	33	75	4	1	1
アイスランド	4	20	61	96	3	4	4
ニュージーランド	5	7	1	69	6	5	7
フィリピン	6	8	1	1	22	6	6
デンマーク	7	28	1	97	10	8	8
アイルランド	8	48	1	81	8	9	10
オランダ	9	51	59	72	12	12	12
ラトビア	10	13	1	1	31	13	19
ドイツ	11	45	49	57	16	7	5
スリランカ	12	99	65	1	5	15	13
イギリス	13	42	1	69	21	11	9
スイス	14	54	88	56	11	40	26
フランス	15	53	1	1	18	51	70
レソト	16	21	1	1	33	26	43
スペイン	17	89	58	76	7	10	11
モザンビーク	18	1	121	59	17	43	-
トリニダード・トバコ	19	52	39	1	24	46	45
モルドバ	20	2	35	38	68	21	17
アメリカ	27	12	1	37	56	31	23
中国	57	43	87	126	54	73	63
日本	98	102	82	38	107	91	80
韓国	108	110	99	107	102	97	92
調査国数	130					128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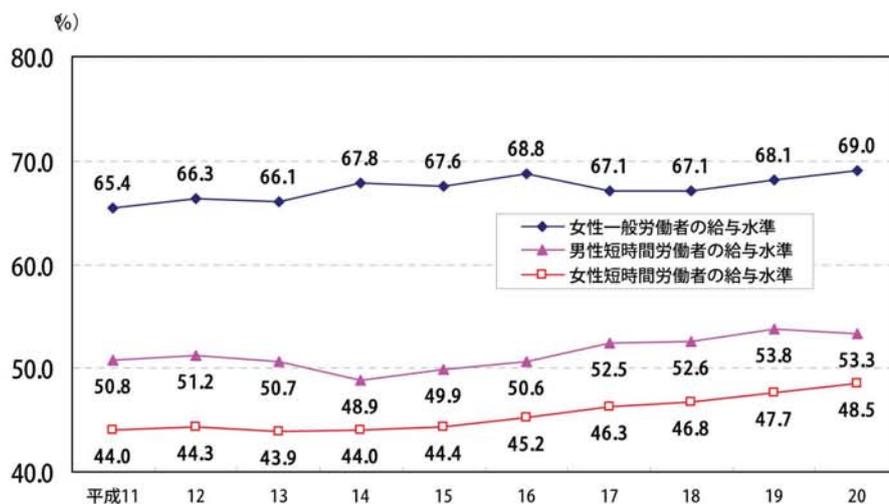
(世界経済フォーラム)

(2) 年齢階級別労働力率（堺市）



平成12年・平成17年 国勢調査

(3) 労働者の1時間当たり平均所定内給与格差の推移（男性一般労働者=100）（全国）



（厚生労働省「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4) 配偶者暴力に関する保護命令事件の処理状況



内閣府「男女共同参画白書」

■子どもの人権の状況

(1) いじめの状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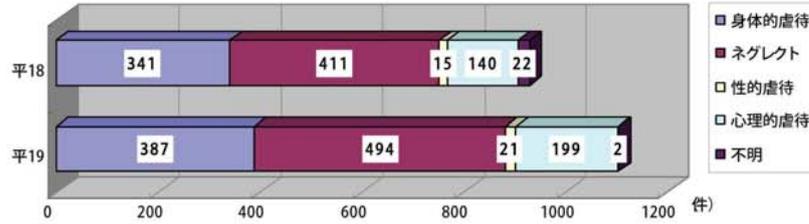


※平成18年度から文部科学省においていじめの定義が変更され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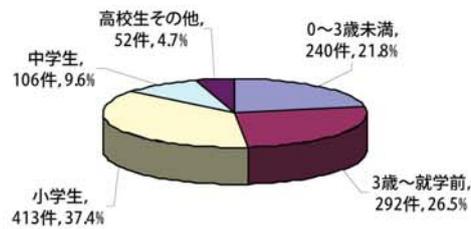
(大阪府青少年白書)

(2) 児童虐待の状況

各区保健福祉総合センター・地域福祉課 家庭児童相談室)における児童虐待相談件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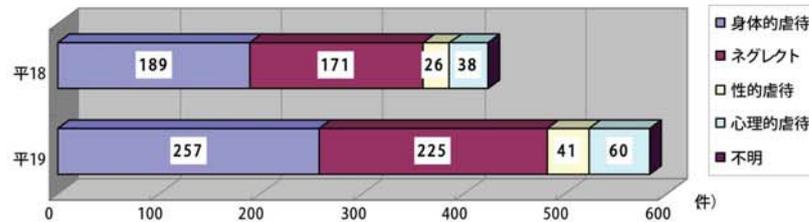


年齢別虐待相談内訳【2007年 平成19年）家庭児童相談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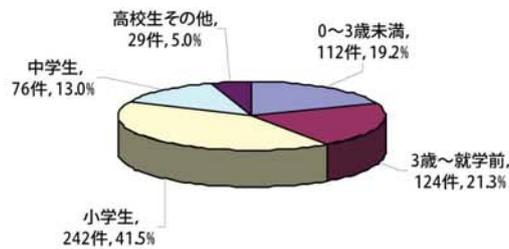


(堺市子ども家庭課)

堺市子ども相談所における児童虐待件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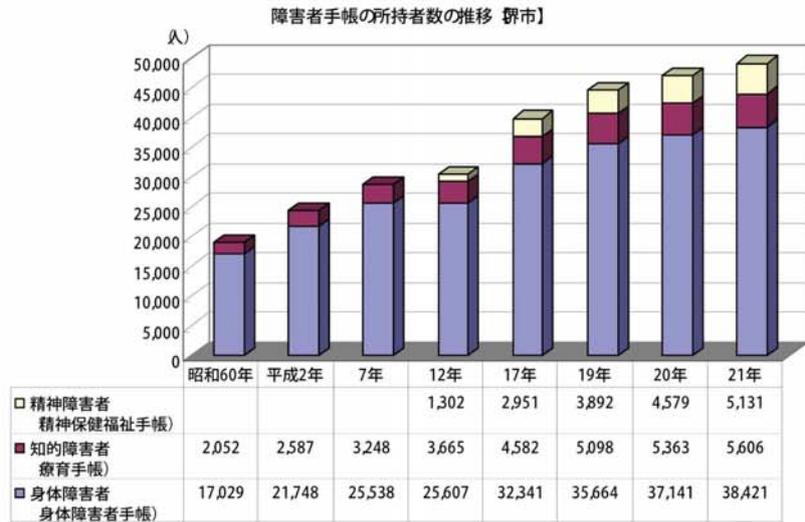
年齢別虐待相談内訳【2007年 平成19年）堺市子ども相談所】



(堺市子ども相談所 平成19年度事業概要)

■障害者の状況

(1) 障害者手帳の所持者数の推移



各年3月末現在

(堺市障害福祉課・精神保健福祉課)

(2) 障害者の雇用状況

民間企業における雇用状況 (法定雇用率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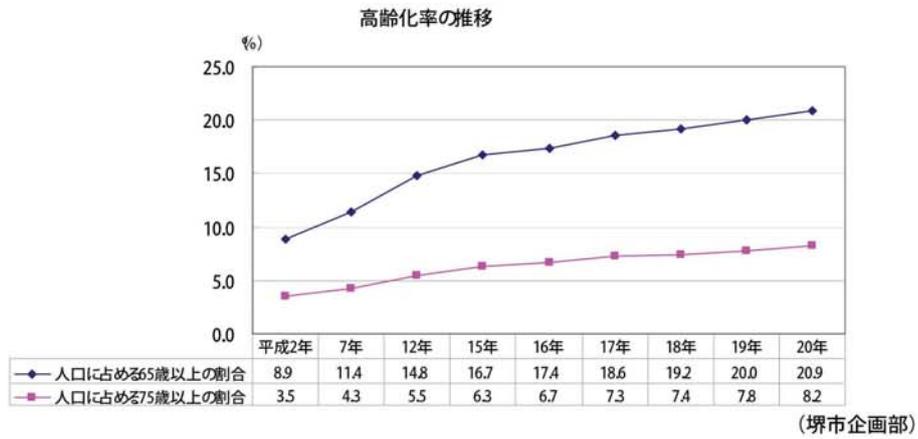
平成20年6月1日現在

	①法定雇用障害者数の算定の基礎となる労働者数	②障害者の数	③実雇用率	④法定雇用率達成企業の数	⑤達成割合
民間企業	20,499,012人 (19,504,649人)	325,603.0人 (302,716.0人)	1.59% (1.55%)	32,803/73,042 (31,230/71,224)	44.9% (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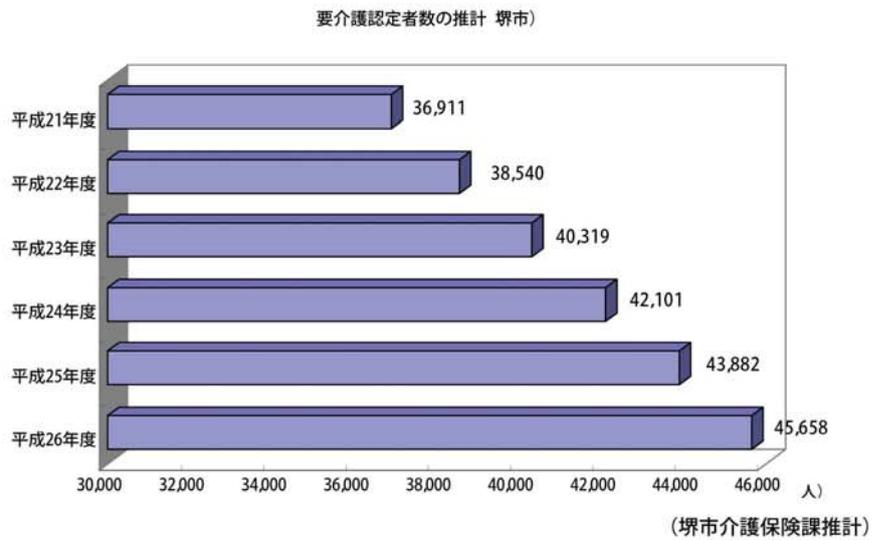
(() は平成19年6月1日現在 厚生労働省)

■高齢者の状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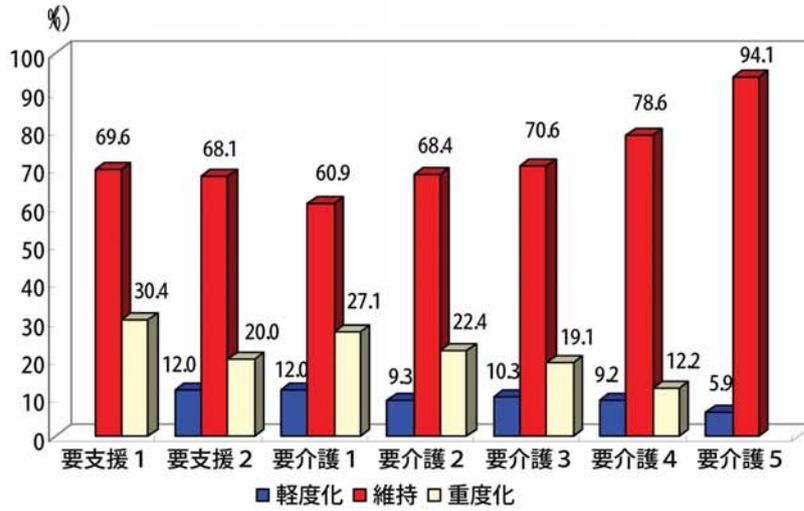
(1) 高齢化率の推移



(2) 要介護認定者の推計



(3) 介護保険年間継続受給者数の要介護(要支援)状態区分の変化別割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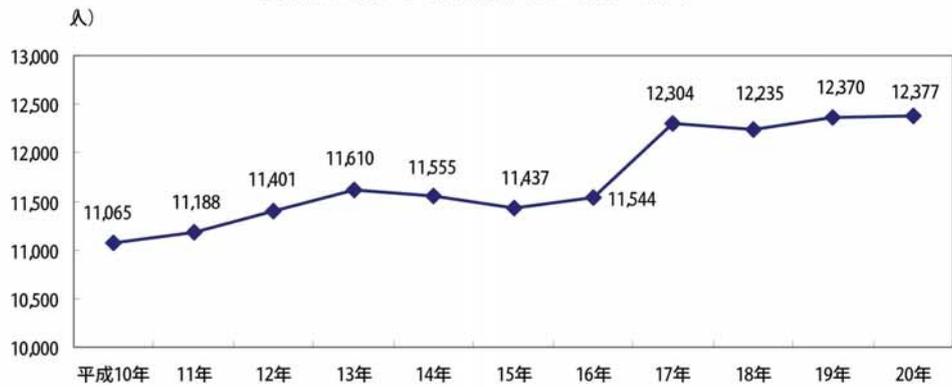


注：要介護 1 の軽度化は、平成18年4月の介護保険制度改正により要支援 2 へ移行した受給者を含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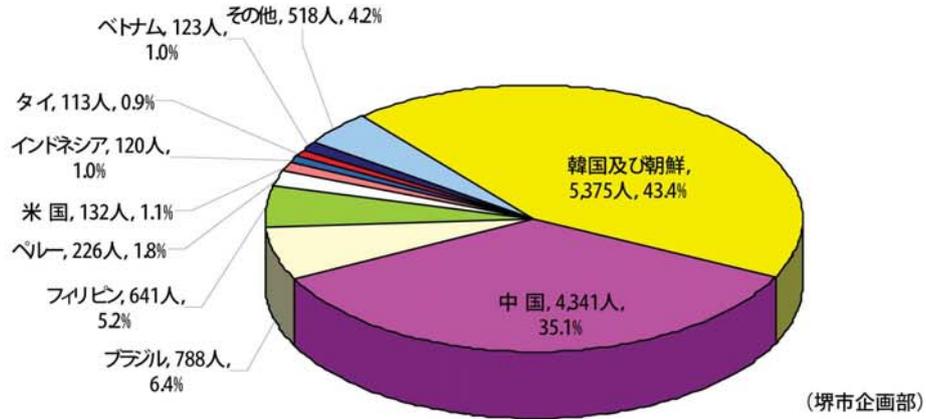
(厚生労働省：平成19年度 介護給付費実態調査)

■外国人の状況

外国人登録による外国籍住民の推移 (堺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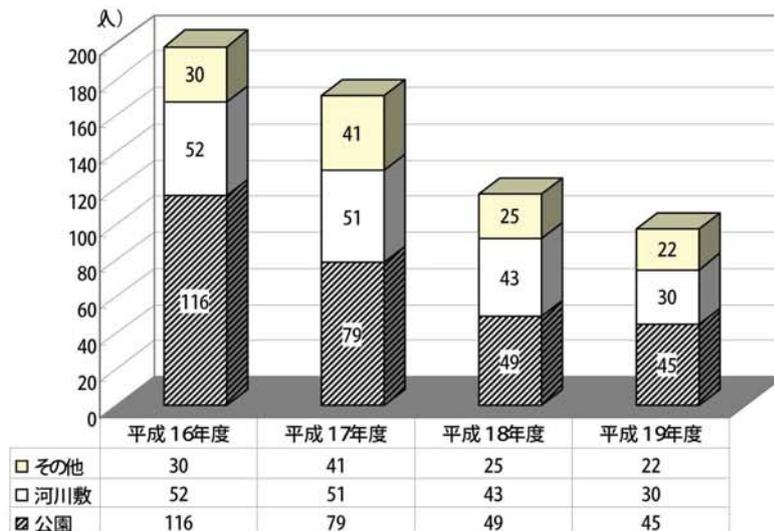


外国人登録による国籍別人口
[堺市 2008年(平成20年)12月末現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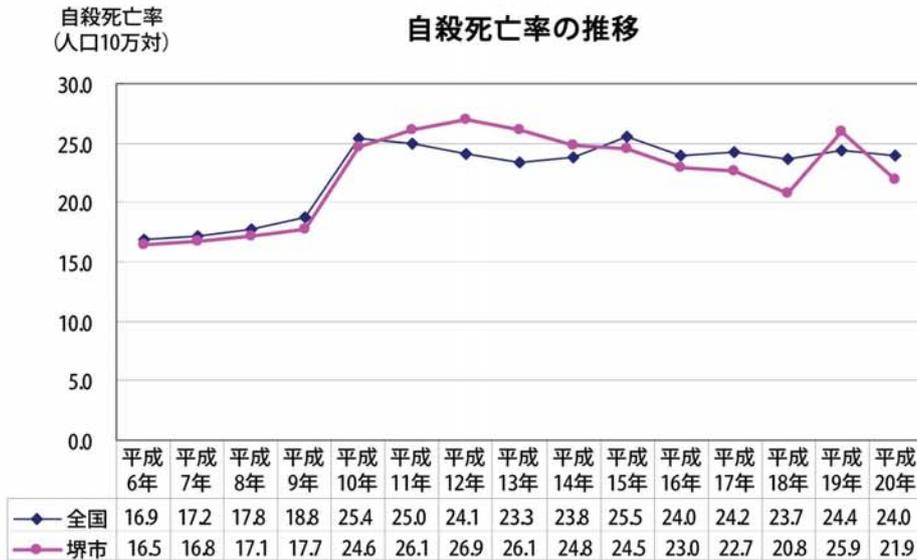
■野宿生活者の状況

堺市内の野宿生活者の推移



(堺市生活援護管理課)

■自殺者の状況



(堺市精神保健福祉課)

(資料引用出典)

堺市「堺市の統計」 http://www.city.sakai.lg.jp/city/info/_chosa/index.html

堺市「ビジョン・プラン」 <http://www.city.sakai.lg.jp/shisei/vision.html>

堺市「例規集」 http://www.city.sakai.lg.jp/reiki/reiki_menu.html

大阪府「同和問題の解決に向けた実態等調査」 <http://www.pref.osaka.jp/jinken/measure/index.html>

総務省「国勢調査」 <http://www.stat.go.jp/data/kokusei/2005/index.htm>

総務省「労働力調査」 <http://www.stat.go.jp/data/roudou/index.htm>

厚生労働省「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http://www.mhlw.go.jp/toukei/itiran/roudou/chingin/kouzou/detail/index.html>

内閣府「男女共同参画白書」 <http://www.gender.go.jp/whitepaper/whitepaper-index.html>

ジェンダーギャップ指数報告書(世界経済フォーラム) <http://www.weforum.org/pdf/gendergap/report2008.pdf>

厚生労働省「障害者の雇用状況」 <http://www.mhlw.go.jp/bunya/koyou/shougaiasha02/index.html>

厚生労働省「介護給付費実態調査」 <http://www.mhlw.go.jp/toukei/saikin/hw/kaigo/kyufu/07/index.html>

第5回堺市人権意識調査結果（概要）

■調査の目的

「人権擁護宣言都市」にふさわしい人権が尊重されるまちづくりを推進するための、市民の人権に関する意識の現状を把握し、今後の人権教育・啓発推進の方向性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調査の概要

- ①調査地域 堺市内全域
- ②調査対象 市内在住の16歳以上の男女
- ③標本数 6,000人
- ④抽出方法 各支所ごとの人口比率に合わせ住民基本台帳及び外国人登録原票から無作為抽出
- ⑤調査方法 質問紙による郵送調査法
- ⑥調査期間 2005年（平成17年）11月15日から11月30日
- ⑦回収結果

サンプル数	回収数	有効回収数	有効回収率
6,000	2,877	2,850	47.5%

- ⑧調査項目 (1) 社会意識について (2) 同和問題について (3) 男女平等について
(4) 子どもの人権について (5) 障害者の人権について
(6) 高齢者の人権について (7) 在日外国人の人権について
(8) さまざまな人権について (9) 人権啓発活動について
- ⑨調査機関 堺市市民人権局人権部人権推進課

第5回堺市人権意識調査報告書

http://www.city.sakai.lg.jp/city/info/_jinkenbu/info/research5.html

■社会意識について

【問1 伝統・慣習等に対する意識】

N=2,850

ア. 伝統や慣習に従う方が、よい結果となりやす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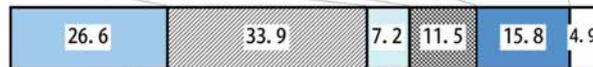
イ. 私は、自分が納得できないことは、たとえ皆が行っていても、やりたくない



ウ. 国が栄えるためには、個人の自由がある程度犠牲になっても、やむをえない



エ. 結婚式の日どりを決めるときに、仏滅の日は避け、大安の日を選んだ方がよ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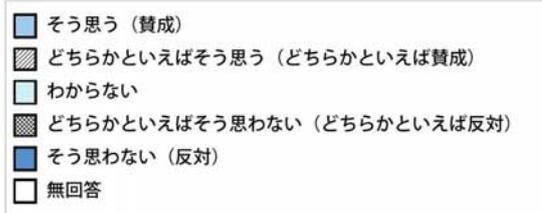
オ. 結婚相手を決めるときに、家柄についてこだわる



カ. 死はケガれていると思うので、葬式の時に清めの塩をまく方がよい



0 20 40 60 80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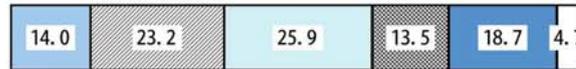


■ 同和問題について

【問5 同和問題についての考え方】

N=2,850

ア. 部落差別はいけないことだが、自分とは関係のない話である



イ. 同和地区の人々と、深く関わることはためらいを感じ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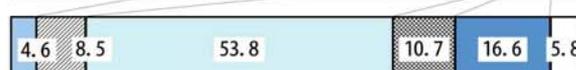
ウ. 今まで、差別されてきた同和地区の人々のくやしさを思えば、差別について厳しく追及するのも理解でき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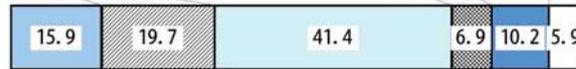
エ. 部落差別を許さない態度を身につけることは、他の人権問題にもプラスにな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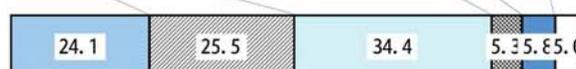
オ. 同和地区の人々には、差別されるくやしさを知っているだけに、人として思いやりがある人が多い



カ. 同和地区の人は何かあると集団でおしかけてくる



キ. 同和地区の人々は、「差別、差別」と言って、被害者意識が強すぎる



0 20 40 60 80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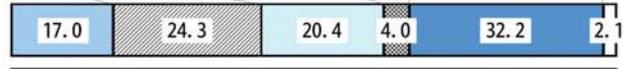
【問6 同和地区の方との結婚について】

N=2,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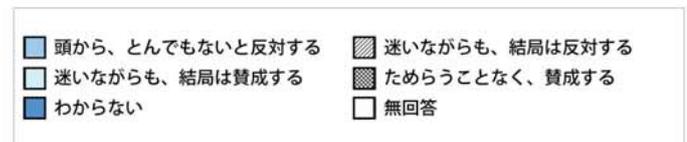
ア. 親としてとる態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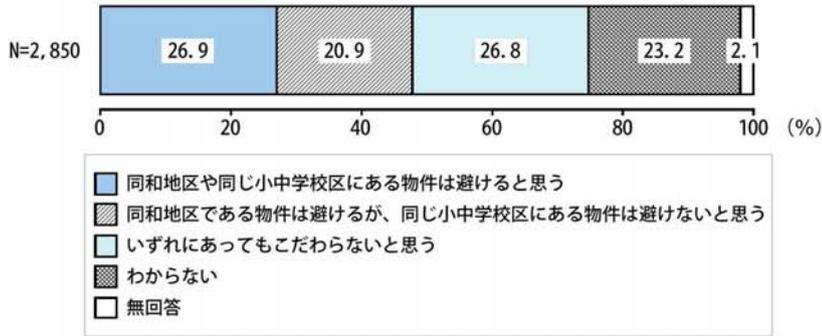
イ. 身近な親類がとる態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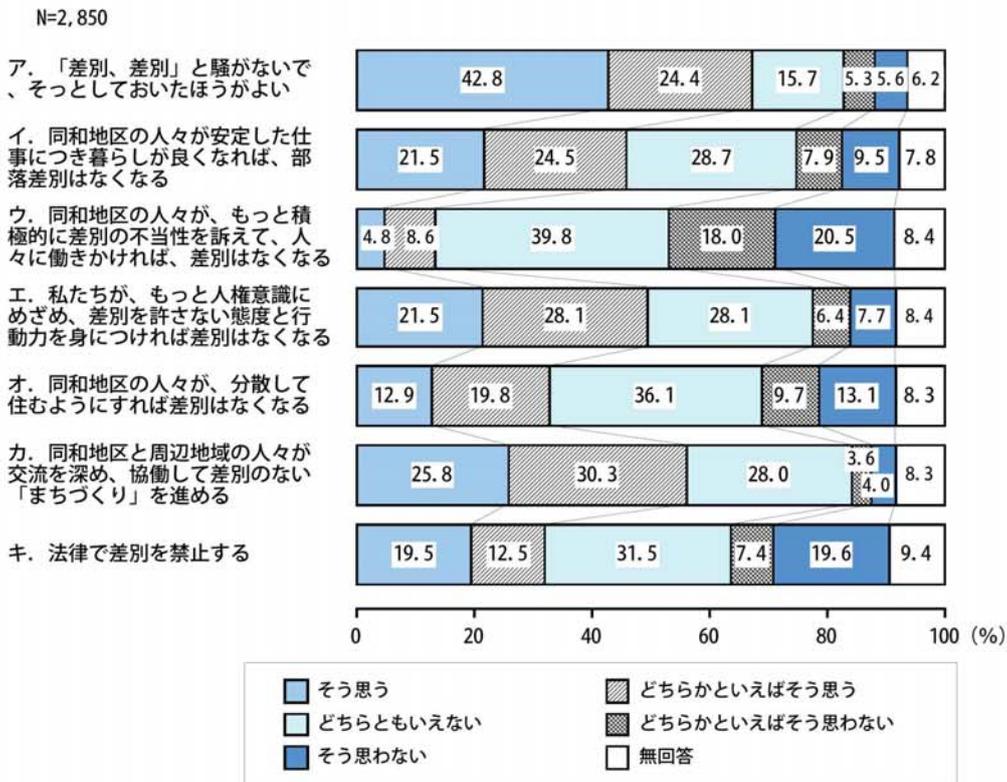
0 20 40 60 80 100 (%)



【問8 同和地区内で住宅を購入、賃貸するこ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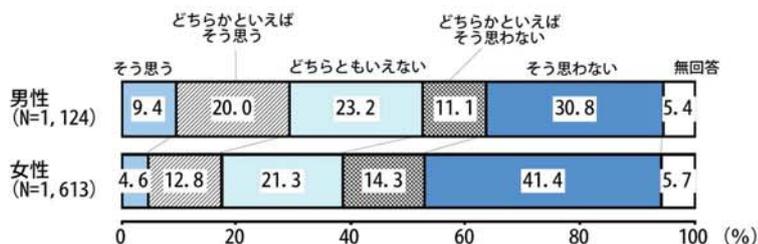


【問10 部落差別をなくす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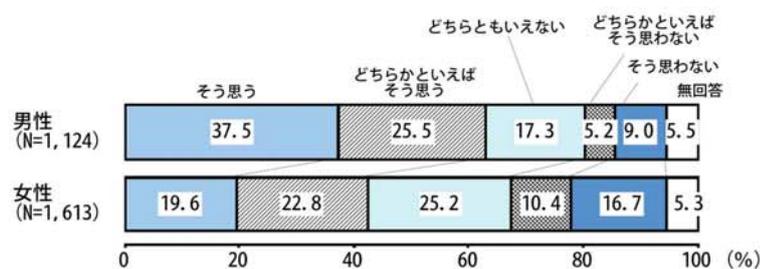


■男女平等につい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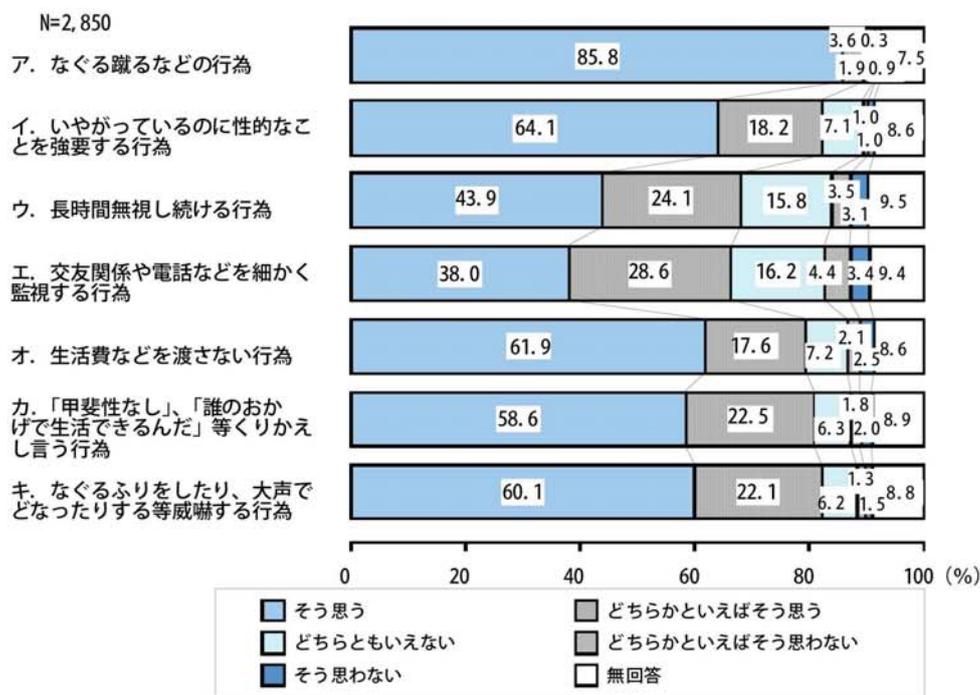
【問12 ア 男性は外で働き、女性は家で家事・育児をするものである】



【問12 カ 女の子は女らしく、男の子は男らしく育てた方がよ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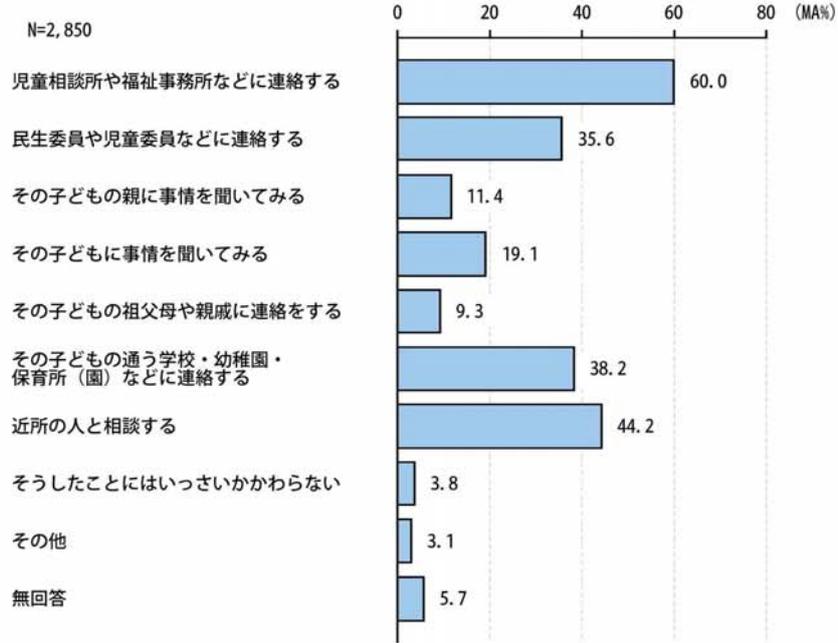


【問14 配偶者間で行われる暴力についての考え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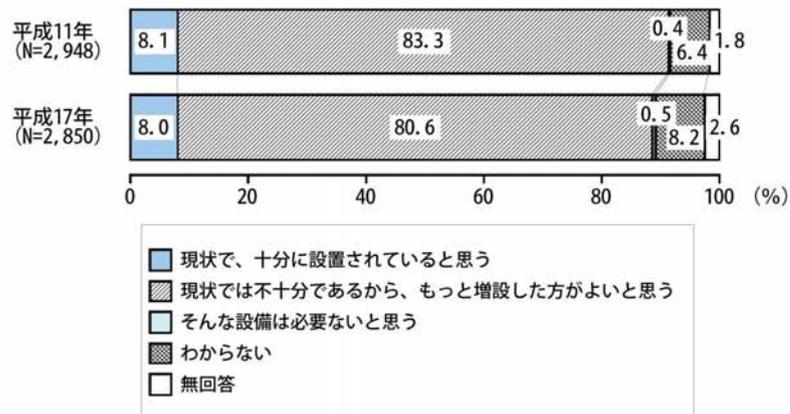
■子どもの人権について

【問18 子どもが虐待を受けていると知った場合の行動】



■障害者の人権につい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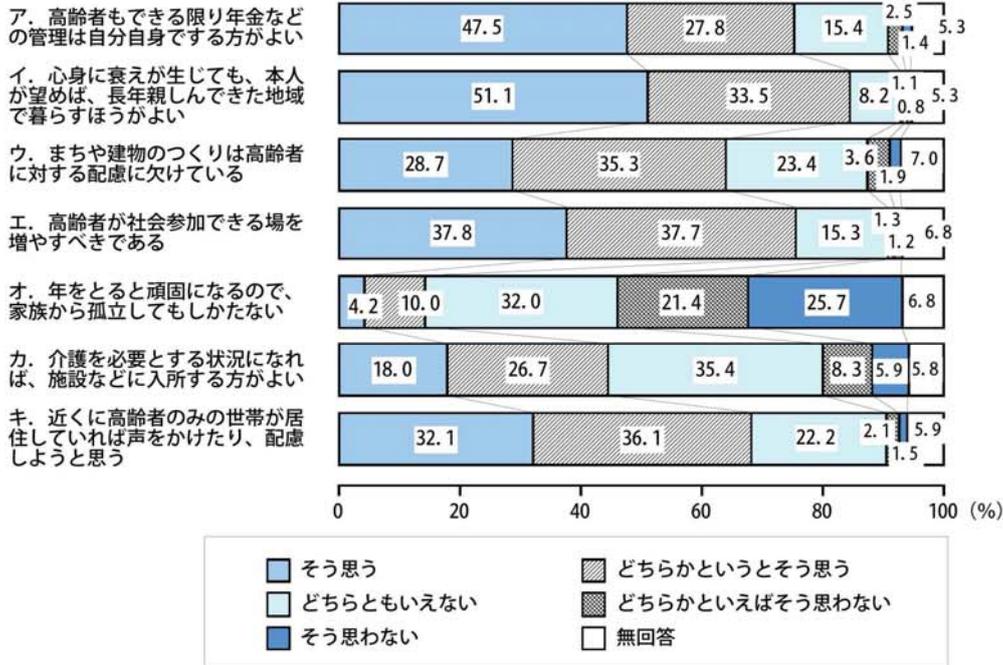
【問20 街なかでの障害者のための設備についての考え方】



■高齢者の人権につい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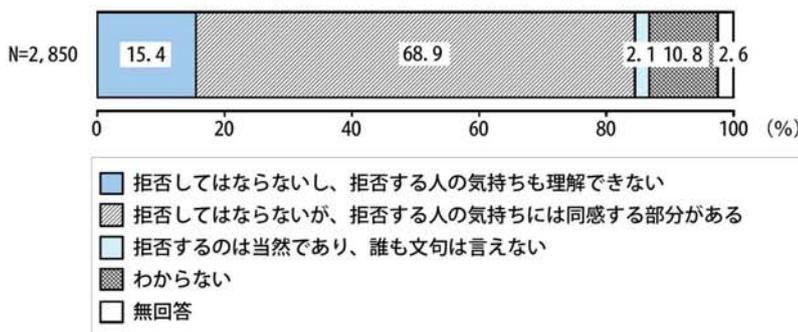
【問24 高齢者に対する各意見の考え方】

N=2,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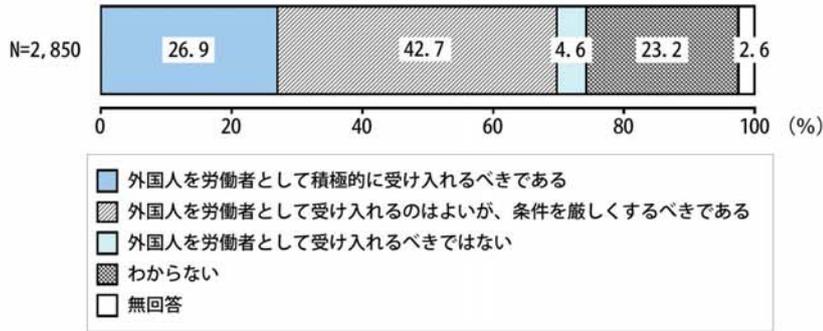


■日本に住む外国人の人権について

【問27 外国人に部屋を貸与する際に拒否することへの考え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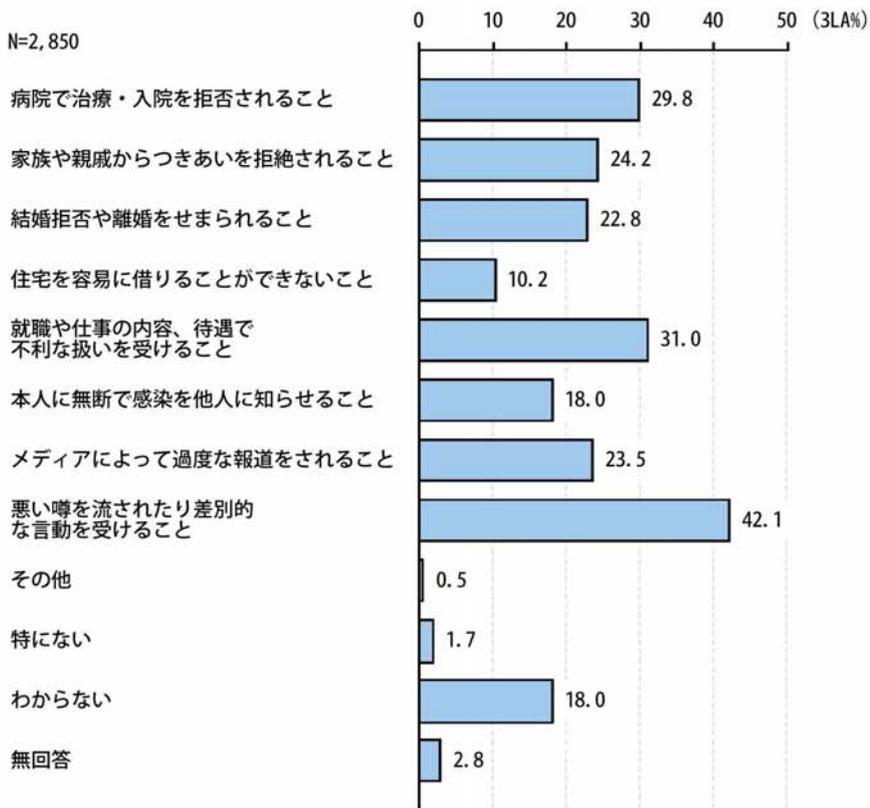


【問28 外国人を労働者として受け入れることについ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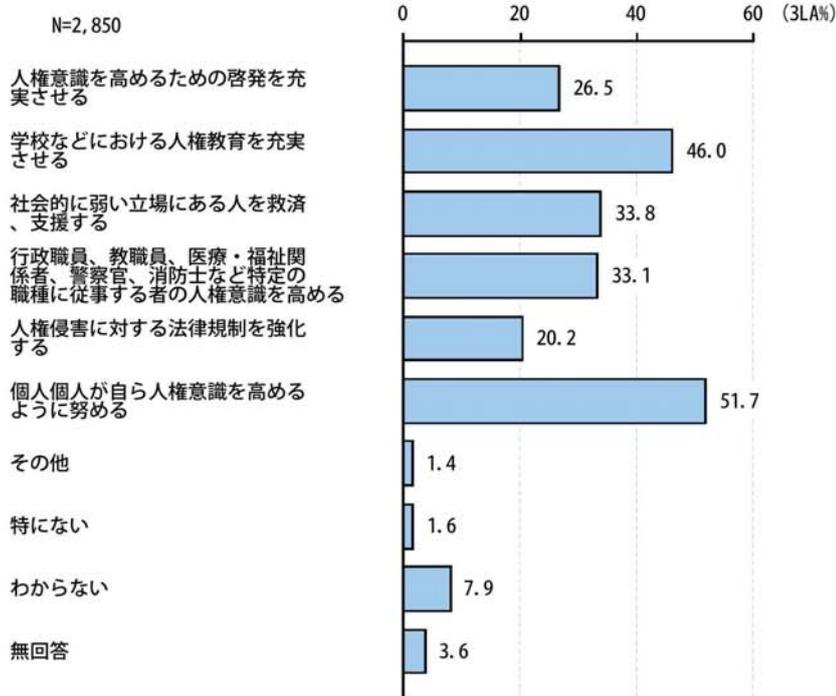
■さまざまな人権課題について

【問30 エイズ患者・HIV感染者、ハンセン病回復者などの
人権が尊重されていないと思うこ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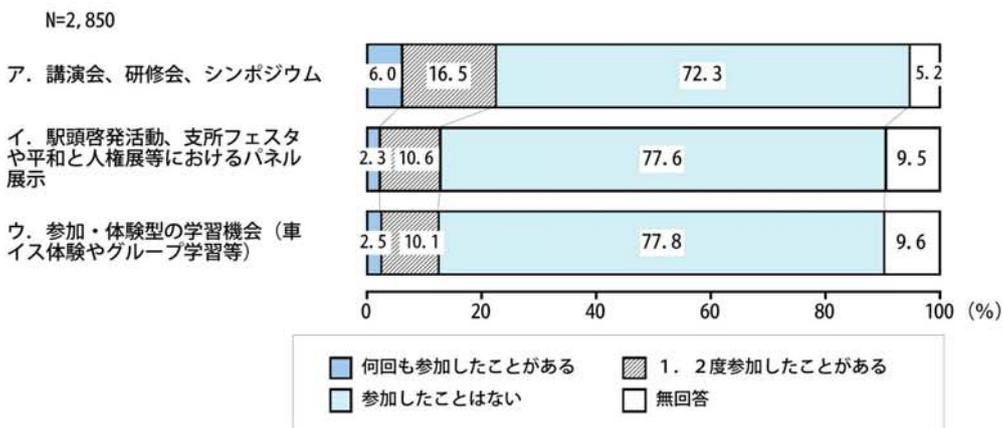


■ 人権問題の啓発活動について

【問32 人権が尊重される社会を実現させるために必要な取り組み】



【問33 人権問題の啓発活動への参加状況】



關係法令・宣言等

堺市人権施策推進基本方針

2003年（平成15年）策定

1 基本方針の策定趣旨

(1) 人権尊重の潮流

人類に大惨禍をもたらした第2次世界大戦の反省に基づいて、1948年12月10日第3回国連総会において、世界人権宣言が採択されました。この宣言の第一条で「すべての人間は、生まれながらにして自由であり、かつ、尊厳と権利とについて平等である」と記されており、初めて全世界のすべての人々の人権を守ることをうたったものです。

世界人権宣言以降、その精神を具体化するために、さまざまな人権条約がつくられ、また世界の人々にその精神を広めるために、1975年国際女性年、1979年国際児童年、1981年国際障害者年などが設定されました。

こうした流れの中で、1976年に発効した国際人権規約（いわゆる社会権規約・自由権規約）は、国際的に法的拘束力をもたせたことで重要な規約でした。1979年わが国は、この2つの人権規約を批准しました。

さらに、1994年第49回国連総会において1995年から2004年までを「人権教育のための国連10年」とする決議が採択され、同年「同行動計画」が報告されました。これは、人権文化で世界を満たそうとしているのが大きな特徴です。「人権教育のための国連10年行動計画」は、わが国においても、国レベル・都道府県レベル・市町村レベルで今現在、その取り組みがなされています。

1997年わが国において「人権擁護施策推進法」が施行されました。その第二条に国の責務として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人権救済施策が記されていることは、意義のあるものです。

この法律を契機として2000年「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が施行され、2002年「人権擁護法案※2」が国会において審議されているところです。

(2) 基本方針の策定

本市は、これまで憲法の基本的人権尊重の精神のもと、人権施策を市の最重点施策のひとつとして人権に関する世界の潮流や国・府等の動向を把握しながら取り組んできました。

1965年に「同和問題の解決は国の責務であり、国民的課題である」とした国の同和对策審議会答申以降、1972年の「堺市同和对策事業総合計画」、1988年の「堺市同和行政基本方針」に基づいた、同和行政の推進をはじめ、1980年人権擁護都市宣言、1998年「人権教育のための国連10年堺市行動計画」、2001年堺市総合計画「堺21世紀・未来デザイン」、 「人権教育のための国連10年堺市後期行動計画」、さらに2002年「堺市男女平等社会の形成の推進に関する条例」を制定するなど、人権施策を推進してきたところです。

2004年12月までの「人権教育のための国連10年堺市後期行動計画」をさらに発展させるために、堺市人権施策推進基本方針を策定します。

これは、現行の後期行動計画の精神を引き継ぎ、新しく策定する堺市人権施策推進計画（仮称）の基本的な考え方を示すものです。

(3) 取り組むべき課題

本市の種々の人権施策にもかかわらず、今なお、さまざまな人権にかかわる差別事象が発生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中で本市の取り組むべき課題として以下のものがあります。

同和問題

これまで同和対策に関する国の特別法等を指針として、積極的に取り組んできた結果、相当の成果を上げてきましたが、中途退学等にみられる教育の課題や失業率、不安定就労の労働の課題等が残されています。

また、忌避意識や結婚観にみられる差別意識の解消が十分に進んでいない状況があります。

女性の人権

人々の意識や行動、社会慣行のなかには、社会的、文化的につくられた性差「ジェンダー」が根強く残っており、社会生活のさまざまな場面において女性が不利益を受けることが多い現状があります。また、このような社会では、男性にとっても生きやすい状況とは言えません。さらに、セクシュアル・ハラスメント、ストーカー行為や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配偶者などの親しい関係の者からの身体的・性的・精神的・経済的暴力）など女性に対する暴力も問題となっています。

子どもの人権

学校、家庭、地域の連携が不十分な状況があります。学校においては、仲間はずし、言葉・暴力によるいじめや教師による体罰が発生しています。家庭においては、保護者による児童虐待が深刻化しています。地域では、青少年犯罪、薬物乱用等の非行行為があります。

障害者の人権

社会には、いまだ、障害者に対する偏見・差別意識があります。たとえば、社会福祉施設等の設置に際し、反対運動（摩擦）が起こり、施設の整備が進まない「施設コンフリクト」の問題は、このことを端的に表しています。また、ノーマライゼーションの普及促進等障害者にとって必要不可欠な社会環境整備の促進も重要な課題です。

高齢者の人権

2015年（平成27年）には、4人に1人が65歳以上という高齢社会が到来すると予測されています。高齢者が住み慣れたまちで自立した生活をおくることができる社会環境整備は、重要な課題です。また、一人暮らしの高齢者や認知症の高齢者、障害のある高齢者が財産や金銭をだまし取られたり、暴力や虐待を受ける事例も多く発生しています。さらに高齢者の介護は、長期化、重度化する一方で、介護者の高齢化、家庭における介護者の多くが女性であることなど介護を取り巻く人権の問題も存在します。

在日外国人の人権

就職や入居等において、国籍や民族の違いを理由に不利益を受けることが多い問題があります。また、近年来日した外国人については、日本語の習得が十分でないため、暮らしにかかわる各種サービスが受けにくい問題があります。また、在日韓国・朝鮮人については、過去の歴史的背景の理解が不十分なことから生じる偏見と差別のため、やむなく日本名（通称名）で生活せざるを得ない人も多い問題があります。さらに年金や教育の分野等での制度的な課題もあります。

さまざまな人権

それぞれの人々に関わって、さまざまな人権問題があります。たとえば、特定の病気（HIV感染症、ハンセン病等）患者については、医学的に不正確な知識や思い込みによる偏見や差別の問題、アイヌの人々については民族としての歴史、文化、伝統及び現状についての不認識による偏見や差別の問題、他にも沖縄の人々、刑を終えて出所した人、犯罪被害者、婚外子、性的マイノリティ、野宿生活者などに関する問題があります。

また、インターネットを悪用し、人権に関する問題を引き起こすケースも出てきています。

つけられること。

- ・「法の下での平等」「個人の尊重」などの人権の普遍的内容からのアプローチと各人権の課題からのアプローチの両面から人権尊重の理解を深めること。
- ・人権問題は市民自らの問題であることに、理解を得ること
- ・人権教育に取り組む人材の養成を図ること。

第3は、人権擁護を図る施策です。

[基本方向]

- ・本市の各相談窓口は、本来業務に加えて、市民にとって最も身近な人権救済窓口にもなる認識を基に、事例を集積し、連携を図り、迅速かつ的確に対応できるように努めること。
- ・各相談窓口担当者は、それぞれの人権問題とその解決手法に関する専門的知識を要求されることから、担当職員の質的向上を図ること。

これら3つの施策を基礎に、人権問題についての実態を把握しながら、総合的な人権施策を積極的に推進します。

また実施主体には、行政のみならず民間団体、公益法人、企業なども挙げられます。人権施策を総合的に推進していくためには、実施主体間の協働・連携も重要です。

堺市平和と人権を尊重するまちづくり条例

平成18年12月22日

条例第77号

(前文)

わがまち堺に暮らす人々は、古代から国内外との交流を積極的に進め、創造性と自立の精神をはぐくみ、わが国有数の自治都市を築いてきた。また、茶の湯を通じて世界に誇る平和を尊ぶ文化を創造し、過去幾度も

の戦禍に遭いながらも復興を成し遂げてきた。基本的な人権の尊重や平和社会の実現と維持は、国際社会における共通の原理であり、日本国憲法や世界人権宣言の理念とするところである。

しかしながら、今なお、私たちの社会においては、人種、民族、国籍、信条、性別、社会的身分、門地又は障害があること等による人権に関する多くの課題が存在し、さらに紛争や貧困などにより、子どもや女性を始め多くの人々の生命や身体が危険にさらされ続けている国や地域が地球上には数多く存在している。

私たちは、こうした現実を直視し、未来を見据えて、戦争は最大の人権侵害であるという認識を持つとともに、すべての人々が尊厳ある生命を全うできるような社会づくりを進める「人間の安全保障」に積極的に関与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平和を尊ぶ文化の伝承者であり地球市民である私たちは、国際平和の実現と維持及び人権課題の解決のために世界へ向かって行動し、発信するまち「国際平和人権都市・堺」の実現に努めることを決意し、この条例を制定する。

(目的)

第1条 この条例は、平和と人権を尊重するまちづくりの推進について、市の責務及び市民の役割を明らかにするとともに、平和や人権尊重に関する意識の向上、人権課題の解決及び人権擁護を図るための施策(以下「人権施策」という。)の推進の基本となる事項を定め、もって平和と人権を尊重するまちの実現を図ることを目的とする。

(市の責務)

第2条 市は、国、大阪府及び国内外の関係機関並びに市民との連携を深め、あらゆる施策を平和と人

権を尊重する視点を持って実施するとともに、人権施策を総合的かつ計画的に推進するものとする。

2 市政に携わる者は、この条例の理念を理解し、尊重し、及び行動しなければならない。

(市民の役割)

第3条 市民は、この条例の理念を理解し、平和、人権等地球規模の課題について身近なことから積極的に取り組む地球市民の一員としての認識を持って行動し、平和と人権を尊重するまちづくりの推進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事業の推進)

第4条 市は、平和と人権を尊重するまちづくりの推進について、次に掲げる事業を実施するものとする。

(1) 平和や人権に関する意識の向上のための教育及び啓発事業

(2) 交流、協力及び貢献に係る活動並びに顕彰を通して平和を促進する事業

(3) 人権擁護を推進する事業

(4) 前3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この条例の目的の実現に資する事業

(推進計画の策定)

第5条 市長は、平和と人権を尊重するまちづくりを総合的に推進するため、堺市人権施策推進計画(以下この条において「推進計画」という。)を策定し、人権施策を推進するものとする。

2 市長は、推進計画を策定するに当たり、次条の堺市人権施策推進審議会の意見を聴くとともに、市民の意見を反映できるよう適切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3 市長は、推進計画を策定したときは、速やかにこれを公表するものとする。

4 市長は、推進計画の進行管理を行い、社会状況等の変化に対応し、適宜、見直しを行うものとする。

(堺市人権施策推進審議会)

第6条 人権施策の推進に関する重要事項を調査審議し、及び意見を述べるため、本市に堺市人権施策推進審議会(以下この条において「審議会」という。)を置く。

- 2 審議会は、委員12人以内で組織する。
- 3 委員は、学識経験者その他市長が適当と認める者のうちから市長が任命し、又は委嘱する。
- 4 委員の任期は、2年とする。ただし、再任を妨げない。
- 5 委員が欠けた場合における補欠の委員の任期は、前任者の残任期間とする。
- 6 第2項から前項までに定めるもののほか、審議会の組織及び運営について必要な事項は、規則で定める。

(委任)

第7条 この条例の施行について必要な事項は、規則で定める。

附 則

この条例は、平成19年1月1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第6条の規定は、規則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平成19年規則第85号で平成19年8月1日から施行)

堺市男女平等社会の形成の推進に関する条例

平成14年3月28日

条例第8号

目次

前文

第1章 総則(第1条—第9条)

第2章 基本的施策(第10条—第13条)

第3章 推進体制等(第14条—第17条)

第4章 雑則(第18条)

附則

我が国は、女性差別撤廃条約を軸とした国際的な潮流の中で、21世紀の我が国社会を決定する最重要課題として男女平等社会の実現を位置付けた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を制定した。

堺市は、他市に先駆け、女性問題行動計画を策定し、男女共同参画宣言都市となるなど男女平等社会の実現に向けて積極的に取り組んできているが、性別による役割分担意識やこれに基づく社会慣行等は依然として根深く、全国的にも女性に対する暴力が社会問題化するなど男女平等の達成にはなお多くの課題が残されている。

こうした現状を踏まえ、豊かで安心できる社会を築いていくには、これまでの固定化された男女の役割にとらわれず、その個性と能力を十分に発揮するとともに、あらゆる分野において男女が対等に参画できる男女平等社会の実現が重要である。

ここに私たちは、堺市の主要政策として、男女平等社会の実現を目指すことを決意し、総合的かつ計画的に男女平等社会の形成の推進を図り、21世紀の「ひとが輝く市民主体の堺」を築くため、この条例

を制定する。

第1章 総則

(目的)

第1条 この条例は、本市における男女平等社会の形成に関する基本理念を定め、市、市民、事業者及び教育関係者等の責務を明らかにするとともに、市の施策の基本的事項を定め、これを総合的かつ計画的に推進することにより、男女平等社会を実現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定義)

第2条 この条例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用語の意義は、当該各号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1) 男女平等社会 すべての人が、性別にかかわらずその個性と能力を十分に発揮する機会が確保されることにより、対等な社会の構成員として自らの意思により職場、学校、地域、家庭その他の社会のあらゆる分野(以下単に「社会のあらゆる分野」という。)における活動に参画し、ともに責任を担う社会をいう。

(2) 積極的格差是正措置 社会のあらゆる分野における性別間の格差を是正するため必要な範囲内において、不利な状況にある性に対し、格差は正の機会を積極的に提供することをいう。

(3) 事業者 本市の区域内において、公的であると私的であるとを問わず、及び営利であると非営利であるとを問わず事業を行なうものをいう。

(基本理念)

第3条 男女平等社会の形成は、次に掲げる事項を基本理念として推進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1) 男女が個人としてその尊厳が重んじられ、直接的であると間接的であるとを問わず性別による差別的取扱いを受けることなく、個人として能力を発揮する機会が確保されるべきこと。

(2) 性別による固定的な役割分担等に基づく社会的制度、慣行又は伝統は、あらゆる人の自由な選択に対して影響を及ぼすことのないよう見直されるべきこと。

(3) 市における政策又は民間の団体における方針の立案及び決定に、男女が対等に参画する機会が確保されるべきこと。

(4) 家族を構成する者は、互いに人格を尊重し、相互の協力と社会の支援の下に、子育て、家族の介護その他の家庭生活における活動及び社会生活における活動に均等に責任を分担すること。

(5) 妊娠、出産その他の性と生殖に関しては、自己決定が尊重されること及び生涯を通じた健康な生活を営むことについて配慮されるべきこと。

(6) 男女の性別にとどまらず、性同一性障害を有する人、先天的に身体上の性別が不明瞭である人その他のあらゆる人の人権についても配慮されるべきこと。

(7) 男女平等社会の形成の推進に向けた取組は、国際社会における取組と協調して行なうこと。

(市の責務)

第4条 市は、男女平等社会の形成の推進に関する施策(積極的格差是正措置を含む。以下「男女平等推進施策」という。)を総合的に策定し、及び実施する責務を有する。

2 市は、男女平等推進施策を実施するに当たり、国、府、市民及び事業者と相互に連携及び協力を図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

(市民の責務)

第5条 市民は、社会のあらゆる分野において、自ら進んで男女平等社会の形成に寄与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市民は、市が実施する男女平等推進施策に協力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事業者の責務)

第6条 事業者は、男女が職場における活動に対等

に参画する機会の積極的確保に努めるとともに、職業生活における活動と家庭生活における活動その他の活動とを両立して行なうことができる職場環境を整備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事業者は、市が実施する男女平等推進施策に協力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教育関係者等の責務)

第7条 家庭教育、職場教育、学校教育、社会教育その他のあらゆる分野の教育に携わる者は、男女平等の理念に配慮した教育を行なう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何人も、子どもたちの男女平等教育に関し、自ら積極的に参画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性別による権利侵害の禁止)

第8条 何人も、直接的であると間接的であるとを問わず、性別を理由とする権利侵害及び差別的取扱いを行なってはならない。

2 何人も、地域、職場、学校その他のあらゆる場において、セクシュアル・ハラスメント(相手の意に反する性的な言動により相手方に不利益を与えること又は相手方の生活環境を害することをいう。)を行なってはならない。

3 何人も、個人の尊厳を踏みにじる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配偶者等親しい関係の者からの身体的、性的、心理的又は経済的暴力をいう。)及びこれと関連する児童虐待を行なってはならない。

(公衆に表示する情報に関する留意)

第9条 何人も、公衆に表示する情報において、性別による固定的な役割分担及び性的な暴力等を助長し、又は連想させる表現並びに人権を侵害する性的な表現を行なわない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2章 基本的施策

(基本計画)

第10条 市長は、男女平等推進施策並びに市民及び事業者の取組を総合的かつ計画的に推進するための基本的な計画(以下「基本計画」という。)を策定するものとする。

2 市長は、基本計画の実効性を高めるため、その進行管理に係る適切な手法を導入するものとする。

3 市長は、基本計画を策定するに当たっては、第15条第1項に定める男女平等推進審議会の意見を聴取するとともに、市民の意見を反映することができ

るよう、適切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4 市長は、基本計画を策定したときは、遅滞なくこれ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前2項の規定は、基本計画の変更について準用する。

(年次報告)

第11条 市長は、男女平等推進施策の実施状況等について、年次報告を作成し、これを公表するものとする。

(市民及び事業者の理解を深めるための措置)

第12条 市は、男女平等社会の形成の推進について、市民及び事業者の理解を深めるため、広報活動等適切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審議会等の委員の構成)

第13条 市長その他市の執行機関は、地方自治法(昭和22年法律第67号)第138条の4第3項に規定する附属機関の委員を任命し、又は委嘱するときは、男女いずれか一方の委員の数が、委員の総数の10分の4未満とならない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3章 推進体制等

(施策の推進体制の整備)

第14条 市は、男女平等推進施策を円滑かつ総合的に企画し、調整し、及び実施するため、必要な体制の整備に努めるものとする。

2 市は、あらゆる施策の策定及び実施に当たっては、男女平等社会の形成の視点をもって取り組むものとする。

3 市は、男女平等社会の形成の推進のため、必要な拠点機能の整備に努めるものとする。

4 市は、基本計画に基づく施策を実施するため、必要な財政上の措置その他の措置を講ず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

(男女平等推進審議会)

第15条 基本計画その他男女平等社会の形成の推進に関する重要事項を調査審議し、及び意見を述べため、堺市男女平等推進審議会(以下「審議会」という。)を置く。

2 審議会は、市長が任命し、又は委嘱する委員15人以内をもって組織する。

3 市長は、男女いずれか一方の性が委員総数の10分の4未満とならないよう委員を選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委員の任期は、2年とし、再任を妨げない。ただし、委員が欠けた場合における補欠の委員の任期は、前任者の残任期間とする。

5 審議会の組織及び運営について必要な事項は、規則で定める。

(苦情等の処理)

第16条 本市の区域内に住所を有する者又は本市の区域内に所在する学校、事業所等に通学し、又は通勤する者(次条において「市民等」という。)は、市が実施する男女平等推進施策又は男女平等社会の形成の推進に影響を及ぼすと認められる施策に関し苦情その他の意見がある場合は、市長に申し出ることができる。

2 市長は、前項の規定による申出を受けたときは、調査の上次条第2項に定める堺市男女平等相談委員の意見を聴き、必要な措置等を講ずるものとする。

3 市長は、前項の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審議会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相談の申出)

第17条 市民等は、第8条に規定する性別による権利侵害その他の男女平等社会の形成を阻害する要因によって人権を侵害された場合には、市長に申し出ることができる。

2 市長は、前項の規定による申出を適切かつ迅速に処理するため、堺市男女平等相談委員(以下この条において「相談委員」という。)を置く。

3 相談委員は、学識経験者その他市長が適当と認める者のうちから市長が委嘱する。

4 相談委員は、必要に応じて関係者に対し資料の提出及び説明を求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関係者に助言、是正の要望等を行なうものとする。

第4章 雑則

(委任)

第18条 この条例の施行について必要な事項は、規則で定める。

附 則

この条例は、平成14年4月1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第15条から第17条までの規定は、規則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平成14年規則第71号で平成14年10月1日から施行)

堺市子ども青少年の育成に関する条例

平成20年3月28日

条例第8号

(前文)

子ども青少年は、社会を構成するかけがえない存在であり、その健やかな成長はすべての人々の共通の願いである。

しかし、社会経済情勢の変化が子ども青少年の育成に大きく影響を及ぼし、全国的に虐待、いじめ、不登校及び非行を始め、子ども青少年に関する様々な課題が山積している。

このような状況からも、子ども青少年を取り巻く社会のあり方が問われているところであり、私たちは、乳幼児期からの育成が大切であることを認識するとともに、国や大阪府と役割を分担しつつ、社会全体で子ども青少年の育成に取り組み、その人権が守られ育まれる社会を構築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私たち堺市民は、自由都市・堺の人々の気風を礎に、子ども青少年が豊かな人間性とたくましく生きる力を備え、未来社会の担い手として、世界に通じる感性で様々な問題に対応できる大人へと成長できるよう、力を合わせ取り組むことをここに決意し、この条例を制定する。

(目的)

第1条 この条例は、子ども青少年の育成について、基本理念を定め、保護者、学校等、市民、事業者及び市の責務等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より、社会全体で子ども青少年を育む環境づくりを推進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定義)

第2条 この条例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用語の意義は、当該各号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1) 子ども青少年 おおむね18歳未満の者をいう。

(2) 保護者 次に掲げる者その他の子ども青少年を現に監護する者をいう。

ア 子ども青少年の親権を行う者又は未成年後見人

イ 児童福祉法(昭和22年法律第164号)第6条の3に規定する里親又は同法第7条第1項に規定する児童

福祉施設の長

(3) 学校等 本市の区域内に存する学校教育法(昭和22年法律第26号)第1条に規定する学校、児童福祉法第39条第1項に規定する保育所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施設で、子ども青少年を保育し、教育し、又は育成するものをいう。

(4) 市民 本市の区域内に住所を有し、又は本市の区域内に存する学校、事業所等に通勤し、若しくは通学する者をいう。

(5) 事業者 本市の区域内において事業活動を行うすべてのものをいう。

(基本理念)

第3条 子ども青少年の育成に係る基本理念は、次のとおりとする。

(1) 子ども青少年の育成について、自らの責任を自覚のうえ、その行動を律し、協働すること。

(2) 子ども青少年を一人の人間として尊重するとともに、子ども青少年が個性や能力を発揮できるよう育むこと。

(3) 子ども青少年が広い視野と豊かな人権感覚を持ち、主体的に行動できるよう育むこと。

(子ども青少年の心がけ)

第4条 子ども青少年は、社会的に自立した大人へと成長するため、次に掲げる事項を心がけなければならない。

(1) 生命と人の尊厳を大切にし、優しく思いやりのある行動に努めること。

(2) 未来社会の担い手であることを自覚し、自己の向上に努めること。

(3) 社会の一員として、社会の規範を守ること。

(保護者の責務)

第5条 保護者は、家庭における教育の重要性を自覚し、子ども青少年が個々の発達段階に応じて生きる力を身に付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保護者は、子ども青少年と意思疎通を図るとともに、子ども青少年が安心して過ごせる家庭を築く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3 保護者は、子ども青少年の模範となる行動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学校等の責務)

第6条 学校等は、人権教育の理念にのっとり、子ども青少年に自尊の感情を育むとともに、子ども青少年がお互いに尊重し合う関係を築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学校等は、市民等と協働して、子ども青少年に係る諸課題に取り組むことができる体制の整備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3 学校等は、子ども青少年が他の子ども青少年又は教職員とのかかわり合いを通して、自らの能力を向上させ、及び社会性を身に付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市民の責務)

第7条 市民は、子ども青少年の成長にとって地域が果たす役割の大切さを認識し、子ども青少年を見守るとともに、子育てへの協力を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市民は、子ども青少年が豊かな人間関係を築くことができるよう、積極的かつ適切なかかわり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3 市民は、子ども青少年が主体的にかかわることができる地域社会を築く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事業者の責務)

第8条 事業者は、その事業活動を行うに当たり、子ども青少年の育成を阻害することのないよう配慮するとともに、安全で良好な環境づくり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事業者は、事業者の持つ情報及び資源を有効に活かし、子ども青少年の育成について、学校における教育活動、地域における行事等への積極的な協力を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3 事業者は、その事業所等で働く保護者が第5条に規定する役割等を果たすことができるよう、雇用環境の整備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市の責務)

第9条 市は、子ども青少年を取り巻く環境や実態の調査及び分析並びに施策の研究に努めるものとする。

2 市は、子ども青少年育成の基本理念を踏まえ、次に掲げる事項に関する基本的施策を実施するものとする。

(1) 子ども青少年の様々な体験活動に関する事項
(2) 子ども青少年が健康で安全に過ごせる環境づくりに関する事項

(3) 子ども青少年の社会参加の促進に関する事項
(4) 妊娠期又は子育て期にある家庭への支援に関する事項

(5) 虐待、体罰及びいじめの防止及び早期発見に関する事項

(6) 子ども青少年の最善の利益に配慮した相談体制に関する事項

3 市は、保護者、学校等、市民及び事業者が行う子ども青少年の育成に関する取組について、これらと連携し、若しくは協力し、又はこれらの協働が図られるよう必要な調整を行うものとする。

4 市は、子ども青少年の育成について市民等の理解を深めるため、広報活動等の適切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育成計画)

第10条 市長は、子ども青少年の育成に関する施策の総合的かつ計画的な推進を図るため、基本的な計画(以下「育成計画」という。)を策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市長は、育成計画を策定するに当たっては、第12条に規定する堺市子ども青少年育成会議の意見を聴取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市長は、育成計画を策定したときは、遅滞なくこれ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市長は、育成計画の実効性を高めるため、その進行管理に係る適切な手法を導入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第2項及び第3項の規定は、育成計画の変更について準用する。

(年次報告)

第11条 市長は、子ども青少年の育成に関する施策の実施状況等について、年次報告を作成し、これ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堺市子ども青少年育成会議)

第12条 育成計画その他子ども青少年の育成に関

する重要事項について調査審議し、及び意見を述べるため、堺市子ども青少年育成会議(以下「育成会議」という。)を置く。

2 育成会議は、委員20人以内で組織する。

3 委員は、次に掲げる者のうちから、市長が任命し、又は委嘱する。

(1) 学識経験者

(2) 事業者及び子ども青少年の育成に関係のある団体の代表者

(3) 前2号に掲げる者のほか、市長が適当と認める者

4 委員の任期は、2年とし、再任を妨げない。ただし、委員が欠けた場合における補欠の委員の任期は、前任者の残任期間とする。

5 育成会議は、その円滑な運営を図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部会を置く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部会の委員は、次に掲げる者のう

ちから、市長が任命し、又は委嘱する。

(1) 育成会議の委員

(2) 前号に掲げる者のほか、市長が適当と認める者

6 第2項から前項までに定めるもののほか、育成会議(部会を含む。)の組織及び運営について必要な事項は、規則で定める。

(委任)

第13条 この条例の施行について必要な事項は、規則で定める。

附 則

(施行期日)

1 この条例は、平成20年4月1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第12条の規定は、規則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堺市青少年問題協議会条例の廃止)

2 堺市青少年問題協議会条例(昭和39年条例第35号)は、廃止する。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平成十二年十二月六日 法律第四百四十七号)

(目的)

第一条 この法律は、人権の尊重の緊要性に関する認識の高まり、社会的身分、門地、人種、信条又は性別による不当な差別の発生等の人権侵害の現状その他人権の擁護に関する内外の情勢にかんがみ、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に関する施策の推進について、国、地方公共団体及び国民の責務を明らかにするとともに、必要な措置を定め、もって人権の擁護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定義)

第二条 この法律において、人権教育とは、人権尊重の精神の涵かん養を目的とする教育活動をいい、人権啓発とは、国民の間に人権尊重の理念を普及させ、及びそれに対する国民の理解を深めることを目的とする広報その他の啓発活動(人権教育を除く。)をいう。

(基本理念)

第三条 国及び地方公共団体が行う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は、学校、地域、家庭、職域その他の様々な場を通じて、国民が、その発達段階に応じ、人権尊重の理念に対する理解を深め、これを体得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多様な機会の提供、効果的な手法の採用、国民の自主性の尊重及び実施機関の中立性の確保を旨として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国の責務)

第四条 国は、前条に定める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基本理念(以下「基本理念」という。)にのっとり、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に関する施策を策定し、及び実施する責務を有する。

(地方公共団体の責務)

第五条 地方公共団体は、基本理念にのっとり、国との連携を図りつつ、その地域の実情を踏まえ、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に関する施策を策定し、及び実

施する責務を有する。

(国民の責務)

第六条 国民は、人権尊重の精神の涵養に努めるとともに、人権が尊重される社会の実現に寄与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基本計画の策定)

第七条 国は、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に関する施策の総合的かつ計画的な推進を図るため、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に関する基本的な計画を策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年次報告)

第八条 政府は、毎年、国会に、政府が講じた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に関する施策についての報告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財政上の措置)

第九条 国は、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に関する施策を実施する地方公共団体に対し、当該施策に係る事業の委託その他の方法により、財政上の措置を講ずることができる。

附 則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第八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の日の属する年度の翌年度以後に講じる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に関する施策について適用する。

(見直し)

第二条 この法律は、この法律の施行の日から三年以内に、人権擁護施策推進法(平成八年法律第二百十号)第三条第二項に基づく人権が侵害された場合における被害者の救済に関する施策の充実に関する基本的事項についての人権擁護推進審議会の調査審議の結果をも踏まえ、見直しを行うものとする。

人権擁護都市宣言に関する決議

人は、すべて生まれながらに自由であり、人間として尊ばれ、人間として生きる権利を有している。

私たちは、過去幾多の試練を経て、基本的人権の享有を保障する日本国憲法のもとに、真に平和で民主的な社会の建設をめざしてきた。また、私たち堺市民は、先に総調和を理念とする市民憲章を制定し、勤労を愛し、教育に力を注ぎ、相互扶助と社会秩序を尊重し、市民共同の差別のない、豊かな都市づくりをめざしてきた。

しかし、現実の社会は、人間疎外と社会意識や道徳心の欠如を生み、特に、日本国憲法にうたわれた思想・信条・性別・社会的身分等における人間皆平等が軽視されがちであるばかりか、部落差別などにみられる人権侵害の事象もあとを絶たない。

市民とともに希求した国際人権規約の条約批准を契機に、改めて基本的人権の尊厳を認識し、人間平等の社会的基盤の確立をめざして、市民すべてのたゆまない努力を行うことを確認し、ここに本市を「人権擁護都市」とすることを宣言する。

昭和55年 5月31日

堺 市 議 会

宣 言

昭和55年第3回市議会において、
議員提出議案第6号「人権擁護都市」宣言に関する議案が、
全会一致で決議されたことに基づき、
ここに本市を人権擁護宣言都市とする。

昭和55年 7月9日

堺 市 長

非核平和都市宣言に関する決議

いま、世界は核保有国のはてしない核軍拡競争の中で、人類の生存そのものが脅やかされている。

私たちは世界ではじめて原爆の洗礼をうけた国民として再び「広島」「長崎」の惨禍を繰り返させてはならない責任を負っている。本市もかつての戦争で空襲による大被害をうけ焦土と化したのが、もし今日、戦争が起これば一瞬のうちに潰滅するであろう。

今こそ、私たちは平和憲法と市民の平和で安全な生活を守るため、世界の人びとと手をつなぎ、核兵器の完全禁止を強く訴え、とともに非核三原則の堅持を政府に約束させ、将来にわたっていかなる核兵器、核関連部隊も本市内及びその周辺に配備、貯蔵を許さず、また通過航行も認めるべきでない。

私たちは平和な社会の実現を願う全市民の声に耳を傾け、すべての核兵器が廃絶されるまで行動することを確認し、ここに本市を「非核平和都市」とすることを宣言する。

昭和58年3月25日

堺市議会

사카이(堺)시 인권시책 추진 계획

1 인권 시책 추진 계획의 책정에 있어서

1. 추진 계획의 책정 취지

세계 인권 선언
인간의 존엄이 평화와 밀접 불가결한 관계이며 차별을 없애고 인권을 확립하는 것이 영구적 평화로 이어진다는 이념 아래 1938년(쇼와 23년)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 연합 제 3회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선언의 이념은 세계 각 나라의 헌법이나 법률로 채택되는 등 세계 각국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인권 선언에서는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고유의 존엄과 평등을 가지며, 양보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하는 것은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다;라고 차별을 없애고 인권을 확립하는 것이 영구적 평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기본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계 인권 선언을 기초로 국제적, 국내적 사회제도의 정비가 진행되어, 인권이 확립된 평화로운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노력이 점차 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는 인권이나 평화를 둘러싼 다양한 과제가 존재 하고 있어 국내외의 상황에 근거한 인권 시책의 추진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본 시(市)에서는 1980년(쇼와 55년)에 인권 옹호 도시를 선언하고 세계인권 선언과 일본 국 헌법을 이념으로 하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평화 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인권 시책은 기본적인 인권 옹호를 중심으로 생활 환경의 개선, 사회복지의 충실, 직업 안정, 교육문화 향상, 주민참가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한 시민 생활을 목표로 한 종합 시책입니다. 이 때문에 시책의 추진에 있어 인권 교육을 기반으로 한 인권 도시 만들기 시야에서 유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5년(헤이세이 17년)에는 ;인권 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 10년 사카이(堺)시 행동 계획;등 지금까지 본 시(市)가 진행해 온 성과나 과제를 기본으로 [사카이(堺)시 인권 시책 추진 계획]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헤이세이 18년) 4월의 정령 지정 도시 이동을 계기로 국제 평화 실현과 그 유지 및 인권 과제의 해결을 위해 세계를 향해 행동하고 발신하는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사카이(堺)시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도시 만들기 조례;를 2007년 (헤이세이 19년) 1월에 시행했습니다.

본 계획은 ;사카이(堺)시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도시 만들기 조례;에 기초하여 2005년 (헤이세이 17년)에 책정 한 ;사카이(堺)시 인권 시책 추진 계획;에 그 후의 사회 상황이나 국제적인 대처 방안을 반영하고 책정 한 것 입니다.

인간의 안정 보장

인간의 안정보장이란 「인간의 삶에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중추 부분을 지키고 모든 사람의 자유와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며 일본 정부는 2005년(헤이세이 17년)에 책정한 ODA 중기 정책에서 인간의 안정 보장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을 중심으로 응시하여 위협을 당하거나 혹은 현재 위협아래 있는 개인 및 지역사회 보호와 능력 강화를 통해, 각 개인이 존엄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생각이다」라고 정하고 사람들이 위협에 대해 분쟁, 테러, 범죄, 인권 침해, 난민의 발생, 전염병의 만연, 환경파괴, 경제위기, 재해의 「공포」나, 빈곤, 기아,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의 결여 등의 「결핍」을 들고 있다.

지구 시민

평화, 환경, 빈곤 등의 지구 규모의 과제 해결을 위해 지구에 사는 일원으로써 매일 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가까운 것에서부터 행동해 나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의 8개 목표

MDGs는 1015년(헤이세이 27년)까지 꼭 달성해야 할 목표로 이하 8가지의 목표를 들고 있다.
(1)극도의 빈곤과 기아의 박멸.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을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 제도가 요구되고 있어, 2002년(헤이세이 14년)의 정기 국회에 인권 옹호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3년(헤이세이 14년)에 폐안 되었지만 현재에도 국가에서 법의 내용이나 운용 방법 제도 등에 관한 검토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② 현재의 국제적인 구조

■인간의 안전보장 실현

사람, 물건, 정보가 국경을 넘어 활발하게 왕래하는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우리의 생활이 윤택해 진 반면, 분쟁이나 테러 전염병의 발생, 환경파괴, 경제 위기 등, 다양한 위협이 지금까지 이상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위협하게 되어, 국가의 구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심각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을 중심으로 위협에 처할 상황에 있거나 혹은 현재 위협아래 있는 개인이나 지역 사회의 보호와 능력강화를 통해 존엄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인간의 안전 보장」이라는 생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뿐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지구 시민으로써 평화, 인권 환경 등 지구 규모의 과제에 대해 날마다 생각하고 행동해 가는 것이 「인간의 안전 보장」 실현으로 이어 집니다.

ja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s)

2000년(헤이세이 12년) 9월에 개최된 국제 연합 밀레니엄·서밋에서는 21세기의 국제 사회의 목표로써 국제 연합 밀레니엄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同 선언은 평화와 안전, 개발과 빈곤, 환경, 인권과 굿·가버넌스(good governance), 아프리카의 특별한 요구 등을 과제로 들어 21세기 국제 연합의 역할에 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同 선언과 1990년대에 개최 된 주요한 국제 회의, 서밋에서 채택된 국제개발 목표를 통합하고 하나의 공통 구조로서 ja 밀레니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MDGs)¹가 정리 되었습니다. MDGs에서는 2015년(헤이세이 27년)까지 꼭 달성해야 할 8가지 목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국제 사회가 취해야 할 행동의 지침이고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현재 국제사회가 연대 해야 할 과제입니다.

ja 인권 교육을 위한 세계 프로그램

인종, 민족, 성, 종교, 문화 국적 등의 차이를 뛰어 넘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1994년(헤이세이 6년) 제 49회 국제 연합 총회에서 ja 인권 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 10년(1995년(헤이세이 7년)~2004년(헤이세이 16년))이 결의되었습니다. 이후, 국제 연합의 행동 계획에 근거하여 국제 연합은 두말 할 것도 없이 국제 레벨, 국가 레벨, 지방 레벨의 인권 교육 착수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 추진에 의해 인권 교육의 중요성이 국제적 국내적으로 높아진 것과, 인권교육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실시 해 나가기 위한 실마리를 얻은 것은 커다란 성과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부락차별이나 외국인 차별이 공공연하게 존재 하고 또 아동 학대와 괴롭힘, 인터넷에 의한 악질적인 글쓰기가 끊이지 않는 등 인권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끊임 없이 활동하는 것이 한층 더 필요합니다.

- (3) 젠더의 평등 추진과 여성의 지위 향상.
- (4) 유아 사망률의 감소.
- (5) 임산부의 건강 개선.
- (6) HIV/에이즈, 말라리아 그 밖의 질병의 만연 방지.
- (7) 환경의 지속가능성의 확보.
-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추진

인권 문화

국제 연합의 「인권 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 10년 행동 계획」에 의해 제창된 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권 존중의 태도를 습득하고 익혀 일어나 일상 생활에서 실천 하는 것이 당연히 되는 사회의 모습을 일컫는 말.

2004년(헤이세이 16년)에는 국제 연합 인권 위원회에서 「인권 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 10년 폴로업(follow-up)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어 모든 분야에서 인권 교육 프로그램 실시가 유지, 계속되도록 연속적인 단계로 구성된 인권 교육을 위한 세계적 프로그램의 개최가 권고되어, 2004년(헤이세이 16년)에 「인권 교육을 위한 세계 프로그램」의 제 1단계(2005년(헤이세이 17년)~2007년(헤이세이 19년))로써 「초등·중등 학교제도에서의 인권교육 편성」의 행동 계획이 명시되었습니다. 2007년(헤이세이 19년)에는 계획기간을 2009년(헤이세이 21년)까지 연장하도록 국제 연합 인권 이사회에서 결의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 구조 속에서 실시 된 인권 교육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을 나타냅니다.

同 프로그램에서는 「인권의 혜택을 받고 누리는 어린이의 능력을 강화하고 적절한 인권 가치관이 침투한 문화를 촉진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어린이가 가지고 있고 이러한 교육을 「인생의 과정에서 밸런스를 맞춘 인권을 가지며 달성하는 것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불가결의 수단」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 높은 교육은 권리를 지향하고 「민주적인 시민 성, 가치관 및 연대를 중요한 성과로서 포함하는 것」이며, 더욱이 「다른 가치, 특히 정의 및 공정의 유지와,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식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나타내고 사회구성이나 가치관, 인간 관계가 다양화, 복잡화하고 다양한 격차, 배제, 고립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현대 사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자립하고 공생하는 사회 만들기 교육을 진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현대사회는 지구 온난화라는 환경문제,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문제, 빈부격차나 경제 문제 등, 서로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간 활동 모습은 이 같은 과제를 낳음과 동시에 미래 세대가 그 능력을 개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남기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이 현재에서 미래 까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의 공적 실현과 자연 환경과의 공생을 중시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구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미래 세대의 요구를 만족 시키는, 능력을 해치지 않고 현재 세대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사회 만들기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구조가 필요하며, 빈곤 극복과 보건위생의 확보, 질 높은 교육의 확보가 필수 적이며, 성별, 인종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향상하도록 구조화 되어야 합니다. 또 이 구조를 자원의 유한성, 환경용량의 제약, 자연의 회복력을 의식한 바람직한 행동으로 미래 세대가 지속 할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욱이 전쟁이나 분쟁은 난민을 낳고 환경을 파괴하므로, 평화를 위한 구조도 필요합니다.

이상을 통해, 세대간의 공평, 지역간의 공평, 남녀간의 평등, 사회적 관용, 빈곤의 경감, 환경의 보전과 회복, 천연자원의 보전, 공정하고 평화로운 사회 등이 지속가능성의 기초가 되어 환경의 보전, 경제의 개발, 사회의 발전을 조화 속에서 진행해 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개발」입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지역의 관민이 빠짐없이 사회 구조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초 교육, 고령교육, 교원교육, 환경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해, 시민의 계몽 활동을 강하게 전개

요한네스 버그 서 밋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 수석회의. 2002년(헤이세이14년) 8월에 남아프리카의 요한네스 버그에서 개최되어 세계 각국의 수석, 관계각료, 국제기관의 장이 참가. 각 나라 수석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향한 정치적 의지를 나타낸 문서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요한네스 버그 선언」 및 실시 계획을 채택

유럽이사회

유럽 연합(EU)의 수석회의. EU수석회의나 EU 서밋이라 불리기도 한다. 원래는 매년, 외장국의 도시에서 개최되었지만 2004년(헤이세이16년)부터 원칙으로써 EU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 개최되고 있다.

디지털 디바이드

컴퓨터나 인터넷의 정보 기술(IT)을 사용하는 자와 사용하지 않는 자 사이에 생기는 경제적 격차나 기회의 격차.

다보스 회의

스위스의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적인 비영리단체인 세계경제 포럼이 매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회의. 회의에는 세계의 정치경제 지도자가 참가하고 글로벌 정치경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각 개인이 이것에 대해 지식을 광범위하게 얻는 것뿐 만 아니라, 지구적 시야에서 생각하고 다양한 과제를 스스로 문제로 인식, 가까운 곳에서부터 실천(think globally, act locally), 지속 가능한 사회 만들기의 주축이 된다.1' 처럼 각 개인을 교육하고 의식과 행동을 변혁하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인식에 서서 일본은 2002년(헤이세이 14년)의 요한네스 버그 서밋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10년1'을 제창하고 이것은 같은 해 12월의 제 57회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어 2005년(헤이세이 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2006년(헤이세이 18년)3월에 국내 실시 계획이 명시되어 국가, 지방 자치체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체에 의한 구조적 편성이 진행되려 하고 있습니다.

“é 새로운 사회적 요청을 기반으로 한 시야

jà 소셜·인클루전(social inclusion) 도시 만들기

글로벌화, 시장경제나 노동시장의 경제 환경의 변화, 도시(지역)사회의 변화, 가족의 축소를 원인으로 한 빈곤과 사회적 스트레스, 알코올 의존 등의, 심적 장애1', 길에서 죽거나 외국인을 배척하는 등의, 사회적 배제나 마찰1', 고립 사(死), 자살, 가정 내 폭력 등의,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1'이라는 문제가 중시·복합화 되어 저소득자나 장애인, 고령자, 편 부모,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니트(노동자·실업자·주부·학생)중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15~34세의 인구) 등의 사람들을 둘러싼 문제가 클로즈업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원호하고 건강한 문화적 생활 실현으로 이어 질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수용하고 지원하는, 소셜·인클루전(social inclusion)1'도시 만들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2000년(헤이세이 12년)의 니스 유럽 이사회에서 승인 된, 빈곤과 사회적 배제와 싸우는 여러 목적1'에서는, 고용의 참여와 만인의 자원, 권리, 재물 및 서비스 액세스를 쉽게 하는 것1', 사회적 배제의 위험을 예방하는 것1', 가장 약한 입장의 사람을 지원하는 것1', 모든 관계자를 동원하는 것1'을 들어 사회적 고립·배제에 대해 고용, 사회 보호, 주택, 교육, 보건,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보이지 않는 형태를 취하기 쉽게 만들면, 문제의 파악이 한층 곤란한 고립 사(死)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1'문제를 보이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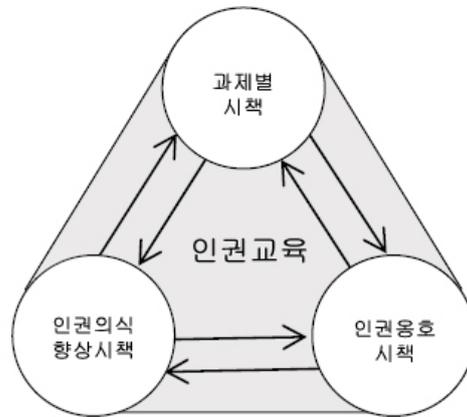
jà 고도 정보화 사회와 인권

최근 인터넷이 급속하게 보급되고 이에 따라 인터넷상의 차별적인 글이나 비방 중상의 내용이 기제되는 홈페이지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나 개인 정보의 보호 등 고도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대책은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jà 글로벌 사회와 기업

지구환경보전의 생각이 세계적으로 침투해가는 현재,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기업에 대해서도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세계와 지역에 기업 활동의 모습이 문제시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 1999년(헤이세이11년)에 다보스 회의에서 국제 연합 사무총회가 제안한, 인권, 노동기준, 환경, 부패방지1'의 3분야

인 권 시 책



●●● 2. 도시 만들기 담당자(커뮤니티 형성) ●●●●

지역복지 추진
 사회복지법 4조(지역 복지 추진)
 지역주민이나, 사회복지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 혹은 사회복지에 관한 활동을 행하는 자는 서로 협력하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경제, 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가 할 기회가 주어 지도록 지역 복지 추진에 힘써야 한다.

행정 등 공적 주체와 지역 주민이 협동·보완의 관계에 놓여 지역 활동이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담당 되는 다원적 사회가 활력 있는 사회이며, 더 나아가 인간 존중 도시 만들기과 이어집니다. 이러한 협동 관계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의 중요성은 2000년(헤이세이 12년)에 개정된 사회복지법 「지역복지 추진」 속에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또 2000년(헤이세이 12년)에 실시 한 오사카 부 「동화(同和)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서 「동화(同和) 문제 학습 경험 별 동화(同和) 문제 해결에 중요한 것」이라는 물음에 대해 「동화(同和)지구와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교류를 넓혀, 협동하는 도시 만들기를 추진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 조사는 2004년(헤이세이 16년)에 개정된 「사카이(堺)시 동화(同和)행정 기본 방침」에서도 「부락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 받는 풍요로운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동화(同和) 지구 내의 주민이 협력하여 스스로 도시 만들기를 추진 해 나가기 위해 협동 관계를 구축하고 하나가 되는 커뮤니티 형성을 도모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이 것은 딱딱한 면이 아닌 부드러운 면도 포함한 총합적인 도시 만들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형성에 관해서는 공적 분야의 주민참가·계획의 참여라는 흐름 속에 다음 시야, 중요시 합니다.

-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춘 활동을 행할 것
- “지역의 여러 활동은 일정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협조 할 것
- “지역의 활성을 높이기 위한 계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가를 촉진 할 것
- “지역에서 개인의 활동 지도자를 배출하고 또 미래 지도자를 육성해 나갈 것

현 상

동화(同和)문제는 인류보편의 원리인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문제이며 일본 국 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적 인권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동화(同和)문제의 해결은 나라의 책무이며 동시에 국민적 과제임을 국가의 「동화(同和)대책 심의회 답신」이 1965년(쇼와 40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지구(区)의 생활환경 개선이나 지구(区)주민의 생활 향상이 긴급 과제인 것, 또 이러한 과제로 당시의 일반 시책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었던 것에서 「동화(同和)대책사업 특별조치법」을 1969년(쇼와 44년) 7월에 시행하고 일반 시책을 보완하기 위한 특별 조치로써 동화(同和)대책 사업을 실시하고 동화(同和)교육 및 계발활동의 추진, 차별 의식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전심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주 환경 정비를 시작으로, 지구(区)주민의 생활의 안정·향상, 교육문화의 향상 등의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만 오늘날의 취직이나 결혼에는 차별이나 교육 문제 등 해결 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 서사에 의한 호적의 부정 취득 건이 발각되기도 하고 전자판(를 하여)을 가진 새로운 부락 지명 총감이 조사 업자에게 잡히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7년(헤이세이 19년)에는 「호적법」 및 「주민기본 대장 법」이 연달아 개정되며, 호적등본, 주민 표 교부제도가 엄격화 되었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특별 조치가 2002년(헤이세이 14년) 3월말에 종료하고 동화(同和)대책은 일반 시책에 의해 종합적인 대책으로 커다란 전환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발판으로 동화(同和)행정의 전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카이(堺)시의 과제와 대책

본 시(市)는 일찍부터 인권부국(部局)을 설치하고 동화(同和)문제 해결을 시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동화(同和)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카이(堺)시 동화(同和)대책 협의회(현 사카이(堺)시 동화 행정 협의회)를 설치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시민의 이해를 얻어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동화(同和)행정을 추진 했습니다. 또한 동화(同和)대책사업의 조기달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카이(堺)시 동화(同和)대책 추진 특별위원(현 사카이(堺)시 동화 행정 추진 위원)을 설치하고 사업의 추진에 힘써 왔습니다.

또, 시민공통의 과제로써 동화(同和)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의 촉진과 인권 존중의식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인권교육·계발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동화(同和)대책 사업의 성과를 발판으로 인권의 시각에서 종합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1998년(헤이세이 10년) 3월에는 「사카이(堺)시 동화(同和)행정 기본 방침」을 1999년(헤이세이 11년) 3월에 같은 방침의 구체화를 위해 「사카이(堺)시 동화(同和)행정 추진 계획」을 책정하고 동화(同和)대책 사업의 개정에 착수해 왔습니다.

이 동화(同和)행정의 추진에 따라 지구(区)주민의 건강이나 생활 향상, 고용의 안정, 교육 수준의 향상 등의 일정 성과가 보여져, 시민의 동화(同和)문제에 관한 이해의 진정과 시민전체의 인권의식 향상으로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헤이세이 12년)에 실시 한 오사카 부의 실태조사에는 중도퇴학의 교육문제나 실업률의 증가, 불안정 고용문제, 부민의 동화지구(区)에 대한 기피의식에 의한 결혼 차별 문제가 남아 있는

세계 여성 회의

여성의 위치향상을 목적으로, 국제연합 주제로 개최된 회의.

제 4회 북경회의에서는 실질적인 남녀평등 추진과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의 전면적인 참가 등, 38개 항목의 '북경선언'과 빈곤, 교육, 건강, 여성에 대한 폭력, 경제, 인권 등의 분야에서의 전략목표 및 행동을 제시한 '행동강령'이 채택되었다.

젠더 캡틴 지수

세계경제 포럼이 매년 공표하고 있는 세계 115개국 지역의 남녀격차를 나타내는 지수. 지수는 경제, 교육, 건강, 정치의 4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경제에서는 노동인구, 임금, 관리직, 전문직의 남녀 비율, 교육에서는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취학률의 남녀비율, 건강에서는 평균수명과 출생시의 남녀 비율, 정치에서는 회의 의원 각 관료의 인수의 남녀비율을 기초로 계산 하고 있다. 2008년(헤이세이 20년) 일본은 조사 대상 130개국 중 98위.

것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헤이세이 17년)에 본 시(市)가 실시한 「제 5회 사카이(堺)시 인권 의식조사」의 결과를 보면 자기 자식의 결혼 상대가 동화(同和)지구(区) 출신자 일 때 부모로서 「반대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2할을 넘고 있는 것이나 주택을 고를 때 동화(同和)지구(区)를 피한다는 사람이 3할 가까이 되는 등, 동화(同和) 지구(区)에 대한 기피 의식이 시민들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졌습니다. 또 본 시(市)내에서도 매년 이사에 관한 동화(同和)지구(区) 소재지 문의 전화나 동화(同和)지구(区) 출신자에 대한 차별 문서, 발언 등의 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화(同和) 지구(区)의 상황 변화나 특별 조치법의 실효에 의해 특별조치로서의 동화(同和)대책사업은 종료 했습니다. 앞으로는 동화(同和) 문제를 인권 문제라는 본질에서 다루고, 국가, 시(市)는 더욱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적으로 인권 문제의 기동인 동화(同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공통의 과제로써 노력해야 합니다. 또 지구(区)의 상황을 발판으로 동화(同和)지구(区) 출신을 포함한 다양한 과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일반 시책에 의한 인권 존중 시각에 서서 그 대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시(市)에서는 2004년(헤이세이16년) 3월에 「사카이(堺)시 동화 행정 기본 방침」을 개정하고 또 「사카이(堺)시 동화 행정 추진 계획」의 개정판으로써 「각 분야에서 이후 시책의 추진 방향」을 책정했습니다.

이후 「차별의식의 해소, 시민의 인권의식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조건」, 「지역주민의 자립과 자기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지구(区)내 시설의 활용을 도모하고, 동화(同和) 지구(区)내외의 주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정비하여 동화(同和) 지구(区)내외의 주민이 협력해서 스스로 도시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일원이 된 커뮤니티 형성을 도모하고 인권 만남 센터를 시작으로 지구(区)내 시설이나 본 시(市)가 동화(同和) 문제의 해결과 모든 인권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기관으로써 자리잡고 있는 사카이(堺)시 인권 지역 협의회 관련 기관과 연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 되는 차별 없는 밝은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 여성 인권 현상

우리 나라는 일본 국 헌법에서 남녀의 본질적 평등을 구가하고 1985년(쇼와 60년)에 여성 차별 철폐 조약에 비준하고 지금까지 남녀 평등을 위해 여러 가지 법률이나 제도 정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젠더 평화를 위한 국제적 대책에 대해서는 1975년(쇼와 50년) 국제 부인여성회의 이래, 많은 형태로 진행되어, 그 중에서 「젠더와 개발(GAD)」이 1980년대 이후 중요시 되게 되었습니다. GAD는 개발에 있어 젠더 불평등의 요인을 여성과

남성의 관계와 사회구조 안에서 파악하고 양성의 고정화 역할 분담과 젠더 격차를 낳는 제도, 구조를 변혁 하려는 접근입니다. 1995년 (헤이세이 7년) 제 4회 세계 여성회의(북경 회의)이후, GDA를 정착 시키는 방법으로써 모든 정책이나 사업의 계획입안, 의사결정의 단계에 젠더 평등의 시야, 편입시키는 '젠더 주류화'가 국제 사회에서 중시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젠더 평등 의식은 점점 향상하고 있지만, 경제, 교육, 건강, 정치분야에서 남녀의 격차를 나타내는 젠더 캡틴 지수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여전히 여성의 위치는 세계적 수준에서 보면 낮은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나라의 법률이나 사회제도·관행 중에는 남녀 격차나 고정적 성별역할 분담 의식이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남성의 가사, 육아, 간호는 부인이 유직, 무직인 것에 관계없이 낮고, 여성의 노동력율은 육아기에 이르는 30대 전반에 낮아져, 40대에서 다시 증가하는 M자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노동 내용도 다수화 되고 있지만, 남녀간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크고, 여성의 취업형태는 파트 타임 등 불안정한 노동이 많습니다. 정책결정의 장에서의 여성의 계획 참가율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 낮은 상황입니다. 또 성별에 따른 고정적인 역할 분담에 기초하여 세금·사회보장제도·연금제도가 여성의 사회참가를 막고, 결과적으로 남녀간의 격차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성에 대한 폭력(섹슈얼·헤리스먼트 - sexual harassment, 배우자·연인으로부터의 폭력, 스토크 행위)에 있어서도 심각한 피해상황이 현재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사회에 존재하는 성별분업이나, 성차에 의한 어울리는, 어울리지 않는 이라는 편견이나 생각, 또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언밸런스 한 힘의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성에 의한 불평등한 관습이나 관행, 제도는 개인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두어, 지금 많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가져옴과 동시에 가정이나 지역사회 유대가 희박한 남성이 고립 되어 버리는 등, 여성에게나 남성에게나 살기 힘든 사회가 형성 되어 버렸습니다.

사회경제 상황이 크게 변화 하고 있는 중, 1999년 (헤이세이 11년)에 실시된 '남녀 공동 참여 계획 사회 기본법'에서는 그 전문에서 '남녀가 서로 그 인권을 존중하고 책임을 나눠가져, 성별에 관계없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남녀 공동 참여 계획 사회의 실현은 긴요한 과제'라고 명시 되어, '21세기의 우리 나라 사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단언 했습니다.

이 '남녀공동 참여계획 사회기본법'의 이념을 구현화하기 위해 이후 많은 법의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2003년 (헤이세이 15년) 7월에 '다음 세대 육성 지원 대책 추진 법'이 제정되어 노동자가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육아 지원을 위한 행동 계획의 책정을 사업주에게 의무화 시킴과 함께 2007년 (헤이세이 19년)에는 일과 육아·간호의 양립을 더욱 더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업, 간호 휴업 등 육아 혹은 간호를 행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육아·간호휴업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고용 분야에 있어 남녀의 균등 기회 및 대우의 확보에 관한 법률(남녀 고용기회 균등 법)'도 2006년(헤이세이 18년)에 개정되어,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범위가 확대(간접 차별금지도 포함한다)되고 남녀에 대한 섹슈얼·헤리스먼트(sexual harassment)도 그 대상으로 포함되게 했습니다.

또 2001년(헤이세이 13년)에 제정된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배우자 폭행 방지법)'에서는 부부간이나 가정내의 문제로써 잠재화 되어 방치되어 온,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 범죄가 되는 행위로 포함,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정의하고 그 후 2004년(헤이세이 16년), 2007년(헤이세이 19년)에 개정되어 보호명령제도의 확충이나 기본 계획책정과 배우자 폭력 지원 센터 업무의 실시가 시정촌(市町村)의 노력의무가 되는 등, 피해자보호와 자립지원책이 충실이 도모되었습니다.

더욱이 국가에서는 2005년(헤이세이 17년) 12월에 지금까지의 대책을 평가·총괄한 새로운 기본 계획인 「남녀공동 계획 참여 기본계획(제2차)」을 책정하고 특히 정책·방침결정과과정으로 여성 참여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2020년(헤이세이 32년)까지 지도적 지위에서 여성이 일하는 비율이 적어도 30%정도로」라는 목표를 들고 있습니다.

또 최근 여성도 남성도 누구나 일, 가정생활, 지역생활, 개인의 자기 계발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스스로 희망하는 밸런스로 전개 하는 「일과 생활의 조화(워크·삶·밸런스)」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저(低) 출산과 남녀 공동 참여 계획에 관한 전문 조사 회는 워크·삶·밸런스를 추진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이나 일하는 방법의 재검토를 도모하는 것이 남녀공동 참여 계획의 추진과 저(低) 출산 대책에서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카이(堺)의 과제와 대책

본 시(市)에서는 1981년(쇼와 56년), 시의회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의 철폐에 관한 조약」의 조기 비준을 위한 요망결의나 시민이 요망한 여성 차별철폐 기운의 증가를 받아, 1983년(쇼와 58년)에 여성문제를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 1기 사카이(堺)시 부인문제 행동 계획」을 책정하고 1993년(헤이세이 5년)에 「제 2기 여성문제 행동 계획」을 책정해, 남녀 평등 사회의 실현을 지향한 시책 추진에 힘써 왔습니다.

1995년(헤이세이 7년) 1월에는 총리 부(당시)와 공동 주최로 「남녀공동 계획 참여 선언 도시 장려 사업」을 실시하고 시민 스스로가 행동 목표로 「여성과 남성이 살아가는 것과 SAKAI 선언」을 행해, 전국 최초의 「남녀 공동 계획 참여 선언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그 다음 해부터 선언을 행한 1월 21일을 포함 한 일주일을 「사카이(堺) 남녀 공동 계획 참여 주간」이라 정하고 기간 중에는 남녀 공동 계획 참여사회의 실현을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전개 하고 있습니다.

또 2002년(헤이세이 14년) 2월에 「제 3기 사카이(堺) 남녀 공동 계획 참여 플랜」을 책정하고 「남녀 공동 계획 참여를 위한 사회 시스템의 변혁」, 「노동 분야에서의 남녀 평등 확립」, 「직업과 가정, 지역 활동과의 양립지원」, 「여성의 인권 존중」이라는 4가지 기본 과제를 들어 남녀 공동 계획 참여 사회의 실현을 위한 시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2002년(헤이세이 14년) 3월에는 오사카부 내의 시정촌(市町村)에서 처음으로 「사카이(堺)남녀 평등 사회의 형성 추진에 관한 조례」를 책정하고 남녀 공동 계획 참여 시책을 추진하여 시(市)의 기본 자세를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같은 조례에 근거해 사카이(堺)시 남녀 평등 추진 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회에 의해 「제 3기 사카이(堺)남녀 공동 계획 참여 플랜」이 그 조례로 규정하는 기본 계획으로써 승인 되었습니다. 또, 남녀 평등 상담 위원에 의한 고민상담 처리제도를 개시하고 시(市)가 행하는 남녀 평등 추진 시책에 관한 고민이나 성별로 인한 권리 침해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헤이세이 18년)에는 새로운 정령 지정도시가 된 본 시(市)의 도시 만들기 지침이 된 「자유도시·사카이(堺) 르네상스 계획」을 책정하고, 중요 시책으로 「인권 존중사회, 남녀 공동 계획 참여

더욱이 다발하는 괴롭힘이 원인으로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2007년 (헤이세이 19년)에는 괴롭힘의 정의가 재검토 되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학생의 입장에 서서 실태파악이나 괴롭힘 방지, 조기발견 및 적절한 대응을 모색할 수 있는 체제 만들기가 강화 되었다.

한편 급속한 저(低) 출산의 진행에 제동을 걸어, 다음세대의 사회를 짊어질 어린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육성 될 환경의 정비를 모색하기 위해 지방 공용 단체 및 사업주에 의한 행동 계획의 책정을 의무화한 차세대 육성 지원대책 추진 법이 2003년 (헤이세이 15년) 7월에 시행 되었습니다.¹⁾

시카이(堺)시의 과제와 대책

본 시(市)에서 취급하는 어린이 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그 중에서도 모친에 의한 학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상담소 학대 상담 건수는 0세에서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학대 및 초등학생의 학대가 각각 4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써 육아 부담이 모친 한 사람에게 과중하게 치우쳐, 육아 불안이 증대 되는 것이나 모친이 사회적으로 계속 고립되어 가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정의 아동 학대 발생의 증가가 지적되고 있다.

학대 방지에는 이러한 배경을 발판으로 대책이 필요한 것과 함께 피 학대 아동의 관리도 물론 중요하다는 것, 학대하는 부모에게 지원을 강구하는 것, 어린이를 권리 주체자로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린이가 존엄성을 확보하고 그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시(市)에서는 2000년(헤이세이 12년)에 학대 발견에서 원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연대·협력 하고 어린이 학대에 대응하는 네트워크로써 어린이에 관련 있는 단체나 관계기관이 계획에 참여한 「사카이(堺)시 어린이 학대 등 연락 회의」를 설치했습니다.

괴롭힘 • 폭력 방지

(CAP) 프로그램.

어린이가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자각 하고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피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식이나 방법을 배우고 강인하게 살아가기 위한 힘을 기른다

(CAP = Child Assault Prevention)

또 2006년 (헤이세이 18년)의 정령 지정 도시 이행에 따라 오사카 부에서 권한을 이양 받아 어린이 상담소 「아동상담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체제에서 전화 상담을 받는 「어린이 학대 다이얼」을 개설했으며, 「사카이(堺)시 어린이 학대 등 연락 회의」를 「사카이(堺)시 어린이 학대 연락 회의」라 명칭을 바꾸고 「사카이(堺)시 어린이 학대 등 지소구역 회의 (각 지소 설치)」를 아동 복지법에 규정된 필요 보호 아동 대책 지역 협의회인 「사카이(堺)시 구 어린이 학대 연락 회의(각 구 설치)」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헤이세이 19년) 8월에는 어린이 상담소의 분실로써 일지 보호소(애칭 : 키즈 스테이션 사카이(堺))를 설치했습니다.

어린이 학대 방지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기능 하도록 보건복지 종합 센터, 어린이 상담소, 보육소(원)·유치원, 학교, 지역사회, 복지·의료기관이 연대하고, 조기 발견, 조기 대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학대의 미연 방지나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피어 서포트 리더 파견 사업.

괴롭힘 문제를 조기 발견·조기 해결을 해서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초등학교에 임상 심리사를 목표로 하는 대학원생을 파견하고 괴롭힘에 대한 어린이의 고민이나 불안을 해소시키고 상담에 응한다.(피어: Peer 친구)

SAFE 프로그램

그림 판을 이용해 어린이와 교원이 대화형태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을 어른이 지킬 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자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잠재적 위험을 살피고 위험한 상황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생각하는 힘을 기른다.

계발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의 괴롭힘 대책으로써 1999년 (헤이세이 11년)부터 「괴롭힘·폭력 방지(CAP) 프로그램 사업」에 선진적으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고, 2006년 (헤이세이 18년)부터는 교육 센터에 설치하는 괴롭힘이나 고민의 전화상담인 「마음의 집」을 24시간 체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헤이세이 19년)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피어 서포트 리더 파견사업이나 SAFE프로그램의 실시와 함께 지금까지 중학교, 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던 스쿨 카운슬링을 소학교에도 확대하는 등, 괴롭힘·등교거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직원을 주축으로 어린이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은 괴롭힘의 피해에 처한 어린이로부터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등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린이가 밝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예방적 시각에서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에서의 교육을 다할 역할은 커서, 2000년 (헤이세이 12년)에는 「인권 교육 기본 방침」 및 「인권교육 추진 계획」을 책정하고 인권 교육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권리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인권 감각을 기르는 교육이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본으로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행동이나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풍부한 인간성의 육성이나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 개성과 상상력을 기르는 교육, 시대의 요청에 응하는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가겠습니다.

최근 등 하교 시간을 중심으로 한 수상한 자의 출몰이나 어린이가 범죄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경찰을 주축으로 관계기관이나 학교, 가정, 지역 등이 연대하면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1997년(헤이세이 9년)부터는 「어린이 110번의 가사업」, 2005년 (헤이세이 17년)부터는 「어린이 안전 지키는 방법대」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2006년 (헤이세이 18년)에는 「자주방법 패트룰 단체등록 제도」를 창설하여 방법 패트룰 용품의 지급이나 방법 패트룰 차량의 양도 등 지역에서의 주체적인 방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나 가정을 둘러싼 환경이 커다란 변화 속에 있는 지금, 지역 사회 전체가 육아를 지원하고 지원 정책을 추진 하기 위해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추진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 공용 단체의 행동 계획으로써 「사카이(堺)시 차세대 육성 지원 행동 계획(사카이(堺)어린이의 생생 플랜)」을 2005년 (헤이세이 17년) 3월에 책정했습니다. 이 플랜에 기초하여 「지역의 육아 지원 추진」을 시작으로 한 9개의 시책 영역을 설정하고 어린이의 육성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잡화하고 다양화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이 자기 선택, 자기 책임, 상호 지원을 넓어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자기 실현을 도모하고, 사회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개인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2006년 (헤이세이 18년) 3월에는 「사카이(堺)시 청소년 육성 계획(사카이(堺) 청소년 플랜)」을

용 확보에 관한 시책을 총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통 장벽 자유 법을 추가로 추진해,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 기준의 책정 이외에, 고령자, 장애인의 계획 단계에서의 참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정한 「고령자, 장애인의 이동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장벽 자유 신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직에서의 차별이나 입주 거부, 설비 컴플리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일부의 직장이나 설비는 직원에 의해 지적 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써 생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물리적 장벽의 제거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의 장벽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1995년 (헤이세이 7년)에는 지금까지 복지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었던 정신장애인에 대해 정신보건법에서 개정된 「정신보건 및 정신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정신 보건 복지법)」이 시행되어, 정신장애인의 의료, 복지에 관한 것 이외에 정신 장애인의 사회 복귀나 자립 지원과 함께 지역 주민의 정신 장애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것에 노력할 것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2005년 (헤이세이 17년) 4월에는, LD(학습장애), ADHD(주의 결함·다동성장애), 고기능 자폐증 등의 발달 장애인의 자립, 사회참여,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발달 장애인 지원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복지 서비스는 이용자의 신청에 의해 행정기관이 판단하고 수급자나 서비스 내용을 결정하는 조치체제가 취해져 왔습니다만, 2003년 (헤이세이 15년) 4월부터 이용자가 스스로 사업자나 서비스 내용을 선택하고 계약을 고를 수 있는 지원비제도(이용자 계약 제도)가 시작 했습니다. 장애인을 서비스의 이용자로 하고, 구체적인 시책의 대상이라는 생각에서 이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기 결정권의 확보를 도모한다는 생각으로의 변환은 인권 존중의 시야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관한 시책 정비가 취해지고 있으며, 지적 장애인이나 정신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민법에 기초하여 성년 후견 제도나 사회 복지법에 근거한 지역 복지 권리 옹호 사업의 이용자의 권리옹호와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구조 만들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헤이세이 18년) 4월에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지하고, 장애인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신체장애인, 지적 장애인, 정신장애인의 복지 서비스의 일원화, 고용지원의 강화, 지역 생활 지원 사업의 실시, 시정촌(市町村),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장애인 복지 계획을 책정 한 「장애인 자립 지원 법(法)」이 시행되었습니다만 이용자 부담이나 고용지원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 당하고 있어, 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해서 생활 하수 있도록, 법안을 시행 한 후 3년간을 목표로 하는 발본적 재검토를 위해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카이(堺)시의 과제와 대책

본 시(市)에서는 2006년 (헤이세이 18년)에 책정한 「제 3차 사카이(堺)시 장애인 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지역에서의 자립생활의 촉진」, 「상당체제의 정비와 이용자 지원」, 「공생사회 만들기 촉진」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 거점 시설으로써, 중증심신 장애아 시설 이외에, 전문 상담기능이나 진료 기능, 스포츠 활동 지원기능, 직업 사회 복귀 요법 기능, 사회참가를 위한 생활 복귀 요법기능을 가진 「건강 복

지 광장」의 개설을 위한 대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방해하는 「물리적 장벽」 해결을 위한 대책은 2001년도 (헤이세이 13년도)부터 교통 장벽 자유 법에 근거하여 「교통 장벽 자유 기본 구상」을 단계적으로 책정하고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공공 교통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의 주요 역이나 주변 지구의 장벽 자유화를 진행시키는 등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또 「장벽 자유 신법」의 법 제정도 서로 힘입어 장벽 자유화나 장애인을 비롯한 누구나가 이용하기 쉬운 유니버설 디자인의 보급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시설을 건설 할 때에는 시설의 컴플렉트 문제 「의식상의 장벽」이 여전히 존재해 마음의 장벽 자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시(市)에서는 2006년의 정령 지정 도시 이행에 따라 「정신보건 복지 법」에 기초하여 마음의 건강 센터(정신 보건 복지 센터)를 설치하고 정신 보건 및 정신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지식의 보급, 정신 장애인의 사회 복귀 지원, 집안에만 틀어 박혀 있는 문제에 관한 전문 상담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갱생 상담소를 설립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가를 추진시키기 위해 의사, 사회 복지 지도원, 심리 판정 원이 전문적인 입장에서 상담을 행하고 필요에 응하여, 의학적, 심리학적 및 직업상의 판단을 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헤이세이 19년) 11월에는 「발달 장애인 지원 법」에 기초하여 발달 장애인 지원 센터를 개설하고 발달 장애인 및 그 가족, 관계 기관의 상담지원, 발달지원, 고용지원, 계발 및 연수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본 시(市)는 전국에서 앞서 시립 양호학교를 설립하고 시립초등학교, 중학교내에 지원학급을 점차 설치하여 특별 지원 교육을 추진하고 해 왔습니다. 지역 학교에서 장애아의 취학 환경의 정비와 함께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지원학교의 취학 환경 정비 등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요구에 응한 서포트 체제도 중요합니다. 또 지금 졸업후의 취직, 생활 면에서의 과제도 큰 문제로, 지역을 시작으로 교육·의료·노동·복지의 각 분야 관계 기관이 관민을 넘어 더욱 더 연대를 도모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장애인 이해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함께 새로운 과제로써 LD(학습장애), ADHD(주의결함·다동성장애), 고기능 자폐증 어린이에 대한 이해와 지원 대책의 충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低)출산, 고령화나 도시화에 따른 가족 형태의 변화와 지역의 유대가 희박화 되는 등, 여러 문제가 사회의 변화에 의해 일어나고 본 시(市)도 장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양화해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장애인 복지는 종래의 한정된 사람을 보호,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나 간호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 생활 과제와, 장애인이 떠안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지역 전체가 상호 협력하여 지지해 나가는 구조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체성을 존중하고 해결을 도모해 가는 새로운 복지의 모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이해와 협력이 불가결하며 시설 컴플렉트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 전체가 지지해 주는 시야에서 인권 교육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사카이(堺)시에 새로운 복지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 실현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누구나가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고 사는 것이 당연시 되는 지역에서 자기답게 자랑을 가지고 살수 있는 도시 만들기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9년 (헤이세이 21년) 3월에 책정한 「제 2차 사카이(堺) 시 지역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은 여전히 뿌리 깊고 차별발언이나 차별문서의 송부와 같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직도 본명이 아닌 일본명으로 생활 해야만 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2000년(헤이세이 12년) 4월에 「외국인 등록법」의 일부 개정에 의해 지문인식이 폐지 되는 등, 법 제정 면에서 개선을 도모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지방 참정권, 제도적 무(無) 연금 문제가 존재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국에서의 잔류고아 가족의 귀국, 남미에서의 일본계 노동 및, 새로운 노동을 위해 재주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외국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고용이나 입주에 대한 차별과 공중 목욕탕, 음식점에서의 입점 거부 등의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 커다란 원인으로써 일본인, 외국인 쌍방의 언어나 문화, 관습에 대한 이해부족과 잘못된 인식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최근에 일본인과 외국인의 국제 결혼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인 모친이 임신, 출산과 육아에 관한 여러 가지 불안을 안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 모자의 보호 요구에 대응해 안심하고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부당한 저임금이나 가혹한 노동강요를 받거나 불법적 방법으로 입국해서 위법 노동을 착취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카이(堺)시의 과제와 대책

본 시(市)의 외국인 등록인구는 12,283명(2009년(헤이세이 21년) 3월 현재)로 그 중 5,335명이 재일한국·조선인 입니다.

본 시(市)의 외국인 아이들의 취학상황에 대해서는 시립초등학교·중학교에 478명(2008년(헤이세이 20년) 5월 현재)이 재적하고 있고 시내 고등학교에도 진학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의 아이들의 상황은 가지 각색으로 각각의 민족문화·관습을 배우고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립학교에는 재일외국인·국제이해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족강사 활용이나 민족학급의 설비를 행해 왔습니다. 또, 자립지원 일본어 지도원에 의한 중국이나 해외에서 귀국·도입한 어린이를 일본에서 적응 하도록 지원을 실시해 왔습니다. 사카이(堺)시 제일 외국인 교육 연구회와 연대를 도모하면서 학교나 지역 속에서 스스로 민족성·문화적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앞으로도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 제도적인 무 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본시(市) 독자적으로 대상자에게 특별한 급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발본적 이해를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구제 조치가 필요하며 지방 참정권에 대해서도 국가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시(市)에서도 중국, 동남 아시아, 남미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나 지역에서 도일(来日)한 많은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어의 이해가 불충분하거나 문화, 관습으로 인한 혼란으로, 지역에서의 독립, 사회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후, 유학생이나 단기 노동자를 포함, 본 시(市)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은 점점 증가할 것이라 생각되

습니다. 형사 재판 절차에서 가해자의 권리 보장에 대해 피해자의 권리보호가 뒤늦게 일어나는 것에서 2000년(헤이세이 12년) 11월에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 절차 부수 조치에 관한 법률(범죄 피해자의 보호법)」이 시행되고, 또 2005년(헤이세이 17년) 4월에는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는 「범죄피해자 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경찰, 검찰, 재판소, 매스컴을 포함한 관계 기관과 흥미본위의 호기심으로 사건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의식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성동일성장애, 동성애, 양성애, 선천적으로 신체상의 성별이 불분명한 인터 섹스 등의 성적 소수자 사람들에게 대한 지식이나 이해는 아직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동일성장애인의 성별 취급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2004년(헤이세이 16년) 7월에 시행되어 일정 조례를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호적의 성별 변경이 가능해 졌습니다. 다양한 성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버블경제 붕괴 후의 장기불황 속에서 도시 부를 중심으로 한 노숙생활자(homeless)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숙생활자들 중에는 자립 의사가 있어도 노숙생활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사람이 다수 존재 하고 있습니다. 노숙생활자를 대상으로 한 습격사건도 끊이지 않습니다. 2002년(헤이세이 14년) 8월에는 「노숙자의 자립 지원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노숙 생활자의 인권을 배려하고 지역사회와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 경제불황이나 거기에 따른 격차의 증가, 다양하고 복잡화 하는 사회를 배경으로 자살자 수가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어 2006년(헤이세이 18년) 10월에는 「자살 대책 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있다는 생각에서 자살 실태에 들어맞는 사회적 대책으로서 자살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건강하게, 사는 보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02년(헤이세이 14년)의 일조 수뇌회담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조선)은 일본인 납치를 인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08년(헤이세이 20년) 10월 현재 17명을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외에도 납치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사안이 있는 등,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납치문제는 인간의 존엄,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증대하고 명백한 침해이며 조급히 피해자의 즉시귀국, 진상규명을 도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2007년(헤이세이 18년) 6월에는 「납치 문제 이외에 북조선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납치문제의 해결을 시작으로 북조선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실태를 해명하여 그 억지를 도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이누 민족은 일본과 러시아에 걸친 북방선주민족으로 홋카이도, 치시마 열도, 산린 등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도 아직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1997년(헤이세이 9년)에는 아이누 사람들의 민족적 자량이 존중되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아이누 문화의 부흥과 아이누 전통에 보급 및 계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8년(헤이세이 20년) 6월에는 「아이누 민족을 선주민족으로 하는 것을 구하는 결의」가 중/참의원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급속한 유전자 공학의 발달에 따른 복제 문제도 새로운 인권 과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문제가 심각화되고 특히 지구 온난화는 우리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의 많은 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기후 변동 구조 조약」에 기초하여 도쿄 의정서가 1997년(헤이세이 9년)에 결의, 2005년(헤이세이 17년)발효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도쿄 의정서 목표 달성 계획」이 책정되어 2006년(헤이세이 18년)에는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

한 법률¹⁾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인류를 시작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에 관한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이 지구규모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과제는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또 과학기술의 진보나 사회환경, 생활양식의 급속한 변화, 글로벌화의 진행 등에 의해 새로운 인권과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인권 과제들의 해결에는 바른 지식과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카이(堺)시의 과제와 대책

후천성 면역 부전 증후군(에이즈) 및 전염병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나 각각의 전염병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생기는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건소나 보건 센터가 중심으로 정확한 의학정보의 신속한 제공에 힘쓰고 동시에 전염병에 관한 바른 지식 보급 계발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적 소수자 사람들에 대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도 아직 바른 인식이 보급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우며, 당사자와의 협력 연대를 도모하면서 바른 지식이나 인식의 보급에 힘쓰고 동시에 상담체제 정비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시(市)에도 많은 노숙생활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노숙생활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오는 편견이나 차별의식에서 괴롭히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카이(堺)시 노숙생활자에 관한 관내 연학회」를 설치하고 관계기관의 연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오사카 부·시정촌(市町村)노숙자 자립 지원 추진 협의회」의 일원으로써 오사카 부 및 사카이(堺)시 이남 8개 시(市) 4개 마을과 협력하여 2004년(헤이세이 16년) 2월에 「노숙자 종합 상담 추진 사업」을 2005년(헤이세이 17년) 3월에는 입소 시설에서 고용에 따른 자립을 지원하는 「노숙자 자립지원사업」을 시작하는 등 노숙 생활자의 상황에 응한 시책 전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살대책에 대해서는 「사카이(堺) 자살 대책 연합 간담회 및 관내 연학회」를 설치하고 관계기관과의 연대를 도모하며, 계발이나 상담사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각 상담 창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 사업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헤이세이 21년) 3월에는 자살을 사회적인 문제로써 인식하고 시민 및 관계자가 연대·협력의 시야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목표로 한 「사카이(堺)시 자살 대책 추진 계획」을 책정하고 사회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실행 전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납치 문제 및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12월의 「북조선 인권 침해 문제 계발 주간」을 중심으로 한 광고 활동이나 관계단체와 연대한 계발 사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본 시(市)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량을 감소 하기 위해 2003년(헤이세이 15년)에 「사카이(堺) 에너지 액션 계획~사카이(堺)시 지역 에너지 비전~」을 책정하고 시민·사업자·행정의 각 주체나 그 연대·협동에 따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7년(헤이세이 19년)부터 지금까지 실시해 온 「사카이(堺)시 환경 매니지먼트 시스템」, 「사카이(堺)시 CO2 슬림 작전」, 「오사카 부 온난화 방지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대책 계획, 「사카이(堺)그린 조달 기본 방침」을 통합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사카이(堺)시 독자 환경 매니지먼트 시스템 「S-EMS」를 개시하는 등, 관청이 전체적으로 환경을 배려하는 대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헤이세이 21년) 1월에는 온실효과 가스의 대폭적인 감소에 도전하는 자치체로써 국가에서 「환경 모델 도시」로 인정하고 같은 해 3월에는 「쾌적한 삶」과 「도시의 어울림」이 지속하는 저 탄소 도시의 실현을 목표로 「사카이(堺)•깨끗한 도시 선언」을 행했습니다. 환경문제, 특히 지구 온난화를 시작으로 하는 지구 규모의 문제에는 인권 문제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에 기초하여 환경 배려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인권에 관한 문제가 존재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회나 매체를 활용하여 바른 정보 제공과 지식의 보급 계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날 종래의 주요한 인권 과제에 더해 새로운 인권 과제도 생기고 있고, 법 정비 및 대응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국제화, 정보화, 저 출산 고령화, 지역의 인간관계의 희박화 등 다양한 요인이 얽여 인권 과제도 다양화, 복잡화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사회정세,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인권 과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각각의 과제에 정확하게 대응한 시책 전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4 인권 의식의 향상을 도모하는 시책

1. 인권 교육의 의식과 필요성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서로를 인정하며 공생하는 평화롭고 유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권 존중의 정신함양을 도모하는 것이 불가결하며 이를 위한 인권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2000년(헤이세이 12년), 인권옹호에 도움이 될 것을 목적으로 인권 교육 및 계발 추진에 관한 국가, 지방 공용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필요한 조치를 정한 「인권 교육 및 계발 추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같은 법에서는 그 기본이념으로 「국가 및 지방 공용단체가 행하는 인권 교육 및 인권 계발은 학교, 지역, 가정, 직장 이외에 다양한 장소를 통해 국민이 그 발달 단계에 응하고 인권 존중의 이념에 대한 이해를 높여, 체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의 제공, 효과적인 방법의 채용, 국민의 자주성의 존중 및 실시 기관의 중립성 확보를 취지로 이루어 져야 한다.」(제 3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2005년(헤이세이 17년), 본 시(市)가 시행한 인권 의식 조사에 의해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 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책의 대해 「개인 개인이 스스로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51.7%)」, 「학교에서 인권 교육을 충실히 한다(46.0%)」,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계발을 충실히 한다(26.5%)」, 라는 결과가 나와, 시민 레벨에 있어서도 인권 존중의 정신함양과 인권교육 및 계발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 인권 교육의 추진

인권 감각이 풍부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을 시작으로 기업, 지역, 학교, NGO•NPO가 인권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인권을 위한 국제 연합 10년」 기본적 구조의 계승

인권 교육은 「인권을 위한 국제 연합 10년」 결의에서 「단순히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모든 발달 단계의 사람들, 모든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존엄에 대해 배우고 그 존엄을 모든 사회에서 확립하기 위한 방법 및 수단을 배우기 위해 생애에 걸친 종합적인 과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또 같은 행동 계획에서 「연수·선전·정보제공을 통해 지식이나 기술을 전하고 태도를 키우는 것에 의해 인권 문화를 구축하는 방안이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서 「인권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 10년 사카이(堺)시 행동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이 정의를 사용하겠습니다. 또, 인권교육은 장기적인 프로세스인 것에 기초하여 「국제 연합 10년」의 기본적 구조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여기에 「국제 연합 10년」의 기본적 구조를 열거 하겠습니다.

A) 자유권이나 사회권의 다양한 인권은 분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인권의 불가결성)과 각 개인의 인권은 서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인권의 상호의존성)을 이해하면서 인종·민족·성별·종교·문화·국적의 차이를 넘은 공통의 것인 인권이라는 보편적 문화의 창조를 지향 하겠습니다.

B) 인권교육은 국제사회가 협력해 추진해야 할 기본적 과제인 것에 이해를 구해 하겠습니다.

C)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독자의 문화,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인 것에 대한 이해를 구해 하겠습니다.

D) 세계 인권선언의 인권 관계 국제 문서의 취지에 근거한 인권의 개념 및 가치 이해를 촉진해 하겠습니다.

E) 인권의 중요과제에 적극적 대책을 계속해 하겠습니다.

F) 인권에 관련 깊은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대책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G) 인권에 대해 모든 장소를 통해 훈련, 연수, 광고, 정보제공을 실시 해 나가겠습니다.

H)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의식을 높여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의식·태도를 길러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주요 축으로 3가지의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 지식

인권 및 인권 옹호를 위한 조직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나) 가치관·신념·태도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 신념 및 태도를 길러 가는 것에 의해, 인권문화의 창조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 운동

인권을 지키고, 인권의 확립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촉진 해 나가겠습니다.

② 인권이라는 보편적 문화의 창조

인권이라는 보편적 문화는 모든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 인종·민족·성·종교·문화·국적 등의 차이를 넘은 인권에 대한 공통 문화를 말합니다.

전쟁, 차별, 환경 파괴, 빈곤을 없애기 위한 삶의 방식을 전세계가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 인권의 보편성 문화를 창조하고 일상생활에서 인권감이 넘치는 상태를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혜택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 생활에서 인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알아차리고, 배우고, 행동해 가는 것이 인권 문화의 창조와 이어집니다. 2004년(헤이세이 16년) 4월에 국제 연합 인권 위원회에서 채택되어 그 후 국제 연합 경제 사회 이사회와 국제

연합 총회에서 승인된 「인권교육을 위한 세계 프로그램」은 2005년(헤이세이 17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권 교육에 관한 세계적 구조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모든 분야에서 인권교육의 이행을 추진하고 발전 해 나가는 것과, 수년을 시간적 구조로 보고 하나의 단계로 여기고, 그 기간 특히 초점을 맞추는 특정 분야를 각 나라 공통의 것으로서 설정하고 실시 해 나가, 그 사이클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일 단계의 행동 계획에서는 2005년(헤이세이 17년) ~2007년(헤이세이 19년)에 「초등·중등학교 제도의 인권교육」이 특정되었습니다만 2007년(헤이세이 19년) 9월의 국제인권 이사회에서 2009년(헤이세이 21년)까지 연장할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본 시(市)에서는 인권의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국가, 오사카 부와 연대를 도모하고, 인권 교육에 관한 세계적 구조를 유지·발전 시키는 것에 힘쓰겠습니다.

③ 국제사회의 기본적 과제로서의 인권 교육

국제적인 인권기준이나 인권조약은 다양한 지역적·국제적인 대책이 전개 되고 있는 상황에 성립 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국제 기준을 각국·지역의 과제해결에 활용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며 것처럼 활용될 것이 기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나라에서는 1979년(쇼와 54년)에 국제 인권 규약(사회권규약·자유권규약)을 비준하고 1995년(헤이세이 7년) 인종차별철폐조약에 가입했습니다. 이 국제적인 인권 기준들은 국내의 인권 기준의 향상으로 효과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적인 규모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취해가는 것은 인권교육의 추진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 지속 가능한 사회의 확립

개발을 자연의 보전과 대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진공업국, 발전도상국 쌍방이 인간의 권리와 존엄·자립·사회정의를 실현해 가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보다 좋은 변화를 위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개발 교육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저개발을 인류의 공통과제로써 그 여러 가지 모습과 원인을 이해하고,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 교육은 1960년대부터 수차에 걸쳐 국제 연합에 의해 제창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남북 문제는 아직 해결 되어 있지 않고 그 때문에 2005년(헤이세이 17년) 1월부터 새롭게 「국제 연합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1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문제, 자원·에너지 문제, 식료·인구문제, 인권이나 평화 문제 해결에는 「지구 전체로써 자원은 유한하며, 인류의 활동 자체도 지구 환경과 조화를 지향하게 된다」라는 사고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의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의 확립에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세대내의 공정), 차세대 이후의 사람들이 풍족한 자연과 자원을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세대간의 공정), 환경 윤리 문제(자연과 인간의 관계 공정)의 3가지 시야를 가지고 인간 활동을 진행 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나은 타인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구축은 서로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에 있어서는 환경과 인권 개발을 연결시킨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 국제 이해교육의 추진

개발, 환경이라는 지구 규모의 여러 과제를 해결 해 나가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 갈 수 있는 세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을 세계 사람들 속에 확실 하게 뿌리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인권교육은 지구사회·국가를 넘은 세계적 시야를 가진 국제적 교

육으로써 실시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민족, 문화, 가치관, 생활 양식에 대한 이해와 존중, 여러 민족 및 여러 국민 사이에 세계적 상호의존관계의 이해, 국제적인 연대 및 협력에 대한 이해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 이해교육은 인권교육을 세계적 과제로써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다) 다문화 공생사회의 이해(차이를 풍성함으로)

경제활동의 지구적 확대에 따라, 사람들의 모든 교류도 세계 규모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민족, 문화, 가치관, 생활 양식이 다른 이웃사람을 가질 가능성을 가지고, 또 반대로 다른 사회 속에서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같은 국제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타 국민, 타민족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고정관념을 배척하고 서로 가치관이나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감각을 키워 가는 것은 필요 불가결하며, 다문화 공생사회 구축을 위한 기본입니다.

본 시(市)는 「차이를 풍성함으로」를 테마로 지금까지도 이 과제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후에도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라) 다양성의 이해

「공생」의 마음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성 개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인간의 개성은 인종, 국적, 걸모습·용모, 장애, 학력 등 다양한 요소의 집합체이며, 신체적 특징은 한 사람의 인간의 개성을 구성하는 요소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그 하나 만이 개성으로써 타인·사회로부터 강제될 때에는 편견, 차별의 문제가 표출됩니다. 타인이 일부분의 개성 요소로 상투적인 것·편견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한 사람을 전체적 인간으로써 보지 않는다는 것이 되며, 거기서 「공생」의 마음 생길 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평등하게 존경 받을 인권개념을 기본으로써, 더욱이 사람은 모두 다르기 때문이야 말로 존엄하다는 인식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다양성의 개념만을 이해해서는 사회 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 차별이나 편견 문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차별을 받는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구조적으로 약한 입장에서 서 있다는 이해가 필요하고 그것이 사회구조상 인권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간파하는 시각도 중요합니다.

④ 모든 장소를 통한 인권교육

인권교육은 「인권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 10년」의 결의에서 「생애에 걸친 총합적 과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것은 인권교육에는 공간적·시간적 제한은 없다는 의미이며, 학교교육만이 아닌 지역, 가정, 직장 등, 모든 장소에서 인권교육을 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학교교육이나 직업·전문학교를 통한 정형적 학습, 가정이나 시민사회의 여러 기관을 통한 무정형 학습에 있어서도 모든 연령층, 모든 사람들이 참가 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학교에서 인권교육

2000년(헤이세이 12년), 사카이(堺)시의 교육 분야에 있어 인권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교육 기본 방침」을 책정 했습니다. 이 중에서 1. 인권에 대한 이해, 풍부한 인권감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인간의 교육 2. 자립, 자기실현, 풍부한 인간 관계 만들기 3. 지역사회에 있어 인권교육·학습의 충실, 부흥 4. 열의 있는 지도자의 육성을 들어 인권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학교는 인권교육의 기초를 배양하는 장소이며, 사카이(堺)시에서는 유아기부터
고등학교까지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단계적으로 배우는 시스템을 구축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발달 단계에 응해, 인권에 대한 주요한 개념, 주요한 기능, 문
제나 과제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그램이 짜여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놀이나 체험을 통해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생명의 존엄에
대해 감성을 키우는 것에 노력하고, 소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는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의 장에서 친구 만들기를 통해 풍부한 감성, 생명이나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 사회생활의 규칙을 중요시 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친구를 소중히 하는 태
도나 행동력을 가르치는 것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 리터래시

정보나 정보기기를
주체적으로 선택하
고 활용함과 동시
에 정보를 적극적
으로 발신할 수 있
는 지식이나 능력

2002년도(헤이세이 14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사고
방식으로써 「살아갈 힘을 육성한다」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살
아갈 힘」이란 스스로 과제를 바라보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
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보다 나은 문제를 해결하는 자질이나 능력을 키우는 것,
스스로 물을 정하고 타인과 함께 협조하고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감동하는
마음 등, 풍부한 인간성을 키우는 것, 그리고 강인하게 살아가기 위한 건장한 체
력을 기르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정보 윤리

정보사회에 있어
적정한 활동을 행
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도덕이나 윤
리, 인생이나 사회
에 대한 정신적 태
도나 규범적 의식.

이 「살아갈 힘」의 기반은 자존감을 길러 가는 것입니다.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가지고 자신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실감하
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육성은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감정
을 받아들이는 쪽」을 양성하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소통하는 힘의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폭력방지(GAP) 프로그램을 취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심·자신·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르고 어린이들이 스스로의 힘을 끌어내는 것에
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존감을 기르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 정보화 사회가 진정됨에 따라 휴대전화나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되고
정보수집 및 발신의 이해성이비약적으로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프라이머
시 침해나 유해정보의 액세스, 인터넷 상에서의 비방중상의 글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에도 정보화의 진전에 대응한 정보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속
에서 학생·아동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권의 시야에서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
고 정보활용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접근이 불가결합니다. 학생·아동의 리터래시
능력을 향상 시켜, 정보에 대한 판단력과 처리능력, 관리 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인권의식의 향상을 도모해 정보 윤리의 양성에 힘쓰고 학생·아동이 잘못된 정보
나 유해한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취사선택하고 사회적인
규칙이나 매너를 존중한 정보발신이 가능한 능력을 익히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교환, 경험 교
환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프로그램 실시

에 따른 정보교환을 행하고, 연대를 높이는 것도 유효합니다.

2002년(헤이세이 14년)에는, 국가가 책정한 「인권교육·계발에 관한 기본 계획」에 학교에서의 지도 방법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충실히 한 지도방법 조사연구나 정보수집을 추진할 필요성을 구가하고 2003년(헤이세이 15년)에 인권 교육의 지도방법에 관한 조사 연구회의가 설치되었습니다. 同 회의는 2004년(헤이세이 16년) 6월에 「인권교육의 지도방법의 모습」에 대해 제 1차 정리를 공표하고 인권교육의 목표를 「스스로의 소중함과 함께 타인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고 그를 통해 다양한 장소에서 태도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 명하고 그 후 2006년(헤이세이 18년) 1월에 제 2차 정리, 2008년(헤이세이 20년) 3월에 제 3차 정리를 공표하고 인권교육의 지도방법 궁리·개선을 위한 이론적 지침을 제공, 그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시(市)에서도 이 광고 내용을 활용하여 인권교육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나) 생애 학습으로써의 인권 교육

단위제 고등학교, 전문학교 등 의무교육 후의 취학형태의 변화, 또 사람들의 가치관의 다양화, 고령 사회의 도래, 여가시간의 증대에 의한 생애 학습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추세 속에 1992년(헤이세이 4년)에 생애 학습 심의회 답신에 「생애학습사회의 실현」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 현대적 학습과제의 하나로써 인권이 명시되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생애학습사회란 「사람들이 생애의 어느 시각에서라도 자유롭게 학습 기회를 선택하고 배울 수 있고, 그 결과가 적절하게 평가 받을 수 있는 사회」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1999년(헤이세이 11년)에 같은 답신으로써 「생애 학습의 성과를 폭넓게 살린다」라고 기술되어 개인의 경력 개발, 봉사활동 추진, 생애학습에 의한 지역사회의 활동화 추진이 제언 되었습니다. 본 시(市)에서는 2006년(헤이세이 18년)에 「사카이(堺)시 신(新) 생애 학습 추진 플랜」을 책정하고 「생애 학습 사회」의 실현을 위해 본 시(市)에서 생애학습추진의 총합적이고 기본적인 지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애 학습은 인권존중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또 생애학습에 의해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실현이 가능합니다. 학습은 생애의 장을 넓힘과 동시에 인생의 선택의 폭을 넓혀 줍니다. 학습에 의해 사람은 성장하고 보다 좋은 사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애를 통해 학습하고 학습을 통해 만나는 것으로 인권존중의 마음을 키우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다양한 가치관을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학습 환경 만들기 추진해야 합니다.

또, 인권교육에는 언제나 상설 전시물에 관한 것이 생기는 장을 만들고, 인권이나 평화에 대해 가까이에서 학습할 기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시(市)에서는 2006년(헤이세이 18년) 4월에 헤노마츠(軸松) 인권역사관(구칭: 헤노마츠(軸松) 역사자료관)과 평화와 인권자료를 리뉴얼 오픈 해서 전시 내용을 확충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이용 촉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생애학습으로써 인권교육을 실천하는 주체인 각 개인이나 단체, 기관, 행정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익한 정보나 경험을 확인하여 서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로부터 인권교육교재, 지도방법 등의 개발 개선이 기대됩니다.

다) 기업의 대책

지금까지 기업활동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요구하는 논의는 지구환경문제에 대해서 다뤄져 왔습니다. 만 오늘날에는 인권문제나 사회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투자 (SRI)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에 재무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천을 꾀하는 투자방법. 예를 들면, 재무 면인 평가를 전제로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써 기업통치, 마케팅(소비자 대응, 조달처 대응), 고용(고용책임, 인권), 환경, 사회적 공헌 등을 들 수 있다.

기업과 무언가의 이해 관계를 가진 주체(스태이크 홀더)의 범위는 지금까지의 고객, 주주, 고용자, 거래처뿐 만 아니라 지역주민, 구직자, 투자자, 금융기관, 정부나 행정까지 확대 되어 지금까지의 스타이크 홀더와 각각의 관계를 지금까지 이상으로 중요시 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배려 행동이 요구되는 멀티•스태이크 홀더•이코노미라 불러야 할 시대가 도래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받아 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성장성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관점에서 평가 하고 투자하는 사회적 책임 투자(SRI)도 광범위해 져 가고 있습니다. SRI의 평가는 기업단체에서 완결하는 것이 아닌, 계열 기업, 거래처 기업, 매입 기업에까지 이르는 것이며 이것은 경제활동의 지구적 확대가 진행되는 대기업뿐 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적 책임 속에서 세계적으로 동등하고 커다란 위치를 점하는 하나가 「인권 존중 개념」입니다. 「인권 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 10년」에서 세계인권선언, 국제 인권규약 등의 국제 인권 기준 보급과 실시에 역점을 둔 노력은 그 중요성이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업은 각각 관계를 가지는 다양한 스타이크 홀더에 대해 인권존중 정신을 구체화 하는 활동을 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기업이 주체적으로 인권에 관한 행동규약(국제 인권 기준 레벨의)을 가질 필요가 있고, 경영자, 종업원 모두가 그 규범에 근거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만 합니다.

사회 시스템 속에서 기업이 점하는 비율은 높고 인권존중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움직임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기업을 에워싼 새로운 움직임인 CSR의 사기 고조에 호응하고 기업 활동을 평가 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카이(堺)시 인권 교육 추진 협의회 기업부회는 공정 채용선고를 시작으로 차별 없는 사회를 목표로 참여계획 기업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계발 활동을 전개하고 인권 존중의 보급•촉진에 많은 실적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인권에 관한 행동 규범을 만들 때에는 많은 유의한 시사, 원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 인권추진 단체와의 연대

본 시(市)에는 수많은 인권 추진 단체가 인권 과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사카이(堺)시 인권 교육 추진 협의회는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시민 스스로의 과제로 여기고, 시민운동으로써 인권교육을 행하고, 차별 없는 밝은 도시 만들기를 지향하고 1979년(쇼와 54년)에 발족했습니다. 同 협의회는 시내의 각종 단체(36단체), 기업(542사), 종교자(386법인)이 계획에 참여하고 다양한 인권 교육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또 가맹하는 단체, 기업, 종교에 있어

서도 각각의 인권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종교 관계자에 있어서는 협의회 중에 부회를 설치하고 독자의 대책을 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부회는 공정채용선고 인권 계발 추진위원을 중심으로 고용차별철폐를 위한 대책 등, 다양한 계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직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에게 있어 생활 기반의 안정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자기실현을 도모하고 풍족하게 인간다운 사회생활을 영위할 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한 공정한 채용선고가 행해지고 취직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부회에 있어서는 종교가 개인의 내면활동에 접근하는 것에서 종교자의 인권 교육활동은 커다란 전도 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살려 종교, 종파의 차이를 넘어 활동 하고 있습니다.

인권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시민참여 계획을 얻어 각각의 일상 생활에 인권존중을 당연시 하는 의식을 침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주체적으로 조직된 사카이(堺)시 인권 교육 추진 협의회 및 각 인권 추진 활동단체는 인권교육 시책을 전개해 나갈 두 번 없을 파트너이며 앞으로도 연대를 높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 NGO·NPO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정말로 살기 쉽게,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보람이 과 빛을 내며 살아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뿐 아니라 기업이나 NGO(민간 비 정부 조직), NPO(민간 비영리 단체·그룹)과의 연대가 불가결 합니다. 환경과피, 전쟁, 기아, 빈곤 등의 인간문제와 관계 있는 대책으로는 NGO나 NPO가 각각 특색 있는 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 흐름이며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 연합 10년」이나 지금부터의 「인권교육을 위한 세계 프로그램」의 책정에도 그 존재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시(市)에서는 2003년(헤이세이 15년)에 「시민활동단체와의 협동 매뉴얼」을 작성하고 행정과 시민활동단체와의 연대에 노력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지역에서의 인권교육 추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시민활동단체의 특색이기도 한 각각의 미션 성(사회적 사명 성), 선구 성을 발휘하면서 풀 뿌리 인권교육의 실시주체가 되어 커다란 역할을 짊어지는 것을 발판으로 인권 교육의 한층 더 효과적인 실시를 도모하기 위한 관점에서 연대를 강화하고 인권교육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 미디어와의 연대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등,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보제공은 넓은 범위에 걸쳐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효과적으로 발신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도 수시, 갱신이 가능해 대량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앞으로도 정보전달에 있어 점점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편 미디어는 여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스 미디어 관계자는 보도에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인권의 시야에서 보도를 행하도록 요구됩니다.

고도정보화 사회 속에서 매스미디어는 인권존중사회를 형성해 가는 한편 극히 커다란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미디어와 연대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인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인권교육·계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⑤ 인권의 중요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인권교육을 추진해가는 한편 피 차별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중시하는 것은 인권존중사회의 구축을 위한 필연적인 순서입니다.

본 계획에서는 인권의 중요과제로서 「동화(同和)문제」, 「여성의 인권」, 「어린이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고령자의 인권」, 「외국인의 인권」, 「고도정보화 사회에 따른 인권」, 또 「다양한 인권」이나 특정한 병(HIV, 한센병 등)에 관련된 과제, 형을 마치고 출소한 사람, 범죄 피해자, 성적 소수자(동성애, 양성애, 성동일성장애, 선천적인 신체상의 성별이 불명료한 인터 섹스 등), 노숙 생활자, 자살문제, 복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 아이누 민족, 혼외자, 오키나와출신자, 클론문제, 환경문제 등을 들고 있습니다.

각각의 인권 현상과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대책을 강구하는 시책에서 나타나 있습니다만 인권교육에 있어서는 이 인권의 고유 문제점에서 접근하는 학습과 함께 「법 아래서의 평등」, 「개인의 존중」이라는 보편적 시각에서 접근해 가는 학습에도 유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적 면에서만 아니라 가치관, 신념, 태도, 행동의 각 차원에서 인권교육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같은 프로세스에서 추진 된 인권교육은 급속한 생활환경의 변화나 사회의 진전과 함께 인권 문제가 다양화, 복잡화하고 더욱이 새로운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잘못된 판단이나 선입견의 배제 등, 인권 침해 예방으로 이어지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⑥ 원의 인권교육 추진

인권교육의 추진에 있어서는 본 시(市)직원의 자세가 시민, 기업, 각종 단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각과 지도력을 높여 갈 필요가 있습니다. 본 시(市)에서는 직원에 대한 인권 주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직장 연수 및 다양한 연수의 장에서 인권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정촌(市町村) 행정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시민의 라이프 사이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인권의 시야에 서서 행정시책을 기획·입안·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교육, 의료, 주택, 도로정비 등 모든 행정분야에 있어 모든 직원이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인권행정을 수행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권존중 의식을 가진 삶의 방식을 확립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재검토하는 자세를 가지고 보다 고도의 시책이나 사업의 전개가 가능하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부문·복지부문·위생 의료부문·소방부문 등은 시정촌(市町村) 행정 속에서도 인권에 깊은 관련이 있는 직업 영역이며 연수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또, 취학 전 교육·학교교육은 인권의식을 기르고 배양하는 장인 것에 기초하여 인권의식의 향상과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보육소(원) 직원·교직원의 인재 육성이나 지도력의 향상을 도모합니다.

5 인권 의식의 옹호를 도모하는 시책

1. 피해 구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인권을 존중 받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권교육과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법적 구제나 개별 법에 근거하여 행정적 구제에 의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인권침해 사례는 다양하고 긴급 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후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충실 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시야에서 간편·신속하게 이용하기 쉽도록 유연한 구제를 행할 국내 인권기관을 설치한 인권구제 제도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 인권 상담

① 인권상담의 의의

인권구제도의 구체적 역할의 하나가 인권침해의 피해자로부터의 상담에 응하는 것입니다. 인권상담은 피해자가 스스로 지키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차별, 학대라는 인권침해 상태에 착안하여 대응 하는 것입니다.

2001년(헤이세이 13년)에 국가의 인권옹호 추진 심의회로부터 「인권구제 제도의 양상에 대해」라는 답신이 발표되었는데 이 내용에서 「상담은 적절한 조언을 통해 인권침해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고 당사자에 의한 분쟁 해결을 촉구하는 등, 그 자체가 유효한 구제 방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상담은 보다 적극적인 구제 절차의 도입기능이나 다른 구제에 관련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고 소개·중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인권상담 창구의 역할

인권상담은 인권구제를 위한 직접적인 상담자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 서비스 실시 기관이나 체도에 정확하게 이끄는 것입니다. 인권상담창구는 모든 인권침해에 대해 그 구제를 위한 창고이며 구제의 길을 나타내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인권상담 창구의 역할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상담창구의 역할

- A) 인권에 관한 정보 제공
- B) 카운슬링(counseling) 기능
- C) 케이스워크(casework) 기능

또, 다음 점에 유의하면서 상담 창구를 설치·운영해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 가까운 상담 창구

피해자의 구제에 관한 전문 상담 기관이 놓여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인권침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누구든지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의 인권상담 창구 설치가 필요합니다. 본 시(市)에서는 이 시각에서 각 구역소 및 인권 접촉 센터에 인권상담창구를 설치 하고 있습니다.

나) 상담자의 empowerment

인권침해 피해자가 된 시민이 스스로 안고 있는 문제를 정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스스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 그 방안을 모색해주는 것은 인권상담의 커다란 목적입니다. 상담자 자식의 엠퍼워먼트에 유의하는 것은 중요한 시야입니다.

③ 인권상담 네트워크

인권상담은 적극적인 구제수단으로 도입기능이나 다른 구제에 관한 제도를 이용해야 할 사람에 대해 소개·중개를 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으로써 각 상담 창구의 밀접한 연락조정과 사례를 모아서 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복잡화한 사회 속에서 상담사례도 단일의 창구에서 대응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상담 창구의 네트워크가 필수 불가결 합니다.

본 시(市)는 각 상담 창구와 어린이 상담소, 보건복지 종합센터, 학교, 사카이(堺)시 인권지역 협의회 등, 각 관계 기관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효과적, 효율적인 상담 네트워크 기능의 충실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상담창구 담당자의 자질향상

상담창구담당자는 각각의 인권문제와 그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의 취득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상담자체가 카운슬링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위한 스킬 습득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담창구 담당자에 대해 체계적인 연수를 실시하는 등, 일상적인 창구 담당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업무들은 종사자의 많은 정신적 부담을 동반하므로 컨퍼런스(conferece) 회의의 개최에 따른 종사자의 정신적 부담 분산화에도 마음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인권상담 창구는 인권에 관한 고민이나 걱정 등, 상담자 개인 정보에 관해서 취급하기 때문에 상담업무를 통한 비밀 보장은 특히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다른 기관의 소개를 받았을 때도 각 상담 창구 담당자는 상담자 본인의 이해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보고서에 기술에 대해서도 상담자가 특정되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비밀 보장은 상담자 자신의 개인 정보 보호조치입니다만 이러한 조치가 인권상담 시스템 자신의 신뢰성 유지에도 연결됩니다.

⑤ 인권시책의 피드백(feedback)

다양한 분야의 인권 과제에 대응해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인권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권상담에 취급된 사례에서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것들의 정보를 인권시책 추진본부나 인권시책 추진 심의회에 보고하고 각 시책에 피드백(feedback) 함으로써 앞으로의 인권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인권의 과제 발견도 기대되며, 대응할 인권 시책을 연체하지 않고 시책할 수 있습니다.

가버넌스 지원

그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하기 위해, 그 나라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형태로 투입, 배분, 관리 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를 지원 하는 것

6 국제 평화를 도모하는 시책

평화시장회의

세계의 도시가 긴밀한 연대를 구축해 감에 따라, 핵폐절의 시민의식을 국제적인 규모에서 환기시키고 핵폐절의 실현을 지향함과 동시에 기아, 빈곤, 난민, 인권, 환경 등의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세계 영구평화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가맹도시는 총 134개국 • 지역 2,963도시(2009년(헤이세이 21년) 7월 1일 현재)

다반선언 • 행동계획

국제연합 주최로 2001년(헤이세이 13년)에 남아프리카 • 다반에서 개최된 반

인종주의 • 차별철폐

세계회의에서 국제사회, 국제기관, 국가, 기업이나 시민사회가 인종주의, 인종차별의 철폐, 방지, 피해자 보호구제를 위해 취해야

할 행동과 조취 등을 든 同 선언 •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1. 국제 평화 공헌의 자치체의 역할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는 물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최근에, 사람, 물건, 돈 그리고 정보 등이 국경을 넘어 활발하게 왕래하고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이 지금까지 이상으로 강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적인 분쟁, 테러나 전염병(HIV/AIDS, SARS 등) 등의 위협이 국경을 넘어 지금까지 이상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정세를 보이는 심각한 세계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같은 국가를 단위로 한 종래의 구조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사람들에게 직접초점을 맞춘 인간의 안전보장 즉 「인간의 생에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부분을 지키고, 모든 사람의 자유와 가능성을 실현 하는 것」이 지금 필요로 되고 있습니다.

국경에서는, 평화구축의 개념은 분쟁예방, 평화창조 그리고 부흥지원까지를 망라하는 전체적인 접근이며,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정책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는 다국적군이나 국제 연합 PKO 등의 군사적 구조, 예방외교, 군축, 조정 등의 정치적 조직에 개발 원조를 더한 3가지 기둥에 의한 포괄적인 대책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발원조를 통한 평화구축으로의 대책은 가버넌스(governance) 지원이나 인도 지원, 인간의 안전보장의 실현을 지향하는 활동, 다양한 주체에 의한 인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환경의 폭 넓은 분야에 이르는 것입니다.

평화, 환경, 빈곤의 지구규모의 과제 해결을 위해 지구에 살고 있는 일원으로써 날마다 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자선이 할 수 있는 가까운 일에서 행동해 나가는 사람들을 지구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가진 시민의 가까운 활동도 평화 실현에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이 진행되는 지금, 지역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평화•인권존중을 기본으로 지역의 정치를 폭 넓게 깊어지는 지방자치체는 평화 구축에 관해 국가와 함께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평화시장회의나 다반 선언•행동계획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에서는 도시의 국제적 연대 아래, 평화구축을 향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 국제 평화 신현을 위한 대책

본 시(市)에서는 평화사회의 실현을 위해 시민의 의식 향상이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행하고 있습니다.

유니팸(국제 연합 여성 개발 기금)

국제연합 세계 여성 회의의 부름에 응해 1976년(쇼와 51년), 국제 총회 결의 기초하여, 국제 연합여성의 10년 기금으로써 설립되어 1985년(쇼와 60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개정된다. 국제 연합중에서 국제 연합개발계획(UNDP)와 연대관계에 있는 독립기관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여성의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한다.

진 심의회」의 제언을 얻으면서 인권 시책을 추진합니다.

④ 유네스코(국제 연합 교육학과 문화 기관)이나 유니팸(UNIFEM - 국제연합 여성 개발 기금) 등의 국제 기관 및 세계 도시나 국내외의 NGO, NPO와의 연대,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정보교환, 정보공유를 진행하고, 글로벌적인 시각을 가진 인권 시책의 추진을 도모합니다.

●●● 2. 인권 의식 조사 결과 반영 ●●●●●●●●●●

인권의식 조사는 「인권옹호 선언도시」에 어울리는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시민의 인권과제 전반에 관한 의식을 파악하고 이후의 인권시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5년(쇼와 60년)에서 약 5년에 한번 실시하여 지금까지 5회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제 5회는 2005년(쇼와 17년)에 실시)

이 조사에서 얻은 시민의 인권 과제에 대한 의식 추이는 파악하고 각각의 과제를 기반으로 한 인권시책 추진을 도모합니다.

●●● 3. 사카이(堺)평화와 인권존중 도시 만들기 조례 추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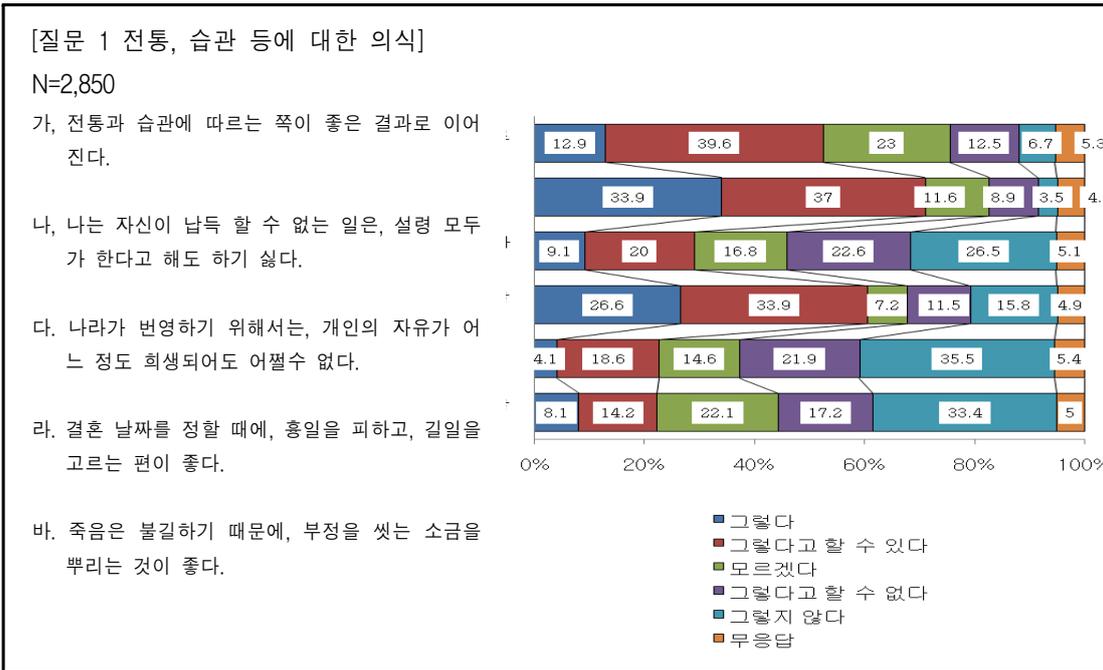
모든 인간이 고유의 존엄성을 가지고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인류보편의 원리이며 세계 인권 선언 및 일본 국 헌법의 이념입니다.

본 시(市)에서는 이 이념들에 걸맞게 지금까지도 인권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2006년(헤이세이 18년) 4월의 정령지정도시 이행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대책을 한층 발전 시켜 국제평화 실현과 유지 및 인권과제의 해결을 위해 지구적 규모의 시야를 가지고 행동하여 세계를 위한 평화와 인권존중의 소중함을 발신하는 도시 만들기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카이(堺)시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도시 만들기 조례」를 2007년 (헤이세이 19년)에 실행했습니다.

이 조례의 이념에 기초하여 국제 평화 공헌 활동을 행한 개인이나 단체를 표창하는 「자유도시·사카이(堺) 평화 공헌상」의 실시와 국내외의 국제평화나 인권 존중의 소중함을 발신하고 지방자치체로서의 국제 평화 공헌의 대책 모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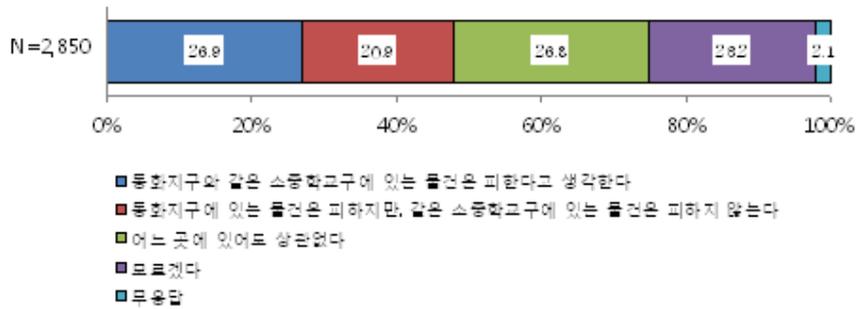
그리고 이 대책들을 통해, 시민의 행동이나 활동은 그것이 아무리 가까운 곳에 있어도 세계의 평화 촉진이나 인권침해를 해소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넓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적극적으로 평화, 인권의 과제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적인 시야를 가진 평화·인권의식을 길러, 행동하는 것을 촉진하겠습니다.

4. 평가 시스템



[질문 8 동화지구에서 주택을 구입, 대여하는 상황]

N=2,850



[질문 10 부락차별을 없애는 방법]

N=2,850

가, 차별, 차별 이라고 소란 떨지 말고, 가만히 놔두는 편이 좋다.

나, 동화지구 사람이 안정된 일에 정착한다면 부락차별은 없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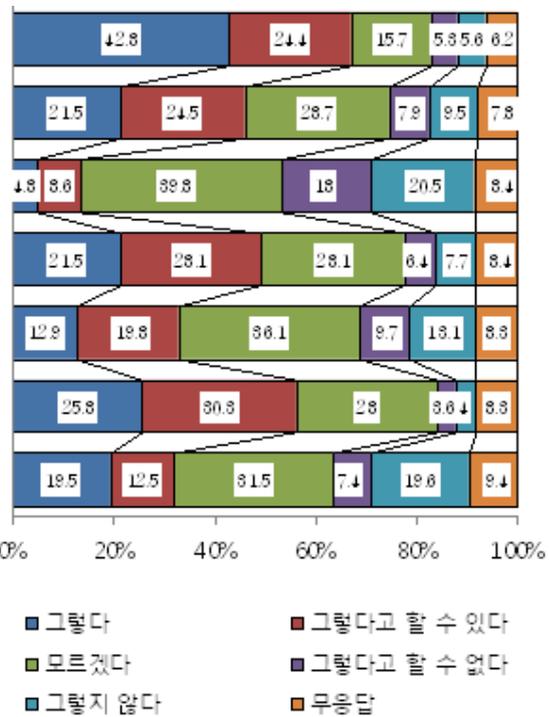
다, 동화지구 사람이 적극적으로 차별의 부당성을 호소하여,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다면, 차별은 없어진다.

라, 우리들이, 인권의식에 눈뜨고, 차별을 용서하지 않는 태도와 행동을 가진다면 차별은 없어진다.

마, 동화지구의 사람들이, 분산해서 살도록 하면 차별은 없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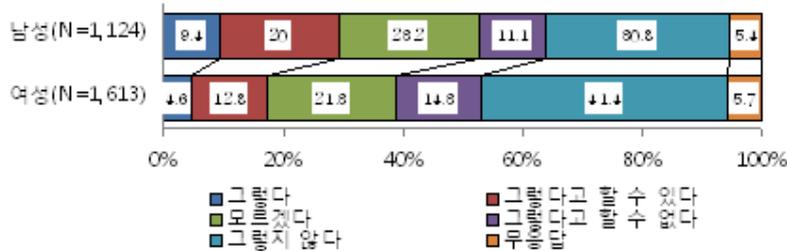
바, 동화지구와 주변지역의 사람이 교류하고 협동하여 차별없는 마을 만들기를 시작한다.

사, 법률로 차별을 금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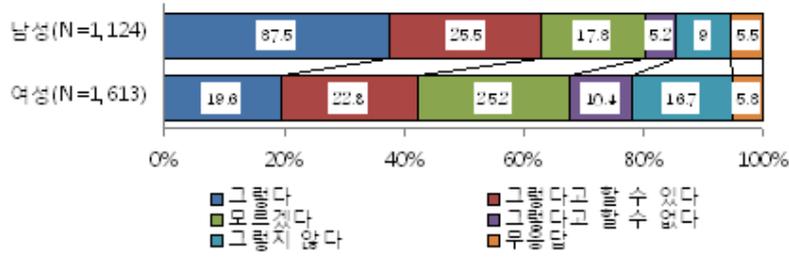


[질문 12 가, 남성은 밖에서 일하고, 여성은 집에서 가사, 육아를 해야한다.(성별)]

N=2,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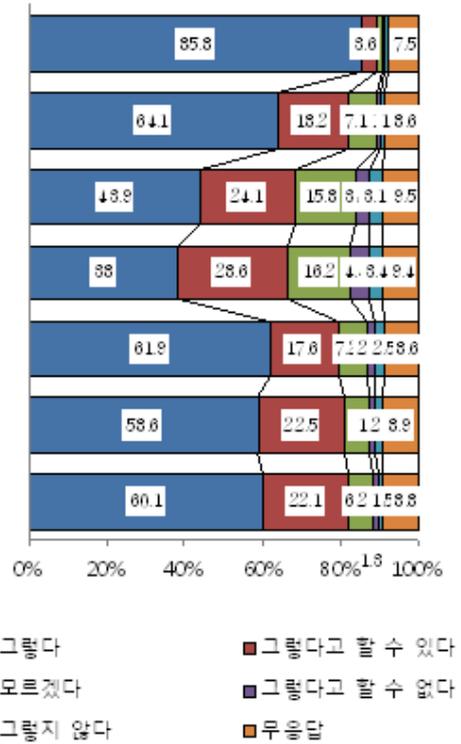


[질문 12 바, 여자이이는 여자답게, 남자아이는 남자답게 자라는 편이 좋다.(성별)]
N=2,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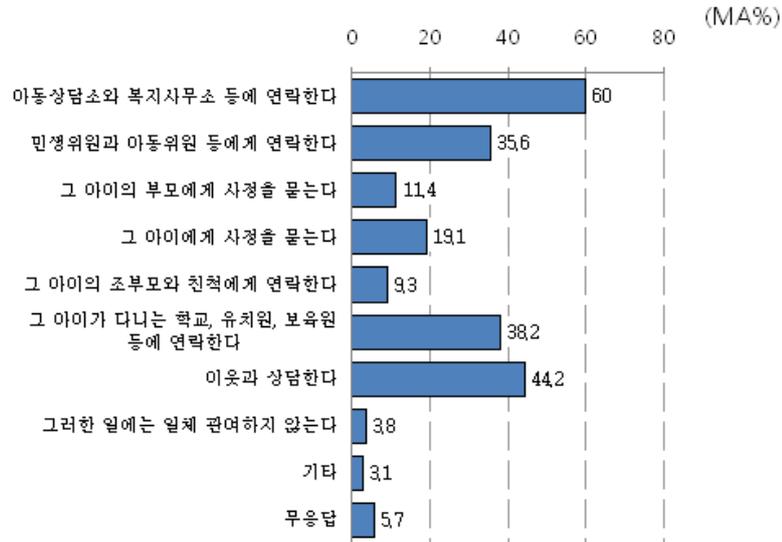


[질문 14 배우자간에 행해지는 폭력에 대한 견해]
N=2,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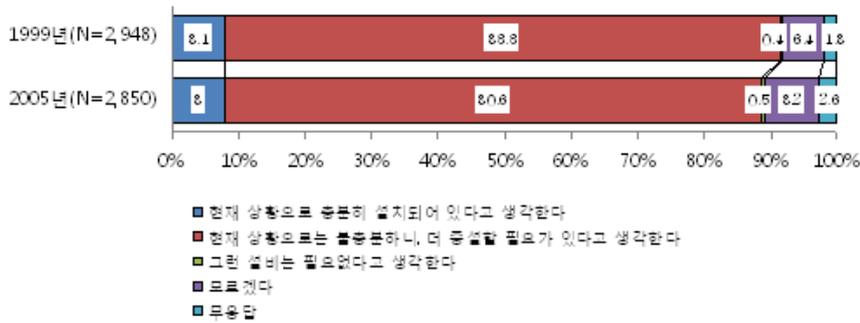
- 가, 때리고 차는 행위
- 나, 싫어 하는데도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다, 장시간 계속 무시하는 행위
- 라, 교우관계와 전화 등을 세세히 감시하는 행위
- 마, 생화비 등을 주지 않는 행위
- 바, 의지박약, 누구 덕에 생활할 수 있는데 등 반복적으로 말하는 행위
- 사, 때리는 시늉을 하거나, 큰소리르 외치거나 하는 행위



[질문 18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의 행동]



[질문 20 거리에서의 장애우를 위한 설비에 대한 견해(전회 조사와의 비교)]



[질문 24 배우자간에 행해지는 폭력에 대한 견해]

N=2,850

가, 고령자도 가능한 연금 등의 관리는 자기자신이 하는 편이 좋다.

나, 심신의 쇠약이 일어났어도, 본인이 희망하면 오랜 기간 친숙한 지역에서 사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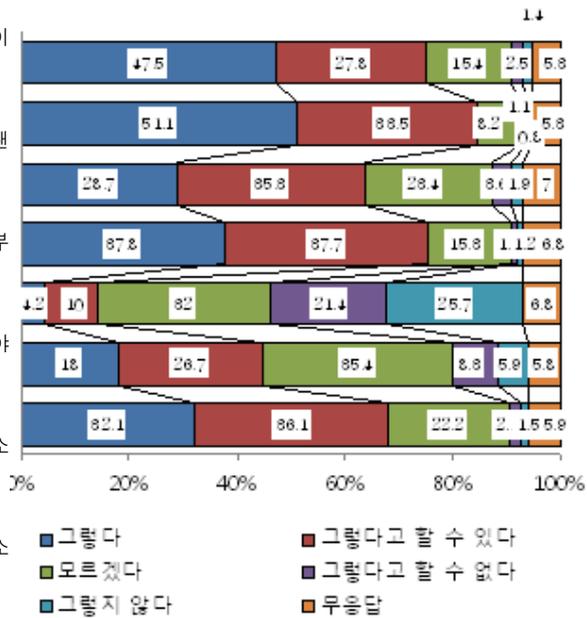
다, 거리와 건물 만들기는 고령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라, 고령자가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늘려야만 한다.

마,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면, 시설 등에 입소하는 편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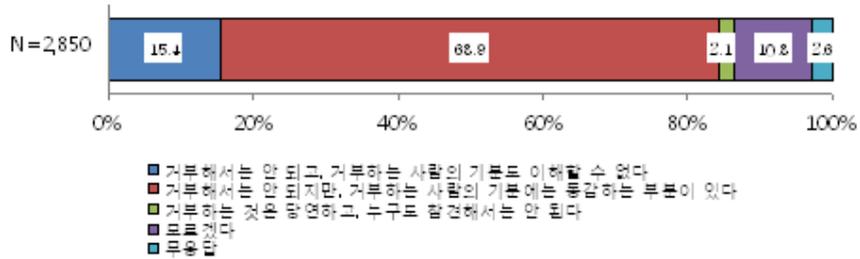
바, 간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면, 시설 등에 입소하는 편이 좋다.

사, 가까이에 고령자 만의 세대가 거주한다면, 말을 걸거나, 배려하겠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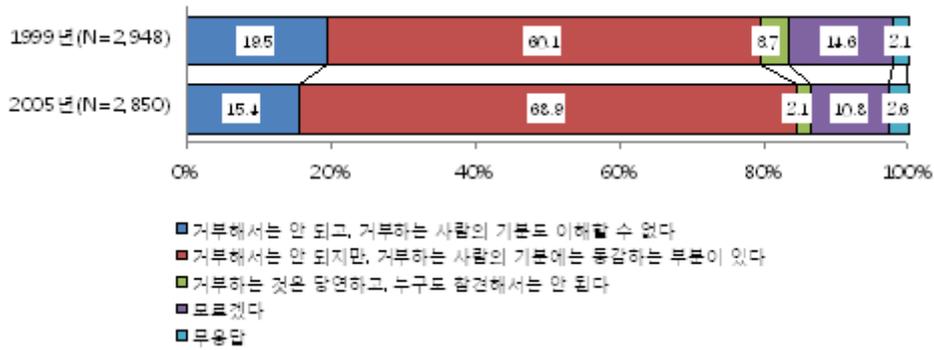


[질문 27 외국인에게 방을 대여할 때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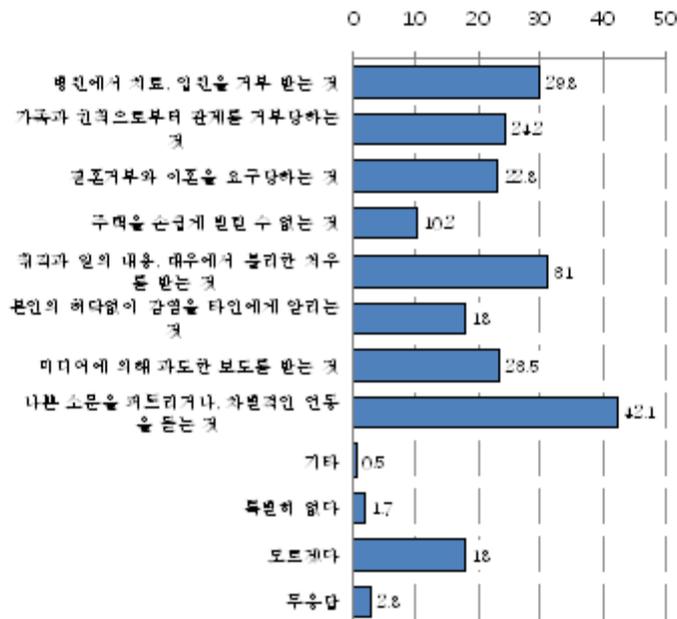
N=2,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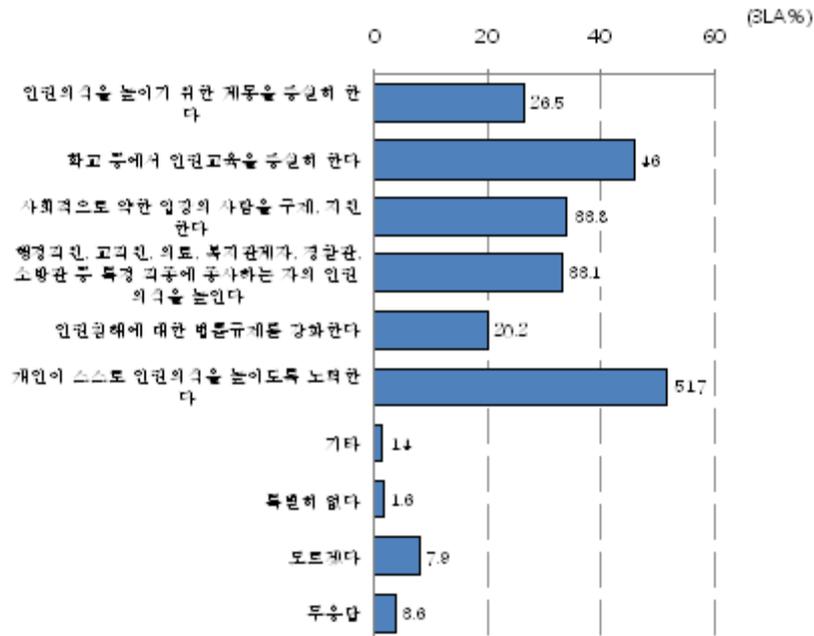
[질문 27 외국인에게 방을 대여할 때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견해]



[질문 30 에이즈환자, HIV감염자, 한센병 회복자 등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



[질문 32 인권이 존중 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질문 33 인권문제의 계몽활동에 대한 참가상황]

n=2,850



사카이(堺)인권 시책 추진 기본 방침

1. 기본 방침의 책정 취지

(1) 인권존중의 조류

인류에게 대 참화를 가져 온 제 2차 세계 대전의 반성에 기초하여 1948년 12월 10일 제 3회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세계인권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선언의 제 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이며, 존엄과 권리를 가지고 평등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음으로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지킬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이후 그 정신을 구체화 하기 위해 다양한 인권 조약이 만들어지고 세계 사람들에게 그 정신을 넓히기 위해 1975년 국제 여성의 해, 1979년 국제 아동의 해, 1981년 국제 장애인의 해 등이 설정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1976년에 발표된 국제 인권 규약(모든 사회권 규약·자유권 규약)은 국제적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중요한 규약입니다. 1979년 우리 나라는 이 2개 인권 규약을 비준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제 49회 국제 연합 총회에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를 '인권 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 10년'이라고 하는 결의가 채택되고, 같은 해 '동행동 계획'이 보고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권 문화로 세계를 가득 채우려는 커다란 특징입니다. '인권 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 10년 행동 계획'은 우리 나라에서 국제 레벨·도시부현 레벨·시정촌(市町村) 레벨에서 지금 현재, 그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1997년 우리 나라에서도 '인권옹호 시책 추진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제 2조건에 국가의 책무로써 인권 교육 및 인권개발, 인권구제시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의의가 있습니다.

이 법률을 계기로써 2000년 '인권 교육 및 인권 개발 추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2002년 '인권 옹호 법'이 국회에서 심의 되었습니다.

(2) 기본방침의 책정

본 시(市)는 지금까지 헌법의 기본적 인권존중의 정신 아래 인권 시책을 시의 가장 중점 시책의 하나로 파악 하고 인권에 관한 세계의 조류나 국가·부(府) 등의 동향을 파악 하면서 행동해 왔습니다.

1965년의 '동화(同和) 문제의 해결은 나라의 책무이며, 국민적 과제이다'라는 국가의 동화(同和) 대책 심의회 답신 이후, 1972년의 '사카이(堺)시 동화(同和) 대책 사업 종합 계획', 1988년의 '사카이(堺)시 동화(同和) 행정 기본 방침'에 기초한 동화 행정의 추진을 시작으로 1980년 인권옹호 도시 선언, 1998년 '인권 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 10년 사카이(堺)시 행동 계획', 2001년 사카이(堺)시 종합계획 '사카이(堺) 21세기·미래 디자인', '인권 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 10년 사카이(堺)시 후기 행동 계획', 그리고 2002년 '사카이(堺)시 남녀 평등 사회의 형성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는 등, 인권 시책을 추진 해 왔습니다.

2004년 12월까지의 '인권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 10년 사카이(堺)시 후기 행동 계획'을 더욱 발전

시키기 위해, 사카이(堺)시 인권 시책 추진 기본 방침을 책정 했습니다.

이것은 현행 후기 행동 계획의 정신을 이어 받아 새롭게 책정 하는 사카이(堺)시 인권 시책 추진 계획의 기본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 대책을 강구해야 할 과제

본 시(市)의 여러 가지 인권 시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다양한 인권에 관련된 차별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시(市)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과제로써 이하의 문제가 있습니다.

동화문제

지금까지 동화(同和) 대책에 관한 국가의 특별법을 지침으로 적극적으로 행동 해 온 결과,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만 중도퇴학으로 나타나는 교육 과제나 실업률, 불안정 고용의 노동문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또 기피의식이나 결혼관으로 나타나는 차별의식의 해소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성의 인권

사람들의 의식이나 행동, 사회관행 속에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차별 '젠더'가 뿌리 깊게 남아 있어, 사회생활의 다양한 면에서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사회가 남성이 매우 살기 쉬운 사회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섹슈얼·헤어스먼트(sexual harassment), 스토키 행위, 디메스틱·바이올런스(domestic violence - 배우자 등의 가까운 관계의 사람으로부터의 신체적·성적·정신적·경제적 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인권

학교, 가정, 지역의 연대가 불충분한 상황에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따돌림, 언어·폭력에 의한 괴롭힘이나 교사에 의한 체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심각화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청소년 범죄, 약물남용 등의 비행 행위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

사회에는 아직 장애인에 대한 편견·차별 의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시설 등을 설치 할 때, 반대운동(마찰)이 일어나 설비 정비가 진행되지 않는, 설비 콘플릭트(conflict) 문제가 이것의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 보급 촉구 등의 장애인에 대한 필요 불가결한 사회 환경 정비의 촉구도 과제입니다.

고령자의 인권

2015년(헤이세이(平成) 27년)에는 4명중 1사람이 65세 이상인 고령사회가 도래한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익숙한 도시에서 자립하여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환경 정비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 혼자 사는 고령자나 인지증 고령자, 장애가 있는 고령자가 재산이나 금전을 사기 당해 빼앗기거나, 폭력, 학대를 받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령자의 간호는 장기화, 중도화 되는 한편 간호자의 고령화, 가정의 간호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것 등, 간호를 둘러싼 인권 문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 인권문제는 시민 스스로의 문제라는 것에 이해를 얻는 것.
- 인권 교육에 참여하는 인재의 양성을 도모하는 것

제3은 인권 옹호를 도모하는 시책입니다.

[기본 방침]

- 본 시(市)의 각 상담창구는 본래 업무에 더해,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인권 구제 창구가 되기도 한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사례를 모으고 연대를 도모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 각 상담 창구 담당자는 다양한 인권 문제와 그 이해 방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 받기 때문에 담당직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
- 이렇게 3가지의 시책을 기초로 인권 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면서 종합적인 인권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실시주체로는 행정뿐 만 아니라 민간단체, 공익법인, 기업 등도 있습니다. 인권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해 가기 위해서는 실시 주체간의 협동·연대도 중요합니다.

사카이(堺)시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도시 만들기 조례

헤이세이(平成) 18년 12월 22일
조례 제 77호

(본문)

우리 사카이(堺)시에 사는 사람들은 고대부터 국내외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창조성가 자립의 정신을 키워, 우리 나라의 훌륭한 자치도시를 구축해 왔다. 또, 다도를 통해 세계에서 빛나는, 평화를 존중하는 문화를 창조하고 과거 몇 번의 전화(戰禍)를 겪으면서도 부흥을 이뤄 냈다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나 평화사회의 실현과 유지는 국제사회 공통의 원리이며 일본 국 헌법이나 세계 인권선언의 이념이다.

그러나 현재 아직도 우리들의 사회에는 인종, 민족, 국적,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문벌 혹은 장애에 따라 인권에 관한 많은 과제가 존재하며 더욱이 분쟁이나 빈곤에 의해 어린이나 여성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놓여 있는 나라와 지역이 지구상에는 수많이 존재한다.

우리들은 이러한 현실을 다시 보고, 미래를 준비해 전쟁은 최대의 인권침해라는 인식을 가짐과 함께 모든 사람이 존엄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도시 만들기를 진행하는 '인간의 안정 보장'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평화를 존중하는 문화의 전승자이며 지구시민인 우리는 국제평화의 실현과 유지 및 인권과제의 해결을 위해 세계를 향해 행동하고 발신하는 도시 '국제 평화 인권 도시 • 사카이(堺)'에 힘쓸 것을 결의하고, 이 조례를 제정한다.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대해 시의 책무 및 시민의 역할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평화나 인권 존중에 관한 의식 향상, 인권과제의 해결 및 인권옹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이하, 인권 시책)이라 한다)의 추진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도시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의 책무)

제2조 시는 국가, 오사카 부 및 국내외의 관계기관에 시민과의 연대를 높이고 모든 시책을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시각을 가지고 실시 함과 함께, 인권 시책을 총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정에 관련 있는 사람은 이 조례의 이념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행동해야 한다.

(시민의 역할)

제3조 시민은 이 조례의 이념을 이해하고, 평화 인권 등 지구 규모의 과제에 대해 가까운 곳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는 지구시민의 일원으로써의 인식을 가지고 행동하며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사업의 추진)

제4조 시는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대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 해야 한다.

- (1) 평화나 인권에 관한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계발사업
- (2) 교류, 협력 및 공헌에 관계된 활동 및 현장을 통해 평화를 촉진하는 사업
- (3) 인권 옹호를 추진하는 사업
- (4) 전 3호에 드는 것 이외에, 이 조례의 목적 실현에 도움이 되는 사업

(추진계획의 책정)

제5조

1. 시장은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도시 만들기를 총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카이(堺)시 인권 시책 추진 계획(이하 이 조에 관해 '추진 계획'이라고 한다)를 책정하고, 인권시책을 추진 해야 한다.
2. 시장은 추진 계획을 책정함에 있어, 다음 조건의 사카이(堺)시 인권 시책 추진 심의회의 견해를 듣고 시민

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해야 한다.

3. 시장은 추진계획을 책정 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이것을 공표해야 한다.
4. 시장은, 추진계획의 진행관리를 행하고, 사회상황의 변화에 대응해 재검토를 행해야 한다.

(사카이(堺)시 인권시책 추진 심의회)

제6조

1. 인권시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고 의견을 내놓기 위해 본 시(市)에 사카이(堺)시에 인권시책 추진 심의회(이하 이 조에 관해, 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2. 심의회는 위원 12명 이내로 조직한다.
3. 위원은 학식 경험자나 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또는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단 재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위원이 부족한 경우에 보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6. 제 2항부터 전(前)항목까지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해 필요한 항목을 규칙으로 정한다.

(위임)

제 7조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헤이세이(平成) 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6조의 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헤이세이(平成) 19년 규칙 제 85호부터 헤이세이(平成) 19년 8월 1일까지 시행)

사카이(堺)시 남녀 평등 사회의 형성 추진에 관한 조례

헤이세이(平成) 14년 3월 28일

조례 제 8호

목차

전문

제1장 총칙(제1조~제9조)

제2장 기본적 시행(제10조~제13조)

제3장 추진체제 등(제14조~제17조)

제4장 잡칙(제18조)

부칙

우리 나라는 여성차별 철폐 조약을 축으로 한 국제적인 조류 속에서 21세기의 우리 나라 사회를 규정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써 남녀 평등사회의 실현을 들고 남녀공동 계획참여 사회 기본법을 제정했다.

사카이(堺)시는 다른 시보다 앞서 여성문제 행동 계획을 책정하고 남녀 공동 사회 계획 참여 선언 도시가 되는 등, 남녀 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해 왔는데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 의식이나 이것에 기초한 사회관습 등은 여전히 뿌리가 깊고 전국적으로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문제화 되는 등, 남녀평등의 달성에는

많은 과제가 남겨져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발판으로 풍족하고 안심 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해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고정화 된 남녀의 역할에 관계 없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 함과 동시에 모든 분야에서 남녀가 대등하게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남녀 평등 사회의 실현이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사카이(堺)시의 주요 정책으로써 남녀평등 사회의 실현을 지향할 것을 결의 하고 총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남녀 평등 사회의 형성 추진을 도모해, 21세기의 i,사람이 빛나는 시민주체의 사카이(堺)i를 구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본 시(市)에서 남녀평등사회의 형성에 관한 기본 이념을 정하고 시, 시민, 사업자 및 교육 관계자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시의 시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고 이것을 총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따라 남녀평등사회를 실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조례에 대해 다음 각 호로 드는 용어의 의미는 당해 각호로 정해진 것에 의한다.

- (1) 남녀평등사회: 모든 사람이 성별에 상관없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가 확보되는 것에 의해 대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직장, 학교, 지역, 가정 및 사회의 모든 분야(이하 단에 i,사회의 모든 분야i라고 한다)에 있어 활동적으로 계획에 참여하고 함께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말한다.
- (2) 적극적 격차 시정 조치: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는 성별간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있어 불리한 상황에 있는 성에 대해, 격차시정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 사업자: 본 시의 구역 내에서, 공적이거나 사적임을 불문하고 영리이거나 비영리임을 불문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기본이념)

제3조 남녀평등사회의 형성은 다음의 사항을 기본이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1) 남녀가 개인으로써 그 존엄이 존중되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임을 불문하고 성별에 의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고 개인으로써의 능력을 발휘 하는 기회를 확보 해야 한다.
- (2) 성별에 의한 고정적인 역할 분담에 기초하여 사회적 제도, 관행 또는 전통은 모든 사람의 자유선택에 대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없도록 재검토 되어야 한다.
- (3) 시의 정책 혹은 시민의 단체에서 방침의 입안 또는 결정에 남녀가 대등하게 계획에 참여할 기회가 확보되어야 한다.
- (4) 가족을 구성하는 자는 서로 성격을 존중하고, 상호협력과 사회 지원 밑에서 아이를 기르고, 가족의 간호 그 밖의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활동 및 사회생활에서의 활동에 균등한 책임을 분담하는 것.
- (5) 임부, 출산 그 밖의 성과 생식에 관해서는 자기 결정이 존중 되는 것 및, 생애를 통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
- (6) 남녀의 성별에 상관 없이, 성 동일 장애를 가진 사람, 선천적인 신체상의 성별이 불명료한 사람 및 그 밖의 모든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야 한다.
- (7) 남녀평등사회의 형성 추진을 위한 대책은 국제사회에서의 대처와 협조를 행하는 것.

(시의 책무)

제4조

1. 시는 남녀 평등사회의 형성 추진에 관한 시책(적극적 격차 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i,남녀평등추진시책i이라 한다.)을 총합적으로 책정하고 실시할 책임을 가진다.
2. 시는, 남녀평등 추진 시책을 실시 함에 있어, 국가, 부, 시민 및 사업자와 상호 연대하고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시민의 책무)

제5조

1. 시민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스스로 나아가 남녀평등 사회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시민은 시가 실시하는 남녀평등 추진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업자의 책무)

제6조

1. 사업자는 남녀가 직장에서 활동할 때 대등하게 계획에 참여할 기회의 적극적 확보에 노력함과 동시에 직업 생활에서의 활동과 가정생활에서의 활동 그 밖의 활동에서 양립할 수 있도록 직장 환경을 정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사업자는 시가 시책하는 남녀평등 추진 시책에 협력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관계자 등의 책무)

제7조

1. 가정교육, 직장교육, 학교교육, 사회 교육, 그 밖의 모든 분야의 교육에 관여하는 자는 남녀평등의 이념을 배려한 교육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누구나가 어린이들의 남녀평등 교육에 관해 스스로 적극적으로 계획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별에 따른 권리침해 금지)

제8조

1. 누구나가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불문하고 성별을 이유로 하는 권리침해 및 차별적 취급을 행해서는 안 된다.
2. 누구나가 지역, 직장, 학교, 그 밖의 모든 장소에서 섹슈얼 헤러스먼트(sexual harassment-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언동에 의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또는 상대의 생활 환경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을 행해서는 안 된다.
3. 누구나가 개인의 존엄을 짓밟는 더메스틱 바이올런스(domestic violence-배우자 등 가까운 관계의 사람으로부터의 신체적, 성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폭력을 말한다.)및 이것과 상관 있는 아동 학대를 행해서는 안 된다.

(공중에 표시하는 정보에 관한 유의)

제9조 누구나가 공중에 표시하는 정보에 대해 성별에 의한 고정적인 역할 분담 및 성적 폭력을 조장하고 연상시키는 표현, 인권을 침해하는 성적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제2장 기본적 시책

(기본계획)

1. 시장은 남녀평등 추진 시책에 시장 및 사업자의 대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책정해야 한다.
2. 시장은 기본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 진행 관리에 관련된 적절한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3. 시장은 기본계획을 책정함에 있어, 제15조 제 1항으로 정해진 남녀평등 추진 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4. 시장은 기본계획을 책정 했을 때, 지체 없이 이것을 공표해야 한다.
5. 전2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해 준용한다.

(연차보고)

제11조 시장은 남녀평등 추진 시책의 실시상황 등에 대해 연차보고를 작성하고 이것을 공표한다.

(시민 및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

제12조 시는 남녀평등사회의 형성 추진에 대해 시민 및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광고활동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시민회의 위원 구성)

제13조 시장이나 그 밖의 시의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법(소와 22년 법률 제67호)제 138조의 4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속기관의 위원을 임명하고 혹은 위촉할 때, 남녀 어느 한쪽의 수가 위원 총수의 10분의 4미만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3장 추진체제 등

(시책의 추진체제 정비)

제14조

1. 시는 남녀 평등 추진 시책을 원활하고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며,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의 정비에 노력해야 한다.
2. 시는 모든 시책의 책정 및 실시에 있어서 남녀평등 사회의 형성의 시점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3. 시는 남녀평등 사회의 형성 추진을 위해, 필요한 거점기능의 정비에 노력해야 한다.

4. 시는 기본계획에 기초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그 밖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녀평등 추진 심의회)

제 15조

1. 기본 계획 및 남녀평등 형성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고 의견을 말하기 위해 사카이(堺)시 남녀 평등 추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2. 심의회는 시장이 임명하고 또는 위촉 하는 위원 15명 이내로 조직한다.
3. 시장은 남녀 어느 한쪽의 성이 위원총수의 10분의 4미만이 되지 않도록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재임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 위원이 부족한 경우에 보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한다.

(불만 처리)

제 16조

1. 본 시(市)의 구역 내에 소재를 가진 자 또는 본 시(市)의 구역 내에 소재하는 학교, 사업소에 통학하고, 또는 통근하는 자(다음 조에서 「시민 등」이라고 한다)는 시(市)가 실시하는 남녀 평등 추진 실시 혹은 남녀 평등 사회의 형성 추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에 관한 불만 및 의견이 있을 경우에 시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출을 받았을 때에, 조사 하고 다음 조 제 2항으로 정해지는 사카이(堺)시 남녀 평등 상담 위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3. 시장은 전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상담 신출)

제 17조

1. 시민 등은 제8조로 규정하는 성별에 의한 권리 침해 및 남녀평등 사회의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에 의해 인권을 침해 받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출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카이(堺)시 남녀 평등 상담 위원(이하 조에서는 「상담위원」이라고 한다)를 둔다.
3. 상담위원은 학식경험자 및 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 상담 위원은 필요에 응하는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공 및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관계자에게 조언, 시정 요망 등을 행한다.

제4장 잡칙

(위임)

제18조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헤이세이(平成) 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15조부터 제 17조까지의 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헤이세이(平成) 14년 규칙 제 71호 에서 헤이세이(平成) 14년 10월 1일부터 시행)

사카이(堺)시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조례

헤이세이(平成) 20년 3월 28일

조례 제8호

(전문)

어린이와 청소년은 사회 구성에서 빠져서는 안될 존재이며 그 건강한 성장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 염원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체계의 변화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전국적인 학대, 괴롭힘, 등교거부 및 비행을 시작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쌓여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의 모습이 문제시 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는 유아기부터의 육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함과 동시에 국가나 오사카 부가 역할을 분담하고 사회전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성에 대책을 구해 그 인권이 지켜지며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구축을 마련 해야 합니다.

우리 사카이(堺)시민은 자유도시・사카이(堺) 사람들의 기풍을 주춧돌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풍부한 인간성과 강인하게 살아갈 힘을 기르고 미래사회를 짊어질 존재로써 세계로 나아갈 감성으로 다양한 문제에 대응 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힘을 더할 것을 여기에 결의하고 이 조례를 제정한다.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성에 대해 기본이념을 정하고 보호자, 학교, 시민, 사업자 및 사의 책무를 분명히 하는 것에 의해 사회전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기르는 환경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조례에서 다음 각호의 용어의 의미는 당해 각호에 정해진 것에 의한다.

- (1) 어린이와 청소년: 대개 18세 미만을 말한다.
- (2) 보호자: 다음 사람과 그 밖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현재 감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친권을 행하는 자 또는 미성년 후견인
 - 나) 아동복지법(쇼와 22년 법률 제164호)제6조 3으로 규정하는 양부모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으로 규정하는 아동 복지 시설의 장(長)
- (3) 학교: 본시의 구영 내에 존재하는 학교 교육법(쇼와 22년 법률 제26호)제1조로 규정하는 학교, 아동복지법 제39조 제1항으로 규정하는 보육소 및 그와 비슷한 시설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육하고 교육하며 또는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 (4) 시민: 본시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혹은 본시의 구역 내에 존재하는 학교, 사업소로 통근하거나 통학하는 자를 말한다.
- (5) 사업자: 본시의 구역 내에서 사업활동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기본이념)

제3조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기본 이념은 다음과 같다.

- (1)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성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자각하여 그 행동을 규율하고 협동하는 것.
- (2) 어린이와 청소년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써 존중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개성과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
- (3) 어린이와 청소년이 넓은 시야와 풍부한 인권 감각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

(어린이와 청소년의 마음 가짐)

제4조 어린이와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자립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새겨야 한다.

- (1)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소중히 여기고 친절한 마음이 깃든 행동에 노력하는 것.
- (2) 미래 사회를 짊어질 사람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자기 향상에 노력할 것.
- (3) 사회의 일원으로써 사회의 규범을 지킬 것.

(보호자의 책임)

제5조

1. 보호자는 가정에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각각의 발달 단계에 응하여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보호자는 어린이와 청소년과의 의식소통을 도모함과 동시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가

정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3. 보호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규범이 되는 행동에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책무)

제6조

1. 학교는 인권교육의 이념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자존 감정을 길러주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서로 존중 관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교는 시민과 협동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에 관한 여러 가지 과제에 대책을 세우는 제도 정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학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다른 어린이와 청소년 혹은 교직원과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노력해야 한다.

(시민의 책무)

제7조

1. 시민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에 지역이 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킴과 동시에 어린이 교육의 협력에 노력해야 한다.
2. 시민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풍부한 인간관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적절한 관계에 노력해야 한다.
3. 시민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주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사업자의 책무)

제8조

1.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을 행함에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를 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양호한 환경 만들기에 노력해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자가 가진 정보 및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성에 대해 학교의 교육활동, 지역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3. 사업자는 그 사업소에서 일하는 보호자가 제5조로 규정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고용 환경 정비에 힘써야 한다.

(시의 책무)

제9조

1. 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나 실태 조사 및 분석 시책 연구에 노력해야 한다.
2. 시는 어린이와 청소년 육성의 기본이념을 발판으로 다음 사항에 관련된 기본적 시책을 시행 해야 한다.
 - (1) 어린이와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 (2)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관한 사항.
 - (3)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회참가 촉진에 관한 사항.
 - (4) 임부기간 또는 육아 기간의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 (5) 학대, 체벌 및 괴롭힘 방지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 (6) 어린이와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배려한 상담체제에 관한 사항.
3. 시는 보호자, 학교, 시민 및 사업자가 행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대책에 대해 이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며, 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비를 행한다.
4. 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광고 활동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육성계획)

제10조

1. 시장은 어린이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시책의 총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본적인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고 한다)을 책정해야 한다.
2. 시장은 육성계획을 책정하기에 있어, 제12조로 규정 되는 사카이(堺)시 어린이와 청소년 육성 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시장은 육성계획을 책정 했을 때, 지체 않고 이것을 공표해야 한다.
4. 시장은 육성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 진행관리에 관한 적절한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육성계획의 변경에 대해 준용한다.

(연차보고)

제11조 시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시책의 실시 상황에 대해 연차보고를 작성하고 이것을 공표 해야 한다.

(사카이(堺)시 어린이와 청소년 육성회의)

제12조

1. 육성계획 이외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조사심의하고 의견을 말하기 위해, 사카이(堺)시 어린이와 청소년 육성회의(이하 '육성회의'라고 한다)를 둔다.
2. 육성회의는 위원 20명 이내로 조직한다.
3. 위원은 다음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하고 또는 위촉한다.
 - (1) 학식 경험자
 - (2) 사업자 및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성에 관계 있는 단체의 대표자
 - (3) 전 2호의 사람 이외에, 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재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위원이 결여될 경우 보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 간으로 한다.
5. 육성회의는 그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 부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에 부회의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하고 혹은 위촉한다.
 - (1) 육성회의의 위원
 - (2) 전호의 사람 중 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6. 제2항부터 전항까지 정해진 것 이외에 육성회의(부회를 포함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임)

제13조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기일)

1. 이 조례는 헤이세이(平成) 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 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사카이(堺)시 청소년 문제 협의 조례의 폐지)
2. 사카이(堺)시 청소년 문제 협의회 조례(쇼와39년 조례 제35호)는 폐지한다.

인권 교육 및 인권 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헤이세이(平成) 12년 12월 6일 법률 제147호)

조 제2항에 기초하여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피해자의 구제에 관한 시책 충실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 인권 옹호 추진심의회 조사 심의 결과를 기본으로 재검토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인권의 존중의 긴요성에 관한 인식의 증대, 사회적 신분, 문벌, 인종, 신조 혹은 성별에 의한 부당한 차별의 발생 등, 인권침해의 현상과 인권의 옹호에 관한 내외의 정세에 비추어, 인권교육 및 인권 계발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대해 국가, 지방공통 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정하고 나아가 인권의 옹호에 이바지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인권교육이란 인권 존중의 정신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활동을 말하며 인권계발이란 국민 사이에 인권존중의 이념을 보급시켜 거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나 계발

활동(인권교육을 포함하지 않는다.)을 말한다.

(기본이념)

제3조 국가 및 지방공공 단체가 행하는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은 학교, 지역, 가정, 직장 및 그 이외의 다양한 장소에서 국민이 그 발달단계에 응하고 인권존중의 이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이것을 체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의 제공, 효과적인 방법의 채용, 국민의 자주성 존중 및 실시기관의 중립성 확보를 주지해야 합니다.

(국가의 책무)

제4조 국가는 전(前)조로 정해진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기본이념(이하 '기본 이념'이라고 한다)에 따라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

(지방공공 단체의 책무)

제5조 지방공공 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가와의 연대를 도모하면서 그 지역의 실정을 기반으로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가 있다.

(국민의 책무)

제6조 국민은 인권존중의 정신 함양에 힘쓰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기본계획의 책정)

제7조 국가는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시책의 총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기본적 계획을 책정해야 한다.

(연차보고)

제8조 정부는 매년 국회에 정부가 강구한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재정상의 조치)

제9조 국가는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시책을 실시할 지방공공 단체에 대해 당해 시책에 관한 사업의 위탁 및 방법에 따라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 할 수 있다.

부칙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 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날에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이후에 강구한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시책에 대해 적용한다.

(재검토)

제2조 이 법률은 이 법률의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인권옹호 시책 추진 법(헤이세이(平成) 8년 법률 제120호) 제3조 제2항에 기초하여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피해자의 구제에 관한 시책 충실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 인권 옹호 추진심의회의 조사 심의 결과를 기본으로 재검토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인권옹호도시 선언에 관한 결의

사람은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이며, 인간으로서 존중 받고 인간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많은 시련을 거쳐, 기본적 인권향유를 보장하는 일본 국(國) 헌법 아래 실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사회 건설을 지향해 왔다. 또한 우리 사카이(堺)시민은, 앞서 모든 조화를 이념으로 하는 시민헌장을 제정하여 근로를 사랑하고 교육에 힘을 쏟아 상호부조와 사회질서를 존중하고 시민공동의 차별 없는 유복한 도시 만들기를 지향해 왔다.

그러나 현실 사회는 인간소외와 사회의식, 도덕심의 결여를 낳았고 특히 일본 국(國) 헌법에 나타나는 사상·신조·성별·사회적 신분에서의 인권침해 현상은 끝이 없다.

시민과 함께 바라고 구한 국제인권규약의 조약비준을 결의로 새롭게 기본적 인권의 존엄을 인식하고, 인간평등의 사회적 기반 확립을 목표로 시민 모두가 끊임없는 노력을 행할 것을 인식하여 여기 본 시(市)의 - 「인권옹호도시」를 선언한다.

쇼와(昭和) 55년 5월 31일

사카이(堺)시의회

선언

쇼와(昭和) 55년 제 3회 시의회에서
의원제창의안 제 6호 「인권옹호도시」 선언에 관한 의안이
전회 일치로 결의 된 것에 기초하여
여기 본 시(市)를 인권옹호선언도시라 한다.

쇼와(昭和) 55년 7월 9일

사카이(堺)시장

비(非) 핵 평화도시선언에 관한 결의

지금 세계는 핵 보유국의 끝없는 핵 군(軍) 확대 경쟁 속에서 인류의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우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자 폭탄의 세례를 받은 국민으로서 제 2의 「히로시마(廣島)」, 「나가사키(長崎)」의 참화를 반복 되지 않게 할 책임을 지고 있다. 본 시(市)도 이전 전쟁의 공습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초토화 되었는데 만약 오늘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 순간에 침몰할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는 평화헌법과 시민의 평화로 안전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 세계사람들과 손을 잡고 핵병기의 완전금지를 강하게 호소해야 한다. 또한 비핵삼원칙의 견지를 정부에 약속 받아 앞으로 어떠한 핵병기, 핵 관련부대도 본 시(市)내 혹은 그 주변에 배치, 저장 하는 것을 거부하고 또 통과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평화로운 사회 실현을 바라는 전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모든 핵병기가 폐절 될 때까지 행동할 것을 확인하며 여기 본 시(市)를 「비 핵 평화도시」로 선언한다.

쇼와(昭和) 58년 3월 25일

사카이(堺)시의회

堺市の人権伸張のための人権体系

堺市人権推進課 八木 則之

1. 堺市について

(1) 市の概要

- ①面積 約150km²
- ②人口 約83万人
- ③財政規模 6,274億4,206万円 (2010年度当初予算総額)
- ④市制施行 1889年
- ⑤その他 全国で15番目の政令指定都市

(2) 歴史・文化

①古墳文化

古代、朝鮮半島から多くの渡来人が堺に住み、文字や技術を伝えるとともに古墳文化を築いた。

→多文化共生

②自治都市堺

の、将棋一徹、権力に迎合せず、自分が信じる将棋を極めた生き方。ア. これまでの国内での取組みの展示を通して、差別をなくし人権尊重の社会を築くことの大切さを訴える施設。

→個性の尊重・反骨の精神。

③3度の戦災

応永の乱 (1399年)、大阪夏の陣 (1615年)、
第二次世界大戦による堺大空襲 (1945年) という3度にわたり堺の町は焦土と化した。

上 現在の堺市 下 空襲直後の堺市



(平和と人権資料館展示写真より)

そのつど民衆の力により復興。

の、将棋一徹、権力に迎合せず、自分が信じる将棋を極めた生き方。

→個性の尊重・反骨の精神。

④民衆布教

古代、渡来人の子孫で堺出生の僧、行基による民衆布教活動。

→社会奉仕事業・草の根運動

⑤茶の湯のこころ

堺出身の千利休の茶の湯の精神「おもてなしの文化」＝「和敬清寂」

→他人への思いやり 平等の精神

⑥近代歌人の活動

堺出身の近代歌人と謝野晶子の詩「山の動く日きたる」や、出版・評論に代表される活動。

→女性の自立

⑦将棋の文化

堺の生んだ将棋名人阪田三 ■ の、将棋一徹、権力に迎合せず、自分が信じる将棋を極めた生き方。

→個性の尊重・反骨の精神。

2. 条例・計画・決議

(1) 決議

①「人権擁護都市宣言」 堺市議会決議1980年5月・堺市宣言1980年7月

②「非核平和都市宣言に関する決議」 (堺市議会) 1983年3月

(2) 総合計画

「堺市総合計画」 前期基本計画 (2001年度～2010年度)

「人権尊重と世界平和への貢献」 (第1部第1章)

①すべての人が尊重される社会づくり

②男女共同参画社会の実現

③世界平和への貢献

(3) 条例

①「堺市男女平等社会の形成の推進に関する条例」 2002年4月施行

『総合的かつ計画的に男女平等社会の形成の推進を図る』 (前文)。

②「堺市平和と人権を尊重するまちづくり条例」 2007年1月施行

『市は、あらゆる施策を平和と人権を尊重する視点を持って実施』 (第2条)。

→市の責務

『市民は、平和と人権を尊重するまちづくりの推進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3条)。→市民の役割

③「堺市子ども青少年の育成に関する条例」 2008年4月施行

『社会全体で子ども青少年を育む環境づくりを推進』 (第1条)。

→保護者・学校等・市民・事業者・市の責務

(4) 平和と人権を尊重するまちづくり条例の推進

①「自由都市・堺 平和貢献賞」 2008年創設

第4条2に基づき、アジア・太平洋地域を中心に国際的な平和貢献活動をおこなっ

た個人や団体を表彰。

- ② 「堺市人権施策推進計画」 2009年9月
第5条に基づき策定。

策
定
の
視
点

- ア. これまでの国内での取組み
イ. 国際的な人権基準・枠組み
ウ. 新たな社会的要請を踏まえた視点



第1回自由都市・堺 平和貢献賞授賞式 (2008・10・6) で表彰されるスリランカのジハン・ペレラ氏

3. 職員人権研修

- (1) 新規採用職員研修

人権の基礎的知識の習得

- (2) 2・3年目職員研修

職務への応用の視点・具体的行動

- (3) 新任役職者研修 (課長級・課長補佐級・係長級)

管理監督者として人権課題の解決に向けた知識の習得

- (4) 人権主担者研修

原則として各課に1人人権主担者をおく。

- ① 自主研修

人権主担者を班分けし、助言者をおき、自主研修をおこなう。

の展示を通して、差別をなくし人権尊重の社会を築くことの大切さを訴える施設。



平和と人権資料館内部



船松人権歴史館内部

사카이(堺)시의 인권신장을 위한 인권 체계

사카이(堺)시 인권추진과(課) 야기 노리유키(八木 則之)

1. 사카이(堺)시에 대해

(1) 시의 개요

- ① 면적: 약 150km²
- ② 인구: 약 83만 명
- ③ 재정규모: 6,227억 5518만엔 (2009년도 초 예산총액)
- ④ 시제(市制) 시행: 1889년
- ⑤ 그 밖 : 전국에서 15번째의 정령(政令) 지정 도시

(2) 역사·문화

① 고분 문화

고대, 조선반도에서 많은 도래인(渡来人)이 사카이(堺)에 살면서 문화와 기술을 전하고 고분 문화를 주춧돌을 쌓았다.

→ 다문화 공생

② 자치 도시 사카이(堺)

중세시대 봉건 영주로부터 독립하여 상인을 중심으로 한 자치도시를 형성하고 해외와의 교역이 번성했다.

→ 자치·자립·국제화

③ 3번의 전쟁 재해

오에이의 난(1399년), 오사카 여름 진(1615년), 제 2차 세계대전에 의한 사카이(堺) 대 공습(1945년)의 3번에 걸쳐 사카이(堺) 도시는 초토화 되었는데 그때마다 민중의 힘으로 다시 부흥.

→ 평화의 희망과 갈구

④ 민중 포교

고대, 도래인(渡来人)의 자손과

사카이(堺)출생 승려, 교키(行基) 스님에 의한 민중포교

활동.

→사회봉사 사업·풀 뿌리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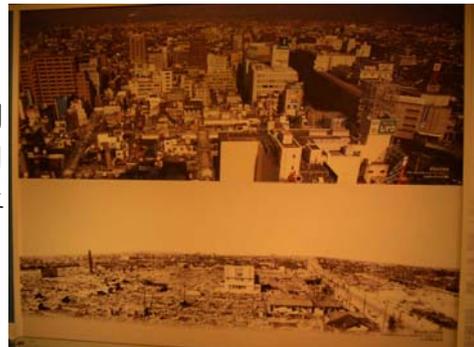
⑤ 다도의 정신

사카이(堺) 출신 센 리큐(千利休)의 다도 정신.

(접대의 문화) = 「화경 정숙(和敬清寂)」

⑥ 근대 가인의 활동

사카이(堺) 출신의 근대 가인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의 시 「산이 움직이는 시기가 왔다」 나



상: 현재의 사카이(堺)시, 하: 공습
직후의 사카이(堺)시
(평화와 인권자료 전시관 사진에서)

출판·평론으로 대표되는 활동.

→ 여성의 자립

⑦ 장기 문화

사카이(堺)가 낳은 장기 명인 사카타 산키치(阪田三吉)의 장기에 대한 고집, 권력에 영합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가 믿는 장기를 구하려는 삶의 방식.

→ 개성의 존중·반골 정신

2. 조례·계획·결의

(1) 결의

① 「인권옹호 도시선언」 사카이(堺) 시의회 결의 1980년 5월·사카이(堺)시 선언 1980년 7월.

② 「비 핵 평화 도시선언에 관한 결의」 (사카이(堺)시의회) 1983년 3월

(2) 종합계획

「사카이(堺)시 종합계획」 전기 기본 계획(2001년도~2010년도)

「인권 존중과 세계평화로의 공헌」 (제1부 제1장)

① 모든 사람이 존중 받는 사회 만들기

② 남녀가 공동으로 계획에 참여하는 사회의 실현

③ 세계평화를 위한 공헌

(3)조례

① 「사카이(堺)시 남녀 평등 사회의 형성 추진에 관한 조례」 2002년 4월 시행

『총합적이고 계획적인 남녀 평등 사회의 형성 추진을 도모한다』 (전문)

② 「사카이(堺)시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도시 만들기 조례」

2007년 1월 시행

『시는 모든 시책을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시점을 가지고 시책』 (제2조)

→ 시의 책무

『시민은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도시 만들기의 추진에 힘써야 한다』 (제3조)

→ 시민의 역할

③ 「사카이(堺)시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조례」 2009년 4월 시행

(4)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도시 만들기 조례 추진

① 「자유도시·사카이(堺) 평화공헌상」 2008 년 창설.

제4조 2에 근거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평화공헌 활동을 행한 개인이나 단체에 표창.

② 「사카이(堺)시 인권시책 추진계획」 2009년 9월 제5조에 근거해 책정.

<책정 시점>

- a.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활동
- b. 국제적인 인권기준·구조
- c. 새로운 사회적 요청에 입각한 시점
- ③ 「사카이(堺)시 인권시책 추진 심의회」
2007년 8월 제 6조에 근거해 설치



제 1회 자유도시·사카이(堺) 평화공헌상 수여식
(2008.10.6)에서 표창 받는 스리 랑가의 장렐라씨

3. 직원 인권 연수

(1) 신규채용 직원 연수

인권의 기초적 지식 습득

(2) 2,3년 차 직원 연수

직무로 응용하는 시점·구체적 행동

(3) 신임 임원의 연수(과장급·과장 보좌 급·계장급)

관리 감독자로서 인권 과제 해결을 위한 지식 습득

(4) 인권 주 담당자 연수

원칙적으로 각 과에 한 사람의 주요 인권 담당자를 둔다.

① 자주연수

인권 주요 담당자를 나누고, 조연자를 두어, 주요 연수를 행한다.

② 전체 연수.

인권 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전체 연수를 실시 .

(5) 직장에서 인권 연수

소속 장과 인권 주 담당자를 중심으로 직장 연수 실시.



인권 주 담당자에 의한 코리안 타운

4. 계발 활동

(1) 헌법주간·인권주간

① 헌법주간

국가는 일본 국 헌법이 실시된 5월 3일을 중심으로 5월 1일~7일을 헌법 주간으로 정하고 본 시(市)에서 헌법으로 보장 받는 국민주최, 기본적 인권 존중, 평화주의 정신을 계발.

② 인권주간

국가는 세계 인권 선언이 국제연합으로 채택된 12월 10일을 기념한 매년 12월 4일~10일을 인권주간으로 정하고 본 시(市)에서 세계 인권선언의 정신을 보급 촉진 → 시내 19개 역

에 계발 상품 배부.

(2) 평화와 인권 전(展)

매년 8월에 사카이(堺) 시내의 상업 시설에서 평화와 인권 테마를 주제로 한 패넬전이나 콘서트 실시.

(3) 각 종류의 세미나

다문화 공생 사회를 주요 테마로 한 워크숍 형식의 세미나와 각 종류의 체험 강좌, 필드 워크 등을 실시.

(4) 상담업무

① 차별사상의 대응

차별 발언이나 차별 문서 등의 차별사상에 대응.

② 인권상담

시민의 인권상담에 대응.



구민 모임에서 지역 사람과 교류

(5) 지역과의 연대

① 사카이(堺) 시 인권 교육 추진 협의회

a. 학군 추진 위원

사카이(堺) 시내 각 지역에서 추천 받은 인권 학군 추진 위원을 대상으로 매년 연수회 실시.

b. 구민모임

사카이(堺) 시내 각 구에서 개최된 구민 모임에서 패넬전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과 교류하면서 인권의 중요성을 계발.

c. 강연회·연수회

인권 주간 기간에 「인권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의 개최나 각 종류의 연수회를 실시.

d. 기업부회

사카이(堺) 시내에 사업소가 있는 기업이 모여 기업부회를 결성하고, 고용 차별의 철폐에 대한 추진이나 강연회를 실시.

f. 종교부회

사카이(堺) 시내의 종교인이 모여 종교부회를 결성하고 종교·종파를 뛰어 넘어,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을 전개.

② 세계인 선언 촉진 사카이(堺) 연합회

세계 인권 선언의 이념을 보급할 목적으로 사카이(堺) 공습이 있었던 7월에 매년 「평화와 인권을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을 개최하고 시민에게 평화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의 성신을 계발.

③ 인터유스(international youth) 사카이(堺)

「참가·개발·평화·인권」을 테마로 인권 의식과 국제 감각을 익힌 청년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로 시내의 청년을 파견하고 교류나 공헌 활동을 행한다.

④ 인권옹호 위원회의 연대

지역 주민이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계발활동을 실시하거나 지역 주민의 인권 상담을 행하기 위해 각 지역에 인권옹호 위원이 국가에서 위촉되어 있고 그 인원 옹호 위원과 연대하면서 계발 사업을 공동주최.

(6) 시설전시

① 평화와 인권자료관 (피닉스·뮤지엄)

전쟁의 비참함, 평화의 존엄성, 그리고 서로의 인권과 지구 환경을 지킴의 중요성을 호소함과 동시에 다음 세대에 전하는 시설.

② 헤노마츠(軸松) 인권 역사관

엄격한 차별 속에서 강인하게 헤쳐 나온 헤노마츠(軸松) 사람들의 삶이나 일, 차별과의 투쟁, 또 그 지역 출신의 장기 명인 사카타산키치(阪田三吉)의 전시를 통해 차별을 없애고 인권존중의 사회 구축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시설

▼평화와 인권자료관 내부



▼ 헤노마츠(軸松) 인권 역사관 내부



. 백제 계로 일본 최초의 큰스님이다. 대중포교를 위한 사회사업에 힘을 기울였으며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 농촌 개량사업을 하였다. 민중들에게 '행기 보살'로 불리며 부처의 화신으로 여겨졌다.

미에현의 시책

三重県における

- I. 人権条例制定と人権施策について
- II. 三重県人権センターについて
- III. 学校での人権教育の取組について

反差別人権研究所みえ

事務局長 大谷 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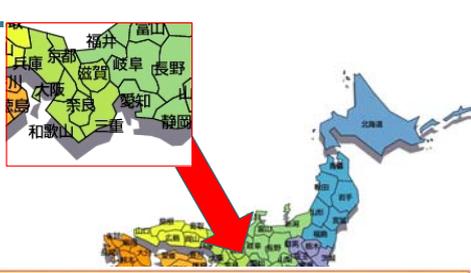
미에(三重)현의 시책

- I. 인권 조례 제정과 인권 시책에 관해서
- II. 미에(三重)현 인권센터에 관해서
- III. 학교 인권 교육의 대책에 관해서

반 차별 인권연구소 미에

사무국장 오타니 토오루(大谷 徹)

はじめに



三重県は…
 ・日本のほぼ中央に位置する
 ・第2の都市「大阪」と第3の都市「名古屋」の間に

시작하며



미에(三重)현은……
 ・ 거의 일본의 중앙에 위치한다.
 ・ 제 2의 도시 오사카「大阪」와 제 3의 도시 나고야「名古屋」 사이에 위치한다.



三重県は…
 ・人口およそ186万人
 ・面積およそ5800km²
 ・県庁所在地は津市



미에(三重)현은…
 ・ 인구 약 186 만 명
 ・ 면적 약 5800km²
 ・ 현청 소재지는 쓰시(津市)





●「人権県宣言」に関する決議

民主的で平和な社会をつくるためには、あらゆる差別を撤廃し、すべての人々の人権が尊重されることが必要かつ不可欠である。しかしながら、我が国における人権侵害は、今なお依然として存在しており、この問題を解決することは国民的緊急課題である。よって、本県議会は「人権県宣言」を行い、あらゆる差別を撤廃し、すべての県民の人権が保障される明るく住みよい地域社会の実現を期する。

以上決議する。 1990年3月23日 三重県議会

●人権条例前文

すべての人間は、生まれながらにして自由であり、かつ、尊厳と権利について平等であり、個人として尊重され、基本的人権の享有が保障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うした世界人権宣言及び日本国憲法の趣旨にのっとり、不当な差別をなくし、人権が尊重される、明るく住みよい社会を実現するため、この条例を制定する。

●「人権 現(県)施策에 관한 결의」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것이 필요 불가결 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인권침해는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민적 긴급 과제이다.

따라서 본 현(県) 의회는 「인권 현(県)선언」을 행하고, 모든 차별을 철폐하며 모든 현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밝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의 실현을 기한다.

이상 결의한다. 1990년 3월 23일 미에현(県) 의회

●인권조례전문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이고 존엄과 권리에 대해 평등하며, 개인으로써 존중 받아 기본적인 인권의 혜택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계인권선언 및 일본 국헌법의 취지에 따라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인권이 존중되는 밝고 살기 좋은 사회실현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三重県人権施策基本方針」(18年3月)を推進するための「人権が尊重される三重をつくる行動プラン」の概要について

第1章 基本的な考え方

○ 目的: 「三重県人権施策基本方針」を多様な主体で推進するための計画

○ 計画期間: 平成19年度～22年度(4カ年)

○ 施策推進の視点: 基本方針で明確にした①当事者への理解、②パートナーシップ、③適切な公的支援の視点に立って、多様な主体の参画・協働のもとで、取組を効果的に連携させながら推進します。

第2章 計画の推進

○ 推進主体等: 県がプラン全体の進行管理・調整の役割を果たしつつ、県民一人ひとりと、住民組織、NPO・団体等、企業、国、市町の各推進主体が各々の活動の充実をはかるとともに、互いに協働・連携しあってプランを推進します。

○ 推進体制: 県の推進体制及び市町や多様な主体との推進体制について記述

○ 進捗管理: 県は、年間を通じた計画、実施、検証、改善の順序で事業の進捗を把握することとし、行動プランに基づく取組状況、人権をめぐる現状認識、課題等については、年次報告にまとめ、三重県人権施策審議会に対して報告し、意見を聴きます。また、年次報告をもとに、さまざまな機会を活用して意見交換を行うなど、県民の皆さんから幅広い意見を聴きます。

「みえ(三重)県 人権施策基本方針」(18年3月)을 추진하기 위한 「인권이 존중되는 미에(三重) 만들기 행동 계획」의 개요에 대해

제1장 기본적 생각

목 적: 미에(三重)현 인권 시책 기본 방침

계획기간: 헤이세이(平成)19년도~22년도(4년간)

시책추진의 사정: 기본방침에서 명확히 한

1. 당사자의 이해
2. 파트너십
3. 적절한 공적 지원의 시각에 입각하여 다양한 책의 계획 참여와 협력 아래 대책을 효과적으로 연대하면서 추진한다.

제2장 계획의 추진

추진주체: 현(県)이 계획 전체를 관리, 조정의 역할을 하면서 현민 한 사람, 주민 조직, NPO, 단체, 기업, 국가, 시정(市町)의 각 주체가 다양한 활동을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서로 연대, 협동하여 계획을 추진합니다.

추진체제: 현의 추진체제 및 시정(市町)이나 다양한 주체 추진 체제에 대해 기술

진척 관리: 현의 한 해를 통한 계획, 실시, 검증, 개선의 순서로 사업의 진척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행동 계획에 근거한 조직 상황, 인권을 둘러싼 현대 인식, 과제에 대해서는 연차보고로 정리하고 미에(三重)현 인권시책 상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읍니다. 연차보고를 기본으로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고 의견교환을 행하는 등, 현민인 모두의 폭넓은 의견을 들읍니다.

第3章 施策別の取組

基本方針で明確にした施策ごとに、どのように推進主体と共に取り組を進めるのかを明示しました。

○ 4つの施策分野をもとにした人権施策の推進

- ① 豊かな人権文化が創造される地域社会と行政の推進のため、**人権が尊重されるまちづくりのための施策**を設定
- ② 一人ひとりの人権意識を高め、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の主体形成につなげるため、**人権意識の高揚のための施策**を設定
- ③ 人権に関する相談及び偏見や差別意識が生む人権侵害に対する救済のため、**人権擁護と救済のための施策**を設定
- ④ 個別の人権課題に対応していくため、**人権課題のための施策**を設定

○ 施策推進の考え方

人権尊重社会の実現に向けて、一人ひとりの人権意識を高めて主体形成をはかってきたこれまでの人権啓発、教育に加え、地域における多様な活動に人権の視点を根付かせることが今後の要であるという認識のもとで、**施策分野1**を新たな施策として位置づけました。

また、**人権施策は、施策分野1～3をベース(基礎)**にして、**施策分野4**の個別の人権課題に対応していきます。

第3章 施策別 対策

基本方針から 결정した 各 施策 별로, 어떻게 추진 主体와 함께 対策을 進행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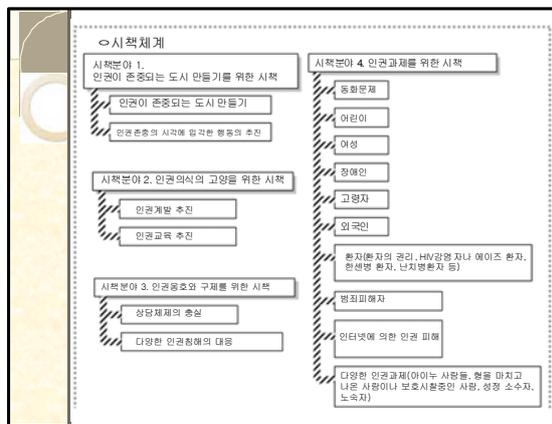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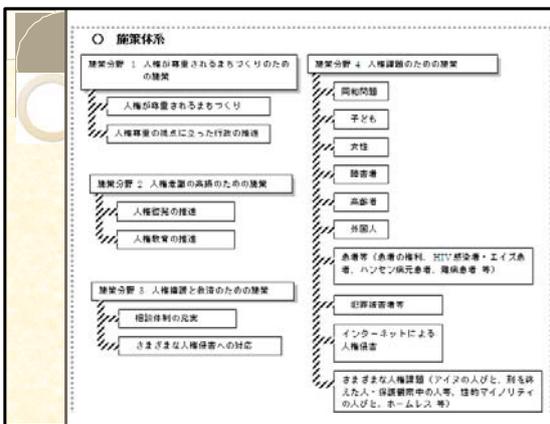
4개의 施策분야를 기본으로 한 인권시책의 추진

1. 풍부한 인권문화가 창조되는 지역사회와 행정추진을 위해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 만들기를 위한 시책 설정
2.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존중 도시 만들기의 주체형성으로 연결하기 위해 인권의식의 고양을 위한 시책 설정
3. 인권에 관한 상담 및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낫는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인권옹호와 구제를 위한 시책 설정
4. 개별의 인권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과제를 위한 시책 설정

시책추진의 생각

인권존중 사회의 실현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주체형성을 도모해 온 지금까지의 인권개발, 교육에 더해, 지역의 다양한 활동에 인권의 시각을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책분야 1을 새로운 시책으로 정했습니다.

또 인권시책은 시책분야 1-3을 기본으로 시책분야 4의 개별 인권과제에 대응해 갑니다.



2009年度行動プラン 報告

● 施策分野1 「人権が尊重されるまちづくりのための施策」
人権施策101 人権が尊重されるまちづくり
人権施策102 人権尊重の視点に立った行政の推進
● 施策分野2 「人権意識の高揚のための施策」
人権施策201 人権啓発の推進
人権施策202 人権教育の推進
● 施策分野3 「人権擁護と救済のための施策」
人権施策301 相談体制の充実
人権施策302 さまざまな人権侵害への対応
● 施策分野4 「人権課題のための施策」
人権施策401 高齢問題
人権施策402 子ども
人権施策403 女性
人権施策404 障害者
人権施策405 高齢者
人権施策406 外国人
人権施策407 患者等(患者の権利, HIV/감염자나 에이즈 환자, Hansen병 환자, 난치병 환자 등)
人権施策408 犯罪被害者等
人権施策409 인터넷による人権侵害
人権施策410 さまざまな人権課題(アイヌの人びと, 刑を科された人・保護観察中の人等, 性的マイノリティの人びと, ホームレス 等)

2009년도 행동 계획 보고

시책분야 1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 만들기를 위한 시책
인권시책 101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 만들기를 위한 시책
인권시책 102 인권존중의 시각에 일관된 행정 추진
시책 분야 2 인권의식의 고양을 위한 시책
인권시책 201 인권개발의 추진
인권시책 202 인권교육의 추진
시책분야 3 인권옹호와 구제를 위한 시책
인권시책301 상담체제의 충실
인권시책302 다양한 인권침해의 대응
시책분야 4 인권과제를 위한 시책
인권시책 401 동화(同和) 문제
인권시책 402 어린이
인권시책 403 여성
인권시책 404 장애인
인권시책 405 고령자
인권시책 406 외국인
인권시책 407 환자(환자의 권리, HIV/감염자나 에이즈 환자, Hansen병 환자, 난치병 환자 등)
인권시책 408 범죄 피해자
인권시책 409 인터넷에 의한 피해자
인권시책 410 다양한 인권과제(아이누 사람들, 형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이나 보호시설종인 사람, 성장 소수자, 노숙자)

II. 三重県人権センターについて ～設置目的とその役割～



II. 미에(三重)현 인권 센터에 대해~ 설치목적과 그 역할



●設置目的

あらゆる差別を撤廃し、すべての県民の人権が保障される地域社会の実現を図るため設置する。

●センター内で活動している団体

- ① 三重県人権センター (啓発課・相談課)
- ② 三重県教育委員会 人権教育室
調査研修グループ (人権・同和教育センター)
- ③ 社団法人 三重県人権教育研究協議会
- ④ 財団法人 反差別・人権研究所みえ

●설치 목적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현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다.

●센터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 ① 미에(三重)현 인권 센터(개발과・상담과)
- ② 미에(三重)현 교육 위원회 인권 교육실
조사 연구 그룹 (인권, 동화교육 센터)
- ③ 사단법인 미에(三重)현 인권교육 연구 협의회
- ④ 재단 법인 반차별 인권연구소 미에

● 三重県人権センター

Mie Prefectural Human Rights Center

- ① 同和問題を始めとする人権に係る問題(以下「人権問題」という)に関する啓発及び研修を行うこと。
- ② 人権問題に関する市町等の啓発活動の充実を図るための助成を行うこと。
- ③ 人権問題に関する相談を行うこと。
- ④ 人権に関する調査研究を行うこと。



- ⑤ 展示室、図書室及び多目的ホールの利用に関すること。



● 미에 (三重)현 인권센터

- ① 동화(同和) 문제를 비롯한 인권에 관계된 문제(이하 인권문제라고 한다)에 관한 계발 및 연수를 행하는 것.
- ② 인권문제에 관한 시정(市町)의 계발 활동을 충실히 도모하기 위해 조성을 행하는 것.
- ③ 인권문제에 관한 상담을 행하는 것.
- ④ 인권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는 것.



- ⑤ 전시실, 도서관 및 다목적 홀의 이용에 관한 것



●三重県教育委員会
人権教育室 調査研修グループ
人権・同和教育センター Human Rights and Anti-Discrimination Education Center

①目的 人権教育のより一層の広まりと深まりを図る。

②活動内容
○情報の収集
人権学習教材「わたし かがやく」や「人権教育ガイドライン」等の活用をはじめとする、人権教育の推進にかかわる情報を収集・分析・整理する。



●미에(三重)연 교육위원회
인권교육실 조사연구 그룹 인권, 동화교육 센터
인권, 동화교육 센터 Human Rights and Anti-Discrimination Education Center

①목적 인권교육이 한층 넓어지고 깊어지도록 도모한다.

②활동내용
○정보의 수집
인권학습교재 나 빛나도 '인권교육 가이드 라인' 등의 활용을 비롯한 인권교육의 추진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 정리한다.



●三重県教育委員会
人権教育室 調査研修グループ
人権・同和教育センター Human Rights and Anti-Discrimination Education Center

①目的 人権教育のより一層の広まりと深まりを図る。

②活動内容
○情報の収集
人権学習教材「わたし かがやく」や「人権教育ガイドライン」等の活用をはじめとする、人権教育の推進にかかわる情報を収集・分析・整理する。



○정보의 제공
수집, 분석, 정리한 정보를 각종 연수나 오리지널 홈페이지에 제공한다.

○상담에 의한 지원
교육 관계자가 인권교육의 추진에 관련된 상담을 받고 인권 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MIE HUMANRIGHTS EDUCATORS' ASSOCIATION
無法人 三重県人権教育研究協議会
三重県人権・同和教育研究協議会(三同教)は、社団法人として新たな歩みを始めました。

①目的
部落差別をはじめとするあらゆる差別を許さない教育内容の創造をめざし、人権・同和教育研究組織の協議体として、学校教育や社会教育、地域における教育の実践交流・研究協議をおこなう。

Research 研究活動
2008年度三重県人権研究協議会
一人ひとりの子どもの自己実現をめざして
●研究会のご案内
●三重県人権実践
【みちしるべ (三重の同和教育)】
●最新紹介

Education 教育活動
三重県人権・同和教育研究大会
○分科別研究会
『せいのつ』実践交流会
○個人会員研修会
奈良 三重県人権 夏期研修会
奈良 人権教育専門講座
奈良 人権教育推進交流会



MIE HUMANRIGHTS EDUCATORS' ASSOCIATION
사단법인 미에(三重)연 인권교육 연구 협의회
미에(三重)연 인권, 동화(同和)교육 연구 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①목적
부락차별을 비롯한 모든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교육내용의 창조를 목표로, 인권, 동화교육 연구 조직의 협의체로서 학교나 교육이나 사회교육 지역의 교육 실천교류, 연구 협의를 행한다.

Research 연구활동
2008미에(三重)연 인권 연구
교류 활동
함 사람, 함 사람의
여린이의 자기실현을
목표로
- 연수원 안내
- 미에 (三重)연 인권 기관지
- '이정표, 미에 (三重)의
동화(同和) 교육
- 서적 소개

Education 교육활동
미에 (三重)연 인권, 동화(同和)
교육 연구 모임
- 분야별 연구회
'영광' 실천 교육회
- 개인 회원 연수회
고지-미에(三重)연 인권
하기(假期) 연수회,
고지-인권 보육 전문 강좌,
고지-인권보육 추진 교류회



②活動内容

- 各種研究会や研修会の計画・開催
三重県人権・同和教育研究大会
人権保育専門研修
分業別研究会
会員研修会など
- 個人会員に対する会報誌発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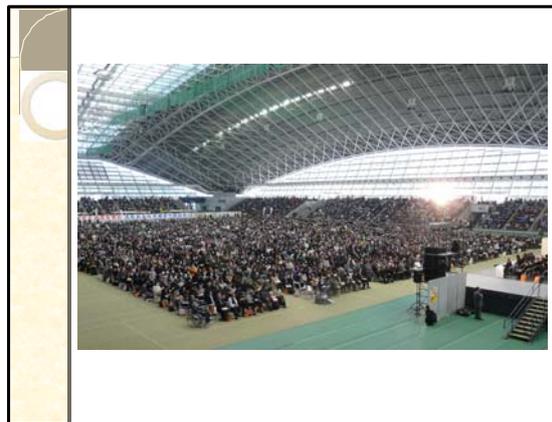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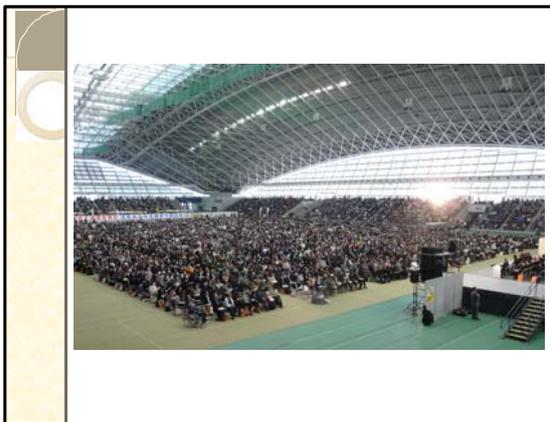
- 講演収録の発行
- 教材・書籍の販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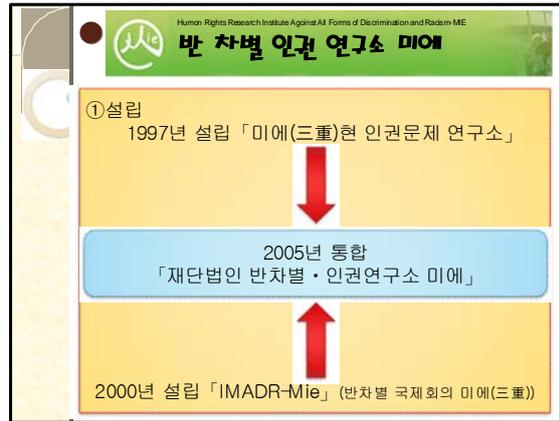
②활동내용

- 각종 연구회나 연수회의 계획, 개최
미에(三重)인권, 동화(同和)교육 연구 대회
인권보육 전문 연수
분야별 연구회
회원연수회 등
- 개인회원에 대한 회보지가 발송



- 강연수록 발생
- 교재·서적의 발매





②活動内容

- 調査・研究事業
- 広報・出版事業
- 研修・交流事業
- 連携・交流事業
- 受託事業

人となりが
奏でる
美しい
ハーモニ
ー

みえ人権フォーラム

四日市市文化会館

②활동내용

- 조사・연구사업
- 광고・출판사업
- 연수 교류 사업
- 연대・교류 산업
- 수탁사업

人となりが
奏でる
美しい
ハーモニ
ー

미에 인권 포럼

四日市市文化會館

Ⅲ. 学校での人権教育の取組について

差別を許さない人となりのつながりをめざして
～ヒューマンフェスタの取組をと～

Ⅲ.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의 대책에 대해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과 사람의 유대를 목표로 하면
페스티벌이라는 대책을 통해



崇広中学校区
地域ぐるみの人権・同和教育推進委員会について①

●目的
学校・幼稚園・保育所(園)・地域・家庭が連携し、地域ぐるみで相互の教育力を高める実践活動を行うことを通じて、部落差別をはじめとするあらゆる差別をなくしていくための、豊かな人権感覚をもった子どもを育てるとともに、教育関係者・保護者などの人権を尊重する意識を高めることを目的とする。

스코(崇広)중학교 구
지역 전체의 인권 · 동화(同和) 교육 추진 위원회에 대하여

●목적
학교, 유치원, 보육소(원), 지역, 가정이 연대하고 지역 전체가 서로의 교육력을 높이는 실천행동을 통해, 부락차별을 비롯한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풍부한 인권감각을 가진 아이를 키우는 것과 동시에 교육 관계자 보호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려는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崇広中学校区
地域ぐるみの人権・同和教育推進委員会について②

●事業内容
①会議 (役員会・総会・フェスタ実行委員会・フェスタ協大実行委員会)
基本計画の立案、具体的実践の方向づけ、課題解決の方法等について定期的に会合し、研究・協議・実践を行う。
②崇広中学校ブロック同和教育交流会
崇広中学校ならびに校区内の4小学校の校長と人権・同和教育推進委員が会合し、各学校の教育実践交流をするとともに課題を明らかにし、将来、崇広中学校に集う子どもたちがともに人権を大切に、差別をなくすなまかになっていけるように教育実践を確立するための研究協議を行う。
③崇広中学校区地域ぐるみヒューマンフェスタの開催
崇広中学校区においてヒューマンフェスタを開催し、地域ぐるみで人権・同和啓発を推進する。

스코(崇広)중학교 구
지역 전체의 인권 · 동화(同和) 교육 추진 위원회에 대하여

●사업내용
① 회의 (임원회 · 총회 · 페스티벌 실시 위원회 · 페스티벌 확대 실행을 위원회)
기본계획의 입안, 구체적 실천의 행동 계획, 과제해결의 방법에 대해 정기적으로 회합하고 연구, 협의 실천을 행한다.
② 스코(崇広)중학교 불록 동화(同和) 교육 교류회
스코(崇広)중학교 및 학교 내에 있는 4개 학교의 교장과, 인권, 동화(同和) 교육 추진 위원회 회합하고, 각 학교의 교육 실천 교류를 함과 동시에 과제를 분명히 하여 미래의 스코(崇広)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차별 없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실천을 확립을 위한 연구 협의를 행한다.
③ 스코(崇広)구 지역 전체의 휴먼 페스티벌 개최
스코 (崇広)중학교구에서 휴먼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지역 전체가 인권, 동화(同和)계발을 추진한다.

「崇広中学校区 地域ぐるみヒューマンフェスタ」
実施へのコンセプト

- ①動きを伴うイベントを実施することで、差別を許さない人と人とのつながりをめざす
- ②校区再編に伴い、新校区の周知
- ③保・幼・小・中の子どもたちの参画(改めて練習するものではなく、すでにやったことの発表)
- ④校区の小・中学校PTAの参画
- ⑤校区の人権関係団体の参画
- ⑥準備や計画、当日の運営等をコンパクトに実施
- ⑦会場で昼食をすませるような手だてをとる
- ⑧ヒューマンフェスタは目的ではなく手段であることの確認
- ⑨各団体(ブース)別の収支決算

「스코(崇広)중학교 구 지역전체 휴먼 페스티벌 실시 컨셉」

- ① 움직임을 동반하는 이벤트를 실시 함으로써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과 사람의 유대를 지향한다.
- ② 학군 재편에 따른 신 학군의 주지
- ③ 보육원, 유치원, 초등, 중등의 아이들의 계획 참여(새롭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것을 발표)
- ④ 학군의 초등, 중학교의 PTA 계획 참여
- ⑤ 학군의 인권 관계 단체의 계획 참여
- ⑥ 준비나 계획, 당일 운영을 컴팩트로 실시
- ⑦ 회장에서 정식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취함
- ⑧ 휴먼 페스티벌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인식
- ⑨ 각 단체(부스)별 수지 계산

「崇広中学校区地域ぐるみヒューマンフェスタ」의 목적

- 園児・児童・生徒と保護者、地域住民、地域諸団体が一堂に会して、イベントを開催することで、人権を大切にし、差別を許さない人と人とのつながりをめざす。
- 中学校区が変更されたことに伴い、広く校区のみなさんに参加していただき、それぞれの活動を知っていただく情報発信の場とする。

「스코(崇広)중학교 구 지역전체 휴먼 페스티벌」의 목적

- 원아, 아동, 학생과 보호자, 지역주민, 지역의 여러 단체가 한 곳에 모여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를 지향한다.
- 스코(崇広)중학교 구가 변경된 것에 따라 광범위하게 학군의 많은 사람이 참가하여, 다양한 활동을 알아, 정보 발신의 장이 되게 한다.

「崇広中学校区地域ぐるみヒューマンフェスタ」
ポスター・チラシ



「스코(崇広)중학교 구 전체 휴먼 페스티벌」 포스터, 광고지



「崇広中学校区地域ぐるみヒューマンフェスタ」

プログラム①

◎**体育館**

・オープニングセレモニー(10:00~10:30)

①ファンファーレ(崇広中吹奏楽部) ③実行委員長あいさつ
②生徒実行委員長あいさつ ④崇広中吹奏楽部演奏

・ステージ発表(10:30~11:30)

①「ええじゃあないや!」電子録り(新居小5・6年) ④歌「ちがうとこそ ええんちやう」(久米小6年理科)
②「長田・実作ドリカム」(長田小5年) ⑤「ピースメッセー」(上野野小6年)
③「ゆるキャラ音頭」(崇広中2年) ⑥「高中生ーラン」(崇広中3年)

◎**飲食ブース(11:00~13:30)**

・飲食等販売関係

①崇広中PTA【たこ焼き、練日コーナー】 ④新居小PTA【フランクフルト】
②崇広中教職員【おききみて画・おでん】 ⑤長田小PTA【焼き餅・米】
③川崎町人権啓発2団体【焼きそば、ようじやく焼き】 ⑥上野野小PTA【ポップコーン・焼き菓子・フランクフルト】
④久米小PTA【中華まん】 ⑦崇広中PTA【おにぎり・焼きそば】
⑧崇広中生徒実行委員会【風船配布・折り紙コーナー・エコカップと書き置きはがきの案内】

◎総合案内(崇広中生徒実行委員会【風船配布・折り紙コーナー・エコカップと書き置きはがきの案内】)

◎休憩所コーナー・・・校舎ホール

「スコ(崇広) 中学校 3 学年 秋祭 フェスティバル」 프로그램①

◎**체육관**

・오르남 축하 (10:00~10:30)
①환영선(스코 중학교 기악부) ③행사위원장 인사
②학생 행사위원장 인사 ④스코중 취주악 연주

・스테이지 발표(10:30~11:30)
①동강이 토리고 춤(신교 초5.6학년) ④노래「다르니 더 좋잖아」
②「니카타・살인등기 드림」(니카타초5학년) ⑤평화 메시지(큐베아 초등 6학년)
③「유리카리 합창」(스코중2학년) ⑥남동 소년(스코중 3학년)

◎ **음식 부스(11:00~13:30)**

・음식판매관련
① 스코중 PTA (타코야키) ⑥ 신교초 PTA(프랑크 푸르트소세지)
② 스코중 교직원(떡볶이, 오뎀) ⑦ 니카타초 PTA(아기동, 밥)
③ 하미초 마을민권계 2단체 (아이스방, 양식 야키) ⑧ 우에노니시 중 PTA(쌀관, 송사탕, 브라질 요리)
④ 쿠메초 PTA (중화만두) ⑨ 학교 보호 사회, 학교 경영 보호 여성 무에노지부
⑤ 스코중 (음료, 영누름, 삼골피 판매)

○종합안내(스코중학생실행위원회) - 흥선해부, 색종이코너, 재활용품 교환 및 옷 손 염색 안내
○휴게실 코너・・・교사 홀

「崇広中学校区地域ぐるみヒューマンフェスタ」

프로그램②

◎**崇広ホール・体育館ブース(11:00~13:30)**

・**参画関係・・・崇広ホール**

①校区主任児童委員【絵本の読み聞かせ・ゲーム・アンケート】
②崇広中生徒【ゲーム・紙飛行機】

・**展示関係・・・体育館**

①幼稚園・保育所・保育園児による絵画の展示
(ふたば幼稚園・しろなみ保育所・新居保育所・種保育園・ひかり保育園・長田保育園)
②人権ポスター(上野野小・久米小・長田小・新居小・崇広中の児童生徒の優秀作品)
③崇広中2年総合学習の展示(花火大会への参画)
④人権パネル展(伊賀市人権政策課)

◎**体育館**

・**ファイナルセレモニー(13:30~14:00)**

①マンザイ「やかまし娘」(新居小保護者) ③生徒実行委員長あいさつ
②白鳳太鼓 ④実行委員長あいさつ

「스코(崇広) 中学校 3 学年 秋祭 페스티벌」 프로그램②

◎ **스코(崇広)중, 체육관 부스(11:00~13:30)**

・**계획참여 관련・・・스코중**
①학교주요직원
②스코중학생(대영, 종이 비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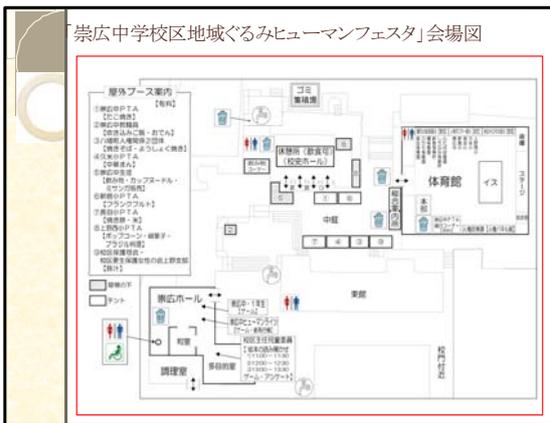
・**전시관련・・・체육관**

①유치원, 보육소, 보육원아의 그림전
(후타바유치원, 시로니야보육소, 신교보육소, 아케보노보육원, 히카리보육원, 니카타 보육원)
②인권포스터
(우에노니시초등, 쿠메초등, 니카타초등, 신교초등, 스코중학교의 우수학생 작품)
③스코중 2학년 중학 학습(별꽃놀이 대회 계획 참여)
④인권 페스티발 영(이가(伊賀)시 인권 정책과)

◎ **체육관**

・**마지막 세레머니(13:00~14:00)**

①마미자이(신교 초 보호자)
②복치기
③학생 실행위원장 인사
④실행 부위원장 인사







新居小学校



신묘(新居)초등학교



久米小学校



규베이(久米) 초등학교



「崇広中学校区地域ぐるみ
ヒューマンフェスタ」の成果と課題②

- 課題
- ①ヒューマンフェスタで培った関係をいかに広げるか
- ②人権啓発ブースの増設
- ③参加団体の増加
- ④事前周知の徹底
- ⑤事前準備の早期化
- ⑥事務局の負担軽減(分担)
- ⑦校区の小中学生の連携(合同実行委員会の編成)
- ⑧幼稚園・保育所・保育園児のステージ発表

「스코(崇広) 중학교 구 전체 휴먼 페스티벌」의
성과와 과제①

- 성과
- ◎ 사람과 사람의 유대의 소중함을 의식할 수 있게 되었다
- 학군의 보호자간의 유대감을 볼 수 있었다
-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학군에 발신할 수 있었다
- 인권관계 단체의 학군의 인지가 넓어졌다.
- 학교에 직접 관계가 없는 지역주민이 계획에 참여하여 참가해 주었다
- 인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나 행동할 의욕으로 이어졌다.

崇広中学校校区地域ぐるみ

「ヒューマンフェスタ」の成果と課題①

●成果

- ◎人と人とのつながりの大切さを意識するようになってきた。
- ・校区の保護者どうしのつながりがみられた。
- ・小学生や中学生の頑張っている生の姿を広く校区に発信することができた。
- ・人権関係団体の校区への認知が広まった。
- ・学校に直接関わりがない地域住民が参画したり、参加したりしてくれた。
- ・人権について考えるきっかけや、行動する意欲につながった。

「스코(崇広) 중학교 구 전체 휴먼 페스티벌」의

성과와 과제②

●과제

- ① 휴먼 페스티벌에서 배양한 관계를 어떻게 넓혀 갈 것인가
- ② 인권계발 부스의 증설
- ③ 참가단체의 증가
- ④ 사전주지의 철저
- ⑤ 사전준비의 조기화
- ⑥ 사무국의 부담경감(분담)
- ⑦ 학군의 초중 학생의 연대(합동 실행 위원회의 편성)
- ⑧ 유치원, 보육소, 보육원아의 스테이지 발표

発表原稿（大谷）

ご紹介をいただきました 財団法人 反差別・人権研究所みえの大谷といいます。

昨年9月に、韓国・国家人権委員会講習人権事務所の皆さんが三重県の視察にきていただきました。本日はこのような発表の場を与えていただいたことに感謝申し上げます。

まず、三重県についてですが、三重県は日本のほぼ中央に位置し、日本第2の都市大阪と第3の都市名古屋の間にあります。人口はおよそ186万人、面積はおよそ5800km²、県庁所在地は津市、有名な観光地として伊勢神宮と世界遺産に登録されている熊野古道があります。また、F1会場で有名な鈴鹿サーキットも三重県にあります。今年は霊岩（ヨンアム）郡のインターナショナル・サーキット場で10月24日に韓国初のF1、第17戦が予定されていますが、2週間前の10月10日には第16戦が鈴鹿サーキットで開催されま

私からは、「三重県における人権条例制定と人権施策について」「三重県人権センターについて」「学校における人権教育について」の3点で発表させていただきます。

最初に、三重県における人権条例制定の経緯と人権施策の取組状況について報告いたします。

三重県で「人権が尊重される三重をつくる条例」が1997年10月に施行されて13年目を迎えています。

【人権県宣言】

三重県における条例制定の原点としましては「人権県宣言」があり、1990年3月23日に三重県議会定例会において、あらゆる差別をなくすために、全国に先駆けて採択されました。

「人権県宣言」に関する決議

民主的で平和な社会をつくるためには、あらゆる差別を撤廃し、すべての人々の人権が尊重されることが必要かつ不可欠である。

しかしながら、我が国における人権侵害は、今なお依然として存在しており、この問題を解決することは国民的緊急課題である。

よって、本県議会は「人権県宣言」を行い、あらゆる差別を撤廃し、すべての県民の人権が保障される明るく住みよい地域社会の実現を期する。

以上決議する。

1990年3月23日

三重県議会

三重県においては、この宣言を受けて「差別をなくす強調月間（11月11日～12月10日）を創設し、県民の人権意識の高揚に向けた啓発活動を幅広く展開してきました。

【市町村の状況】

また、この決議を契機として県内の69すべての市町村におきまして、1994年3月までに「人権尊重宣言」を行っております。

その後の市町村合併の関係で、現在は29市町のうち28市町において「人権尊重宣言」が行われている状況です。

【人権センターのオープン】

この人権県宣言を受けて、1996年11月1日には人権教育・人権啓発を推進する拠点施設として三重県人権センターを設置し、人権啓発事業や人権相談事業、市町の人権施策等に対する助言などの事業を展開しています。

これにつきましては、第2の項目で詳しく説明させていただきます。

【三重県人権政策懇話会】

1995年10月には県内の有識者からなる三重県人権政策懇話会を設置し、今後の人権政策のあり方等について議論が重ねられ、1996年12月には知事に対して人権条例の制定など人権政策の推進について提言がなされました。

【議会での請願採択】

1996年の第4回三重県議会定例会において、基本法制定実行委員会、市長会、市議会議長会、町村会、町村議長会、商工会議所連合会など10団体から提出された「三重県部落差別をはじめ一切の差別撤廃をめざす条例」制定に関する請願が採択されました。

【人権条例制定】

このような動きから、同和問題、子ども、女性、障がい者及び高齢者等の人権に関する問題への取組を推進し、不当な差別のない、人権が尊重される、明るく住みよい社会を実現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1997年10月に人権条例が施行されました。

人権条例前文

すべての人間は、生まれながらにして自由であり、かつ、尊厳と権利について平等であり、個人として尊重され、基本的人権の享有が保障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うした世界人権宣言及び日本国憲法の趣旨にのっとり、不当な差別をなくし、人権が尊重される、明るく住みよい社会を実現するため、この条例を制定する。

この条例では、県の責務等を定め、人権施策に対する県の積極的な姿勢を示すとともに、市町・県民等の責務を定めており、第3条において「県民等は、自らの人権意識の高揚に努めるとともに、相互に人権を尊重し、人権を侵害してはならない」と県民等の責務を明らかにし、県は県民とともに、この条例の目

的を達成するために人権施策を積極的に推進しています。

【三重県人権施策基本方針】

人権条例第5条に基づき、人権施策の総合的な推進を図るため、「三重県人権施策基本方針」を1999年3月に策定しましたが、人権をめぐる社会状況の変化等により、児童や高齢者への虐待や女性への暴力行為など、より対応の強化が求められている課題、また、インターネット上での人権侵害や犯罪被害者等、新たな課題に対応するため、2006年3月に改定をいたしました。

改定の考え方としましては、4つの施策分野をもとに人権施策を推進していくこととし、

施策分野1には人権尊重社会の実現に向けて、一人ひとりの人権意識を高めて主体形成を図ってきたこれまでの人権啓発、教育に加え、地域における多様な活動に人権の視点を根付かせることが今後必要であるとの考えから、「豊かな人権文化が創造される地域社会と行政の推進のため、人権が尊重されるまちづくりのための施策」を設定しました。

施策分野2として「一人ひとりの人権意識を高め、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の主体形成につなげるため、人権意識の高揚のための施策」を、

施策分野3として「人権に関する相談及び偏見や差別意識を生む人権侵害に対する救済のため、人権擁護と救済のための施策」を設定しています。

そして施策分野4として「個別の人権課題に対応していくため、人権課題のための施策」を設定し、その中で新しい人権課題に対応するため、「犯罪被害者等」「インターネットによる人権侵害」の施策を新設しました。

【人権が尊重される三重をつくる行動プラン】

この基本方針を多様な主体で着実に推進していくため、2007年3月に「人権が尊重される三重をつくる行動プラン」を策定しました。

計画期間は2007～2010年の4ヵ年とし、考え方としましては、

- ① 当事者への理解の視点（当事者の立場に立って考える）
- ② パートナーシップ（協働）の視点（多様な主体による協力）
- ③ 適切な公的支援の視点

に立って、多様な主体の参画・協働のもとで、取組を効果的に連携させながら推進を図ることとしています。

計画の推進にあたっては、県がプラン全体の進行管理・調整の役割を果たしつつ、県民一人ひとり、住民組織、NPO・団体等、企業、国、市町の各推進主体が各々の活動の充実を図るとともに、お互いに協働・連携しあってプランを推進していきます。

施策別の取組として、どのように推進主体と共に取組を進めるのかを明示し、「めざす姿」は10年後のあるべき社会の姿を、「取組方向」は今後4年間に取組む方向を、「みんなの取組」は推進主体ごとに期待する役割、取組等を明示しました。

今後は、年間を通じた計画、実施、検証、改善の順序で事業の進捗を図ることとしており、行動プランに基づく取組状況、人権をめぐる現状認識、課題等につきましては、年次報告にまとめ、三重県人権施策審議会に対して報告し、ご意見を伺うこととしています。ご意見については、次年度の取組に活かすこと

としています。

今見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のが、昨年度（2009年度）の「人権が尊重される三重をつくる行動プラン」の年次報告の目次です。4つの施策分野で16の人権施策が示されています。

また、年次報告をもとにさまざまな機会を活用して意見交換を行うなど、幅広く意見をお聴きすることとしています。

【県内の市町の状況】

最後の県内の市町における条例制定の状況についてご報告をいたします。

さきほど報告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が、三重県においても市町村合併が進みまして69市町村から29市町となり、合併前には58市町村で条例が制定されており、条例制定率は84%となっておりましたが、現在は24市町で条例制定がされおり、条例制定率は83%となっております。

課題

（条例の認知度）

2004年11月に実施した「人権問題に関する三重県民意識調査」によると条例の認知度が17.7%であり、前回は、条例が1997年6月に三重県議会で議決されたことを知っているか質問を行っているが、「知っている」との回答が56.0%であり、遡って、前々回は三重県議会で1990年3月に決議された「人権県宣言」について類似の設問があり「知っている」との回答が41.0%であった。

直近の調査が最も低い結果を示しており、この実態が人権意識の後退を招くことのないよう、今後ともあらゆる機会を通じて啓発に努めていく必要があると考えています。

（行動プランの周知）

行動プランにおいて多様な主体で着実に推進していくためには、行動プランの存在そのものを知っていただくことが重要となります。

県のホームページ上に全文を掲載していますが、意識調査でも明らかになっています条例の認知度の向上も含め、昨年度の県政だより11月号において「人権特集」を組み、「行動プラン」の趣旨・概要を分かりやすくイラスト入りで説明しながら、多様な主体のそれぞれの役割や、協働・連携する必要性について周知を図っています。

続きまして三重県人権センターについて報告をします。

三重県人権センターは、先ほど申し上げましたように1990年3月に「人権県宣言」が県議会で決議され、その宣言の趣旨にそい、あらゆる差別をなくし、人権尊重の精神を広く県民に普及するための拠点施設として、人権センター構想ができました。

この構想を具体化するため「三重県人権センター設置検討委員会」を組織し、検討委員会から、同和問題をはじめとした様々な人権問題に関する資料提供、調査・研究、相談、教育、啓発などの機能をもつ「人権センター」について提言されました。そして、その提言を踏まえて「人権センター」「労働対策センター」「同和教育センター」の3つの施設を一体的に整備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1995年に建設工事が着工され、1996年11月から開館されています。総事業費は26億3000万円、地上3階建て、主な施設としては、多目的ホール・常設展示室・図書室・会議室（4室）となっています。

2002年4月、行政組織の再編により「人権センター」「人権同和教育センター」の2つの施設とな

りました。

設置目的としては、あらゆる差別をなくしていくため、人権尊重の思想を広く三重県民に普及し、部落差別をはじめとするあらゆる差別をなくしていくため、啓発、相談等の拠点施設として設置されました。

人権センター内で活動している団体は4つあります。

一つは三重県生活・文化部の中の人権センターで啓発課と相談課があります。2つめは三重県教育委員会人権教育室調査研修グループ、3つめは社団法人 三重県人権教育研究協議会、最後の4つめは私が所属している財団法人 反差別・人権研究所みえです。

それぞれについてどのような活動をしているかを説明します。

啓発課と相談課を併せもつ人権センターでは

- ① 同和問題を始めとする人権に係る問題（以下「人権問題」という）に関する啓発及び研修を行うこと。
- ② 人権問題に関する市町等の啓発活動の充実を図るための助成を行うこと。
- ③ 人権問題に関する相談を行うこと。
- ④ 人権に関する調査研究を行うこと。
- ⑤ 展示室、図書室及び多目的ホールの利用に関すること。

を行っており、事務的にはセンターを統括する事務も行っています。

三重県教育委員会人権教育室 調査研究グループは人権・同和教育センターとも呼ばれ、人権教育のより一層の広まりと深まりを図るために、次の3つを活動の中心に据えています。

まず、情報の収集です。人権学習教材「わたし かがやく」や「人権教育ガイドライン」等の活用をはじめとする、人権教育の推進にかかわる情報を収集・分析・整理しています。

2つめは、情報の提供です。収集・分析・整理した情報を、各種研修やオリジナルホームページ等で提供しています。

3つめは、相談による支援です。教育関係者から人権教育の推進にかかわる相談を受け、人権教育が効果的に推進されるように支援しています。

また今年4月からは、人権教育にかかわる教職員のあらゆる研修を計画・実行しています。

社団法人 三重県人権教育研究協議会は、1953年に「三重県同和教育研究会」としてスタートしました。1967年に第1回の研究大会を開催し、今年で44回目を迎えます。目的としては、部落差別をはじめとするあらゆる差別を許さない教育内容の創造をめざし、人権・同和教育研究組織の協議体として、学校教育や社会教育、地域における教育の実践交流・研究協議をおこなうことです。2004年には社団法人の認可を受け、組織名を社団法人 三重県人権教育研究協議会と改称しました。

活動の内容は、各種研究会や研修会の計画・開催です。具体的には三重県人権・同和教育研究大会、人権保育専門研修会、分野別研究会会員研修会などを開催しています。昨年は「全国人権・同和教育研究大会」を三重県で開催し、1万5千人近くの人権教育にかかわる人が全国から結集し、研究・協議を行いました。また、個人会員に対する会報誌発行、講演収録の発行、教材・書籍の販売等に精力的に取り組んでいます。

財団法人 反差別・人権研究所は、1997年（この年は三重県に「人権が尊重される三重県をつくる条例」が成立した年です）に設立した「三重県人権問題研究所」と2000年に設立した「IMADR-Mie」【反差別国際会議三重】の両組織の成果を受け継ぐとともに、お互いに連携して発展的に取り組めるようにとの趣旨で2005年に設立をされ、6年目を迎えています。

「三重県人権問題研究所」は、被差別部落をはじめとする女性・障がい者・アイヌ民族・琉球民族ならびに外国人等に対する差別を撤廃するために、市民の参加を基にして、人権・環境・平和等の問題に取り組む運動団体・研究者・企業・自治体

研究所は、人権意識の高揚、実践力の充実から、人権文化に満ちた社会の実現に向けて寄与していきたいと願っています。

活動の内容としましては、

- ①調査・研究事業
- ②広報・出版事業
- ③研修・育成事業
- ④連携・交流事業
- ⑤受託事業

があり、具体的には人権問題の解決に取り組む指導者育成のための「人権大学講座」の開催や多くの講演会（年間100回を超える人もいる）・研修会の実施、広報活動の充実などを事業として取り組んでいます。

最後の発表にうつります。三重県の学校は小学校・中学校・高等学校のすべてに人権学習が位置づいており、人権教育を計画・立案し、実践の中心になる担当もおかれています。

実は、私は1ヶ月半前まで学校に勤めていました。忍者と、シェイクスピア・ゲーテとならぶ世界3大詩人の一人松尾芭蕉の生誕地で有名な伊賀市の崇広中学校という学校で4年間、校長を勤め、定年退職したばかりです。

私が勤務していた崇広中学校区で、昨年特筆すべき取組を行いましたので紹介します。

崇広中学校区には『地域ぐるみの人権・同和教育推進委員会』という組織があり、昨年11月14日に校区をあげて『ヒューマンフェスタ』を実施しました。

まずは『崇広中学校区地域ぐるみの人権・同和教育推進委員会』について説明します。この委員会は7年前に発足し、目的は「学校・幼稚園・保育所・保育園・地域・家庭が連携し、地域ぐるみで相互の教育力を高める実践活動を行うことを通じて、部落差別をはじめとするあらゆる差別をなくしていくための、豊かな人権感覚をもった子どもを育てるとともに、教育関係者・保護者などの人権を尊重する意識を高める。」ということです。

事業内容は3つあり、①会議②崇広中学校ブロック同和教育交流会③崇広中学校区地域ぐるみヒューマンフェスタの開催です。

私が崇広中学校へ転任した4年前までは、年間2回の総会で、学校なり保育所・保育園の計画や総括を発表し、講演会を実施するという進められていました。4年前に校長として赴任したとき、このような立派な組織があるのに、もっと有機的に活動できないかと思い、学校の先生たちや委員さんたちに話をしていました。

元々、動きを伴うイベントを実施することで、人と人とのつながりを深める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ました。研修会や講演会も大切ですが、参加する人が限られていたり、対象も大人だけとか、子どもだけというものがほとんどで、なかなか広がりが期待できません。一気に多くの人が活動することで、思いやりを深める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ました。

「ヒューマンフェスタ」のコンセプトとして、この9点に配慮しました。

- ①動きを伴うイベントを実施することで、差別を許さない人と人とのつながりをめざす
- ②校区再編に伴い、新校区の周知
- ③保・幼・小・中の子どもたちの参画
(改めて練習するものではなく、すでにやったことの発表)
- ④校区の小・中学校PTAの参画
- ⑤校区の人権関係団体の参画
- ⑥準備や計画、当日の運営等をコンパクトに実施
- ⑦会場で昼食をすませるような手だてをとる
- ⑧ヒューマンフェスタは目的ではなく、手段であることの確認
- ⑨各団体(ブース)別の収支決算

「崇広中学校区地域ぐるみヒューマンフェスタ」の目的は次の2つです。

- ①園児・児童・生徒と保護者、地域住民、地域諸団体が一堂に会して、イベントを開催することで、人権を大切に、差別を許さない人と人とのつながりをめざす。
- ②中学校区が変更されたことに伴い、広く校区のみなさんに参加していただき、それぞれの活動を知っていただく情報発信の場とする。

今、見ていただいているのがポスター・チラシです。原画は美術の先生に依頼しました。ポスターは200枚、チラシは1000枚印刷しました。ポスターは市民センターや関係機関に配布しました。チラシはこれも市民センターを通じて全戸配布しました。約900枚が必要でした。残りは、小中高の教職員や校区外の保護者に配布しました。

これは、当日のプログラムです。これは、当日の開場図です。裏表で印刷し配布しました。

ここで、当日の様子を見ていただきましょう。

続きまして、成果と課題にまいります。

成果は次のことがあげられます。

- ◎人と人とのつながりの大切さを意識するようになってきた。
 - ・校区の保護者どうしのつながりがみられた。
 - ・小学生や中学生の頑張っている生の姿を広く校区に発信することができた。
 - ・人権関係団体の校区への認知が広まった。
 - ・学校に直接関わりがない地域住民が参画したり、参加したりしてくれた。
 - ・人権について考えるきっかけや、行動する意欲につながった。

課題としては、次の8つがあげられます。

- ①ヒューマンフェスタで培った関係をいかに広げるか
- ②人権啓発ブースの増設
- ③参加団体の増加
- ④事前周知の徹底
- ⑤事前準備の早期化
- ⑥事務局の負担軽減(分担)
- ⑦校区の小中学生の連携(合同実行委員会の編成)
- ⑧幼稚園・保育所・保育園児のステージ発表

参加した皆さんの笑顔が忘れられません。心が耕かされた気になりました。心がしなやかになった気がします。あの、笑顔一杯のフェスタに部落差別をはじめとするあらゆる差別などというものが入り込む余地は全くありませんでした。主義・主張、立場や考えが異なるいろいろな年齢層の人たちがひとつのイベントに結集する。心が耕かされてしなやかになる。そんな現場に居合やすことができたことを誇りに思います。人間っていいなあ。人と人のつながりって素晴らしいなあと再確認できました。

以上で、私の発表を終わります。

미에 현민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증진체계

반차별인권연구소 미에현 사무국장 오오타니토오루

소개 드렸던 재단법인 반(反) 차별·인권연구소 미에(三重)의 오타니라고 합니다.

작년 9월에 한국·국가인권 위원회 강습 인권사무소 여러분이 미에 현(三重県)을 시찰하러 와주셨습니다. 일본은 이런 발표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미에 현(三重県)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미에 현(三重県)은 일본의 중앙 쪽에 위치하여 일본 제 2의 도시 오사카(大阪)와 제 3의 도시 나고야(名古屋) 사이에 있습니다. 인구는 약 186만 명, 면적은 5800km², 현 청 소재지는 쓰시(津市), 유명한 관광지로는 이세(伊勢)신궁과 세계 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구마노고토(熊野古道)가 있습니다. 또 F1개최로 유명한 스즈가 서킷(鈴鹿サーキット)도 미에 현(三重県)에 있습니다. 올해는 영암군의 국제 서킷가 열리는 곳에서 10월 24일에 한국최초의 F1, 제 17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2주전인 10월 10일에는 제 16전이 스즈가 서킷(鈴鹿サーキット)에서 개최됩니다.

저는 「미에 현(三重県) 인권조례제정과 인권시책에 대해」 「미에 현(三重県) 인권 센터에 대해」 「학교의 인권 교육에 대해」의 3가지 점에서 발표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에 현(三重県) 인권조례제정의 경위와 인권시책의 조직편성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에 현(三重県)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미에(三重)를 만드는 조례」가 1997년 10월에 시행되어 1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권 현(縣)선언]

미에 현(三重県) 조례제정의 기준으로는 「인권 현(縣)선언」이 있고, 1990년 3월 23일에 미에 현(三重県) 의회 정례 회에서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채택되었습니다.

「인권 현(縣)선언」에 관한 결의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권침해는 지금 여전히 공공연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민적 긴급 과제이다.

따라서 본 현(縣)회의는 「인권 현(縣)선언」을 행하고, 모든 차별을 철폐하여 모든 현(縣)민의 인권이 보장 되는 밝고 살기 편한 지역사회의 실현을 기(期)한다.

이상 결의 한다.

1990년 3월 23일

미에 현(三重縣)의회

미에 현(三重県)은 이 선언을 받아들이고 차별을 없애는 강조 달 기간(11월 11일~12월 10일)을 창설해 현(県)민의 인권의식 고조를 향한 개발활동을 폭 넓게 전개 해 왔습니다.

[시정촌(市町村)의 상황]

또 이 결의를 계기로 현 내 69개의 모든 시정촌(市町村)에서 1994년 3월까지 「인권존중선언」을 행했습니다.

그 후의 시정촌(市町村) 합병 관계로 현재는 29개 시정(市町) 중 28개의 시정(市町)에서 「인권존중선언」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권 센터 개설]

이 인권 현(県)선언을 받아들여, 1996년 11월 1일에는 인권교육·인권개발을 추진하는 거점시설로서 미에 현(三重県) 인권 센터를 설치하고 인권개발사업과 인권상담사업, 시의 인권 시책 등에 대한 조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 2항목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에 현(三重縣)인권 정책에 대한 간담회]

1995년 10월에는 현(県)내의 유식자들과 미에 현(三重県) 인권 정책 간담회를 설치하고 앞으로의 인권정책 형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1996년 12월에는 지사에 대해 인권조례가 제정 되는 등 인원 정책 추진 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의회에서의 청원 채택]

1996년의 제 4회 미에 현(三重県) 의회 제례 회(會)에서 기본법 제정 실행 위원 회(會), 시장 회(會), 시의회(會), 의장 회(會), 읍·면 회(會), 읍·면 의장 회(會), 상공회의소 연합 회(會)등 20개 단체가 제출한 「미에 현(三重県)부락 차별을 포함한 모든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하는 제례」 제정에 관한 청원이 채택되었습니다.

[인권조례 제정]

이 같은 움직임을 바탕으로 동화(同和)문제, 어린이, 여성, 장애인 및 고령자의 인권 문제에 관한 대책 방법을 추진하고 부당한 차별이 없는, 인권이 존중되는, 밝고 살기 좋은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7년 10월에 인권 조례가 실행되었습니다.

인권조례전문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이고, 존엄과 권리에 대해 평등하며 개인으로서 존중 받아 기본적인 인권의 향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계인권선언 및 일본 국 헌법의 취지에 따라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인권이 존중되는 밝고 살기 좋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이 조례에서는 현(縣)의 책무를 정하고 인권 시책에 대한 현(縣)의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냄과 동시에 읍과 현민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 3조에는 「현민은 스스로의 인권의식 고양에 노력하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현민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현(縣)은 현민과 함께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권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에 현(三重縣)인권 시책 기본 방침]

인권 조례 제 5조에 근거하여 인권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미에 현(三重縣)인권 시책 기본 방침」을 1999년 3월에 책정했습니다만, 인권을 둘러싼 사회 상황의 변화로 유아나 고령자 학대 및 여성 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의 과제, 또 국제적 인권 침해나 범죄 피해자라는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3월에 개정했습니다.

개정에 대해서는 4개의 시책 분야를 기본으로 인권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책분야 1에서는 인권존중 사회의 실현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 의식을 높여 주체형성을 도모해 온 지금까지의 인권 계발, 교육에서 더 나아가 지역의 다양한 활동에 인권의 시점을 맞추는 것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풍부한 인권 문화가 창조되는 지역사회와 행정 추진을 위해 **인권이 존중되는 지방만들기를 위한 시책**」을 설정했습니다.

시책 분야 2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의식을 높여 인권존중 지방 만들기의 주체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권의식의고양을 위한 시책**」을

시책 분야 3에서는 「인권에 관한 상담 및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낳는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 **인권옹호와구제를 위한 시책**」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 분야 4에서는 「개별의 인권과제에 대응해 가기 위해 **인권과제를 위한 시책**」을 설정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인권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인터넷에 의한 인권 피해**」 시책을 설정했습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미에(三重)를 만들 행동 계획]

이 기본방침을 다양한 주체로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2007년 3월에 「인권이 존중되는 미에(三重)를 만들 행동 계획」을 책정했습니다.

계획기간은 2007~2010년의 4년이고 그 내용으로는

- ① 당사자의 이해의 시점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 ② 협동심의 시점 (다양한 주체에 의한 협력)
- ③ 적절한 공적 지원의 시점

으로 다양한 주체의 참가·협동아래 효과적인 조직편성을 연대시키면서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추진에 있어서는 현(縣)이 계획 전체의 진행관리·조정 역할을 하면서 현민 한 사람, 한 사람, 주민조직, NPO단체, 조직, 나라, 지방의 각 추진주체가 각 활동을 충실하게 역임함과 동시에, 서로 협동·연대하여 계획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시책 별 조직편성으로는 어떻게 추진주체와 함께 조직편성을 하는지를 명시하고 「목표하는 모습」은 10년 후의 실현되어 있어야 할 사회의 모습을, 「대책방향」은 앞으로 4년간 대책 방향을 「모두의 조직편성」은 추진주체마다 기대하는 역할, 조직편성을 명시했습니다.

이후에는 연간 계획, 실시, 검증, 개선의 순서로 사업의 진보를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행동 계획에 기초한 대책 상황, 인권을 둘러싼 현상 인식, 과제에 대해서는 연차보고로 정리하여 미에 현(三重県) 인권 시책 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여쭙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해의 대책에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작년도(2009년도) 「인권이 존중 받는 미에 (三重)를 만들 행동 계획」의 연차보고 목차입니다. 4개의 시책 분야에서 16개의 인권 시책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연차보고를 기초로 여러 가지 기회를 활용해서 의견교환을 하는 등, 폭 넓게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현(縣)내 시정(市町) 상황]

마지막으로 현(縣)내 시정(市町)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듯이 미에 현(三重県)에도 시정촌(市町村) 합병이 진행되어 69개 시정촌(市町村)에서 29개 시정(市町)이 되어, 합병 전에는 58개 시정촌(市町村)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조례 제정율이 84%였습니다만 현재는 24시정(市町)에서 조례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례 제정율은 83%입니다.

과제

(조례의 인식도)

2004년 11월에 실시한 「인권 문제에 관한 미에 현(三重県)민 의식조사」에 의하면 조례의 인지도가 17.7%이고, 전회에는 조례가 1997년 6월에 미에 현(三重県)의회에서 결의된 것을 알고 있는지에 질문을 했는데 「알고 있다」라는 대답이 56.0%이고, 거슬러 올라가 전전회에는 미에 현(三重県)의회에서 1990년 3월에 결의한 「인권 현(縣)선언」에 대해 비슷한 설문문이 있어 「알고 있다」라는 대답이 41.0%였습니다.

최근의 조사가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실태가 인권 의식의 후퇴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모든 기회를 통해 계발에 힘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동계획의 주지)

행동계획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이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동 계획의 존재 그 자체를 알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縣) 홈페이지상에 전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의식조사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나는 조례의 인지도 향상을 포함해, 작년도의 현정(縣政)에 대한 소식 11월호에 「인권특집」을 다뤄, 「행동계획」의 취지·개요를 알기 쉽게 일러스트를 넣어 설명하면서 다양한 주체 각각의 역할이나, 협동·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주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에 현(三重県) 인권 센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에 현(三重県)센터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1990년 3월에 「인권 현(縣)선언」이 현(縣)의회에서 결의되어, 그 선언의 취지에 따라 모든 차별을 없애고, 인권 존중의 정신을 광범위하게 현민에게 보급하기 위한 거점 시설로서 인권 센터 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상을 구체화 하기 위해 「미에 현(三重県)센터 설치 검토 위원회」를 조직하고 검토 위원회에서 동화(同和)문제를 시작으로 한 여러 가지 인권 문제에 대한 자료 공유, 조사·연구, 상담, 교육, 계

발 등의 기능을 가진 「인권 센터」에 대해 제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언을 기초로 「인권센터」 「노동대책 센터」 「동화(同和)교육 센터」라는 3개의 시설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에 설비공사가 착공되어 1996년 11월부터 개관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3000만엔, 건물은 지상 3층 건물로 주요한 설비로는 다목적 홀·상설전시실·도서관·회의실(4개)입니다.

2002년 4월 행정조직의 재편에 의해 「인권센터」 「동화(同和)교육 센터」의 2개 시설이 되었습니다.

설비 목적은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인권 존중 사상을 광범위하게 미에 현(三重県)민에게 보급하고 부락차별을 시작으로 하는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한 계발, 상담의 거점시설로서 설비되었습니다.

인권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에 현(三重県)생활·문화부 속의 인권 센터로 계발 과와 상담 과가 있습니다. 2번째는 미에 현(三重県)교육 위원회 인권 교육실 조사 연구 그룹, 3번째는 사단법인 미에 현(三重県)인권 교육 연구 협의회, 마지막의 4번째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재단법인 반(反)차별·인권 연구소 미에데입니다.

각각에 대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발 과와 상담 과를 포함한 인권센터 에서는

- ① 동화(同和)문제를 시작으로 하는 인권에 관계된 문제(이하 「인권문제」)에 관한 계발 및 연구.
- ② 인권 문제에 관한 시정(市町) 계발 활동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조성.
- ③ 인권문제에 관한 상담.
- ④ 인권에 관한 조사연구.
- ⑤ 전시실, 도서관 및 다목적 홀 이용한 관한 일.

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사무적으로는 센터를 통괄하는 사무도 하고 있습니다.

미에 현(三重県) 교육 위원회 인권 교육실 조사연구 그룹은 인권·동화 교육 센터라고도 불리며 인권 교육을 한층 더 넓고 깊게 다루기 위해 다음 3가지를 활동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보의 수집입니다. 인권 학습 교재 「내가 빛나다」나 「인권교육 가이드 라인」의 활용을 시작으로 하는 인권 교육 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정리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정보 공유입니다. 수집·분석·정리한 정보를 각 종류의 연수나 오리지널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3번째는 상담을 통한 지원입니다. 교육 관계자로부터 인권 교육 유지에 관련된 상담을 받아 인권 교육이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4월부터는 인권교육에 관련된 교직원의 모든 연수를 계획·실행하고 있습니다.

사단 법인 미에 현(三重県) 인권 교육 연구 협의회는 1953년 「미에 현(三重県) 동화 교육 연구회」로 출발 했습니다. 1967년 1회 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올해로 44회째를 맞이합니다. 목적으로는 부락차별을 시작으로 하는 모든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교육 내용의 창조를 지향하고, 인권·동화교육 연구 조직의 협의체로서 학교 교육이나 사회교육, 지역 교육의 실천교류·연구협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2004년에는 사단법인의 허가를 받아 조직 명을 사단법인 미에 현(三重県) 인권 교육 연구 협의회라고 개칭 했습니다.

활동 내용은 각 종류의 연구회나 연수회의 계획·개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에 현(三重県)인권·동화 교육 연구 대회, 인권 보육전문 연수회, 분야별 연구회 회원 연수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국인권·동화교육 연구 대회」를 미에 현(三重県)에서 개최해 1만 5천명에 가까운 인권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국에서 결집해 연구·협의를 했습니다. 또 개인 회원에 대한 회보지 발행, 강연 수

록 발행, 취재·서적 발매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반(反)차별·인권 연구소는 1997년(이 년도는 미에 현(三重県)에 「인권이 존중되는 미에 현(三重県)을 만들 조례」가 성립된 해입니다.)에 설립한 「미에 현(三重県)인권 문제 연구소」와 2000년 설립한 「IMADR-Mie」 [반(反)차별 국제 회의 미에(三重)]의 두 양 조직의 성과를 이어받고, 서로 연대해서 발전적으로 조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2005년에 설립되어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에 현(三重県)인권 문제 연구소」는 피 차별 부락 및 여성·장애인·아이누 민족·류큐 민족 같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 하기 위해 시민의 참가를 기본으로 인권·환경·평화 문제에 함께 할 운동 단체·연구자·기업·자치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에 현(三重県)인권 문제 연구소」는 인권의식의 고양, 실천력 충실로부터 인권 문화로 가득한 사회실현을 위해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활동 내용으로서는

- ① 조사·연구사업
- ② 광고·출판사업
- ③ 연구·육성사업
- ④ 연대·교류사업
- ⑤ 위탁 사업

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인권문제의 해결에 착수할 지도자 육성을 위한 「인권 대학 강좌」의 개최나 많은 강연회 (연간 100회를 넘는 사람도 있다)·연수회 실시, 광고 활동 충실 등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미에 현(三重県)의 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전부 인권학습이 들어 있어, 인권 교육을 계획·입안하고 실천의 중심에 설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저는 1개월 반 전까지는 학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Shakespeare)·괴테(Goethe)와 어깨를 견주는 세계 3대 시인의 한 사람인 마츠오 바쇼(松尾芭蕉)의 탄생지로 유명한 이가시(伊賀市) 스코(崇広)중학교라는 학교에서 4년간 교장 직으로 근무하다가 작년에 퇴임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스코(崇広)중학교구에서 작년에 특필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스코(崇広)중학교구에는 『지역 모두의 인권·동화 교육 추진 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 작년 11월 14일에 『휴먼 페스티벌』 실시 했습니다.

먼저 『스코(崇広)중학교구 지역 전체의 인권·동화 교육 추진 위원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7년 전에 발족되어 그 목적으로 「학교·유치원·보육소·보육원·지역·가정이 연대하여 지역 모두가 서로 교육력을 높이는 실천 행동을 행함으로써 부락 차별 및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한, 풍부한 인권 감각을 가진 아이들을 기르고 교육 관계자·보호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을 높인다.」입니다.

사업 내용은 3개가 있고 ①회의 ②스코(崇広)중학교 블록(block) 동회 교육 교류회 ③스코(崇広)중학교구 지역 전체의 휴먼 페스티벌의 개최입니다.

제가 스코(崇広)중학교에 전입한 4년 전까지는 연간 2회의 총회에서 학교 나름의 보육소·보육원의 계획이나 총괄을 발표하고 강연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4년 전에 교장으로 부임 했을 때 이런 훌륭한 조직이 있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여 학교 선생님들이나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부터 움직임을 동반한 이벤트를 실시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를 깊이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수회나 강연회도 중요하지만 참가하는 사람이 한정 되어 있고 대상도 어른을 위한, 또는 아이만을 위한 형태가 대부분이라서 좀처럼 확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번에 많은 사람이 활동 함으로써 배려를 더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휴먼 페스티벌」의 콘셉트로 이 9가지 점에 배려를 했습니다.

- ① 움직임을 동반한 이벤트를 실시해서 차별을 허용치 않는 사람과 사람의 유대를 지향한다.
- ② 학군 재편에 따른 신 학군의 주지.
- ③ 보육·유아·초등·중학의 어린이들 참가.
(새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했던 것을 발표)
- ④ 학군 초등학교 중학교의 PTA 참가.
- ⑤ 학군 인권 관계 단체의 참가.
- ⑥ 준비나 계획, 당일 운영을 콤팩트로 실시.
- ⑦ 회장에서 점심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방법을 취한다.
- ⑧ 휴먼 페스티벌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확인.
- ⑨ 각 단체별 수지 결산.

「스코(崇広)중학교구 지역 전체 휴먼 페스티벌」의 목적은 다음 2가지 입니다.

- ① 원아·유아·학생과 보호자, 지역주민, 지역 여러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과 사람의 유대를 지향한다.
- ② 스코(崇広)중학교구가 변경된 것에 따라 넓은 학군의 사람들이 참가하여 각각의 활동을 알아 가는 정보 발신의 장이 된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포스터·광고지 입니다. 원화는 미술 선생님에게 의뢰했습니다. 포스터는 200장, 광고지는 10000장 인쇄했습니다. 포스터는 시민 센터나 관계기관에 배포 했습니다. 광고지는 이것도 시민센터를 통해 전 가구에 배포했습니다. 약 9000장이 필요했습니다. 남은 것은 초·중·고 교직원이나 학군 이외의 보호자에게 배포 했습니다.

이것은, 당일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당일 회장도(図)입니다. 뒷면에 인쇄해서 배포했습니다.

여기서, 당일 상황을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과와 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과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 ◎사람과 사람의 유대의 소중함을 의식할 수 있게 되었다.
- 학군 보호자 사이의 유대를 볼 수 있었다.
- 초등학교생과 중학생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학군에 발신할 수 있었다.
- 인권 관계 단체의 학군 인지도를 넓힐 수 있었다.
- 학교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지역 주민이 참여 해 주었다.
- 인권에 대해 생각할 계기나 행동할 의욕이 생기게 했다.

과제로는 다음 8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 ① 휴먼 페스티벌에서 배양한 관계를 어떻게 넓힌 것인가.
- ② 인권 계발 부스의 증설.

- ③ 참가 단체의 증가.
- ④ 철저한 사전주지.
- ⑤ 사전 준비의 속기화.
- ⑥ 사무국의 부담 경감(분담).
- ⑦ 학군의 초등·중학교의 연대(합동 실행 위원회의 편성).
- ⑧ 유치원·보육원·보육원아의 무대 발표

참가 하신 여러분의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풍성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입니다. 그 미소가 가득한 페스티벌에는 부락 차별을 비롯한 어떠한 차별도 비집고 들어올 여유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주의·주장·입장이나 사고가 다른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이 하나의 이벤트로 결집한다. 마음이 풍성해서 따뜻해진다. 그런 현장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는 건, 참 좋은 거구나. 사람과 사람의 유대라는 건 굉장히 멋진 것이구나 라고 재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국내 사례와 전략적 모색

- ▶ 광주광역시 인권기본조례의 의의와 과제
- ▶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 추진현황
- ▶ 전북지역 인권조례 제정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의 제정경과와 쟁점 그리고 전망
- ▶ 전남지역 장애인 인권조례 제정 사례와 시사점

광주광역시 인권기본조례의 의의와 과제

조상균(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 제정의 의의

2009년 10월 27일 종전의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이하, '육성조례'라 한다.)'가 전부개정된 형태로 새롭게 탄생한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이하, '광주 인권증진조례'라 한다.)'는 형식적·내용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광주인권증진조례는 지역공동체 차원의 인권 제도화의 성과이다.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보호하고 이를 지역에서부터 실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²²⁾. 이는 법률, 국가기관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권주류화가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공동체(직장, 가정, 학교, 이웃 등)로 그 범위가 확대·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체도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우리나라에서 법률에 의한 인권보장에서 조례에 의한 인권보장으로 그 외연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하나의 증거로 되고 있다.

둘째, 광주인권증진조례는 최초의 인권기본조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여기서 말하는 '인권기본조례'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접근 방법 및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그 실행방향에 있어 구체적이고 실행력이 확보되는 조례²³⁾'를 말하고, 장애인, 남녀평등, 아동, 노인, 여성, 학생 등의 개별대상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개별인권조례'와 성격을 달리한다.

셋째, 광주인권증진조례는 개별인권조례제정의 당위성과 추진동력으로 작용한다.

위와 같은 인권기본조례의 제정은 그동안 법률에 위임이 없다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지방정부 및 의회에 하나의 인권조례제정의 근거지 당위성을 부여함으로써 추진동력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22) 예를 들면 진주시, 부산시 등의 인권기본조례제정운동, 안산시의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조례제정, 광주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안산시의 경우에는 2009년 3월 27일 '안산시 외국인 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광주인권증진조례와 마찬가지로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인권 제도화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3) 조상균,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조례의 내용과 과제', 「법학논총」 제29권, 제2호, 2009년, 416면 참조.

II.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 제정과정

1.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

광주에서의 인권기본조례 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08년 5월에 개최된 ‘지자체 조례의 인권적 접근을 위한 활동가워크숍’이 그 출발점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구 광주지역사무소)가 주최한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 각지에서 인권조례 제정을 고민하는 연구자, 활동가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들은 각자 지역에서 고민해왔던 지자체 조례에 인권적 관점을 접목시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이해와 조례제정 작업의 의미, 인권관점으로 본 지자체 조례 현황, 광주, 전남, 제주, 진주 등에서 진행해왔던 조례제정운동의 경험과 과제, 인권조례 제정에 있어서의 각계의 역할 등에 관해서 고민하였다²⁴⁾. 이날 워크숍이 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은 광주에서의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인했던 최초의 자리였다는 점이다.

2. 인권조례 연구모임의 결성 및 논의

워크숍 이후 광주인권사무소와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를 중심으로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인권조례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라 한다)을 구성하였다. 이 모임은 사·구의회 관계자 4명, 단체 활동가 6명, 연구자 6명에 교육관계자, 변호사 각 1명씩, 그리고 광주지역사무소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각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도록 구성을 한 이유는 인권조례에 대해 현장 활동가는 물론이고, 연구자, 실무자, 의회 관계자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눔으로써 내용의 충실함, 과정의 개방성과 함께 조례제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였다. 연구모임에서는 우선 부문별 인권조례로 접근할 것인지, 포괄적 인권조례로 접근할 것인지, 혹은 동시에 접근할 것인지가 먼저 논의되었다. 장애, 여성, 청소년 등 특정분야에 대한 조례로 접근할 경우 제정 가능성이나 당사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포괄적인 내용을 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광주광역시가 민주인권평화도시를 도시브랜드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포괄적(기본적) 인권조례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조례의 입법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를 할 것인지, 주민발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의원발의를 할 경우 입법화 가능성은 높일 수 있겠지만 주민참여나 공감대 형성은 미흡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주민발의를 할 경우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고 제정과정에서의 운동적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정치적 지형에 따라 입법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²⁵⁾. 연구모임에서는 논의 끝에 연구모임에 단체활동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시민사회의 의견반영이나 공감대 형성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 2008년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되는 해로 시기적으로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의원발의 형식을 통해 조속한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특히 광주가 갖는 역사적 상징성과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갖는 의의를 고려해, 조례안을 12월 10일 세계

24)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편, 지자체 조례의 인권적 접근을 위한 활동가워크숍: 2008 광주지역사무소 인권활동가 연수 프로그램,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2008년 참조.

25) 주민발의를 통하여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가 제정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부(국가인권위원회) 및 학계(전남대 공익인권법 센터)가 중심이 된 연구모임의 특성상 서명작업의 곤란함 때문에 주민발의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었다.

인권선언 기념일에 공식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3. 광주인권기본조례 초안 마련 및 검토

이후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초안 작성 책임을 맡았고, 2차 모임부터 매달 초안에 대한 검토와 수정을 하는 방식으로 조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광주인권기본조례(안)은 11월 14일 시민사회단체 공청회를 통해 공개적인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정책담당자 40여명이 모인 공청회는 이렇게 모아진 의견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할 것이다. 공청회에서 입법화 방법이나 구체적인 조례 내용에 대한 이견이 제출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연구모임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동의하는 것으로 모아졌다. 특히 다양한 방법으로 시의회를 압박해 조속히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의원발의가 끝내 무산될 경우 주민발의 형식으로 다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연구모임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초안에 대한 수정을 진행했으며, 2008년 11월 26일 모임에서 최종안을 확정하였다²⁶⁾.

4. 광주인권기본조례(안)의 기본방향 확정

광주인권기본조례(안)의 초안을 작성할 때, 조례(안)의 기본방향으로 연구모임에서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광역시 인권도시로서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담을 수 있도록 제정해야 한다. 둘째, 이념과 효율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행정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셋째,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넷째, 이전에 제정된 개별적 인권조례와 이후의 인권 관련 조례의 내용을 모두 포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과도한 행정부담을 지우거나,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방향과 행정의 권한을 제한하고 감독해야 하는 조례의 기능이 상충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초안을 만드는 작업이 단순히 연구모임의 논의의 성과물로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표인 시의회에서의 제정이라는 결과물을 내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해야 하며 게다가 이를 이끌어 낼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 시의회의 역량 등을 고려해 보면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 시의회 및 시집행부와의 간담회

이렇게 마련된 최종안을 가지고 조례 추진 초기부터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해왔던 시의원들과 의원발의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으며, 2009년 2월에는 시의원, 광주시 관련 직원들과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자리에서 광주시 직원들은 상위법의 부재, 광주인권기본조례(안)과 종래의 육성조례와의 차별성부재, 인권기본조례에 대한 다른 지자체의 선례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여 제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 관하여 앞으로 몇 차례 공청회를

26) 인권기본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조상균, ‘광주시 인권조례 제정의 경과와 전망’,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9년을 참조.

더 열기로 합의하는 등 처음 대면하는 자리치고는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기적인 문제로 공청회는 열리지 못하고, 연구모임과 시의회 시집행부간의 몇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극적인 합의를 보게 되었고, 결국 광주시의회의 이명자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의 육성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육성조례와 연구모임이 제안한 인권기본조례(안)을 혼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만들기로 최종 합의하여 2009년 10월 27일 광주시의회에서 최종 통과되게 된다²⁷⁾.

6. 제정이후의 경과

2009년 10월 27일 광주인권증진조례가 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고, 그 1차적인 성과로 동조례 제16조에 근거한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가 2009년 12월 27일에 출범하였다.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에는 동조례의 대표발의자인 이명자 위원과 연구모임의 일부가 참여하게 되어 시민사회에서 애초에 요구했던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

III. 조례의 구체적 내용과 과제²⁸⁾

1. 광주인권증진조례의 기본내용

이번에 전부개정된 광주인권증진조례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과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3장 24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에 필요한 시장, 교육감, 시민 등 주체별 책무(제3조~제5조).
- 나.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제6조).
- 다.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과 각종 주요계획 수립시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시책을 적극 반영(제8조)
- 라.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백서발간, 인권영향평가, 지원체계강화 및 인권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제9조~제10조)
- 마.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를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6조~제21조)

2. 광주인권증진조례의 구체적 내용

27) 연구모임에서 이를 합의한 이유는 결국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고, 이후 실행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이를 보완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제정된 조례는 합의했던 안보다도 인권증진에 더 후퇴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8)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부록을 참조.

가. 조례제명의 변경

종래의 육성조례에 시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조례의 제명을 현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로 변경하였다.

나. 제정 목적

조례 제1조에는 제정목적이 기술되어 있다. 즉 인권조례로서 민주수호와 인권존중, 평화 애호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권증진' 과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로 육성'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육성조례와의 목적과 비교해 차별화를 갖고, 이 조례가 인권조례임을 명기하게 되었다.

다. 정의 규정

조례에서는 종래의 육성조례의 정의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민주·인권·평화도시'의 약어로서 사용된 '평화도시'를 삭제하여 논란이 있었던 개념간의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였고, 연구모임에서 제안한 '인권' 및 '시민'에 대해서 인권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반적인 개념보다 확장된 정의규정을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인권'에 개념에 관해서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²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의 개념에 '세계인권선언'을 추가하였다. 추가한 이유는 인권에 있어서 세계인권선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조례의 지역적 한계성을 뛰어넘어 인권의 보편성의 의의를 확인하고,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적극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둘째, '시민'의 개념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갖는 자로 한정하지 않고, 거주목적의 체류자 및 외국인 근로자를 고려한 광주광역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로 그 범위를 넓혔다. 이후 외국인 인권관련 조례를 제정할 시 체류자격을 구애받지 않고 보호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될 것으로 본다.

라. 주체별 책무

조례 제3조내지제5조에서는 시장, 교육감, 시민의 인권증진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당초 연구모임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조례에서 모든 실행력을 담보하려는 것은 욕심에 불과하고, 시장에게 지나친 강제규정을 두다보면 시 집행부의 반발로 제정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칙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인권증진 체계구축' 및 '민주·인권·평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관련시책 및 사업의 추진'만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나머지는 기본계획의 수립에서 담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감의 책무(제4조)에 관해서는 조례에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우선 문제가 되었으나, 종래의 육성조례에 그 전례가 있고, 광주광역시 교육청도 광주광역시의 피감기관임으로 별도로 규정되었다. 당초 현재 광주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별도의 '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그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강제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었으나³⁰⁾, 제정과정에서 교육감 책무에 관

2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0) 당초 연구모임이 작성한 안에서는 1.인권교육 기본 계획 수립, 2.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지원, 3.

해서 시장이 이를 강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그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기로 하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권의식 함양과 함께 민주·인권·평화의 역사와 정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을 위한 노력의무가 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책무(제5조)에 관해서도 규정을 두어 시민이 단순히 인권보호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인권증진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조례에서는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5년 단위³¹⁾의 기본계획³²⁾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제6조),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시책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였다(제8조). 또한 시장이 정책추진 등에 필요한 경우 민주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가지고자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9조), 시민에게 광주광역시의 인권현황 및 인권증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알리기 위해 ‘광주광역시 인권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또한 시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의무(제10조)를 부과하였다. 특히, 현재 광주광역시도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지역차원에서 인권시책을 집행할 부서가 없는 관계로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는 등 지원체계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으며(제10조)³³⁾, 인권활동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따로 마련하였다(제10조).

바.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시민위원회 구성

조례에서는 시민의 인권증진과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에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시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제16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제16조 제2항). 위 시민위원회는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맡고, 위원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의 직접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장이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인권단체에서 추천하는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였다(제17조 제2항).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였다(제17조 제3항).

학생·교원·교육행정직에 대한 인권교육실시, 4.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규정 제정 및 점검, 5. 학교 인권침해구제 및 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교육감의 책무로 기술하고 있었다.

31) 기본계획의 수립시기를 시장의 임기에 맞게 4년 단위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계획은 한번 수립할 때마다 수행해야 하는 실태조사 및 공청회 등 여러 행정절차가 복잡함으로 자주 바뀌는 것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임기에 맞추어 바뀌게 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기본주기는 5년으로 하여 그 타당성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도록 하였다.

32)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에는 민주·인권·평화도시의 ① 역사성 ② 육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③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④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 또한 ⑤ 시민의 인권증진 계획과 전략, ⑥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⑦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마련이 포함되었다.

33)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5.18정신선양사업을 주역할로 하는 자치행정국내 ‘민주정신선양과’가 존재하고 있으나, 기본조례가 시행될 경우 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시행의 효율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여 새로이 인권증진관련전문부서를 신설할 것을 권고하는 측면도 갖는다.

3. 광주인권증진조례의 문제점 및 과제

가. 조례전문의 부재

현재 전부개정된 조례에는 전문이 없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인권에 관한 기본조례로서 위치를 갖기 위해서는 조례의 전문이 필요할 것이다. 전문은 조례의 제정취지, 이념, 목적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조례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조례의 각 조항의 해석의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인권 관련 조례에서는 인권증진에 관한 의의, 방향성, 역사성(그 지역의 상황 포함) 등을 담고 있는 조례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조례의 성격을 규정짓는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³⁴⁾.

당초 연구모임이 제안한 초안에는 인권의 기본이념을 5.18 광주민주항쟁의 근원지에 살고 있는 광주시민이 실현하는 것은 우리들의 염원이자 책무임을 밝히면서, 시의 책무와 시민의 결의를 언급하고 있었다. 기왕에 시민의 인권에 관한 기본조례로서 위치를 갖는다면 조례의 전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조례의 목적범위의 확대

조례의 목적이 시민의 인권증진에 있음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으나, 조례의 인권적 접근면에서는 목적범위가 다소 한정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즉 조례의 목적이 ‘인권증진’에 중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인권의 전향적 또는 개선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현재 누리고 있는 인권이 후퇴하는 퇴행과 침해의 방지라는 ‘보호’의 의미가 추가되어야 보다 바람직한 조례의 목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례의 목적범위를 확대하여 ‘인권의 증진’에 한정하지 않고, ‘인권의 증진과 보호’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위원회의 실효성 및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그리고 위원회에 대한 시민의 직접참여보장 및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 첫째 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해서는 시장에 대해 위원의 활동의 간섭배제 및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대신에 단순히 제24조에서 ‘위원의 위촉 해제’란 제목으로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및 위원이 인권에 반하는 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시장은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시장이 판단주체가 되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독립성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 되도록 하고 있어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위원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지적하고 싶다³⁵⁾. 둘째 시민의 직접참여의 보장 및 전문성의 강화측면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34) 예를 들어 일본 오사카시 인권 존중의 사회 만들기 조례의 전문에서는 ‘(전략) 여기에서 한사람 한사람의 인권이 존중되어 모두 사람이 자기실현을 목표로 하여, 사는 보람이 있는 인생을 창조할 수 있는 자유,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해 가기 위해 우리 한사람한사람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 인권 존중의 사회 만들기를 추진해 가는 것을 결의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인권관련 조례에 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인권조례제정·인권친화적인 대구만들기 토론회 자료집 2009년 참조.

35) 다만, 부시장인 위원장이 회의를 주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회의를 이끌어 나갈 위원중 호선되는(제17조 제2항) 부위원장을 민주적인 인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위촉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거나, 인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외에는 인권과 무관한 사람이 위촉될 여지가 있다는 점, 또한 위원회의 성격과 무관한 공무원을 위원자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하고 싶다. 따라서 위원 자격에서 시민참여의 보장뿐만 아니라, 위원 자격에서 ‘인권전문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라. 인권영향평가

조례의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제도는 원래 지난 16대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제시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유사한 개념의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시장이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 및 정책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만약 도입되지만 한다면 인권보장에 관한 확실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³⁶⁾. 그러나 조례에서는 시장이 정책추진 등에 필요한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 본인이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인권영향평가가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으며, 이를 또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도록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현재까지 외부 전문기관이 어떤 기관을 의미하며, 과연 평가기준은 무엇인지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사문화된 규정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영향평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의 주체를 위원회로 하고, 위원회가 판단하여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 등을 시장이 입안할 경우 이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인권영향평가의 기능의 실효성이 담보될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제언을 중심으로

첫째, 광주인권증진조례가 나오기까지 지역차원의 모범적인 조례제정운동이 있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시의회 등의 지방기관과 학계 및 시민사회의 유기적인 협조속에서 이루어진 조례제정운동은 지방여론을 움직이게 하였고, 조례안의 작성, 의견수렴, 조례안의 발의 등 조례제정을 위한 모든 과정속에서 지역공동체의 의견이 집약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인권조례 연구모임의 구성, 각 단체와의 연락, 여론조성 등 이번 조례제정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활동은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사무소 폐쇄움직임과 맞물려 지역사무소의 새로운 기능의 발견 및 왜 지역사무소가 필요한 것인가를 보여준 하나의 반증이라고 생각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운동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안산시의 외국인인권조례 및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는 안산시의 시장, 경기도 도교육감의 적극적인 조례제정 의지속에서 조례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진주시나 울산시, 부산시, 전북의 인권기본조례운동 및 광주학생인권조례의 경우는 의회나 시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사가 없는 관계로 오로지 시민사회의 역량 하나만으로 이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필자는 명확한 해답을 내을 수 없다. 그러나 일단 각 지역의 현실을 감안한 운동방법을 고민해야 하고, 지자체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점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6) 당초 연구모임에서 제안한 내용은 우선 시장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조례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에게 인권영향평가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및 중단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었다.

둘째, 조례제정작업시 내용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우선 조례라는 지역규범의 성질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례제정운동의 최종 목표가 조례의 제정자체가 아니라, 제정이후의 그 인권조례가 살아있는 지역의 규범으로서 구속력을 갖는데 있다고 한다면, 관·학·민의 협조 및 관심을 유도해 낼 수 있고, 이후에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있어서 다소 불만족하다 하더라도 이념 및 효율성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조례 본연의 기능에 대한 이해의 확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실 지금까지 지방자치기 시작된 지 20여년이 되어 가지만, 주민들속에 조례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고, 인권과 조례의 만남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이해 없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글귀에 불과할 것이고, 지역 주민의 무관심속에서 시 집행부를 움직일 수 있는 추진동력도 갖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조례가 갖는 의미 즉, ‘상위 법령의 인권 보호 정신과 취지가 자치법규에 제대로 반영될 때만이 헌법적 인권가치의 실질적 구현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인식³⁷⁾’이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

37)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편, 앞의 책, 15면 참조.

광주광역시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

(제정) 2007-05-15 조례 제 3491호
(전부개정) 2009-11-16 조례 제 375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지니고 있는 민주수호와 인권존중, 평화 애호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권 증진 및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인권·평화도시"란 민주·인권·평화의 역사성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공동체 속에서 구현해 나가며 이를 널리 전파하는 도시전형을 말한다.
2. "인권"이란 세계인권선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민주·인권·평화도시 학습체계"란 민주·인권·평화의 정신과 문화를 공동체 안에서 내재화하고 이를 세계화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권 증진체계를 구축하고 민주·인권·평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관련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시 교육감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권의식 함양과 함께 민주·인권·평화의 역사와 정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며 민주와 평화를 애호하는 자랑스러운 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이를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 ① 시장은 인권 증진 및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주·인권·평화도시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역사성
 2.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3. 민주·인권·평화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4. 각종 시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
 5.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시민의 인권 증진 계획과 전략
 7.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8.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등
-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정비 한다.

제2장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제7조(평화도시 선언)

- ① 시장은 시민단체, 노동단체, 상공인단체, 학계, 언론계 등과 협의하여 지속가능한 민주·인권·평화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지가 포함된 평화도시를 선언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화도시 선언에는 인권 증진 및 평화애호의 이념과 목표, 세계화 비전(Vision)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8조(시책 반영)

- ①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 증진과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반영한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인권 증진과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시책을 적극 반영 한다.
 1. 광주광역시 차원의 문화중심도시 조성 계획
 2.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
 3. 그 밖에 각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제9조(공청회 등)

- ① 시장은 정책추진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시민들에게 인권현황 및 인권 증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해 '광주광역시 인권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인권 증진활동 지원 등)

-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 증진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인권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국제협력의 추진 등)

- ① 시장은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기구 또는

관련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국제기구 또는 관련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국제 행사 등을 개최하여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제화 추진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12조(학습체계 구축)

시장은 민주·인권·평화의식을 고양하고 전파할 수 있는 평화도시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제13조(인권·평화센터 등 조성)

시장은 민주·인권·평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광주 인권·평화센터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등)

시장은 인권존중 및 세계평화를 위해 기여한 공적이 큰 내·외국인에 대하여 직접 시상하거나 시상 주관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상징공간의 조성)

시장은 민주·인권·평화도시의 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상징적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이미지를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장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시민위원회

제16조(위원회 설치 등)

- ① 시민의 인권 증진과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에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인권단체에서 추천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높은 사람
-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 심의사항의 전문적인 검토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위원장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회의)

-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간사)

-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민주정신선양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의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비밀 준수)

공무원 및 이 조례에 따른 관계자는 인권 증진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보호하고,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수립된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종합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 칙<2009.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 추진현황

이기동(진주시인권조례제정본부 연구팀장)

I. 지역에서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

1. 생활 현장에서 일상적인 인권 보장 필요

- 지역은 인간이 구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생활 현장→인권침해 방지와 인권보장의 일상성을 확보해야(‘지역’과 ‘직장’이라는 생활 현장이 바로 인권침해의 현장이며 인권보장의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하는 가장 기초 단위).
- 1차적인 인간관계, 위계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인권’의 문제가 전통, 관습, 풍속, 각종 관계(이해관계와 인적관계) 등으로 부차적인 문제로 보거나 불필요한 인식으로 일상화, 고착화.
-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근본적인 해결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대한 관심보다 무마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강요의 분위기 만연→인권침해 사례의 되풀이로 생활의 건강성 보장 어려움.

2. 진주에서의 인권조례 제정 제기 배경

- 인권 문제에 대한 진주지역의 역사성 : 형평운동, 진주농민항쟁 등 신분차별과 봉건적 질서에 대한 저항과 성취의 경험을 지역 전체가 공유.
- 지역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재조명 움직임의 성과.
-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의 구조화·제도화의 필요성 제기.
- 2005년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진주인권선언’ 채택하고 인권사랑한마당 개최.

II. 진주지역의 인권조례 제정 추진과정

1. 연대활동의 경험 축적으로 소통과 협력관계 구축

- 2005년 진주인권회의 출범과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 진주협의회(17개 단체) 결성, 인권사랑한마당 개최.
- 이후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 진주협의회는 느슨한 연대기구로서 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맡음.

- 현재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 진주협의회에는 25개 단체가 참여함 : 경남척수장애인협회진주시지회, 경상대통일평화인권센터, (사)고려장애인부모회(부설 진주장애인복지센터) 공무원노동조합진주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진주시지회,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진주시민노인대학, 진주문화연구소, 진주시약사회, 진주시장애인부모회다사랑행복나무, 진주시한의사회,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연대, 진주오광대보존회, 진주인권회의, 진주YMCA, 진주YWCA, 진주지역자활센터, 진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주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진주시지회, 진주가정법률상담소(내일어여는집), 한누리,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새생명광명회
- 범시민단체 참여 유도
- 당파성 단체와 연합기구의 참여 배제→개별단체 참가유도

2. 각 단체 기존 활동 경험 활용

- 진주여성민우회(민우학교), 진주인권회의(진주인권학교), 진주참여연대, 장애인단체연합회(장애인인권학교), 형평운동기념사업회(장애인인식개선), 등 시민인권교육 사례의 성과를 조례 제정의 동력으로 활용.
-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 다른 지역 사례학습 및 활용(목포 및 울산, 부산, 일본 인권단체 교류 등).
- 전문가 초청 간담회(목포 경실련 김종익 사무국장, 일본 부락해방인권연구소 토모나가 겐지오 소장).

3. 전략수립-협의와 조정

- 참여단체 활동가 중심의 워크숍 개최
- 기존의 진주시 조례분석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협력사업으로 채택됨
 - 2007년도(사업명 : ‘인권도시’를 향한 제3회 “진주 인권사랑 한마당” 개최) 사업에 진주인권조례 제정과 관련된 사항(워크숍, 시민토론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 시켰고, 2008년도(사업명 :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 기반 조성)에는 구체적으로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함.
- 추진 방안 모색하며 시민발의의 장단점 파악
- 현실적 여건 고려하여 진주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 방안 채택.
- 채택 가능한 수준의 안으로 조정

Ⅲ. 진주지역에서 준비하는 인권조례의 내용

추진 과정에서 정제된 결과물로서 만들어진 인권조례 초안을 제60주년 세계인권선언기념일(2008.12.10)인 제4회 진주인권사랑한마당에서 시민들에게 공표함.

1. 초안의 주요 내용

- 가. 인권의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인권의 기본원칙(안 제3조)
- 다. 시, 시민, 지역기관 및 단체의 책무(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라. 인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인권영향평가 실시(안 제8조)
- 바. 인권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 사. 인권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 아. 인권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
- 자. 인권교육 실시(안 제40조)
- 차.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및 인권백서 발간, 인권부서 설치, 인권단체와의 협력 등 인권보호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1조부터 제47조 까지)

2. 진주시의회 발의안의 주요 내용(양해영 시의원 발의)

- 가. 인권의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인권의 기본시책(안 제3조)
- 다. 시, 시민, 지역기관 및 단체의 책무(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라. 인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인권증진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3. 추진 과정과 전망

- 2009년도 상반기 진주시의회임시회에 진주시인권조례를 상정하기 위해 사전 정지작업 진행 : 원안의 수정작업, 시의원들의 동의 조직 등.
-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류’ 결정.
- 6.2지방선거 전 마지막 상임위원회에서 재논의 없이 자동폐기.
- 새로 구성되는 진주시의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 중 : 시장, 시의원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인권조례 필요성 여부를 물어 지역 언론에 공개.

IV. 경상남도의회에서 인권조례 제정

2010. 3. 11 경상남도의회에서 ‘경상남도인권증진조례안’ 제정. 포괄적 인권조례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한나라당 공영운 경남도의원 발의, 전원 찬성).

1. 조례의 제안이유

- 도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 증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경상남도 인권증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권보호와 증진 및 관련시책 발굴과 추진 등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나. 인간의 존엄, 평등권, 인간다운 삶의 권리 등 도민의 권리 규정(안 제4조)
- 다. 교육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의 인권증진 활동에 지원근거 규정(안 제5조)
- 라.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함 (안 제6조)
- 마.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인권증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 바. 경상남도 인권증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참고자료 1)

< 인권도시 진주 선언문 >

사람이 존엄성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 받으며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늘이 내린 보편의 권리이다. 인권 존중은 인간 삶의 중심 가치며 일상 안에서 살아 있어야 하는 기본가치다. 하늘이 사람에게 내린 기본 권리, 곧 인권은 누구든지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에나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또 그럴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하여야 한다. 인간 삶의 터전인 공동체는 가정, 지역, 직장 같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인권이 자리 잡아야 한다. 인간 사회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이므로 사람의 공동체는 인권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터전에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인권의 보편성을 받아들이며 인권의 존엄을 복돋우는 일은 오늘 날 우리에게 주어진 엄숙한 책무다.

진주지역 공동체는 인권발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물려받았다. 임진왜란의 대첩과 순의에서 신분차별을 초월하여 드러낸 애국충절의 역사, 봉건질서의 잔재에서 억압받던 백성들이 불의에 저항한 농민항쟁의 역사, 신분차별을 없애고 평등사회를 추구한 형평운동의 역사가 모두 우리 진주지역 인권발전의 금자탑들이다. 우리 겨레의 인권발전에 기여한 진주의 역사는 오늘 날 진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다. 이리므로 우리는 선조들의 유산을 떳떳이 가꾸며 선각자들의 높은 뜻을 이어받아 인권보장을 실천하는 진주지역 공동체로 일어설 것을 제안하면서, 진주지역 모든 구성원이 손잡고 일어나 <인권도시 진주>를 건설하자고 호소하는 바이다.

모름지기 <인권도시 진주>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돕고, 지역사회 모든 사람이 인권을 가지런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진주지역 모든 구성원이 정치, 사회의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문화의 권리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류사회의 본보기가 되는 인권도시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인권 존중의 가치보다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없다는 진리를 확인하며, 지역사회의 모든 일이 인권 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인권도시 진주>를 만들기 위하여 선언한다.

참고자료 2)

<“진주시 인권조례”안 준비 과정>

2007년

- 1월 31일.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 진주협의회(이후 ‘협의회’로 줄임) 제1회 집행위원회에서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 준비를 위한 학습을 활동과제로 결정.
- 2월 27일. 제2차 집행위원회에서 “(가칭)진주인권조례 준비를 위한 연구모임” 결성.
- 3월 8일. 200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협력사업 신청서(사업명 : ‘인권도시’를 향한 제3회 “진주인권사랑 한마당” 개최)에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된 사항(워크숍, 시민토론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킴.
- 3월 20일. 부문별 인권이해 제1차 워크숍 개최(장소: 진주시 장애인복지관). 주제: 진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검토 및 결혼 이주여성 인권(발표: 박영선 진주YWCA 사무총장, 이둘녀 진주YWCA 간사), 이주노동자 인권(발표: 김희아 카톨릭노동상담소 간사).

- 4월 17일. 부문별 인권이해 제2차 워크숍 개최(장소: 진주YWCA). 주제: 장애인과 인권(발표: 유순자 내일을여는멋진여성회 경남지부장). 정충계 진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6월 19일. 부문별 인권이해 제3차 워크숍(장소: 진주시청소년수련관). 주제: 학생.어린이 인권(발표: 황은덕 참고육학부모회 진주시회장, 배경환 전교조 진주시회부회장).
- 7월 11일. 부문별 인권이해 제4차 워크숍(장소: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사무실). 주제: 여성인권(발표: 강문순 진주여성민우회 부설 성과가족상담소 운영위원, 정윤정 진주여성민우회 사무국장).
- 9월 19일. 진주지역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장소: 진주시청소년수련관). 어린이 청소년인권(발제: 황은덕 참고육을위한학부모회 진주시회장, 토론: 홍순찬 진주장애인복지센터 사회재활교사), 장애인 인권(발제 요약 및 토론: 권춘현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저소득층 인권(발제: 강기동 진주지역자활센터 팀장, 토론: 박종철 진주연대 사무처장), 여성인권(발제: 강문순 진주여성민우회 부설 성과가족상담소 운영위원, 토론: 김미선 전교조진주시회 사무차장), 결혼이주여성 인권(발제: 박영선 진주YWCA 사무총장, 토론: 윤종호 진주문화연구소 사무차장).
- 10월 17일. 진주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장소: 경상대학교 사회과학관), 주제: 지역사회 인권증진과 조례제정, 발제: 김중섭(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진주인권회의 의장), 김종익(목포경찰서 사무국장), 제언 발표: 정대용(진주시의회 의원), 권춘현(형평운동기념사업회 사무처장).
- 11월 10일. 인권활동가 워크숍(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장소: 경상대학교 사회과학관, 발제: 토모나가 겐조(友永健三, 일본 부락해방인권연구소 소장), 주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NGO의 역할.
- 11월 12일. 전문가 초청토론회(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장소: 경상대학교 남명학관 남명홀), 주제: 일본의 인권조례제정 사례와 한국에서의 과제, 발제: 토모나가 겐조(友永健三, 일본 부락해방인권연구소 소장), 제언 발표: 강민아(진주시의회 의원), 박영철(울산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
- 11월 24일. 제3회 진주인권사랑 한마당(장소: 경상대학교 국제어학원 강당) 진주인권조례 제정 준비 보고(보고자: 김중섭)

2008년

- 2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협력사업 선정됨(사업명: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 기반 조성).
- 3월 24일. 진주시 인권조례 초안 마련을 위한 제1차 워크숍(장소: 예담), 주제: 인권조례 제정 사업의 전반적 검토
- 4월 7일. 모듈별 인권조례 준비모임(장소: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사무실).
- 4월 23일. 전문가 초청강연회(장소: 진주시청소년수련관 강당, 주관: 형평운동기념사업회, 발제: 국회의원 장향숙, 주제: 차별 없는 세상으로 가는 길).
- 5월 16~17일. 선진 지역 방문. 방문지역: 광주직할시. 목적: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주최 활동가 워크숍(주제: 지자체 조례에의 인권적 접근 모색) 참석.
- 5월 27일. 진주시 인권조례 초안 마련을 위한 제2차 워크숍(장소: 채송아트홀, 주관: 진주인권회의), 주제: 진주시 인권조례와 결혼이주여성 정책, 발제: 김중섭(경상대학교 사회대학장), 토론: 양해영(진주시의회 의원), 박영선(진주YWCA 사무총장), 정경우(진주문화연구소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실' 담당).
- 9월 17일. 진주시 인권조례 초안 마련을 위한 제3차 워크숍(장소: 경상대학교 사회과학관), 주제: 인권 시각에서 진주시 조례 검토 I.
- 10월 1일. 진주시 인권조례 초안 마련을 위한 제4차 워크숍(장소: 경상대학교 사회과학관), 주제: 인권 시각에서 진주시 조례 검토 II.
- 10월 15일. 진주시 인권조례 초안 마련을 위한 제5차 워크숍(장소: 경상대학교 사회과학관), 주제: 진주시 인권조례 시안 논의 I.
- 10월 29일. 진주시 인권조례 초안 마련을 위한 제6차 워크숍(장소: 경상대학교 사회과학관), 주

제: 진주시 인권조례 시안 논의II.

- 11월 14일. 인권활동 선진지역 사례 조사. 방문지역: 부산, 방문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아시아공동체학교, 부산민주공원 등.
- 11월 19일. 진주시 인권조례 초안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장소: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발제: 이기동(자치분권전국연대 집행위원장), 토론: 양해영(진주시의회 의원), 박영선(진주YWCA 사무총장), 김중섭(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11월 22일.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국제교류 모임(일본 도쿠시마 인권학습 기행단 29명 진주 방문), 장소: 경상대학교, 진주문화연구소.
- 12월 10일. 제4회 진주인권사랑한마당(장소: 진주산업대학교 산학협력관 강당). '진주시인권조례(안)' 공표.

2009년

- 1월 19일. 협의회 제1회 집행위원회에서 양해영 진주시의원에게 대표발의 요청기로 결의. 특별위원회구성: 김중섭(집행위원장), 이기동(인권조례팀장), 박영선(진주YWCA사무총장), 정운정(진주여성민우회 사무국장).
- 1월 30일. 특별위원들과 양해영 시의원 간담회. 이후 지속적으로 협의.
- 4월 24일.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 인권조례 학술대회에서 김중섭 집행위원장 진주사례 발표.
- 4월 30일. 김중섭 집행위원장과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시의원들 간담회 가짐. 이후 진주시의회 소속 의원들과 수차례 면담.
- 5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주최 인권조례워크숍(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기동 인권조례팀장 진주사례 발표와 김중섭 집행위원장 사회 및 토론 참여.
- 6월 4일. 양해영 시의원 외 8인의 발의로 '진주시 인권조례'(안) 진주시의회에 접수.
- 6월 16일.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 보류 결정.
- 6월 18일. 협의회,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 심의촉구 성명 발표 및 기자 간담회 가짐.
- 6월 24일. 진주시의회에 진주시인권조례(안) 심의와 관련된 정보공개 요청.
- 7월 2일. 협의회 김중섭 집행위원장과 이기동 인권조례팀장, 김백용 진주시의회의장, 강석중 기획총무위원장 면담.
- 7월 22일. 진주시인권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 진주협의회 공동주최, 경상대학교 사회과학관 3층).
- 11월 3일. 협의회 "광주시 인권조례의 실질적 제정을 환영하면서 '진주시인권조례' 제정을 지체시키는 진주시의회를 규탄한다" 성명서 발표.
- 12월 10일. 제5회 진주인권선언한마당 개최(진주산업대학교 산학협력관 강당).

2009년

- 3월 11일. 경상남도의회에서 '경상남도인권증진조례안' 제정.
- 3월 12일. 협의회, "경상남도인권증진조례안' 제정을 환영 한다!" 성명서 발표.
- 3월 29일. 협의회, "진주시의회는 시민권의 무시하지 말고 진주시인권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성명서 발표.
- 4월 16일.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류 중인 인권조례안에 대한 재논의 요구(강민아 시의원) 있었으나 재청이 없어 자동 폐기됨.

참고자료 3)

<진주시인권조례(안)>

2008. 12. 10 조례 제 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권 정책에 관한 기본 이념과 시, 각 기관 및 단체, 시 구성원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을 정하여 시의 구성원들이 인간 존중과 평등한 대우를 누리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시는 시의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기본 인권을 누리는데 필요한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만들도록 한다.

② 시는 시의 거주자나 방문자가 기본 인권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

③ 시는 시의 사업이 인권 보호와 증진에 부합되도록 추진한다.

④ 시는 제1항, 제2항, 제3항을 여타 시책 실행의 핵심 기준으로 두어 ‘인권도시’를 지향한다.

제3조(기본원칙)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권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1. 통합적 인권 정책 실행의 원칙
2. 일상적 인권영향평가 수행의 원칙
3. 인권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의 원칙
4.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 사업에 공익비용 부담의 원칙

제4조 (시의 책무) 시장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헌법과 법률에서 명시한 인권 관련 사항의 실행에 관한 사항
2. 인권 침해 요소의 사전 정비와 제거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적극적인 구제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 구성원 참여에 관한 사항

제5조 (시 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① 시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 시 구성원은 시의 인권시책이 실행되도록 노력하고 협력해야 할 책무를 갖는다.

③ 시 구성원은 일상생활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여야 할 책무를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여야 한다.

1. 시 구성원은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인권 관련 사항의 합리적인 의견 제시와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을 해야 한다.

2. 시 구성원은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를 구제하고 관계 기관에 알려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6조 (지역 기관 및 단체의 책무) ① 각 교육기관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책무를 가지며, 학생들이 인권의식을 갖고 실천하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언론기관은 시 구성원들의 인권의식 함양과 인권 실행의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책무를 갖는다.

③ 각 민간단체는 회원과 시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참여하며, 인권시책의 실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각 사업자는 사업장 내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 이때 사업자는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및 인권보호기관 같은 조직을 의미한다.

제2장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

제7조 (인권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 인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 산업, 토지, 도로 같은 시 전역의 기간 설비의 인권 관련 사항의 현황과 전망
2. 인권 관련 사항의 현황과 인권침해 요소의 현황 및 개선 방안
3.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4.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한 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인권취약 집단에 대한 특별한 인권보호와 증진 계획
5.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자원 조달 방법
6. 기타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제8조 (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지역 내의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이 인권환경에 미치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각 사업의 계획과 수행 단계에서 인권보호와 증진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행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우선하여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1. 사회기반 시설의 신설과 보수
2. 시행 사업 예산에서 인권보장 관련 소요 비용의 우선 배정
3. 각 시설물과 도로의 안전한 접근성과 이동권 보장
4.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편의 시설 설치

제3장 진주시인권위원회

제9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진주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인권에 관한 사항
2. 시의 전반적인 인권 시책에 관한 사항
3. 인권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4. 인권센터 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인권 관련 주요 사항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시장이 다음 각 항에서 정해진 사항에서 추천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인.

나. 인권 단체에서 추천한 인권 활동 경력자 3인.

다. 학계와 교육계의 추천을 받은 인권 관련 연구자와 교육자 3인.

라. 경찰서, 검찰, 인권보호시설에서 추천한 인권 보호 업무 관련자 3인.

2. 시 사회환경국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합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4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결과와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맡으며, 서기는 시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자가 맡는다.

제19조 (실비보상)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 위원회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진주시인권기금 설치 및 운영

제20조 (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인권시책의 개발·연구 및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주시인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그 계좌를 따로 설치한다.

제21조 (기금의 자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제22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1.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
2. 인권시책의 개발과 연구사업
3. 인권관련 활동 단체의 육성과 지원
4. 기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기금의 결산 상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진주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24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환경국장
2. 기금출납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 (심의회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진주시인권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게 한다.

제26조 (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제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 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장 진주시인권센터

제29조 (인권센터의 설치) 시장은 시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인권침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인권 관련 정보를 수집 배포하기 위하여 진주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0조 (위치) 인권센터는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구성원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진주시 관내에 설치한다.

제31조 (구성) ① 인권센터는 소장과 전임활동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인권센터의 소장과 전임활동가는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활동실적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하며, 인권센터의 자원봉사자는 소장이 임명한다.

③ 인권센터에는 상담지원팀, 활동지원팀, 교육홍보팀을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결정은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인권센터의 운영, 시설관리책임, 위탁의 취소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협약(별지 제2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 (인권센터 소장의 직무 등) ① 인권센터 소장은 인권센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인권센터를 대표한다.

② 인권센터 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선임 전임활동가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 (업무)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행
2. 제6종에 규정된 지역 기관 및 단체의 인권 관련사항 점검
3.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및 구제 활동
4. 인권 교육의 계획 수립과 시행
5. 인권상담에 관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6. 인권보호 관련 자료 개발과 정보 제공
7. 인권 관련 자원봉사자의 조직과 관리
8.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 교류 활동
9. 기타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제35조 (자격과 임용)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권센터 소장 및 전임활동가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2. 임용의 자격 기준은 인권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6조 (전임활동가 등의 복무) 전임활동가 등의 복무는 공무원에 준하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7조 (직원의 면직) 인권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2.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3. 직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38조 (보수) ① 인권센터 직원의 보수는 시장이 정하는 지침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인권센터의 운영에 참가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 (센터의 재정) 시장은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6장 인권보호 및 증진 체제 구축

제40조 (인권교육 실시) ① 시장은 인권 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1. 각급 교육기관, 공공기관, 사업자는 년 2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2. 복지시설 및 인권 관련 기관은 년 4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를 년 1회 진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실태조사 실시 및 보고서 발간) 시장은 인권 관련사항의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여 인권 정책 수립과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의 기초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42조 (인권백서 발간) ① 시장은 시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현황을 시 구성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3년마다 진주시인권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권백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인권 현황에 관한 사항
2.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인권에 관한 주요 사항

제43조 (인권부서 설치) ①시장은 인권보호와 증진활동의 구체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시 조직에 인권 부서를 설치하여 시의 각 조직이 인권센터와 협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권 부서의 설치와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4조 (인권 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다른 자치단체, 시 안팎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제45조 (국제협력 강화) 시장은 외국의 자치단체와 기구, 인권 단체 등과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인권정보와 자료를 교류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46조 (정보 공개) ① 시장은 인권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 구성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자발적인 실천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인권시책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공개절차 등에 관해서는 인권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른다.

제47조 (시민 참여) ① 시장은 인권시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인권조례안(진주시의회 양해영 의원 발의안)>

진주시 인권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9. . .

발 의 자 : 양해영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우리 진주는 예로부터 최고의 인권운동으로 평가받는 형평운동과 진주농민운동을 비롯하여 인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 난 곳으로, 인권에 관한 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진주시의 인권 정책에 관한 기본 책무를 정하고, 인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인 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인권의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인권의 기본원칙(안 제3조)
- 다. 시장, 시민, 지역기관 및 단체의 책무(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라. 인권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인권증진 심의위원회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국가인권위원회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진주시 인권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 정책에 관한 기본 이념과 시, 각 기관 단체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을 정하여, 시민이 인간 존중과 평등한 대우를 누리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시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기본 인권을 누리는데 필요한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만들도록 한다.

② 시는 시의 거주자나 방문자가 기본 인권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

③ 시는 시의 사업이 인권 보호와 증진에 부합되도록 추진한다.

④ 시는 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여타 시책 실행의 핵심 기준으로 두어 '인권도시'를 지향한다.

제3조(기본시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권 시책의 기본으로 한다.

1. 통합적 인권 정책 실행
2. 모든 시민의 참여
3.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 사업에 공익비용 부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헌법과 법률에서 명시한 인권 관련 사항의 실행에 관한 사항
2. 인권 침해 요소의 사전 정비와 제거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적극적인 구제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인간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 받으며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의 인권시책이 실행되도록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여야 할 책무를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인권 관련 사항의 합리적인 의견 제시와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시민은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를 구제하고 관계 기관에 알려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치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관 및 단체의 책무) ① 각 교육기관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책무를 가지며, 학생들이 인권의식 함양과 실천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언론기관은 시민의 인권의식 함양과 인권 실행의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책무를 갖는다.

③ 각 민간단체는 회원과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참여하며, 인권시책의 실행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④ 각 사업자는 사업장 내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대처할 수 있다. 이때 사업자는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및 인권보호기관 같은 조직을 말한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권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 산업, 토지, 도로 같은 시 전역의 기간 설비의 인권 관련 사항의 현황과 전망
2. 인권 관련 사항의 현황과 인권침해 요소의 현황 및 개선 방안
3.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4.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한 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인권취약 집단에 대한 특별한 인권보호와 증진 계획
5.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자원 조달 방법
6.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제3장 인권증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인권증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2. 인권 단체에서 추천한 인권 활동 경력자
3. 학계와 교육계의 추천을 받은 인권 관련 연구자와 교육자
4. 검찰, 경찰이나 인권보호시설에서 추천한 인권 보호 업무 관련자
5. 그 밖에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10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및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4조(위원회) ① 위원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보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결과와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5조 (분과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인권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7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기관의 직원이나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에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진주시 위원회실비보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인권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 증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경상남도 인권증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취약 집단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도민”이란 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도내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인권보호기관 등 도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 등) ① 도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5조(기관 및 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교육기관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함과 아울러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언론기관이 도민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인권 존중의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민간단체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권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2.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진 계획
3. 공공시설의 인권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4.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2항제2호의 인권약자 인권 보호·증진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행정부지사,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도의회의원
2. 인권약자 권익증진 관련 단체대표 및 대학교수
3.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2회 정기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관련 기관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29, 2005.8.4, 2007.5.17, 2009.2.3>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20조(국가기관과의 협의) ① 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전북지역 인권조례 제정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정 영 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지역별 인권 조례 제정의 필요성

세계인권선언이 올해로 62주년을 맞고 있다. 그 동안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은 유엔 등 공식적인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비정부기구 중심으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커지면서 각 나라의 인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자국의 문제로만 머무르지 않게 되었다. 국제 사회는 전통적인 내정 불간섭 원칙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에 간섭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인권은 국제 사회의 주요한 규칙이 되고 기준이 되었다. 이른바 인권 레짐(human rights regime)이 형성되어 인권 실행에 대한 국제 기준이 국제 사회 질서의 주요 틀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특히 2006년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발족 및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HCHR)의 확대 개편 등을 필두로 하여 국제 사회에서 인권의 영역은 기존의 안보나 발전의 영역의 중요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21세기의 화두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자국의 영토 안에서 국민들에게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국제 사회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는가 여부는 그 나라 인권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곧, 국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은 국정 지표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고 지키는 것에 따라 그 나라 인권 발전의 수준이 결정된다.

국제사회의 인권 동향과 비교해 볼 때, 최근의 우리나라 인권 현실과 정부 정책의 동향을 보면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듯한 답답한 측면을 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인권 관련 대응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시민사회에서 조차 인권신장을 위한 행보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제는 정부의 영향을 받아 독립성을 상실한 듯이 행동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국가차원의 제도나 기구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행기구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움직임이 절박하다. 바로 그러한 절박함이 오늘의 이 자리를 만든 것이라 생각한다.

인권조례 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제도 마련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각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인권의 기준을 세울지 고민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각 지역에서 만드는 인권조례는 인권관련법의 실패를 보완하며 지역 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중요한 통로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인권현실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역할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지역 책임기관의 의무와 책임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우리의 실정을 진단해 보면, 인권 관련법의 '실패'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 차원의 인권 조례 제정 단계는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³⁸⁾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각지에

38) 우리나라의 사정과 비교해 볼 때,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는 상당히 다양하다. 예를 들면, ① 부락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례(1985년 오오사카부 조례)에서 시작하여 ② 인권 존중의 사회 만들기 조례(1996년 鳥取현 조례), ③ 인권 옹호 및 인권구제 절차 조례(2005년 鳥取현 조례), ④ 여성평등실현을 위한 조례(남녀공동참여추진조례, 2000년 4월 도쿄도 조례), ⑤ 아동인권에 관한 조례(2000년 카와사키시 조례) ⑥ 장애인 인권조례

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조례제정운동’은 그 성공 여부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물론 제도와 법의 도입이 곧바로 우리 사회에서 인권 실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법과 제도의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면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인권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도요 통로로서 충분한 자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인권조례 제정 논의는 가장 큰 의의를 가진다.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책무는 국가적 책무일 뿐 아니라 지역적 책무이다. 우리가 접하는 일상의 인권현실 개선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행되는 현장인 지역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책임을 높일 때 가능해 질 수 있다. 인권 조례 제정 운동이 가속을 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지역에서부터 실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 움직임 가운데 하나가 인권관련 조례제정을 통한 지역공동체 차원의 인권보장의 제도화 및 구체화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어렵게 시작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및 국가사무의 지방사무로의 이관 현상 등과 더불어 점차 가속화 될 것이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인권감수성이 높은 반면, 인권 조례 제정 과정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연말부터 시작된 인권조례제정 작업은 현재까지 2차례의 토론회를 바탕으로 도의회를 통한 제정 작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눈앞에 닥친 지방선거로 인해 주민들의 관심 저조, 그리고 도의회 의원들의 인권조례에 대한 의식과 인권감수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인권의 보로로서 작용할 인권조례의 작업이 여기서 멈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권조례 제정추진 당사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그 동안의 전북지역의 인권조례 제정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전북 지역 인권 조례 내용 및 제정 추진 경과

1) 전북 인권조례 제정 추진 경과

- 2009년 12월 10일 2009년 전북지역 인권평가와 인권조례 모색을 위한 1차 토론회 개최
 - 장소 :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
 - 사회 : 정태석 교수(전북대 사회교육학부)
 - 발제1: 2009년 전북지역 인권평가(황규표 변호사, 민변 전북지부장)
 - 발제2: 인권조례의 의미와 법적 근거(정영선 교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3: 타지역 인권조례 분석과 전북지역 인권조례 제정의 방향(전준형, 전북인권센터 소장)
 - 토론1: 전북지역 장애인관련 조례분석(강현석, 전북시설인권연대 대표)
 - 토론2: 조례제정과 시민사회의 역할(염경형, 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실장)
 - 토론3: 조례운동과 의회의 역할(김성주, 도의회 의원)

- 2010년 1월 인권조례 추진 전북본부 결성
 - 공동위원장 : 송년홍 신부(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사제단 총무), 정영선 교수(전북대 법학전

(2007년 치바현 조례), ⑦ 다문화 관련 조례(미야기현 조례)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임재홍, “외국의 인권정책과 조례 -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인권조례제정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2009.10.22, p.18-20 참조.

- 문대학원), 황규표 변호사(민변전북지부장), 조용희 목사(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 집행위원장 : 전준형 소장(전북인권교육센터)

- 2010년 2월 5일 전북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2차 토론회 개최
 - 장소 :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
 - 사회 : 정영선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권조례 추진 공동위원장)
 - 발제1: 전북인권조례(안) 발표 (김승환 교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2: 광주시 인권조례의 내용과 과제(조상균 교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1: 시민사회의 전북인권조례안 입장(최두현 국장, 전북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장)
 - 토론2: 전라북도 의회의 전북인권조례안 입장(김성주 의원, 전북 도의회)
- 도의원 발의형태로 김윤덕 민주당 도의원 대표 발의 결정
 - 2010년 2월25일 전북도청 행정기획관과 1차 미팅에서 조례안 대폭 수정
 - 2010년 3월16일 전북도청 행정기획관 2차 미팅에서 경남도인권조례안 수준으로 내용 요구)
 - 2010년 3월29일 전북도청 행정기획관 3차 미팅에서 전북인권조례 최종 수정안 확정
 - 2010년 4월6일 전북도 임시의회에서 김윤덕 도의원 발의
 - 2010년 4월15일 도의회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 결정
 도의회 상임위 행자위 의원 7인 중 2인 찬성, 4인 반대, 1인 연기를 주장하여 일단 6월 임시의회로 연기하였으나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임.
 - 일단 6월 마지막 임시회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차기 도의회로 넘어감.

2) 전북 인권조례 주요 내용

발의된 전북 인권조례에 담은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명기>

- (목적) 전라북도 도민의 인권보호와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공동체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도록 함.
- (정의) “인권” “인권정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용어 규정
- (기본원칙) 인권 최대한 보장의 원칙, 인권 보편성 유지의 원칙, 인권 친화적 정책의 원칙, 도민 참여형 인권실현의 원칙, 인권 비용 공적 부담의 원칙 등

<도지사의 책무 및 인권옹호기본계획의 수립>

-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인권 보호와 증진, 침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형사사법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 등.
- (인권옹호기본계획의 수립) - 도지사가 수립
 - 인권 관련 행정의 현황, 인권침해 유발요소의 현황 및 그 개선방안

-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시책과 사업의 계획
-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새터민,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인권약자의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계획
- 인권 비용의 재원 파악과 그 조달방안
-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기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권옹호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 (인권옹호위원회의 설치) “전라북도인권옹호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는 13인의 위원으로 구성, 3년 임기, 연임 가능
 -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 인권단체에서 5년 이상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자
 - 학계 및 교육계에서 5년 이상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자
 -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그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를 도지사가 임명
- (위원회의 업무)
 - 헌법과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보장하는 인권에 관한 사항
 - 인권보장과 인권옹호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따른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기타 인권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가 그 업무로 선정한 사항
-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행정지원관실(또는 인권센터의) 업무담당
- (실비보상, 운영비)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 등 실비를 지급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인권센터의 설치)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관련 사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인권센터를 둬
 - 센터장 1인과 필요한 직원
 - 센터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활동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
- (인권센터의 업무)
 -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및 상담 활동

- 인권관련 교육 및 홍보
- 인권보호 관련 자료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
- 기타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 <인권교육의 실시>

- 각급 공공기관의 장은 년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재정보조 등을 받는 복지시설 및 인권 관련 기관은 해당 기관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년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

○ (실태조사 실시 및 보고서 발간) 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과 인권보호와 증진활동을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보고서를 발간

3. 전북 인권조례 제정 추진의 부진 이유

그동안 전북지역에서 인권조례 제정 운동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에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주체인 전라북도 지방 의회가 앞장서서 나서지 않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조례 제정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지방 의회이다. 그러나 지방 의회의 특성상 모법인 상위법의 존재 여부가 조례 제정의 기초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조례 제정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이는 법령에 대한 소극적 해석의 결과이며, '지방자치' 본래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중앙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안일함의 발로이다. 즉 지방의회는 헌법에 의해 자치입법권이 인정되고 있고, 이 자치입법권 하에서 행정각부의 명령 등과는 달리 개별적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고, 개개 법률로부터 독립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거나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라북도 도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 의원들의 인권의식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거나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빈약한 인권의식이 조례제정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도의회 의원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 수준은 상당히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점도 넘어야 할 산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둘째, 전라북도 집행부의 소극적 태도이다. 민주당 일색의 정치지형인 호남지역의 공통된 현상일 수도 있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특히 민주당이 '여당'인 지역이다. 이러한 정치상황에서 민주당 소속의 도지사나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들 역시 민감한 지역 인권 현안에 대해서 '무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느긋하게 '여유'를 보이고 있는 현직 도지사나 민주당 예비후보자의 정책공약에 인권조례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인다. 물론 인권조례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소수 진보 야당 후보자가 있으나, 도민의 지지가 워낙 미약하여 당선 가능성이 없다 보니 이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셋째, 전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의 관심 부족과 추진 운동 역량이 미비한 점도 또한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민간 사회에서 조례 제정 운동의 중요한 중심축을 이루어야 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인권조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하다. 시민들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위해 입법 청원 운동을 벌이고 이를 계속 감시해야 하는 상당수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권 운동의 일환으로서 인권조례 제정운동이 시민사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인권관련 조례 제정이 지방의회의원이나 지자체의 전문행정관료에 의해서만 주도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의제나 입법과제의 생성은 근본적으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차별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 당

사자들의 세력화를 통한 이슈화,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인권운동단체나 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해 촉발되기 때문이다.³⁹⁾

넷째, 전북지역 시민사회 내에서 인권교육의 부실로 인한 인권감수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도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 인권조례 제정 운동이 소극적인 이유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부족한 인권감수성 문제를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인권감수성은 어릴 때부터의 인권교육과 홍보에 대한 노출 정도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측면이 있다. 지방의회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이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때, 이를 채찍질하고 견인할 만한 시민사회의 역량과 인권교육 기회가 부족한 점도 인권조례 제정운동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본다.

다섯째, 중앙언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역 언론의 여론 형성 기능이다. 언론의 기능 중에 하나로 일정한 사안에 대한 여론 형성과 그에 대한 홍보 기능을 꼽는다면, 상대적으로 지역 사안에 관심이 적은 중앙 언론에 의해 지역의 주요 현안은 묻혀 버리거나 중앙언론이 지면에 실는 특정 사안에 의해 묻혀가기 마련이다. 물론 지역신문 구독률이 5%도 안 되는 전북 지역 언론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역 언론에 묻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전혀 이 문제를 짚지 않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사정과 인권 현안 문제는 지역 언론이 일정 부분 담당하여야 할 책무의 범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4. 전북 지역 조례제정운동의 과제

전북 지역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성원들이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지와 방안을 실천하도록 제도화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지역 사회에서 그러한 의지와 정책을 제도화하는 제일 효과적인 방안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례의 내용에는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여러 방안, 예를 들면, 인권기본정책 수립, 인권 전담 기구 설치, 인권 교육 및 홍보 실시, 인권 문화 확산 방안 실행, 인권 관련 정보 제공, 인권 침해 피해자 구제 프로그램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권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인권을 전북 지역 사회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중심의 정책 수립과 수행 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인권조례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 구성원들의 의지를 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삼아 조례를 어떤 식으로 제정할 것인가 하는 방법이다.

첫째,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보편적 인권 기준 제시 및 지역의 특성에 맞춘 미시적 접근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걸맞은 대화와 조정이 필요하다. 인권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추어 어떻게 인권의 기준을 세울지 고민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한 고민과 노력 없이는 조례를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조례를 제정한다하더라도 그것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둘째,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풀뿌리 인권운동으로서 인권조례를 접근해야 한다. 인권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두텁고 높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참여는 물론 일반 시민사회와의 공감대형성을 통한 지역운동으로서 접근이 필요하다. 조례 제정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저변의 힘은 역시 시민사회로부터 나온다. 제정되는 인권관련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고, 절차에 있어서 민주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의 보장이

39) 지방의회가 정하는 조례(지방자치법 제22조)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규칙(지방자치법 제23조)이 있는데 법안발의 과정에서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참여가 중요하다. 지자체 자체규범인 조례와 규칙의 관계는 중앙정부에서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계와 같다.

절대적이다. 인권조례는 입안과 입법화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회적 논의·운동의 결과물로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자치단체 및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생활 속의 인권인식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며, 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 및 의회 구성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자가 참여하면서 역할의 분장이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전라북도 지방정부 및 도의회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도면밀하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이루어 내야 한다. 전북지역 인권 조례 제정 추진 과정을 경험하면서 재확인한 것은 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인권 조례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담감은 앞서 거론한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지만,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인권조례안에 담겨있는 내용과 그 실효성에 대한 정보의 부족 때문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부담감이 덜어낼 수 있도록 인권조례 제정추진 본부가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 궁극적으로 인권조례의 제정과 그 실행은 주민 전체의 인권 보호와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 민주화에도 기여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발전과 지역 민주화를 위하여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만드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수적인 과정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별첨> 전라북도 인권조례(안) (2010.3.15.)

1. 주요내용

- 가. 인권의 정의와 기본원칙
- 나. 도지사, 도민의 인권책무
- 다. 인권기본계획의 수립
- 라. 인권옹호위원회, 인권센터
- 마. 인권교육, 인권보고서

2.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헌법, 지방자치법 제22조,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인권관련 국제관습법
- 나. 예산상의 조치 : 검토 요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도민의 인권보호와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공동체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인권정책”이라 함은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조례 등의 연구와 계획의 수립과 집행,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 등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시책·방침 등을 말한다.
- 3. “공공기관”이라 함은 전라북도와 시·군 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권보호와 증진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 1. 인권 최대한 보장의 원칙
- 2. 인권 보편성 유지의 원칙
- 3. 인권 친화적 정책의 원칙
- 4. 도민 참여형 인권실현의 원칙
- 5. 인권 비용 공적 부담의 원칙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인권 보호와 증진, 침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형사사법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기본적 인권)

- ① 모든 도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도민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도의 인권정책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모든 도민은 인권 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그 피해의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권리는 도민이 아니지만 도의 행정구역 내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된다.

제6조(인권옹호기본계획의 수립)

- ① 도지사는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권옹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관련 행정의 현황, 인권침해 유발요소의 현황 및 그 개선방안
 2.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시책과 사업의 계획
 3.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새터민,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인권약자의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계획
 5. 인권 비용의 자원 파악과 그 조달방안
 6.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기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전라북도 인권옹호위원회

제7조(인권옹호위원회의 설치) 이 조례가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심의하고, 도지사의 인권 정책에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인권옹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는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2. 인권단체에서 5년 이상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자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5년 이상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자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그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를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9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헌법과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보장하는 인권에 관한 사항
2. 인권보장과 인권옹호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따른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4.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6 기타 인권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가 그 업무로 선정한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위원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도지사는 위원에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위원회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
3. 위원이 위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힐 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분과의 설치·운영) ①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다.

②분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년 4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5조(출석·발언의 요구, 공청회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 시, 군, 기타 공공기관 등의 구성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행정지원관실(또는 인권센터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7조(실비보상, 운영비) ①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전라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도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준수) 공무원 및 이 조례에 따른 관계자는 인권증진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인권센터의 설치) ①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관련 사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인권센터를 둔다.

②인권센터에 센터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센터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활동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및 상담 활동
2. 인권관련 교육 및 홍보
3. 인권보호 관련 자료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
4. 기타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④ 인권센터장 및 센터 직원의 구체적인 자격기준, 그 밖에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인권센터의 재정)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인권교육 실시) ①도지사는 공무원 기타 공공기관의 구성원 등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가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1. 각급 공공기관의 장은 년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재정보조 등을 받는 복지시설 및 인권 관련 기관은 해당 기관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년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제22조 (실태조사 실시 및 보고서 발간) 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과 인권보호와 증진활동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의 시기) 이 조례 제7조가 규정하는 전라북도 인권옹호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부터 6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의 제정경과와 쟁점 그리고 전망

오 동 석*

I. 추진 경과¹⁾

1. 배경

- 2009.05.28(목)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 수립

- 2009.07.30(목)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9명의 위원 위촉 및 제1차 협의회 실시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위원장: 광노현 교수, 부위원장 : 김인교 교장); 광주인권조례안과 일본 가와사키현 조례의 선행학습 계획 수립
- 2009.08.04(화) 자문위원회 제2차 협의회 실시
 - 인권 조례 관련 연수; 자문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인권조례안을 성안하기로 함; 자문위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4명 추가로 위촉하기로 함
- 2009.08.20(목) 자문위원회 제3차 협의회 실시
 - 자문위원 4명 추가 위촉(오동석 아주대 교수 외 3명); 조례 제정 실무를 담당할 기획소위원회 구성(김영기, 박진, 오동석, 서미향)
- 2009.08.27(목) 자문위원회 제4차 협의회 실시
 - 조례안기초소위원회 구성(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소위원회 담당); 위탁연구과제 공모 제안서를 검토하고 2개월 연구과제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 자문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자문위원회 연찬회 실시 계획 협의

- 2009.08.26(수) 2009 위탁 정책연구과제 연구계획 공모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조례안 개발 연구’ 주제로 계약일로부터 2개월

- 2009.09.10(목)~09.11(금) 자문위원회 연찬회 및 제5차 협의회 실시
 -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 위촉;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대회 계획 논의; 사전협의회 계획 논의; 자문위원회 홈페이지 운영(<http://human.kerinet.re.kr>)
 - 인권전문가 초청 연수 실시
 - 학생 인권의 국제적 흐름/ 류은숙(인권활동가)
 - 학생 인권의 현실/ 공현(청소년인권네트워크)
 - 일본지자체의 아동조례 제정 현황/ 김형욱(전 와세다대 연구원)
 - 경남인권조례 제정 현황/ 고영남(인제대 교수)
 - 학생 인권과 교원에 대한 쟁점 토론/ 배경내(인권활동가, 자문위원)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토론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2010.3.7,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대강당), 3-7을 정리하고, 추후 일정을 보완한 것임.

- 2009.09.25(금)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대회(교육감) 및 제6차 협의회 실시
 - 장소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대강당 및 활동실
 - 참석자 : 경기도교육관계자 관리자, 교사, 전문직, 학생, 교원단체 등 300여명
 - 추진대회 개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활동사항 보고; 인권영화 상영; 경기교육가족의 영상 의견; 조례 제정 관련 현장 의견 수렴; 조례 제정 관련 설문지 작성

- 2009.09.28(월) 위탁연구용역 계약 체결(성공회대학교 평화인권센터)

- 2009.10.6(화)~10.20(화) : 찾아가는 생활지도 및 봉사활동 연수 시 중·고등학교 교감 및 학교운영위원장 대상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의에 관한 연수 실시

- 2009.10.16(금) : 자문위원회 제7차 협의회 실시
 - 정책연구팀 진행 사항 점검; 조례 제정 추진대회 설문결과 분석;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협의; 학생인권조례 작품 공모전 관련 계획 협의; 학생참여기획단을 500명으로 확대하여 모집·운영

- 2009.10.23(금) 인권조례 관련 10문 10답 완성하여 연수 책자에 수록

- 2009.10.28(수)~11.3(화) 학생인권조례제정 사전협의회 개최
 - 경기도 지역을 9개 권역(용인, 의정부, 고양, 수원, 안산, 안양·과천, 성남, 구리·남양주, 부천)으로 나누어 자문위원 4명을 한 팀으로 구성, 현장 방문
 - 권역별 학생, 학부모, 교사, 관리자 등 약 13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인권조례 제정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팀별로 자문위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설문조사를 실시함
 - 신종플루로 인하여 성남, 구리·남양주, 부천의 3개 지역은 실시하지 못함

- 2009.10.26(월)~11.05(목)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관련 학생 작품 공모전 실시
 - 영상물, 글짓기, 미술작품 등 3개 영역별로 초·중·고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각 영역별 우수 작품 교육감상 시상; 수상작 발표는 12월 10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학생인권조례제정 홈페이지에 탑재

- 2009.11.13(금)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제8차 협의회 개최
 - 학생인권조례 관련 작품 공모전 진행 상황 점검; 학생참여기획단 모집 관련(당시 342명 참가 신청);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학생들이 운영하되 자문위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운영

- 2009.11.20(금)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중간발표회 및 일본 가와사키 인권조례 제정팀과의 협의회 개최

- 2009.11.26(목) : 시민단체 및 특수집단과의 사전협의회 실시
 - 수원하이텍고등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 대안학교 교원, 특수학교 및 학부모,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 활동가와 4그룹으로 나누어서 사전협의회 실시

- 2009.12.06(일) 자문위원회 제9차 협의회 실시
 - 조례 초안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수렴(축조심의)
- 2009.12.13(일) 자문위원회 제10차 협의회 실시

- 조례 초안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수렴(축조심의); 기자회견 개최 및 홍보계획 협의; 향후 일정 협의

□ 2009.12.17(목)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회

- 경과 보고와 향후 계획; 조례 초안의 개요와 골자 발표; 초안 작성의 배경과 근거

□ 2010.01.11(월) 자문위원회 제11차 협의회 실시

- 조례초안에 대한 15인 전문가 의견 검토; 종합공청회 검토 및 계획; 향후 일정 협의

□ 제1차 공청회(경기 남부)

- 2010.01.19(화) 14:00~17:00 경기도교육청 제1회의실

□ 제2차 공청회(학생참여기획단 및 학생 공청회)

- 2010.01.24(일) 15:00~18:00 경기도교육청 제1회의실

□ 제3차 공청회(경기 북부)

- 2010.01.25(월) 14:00~17:00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대회의실

□ 2010.01.28(목) 자문위원회 제13차 협의회 실시

- 3차례 공청회 실시에 대한 평가; 6대 쟁점사항(체벌, 두발, 보충학습, 사상·양심, 집회, 휴대폰) 집중 논의; 결과보고서 제출일정 및 구성 협의

- 제5절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A안] 제16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사상 및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B안]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A안]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교육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⑤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B안]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

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2010.02.10(수) 14:00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최종안 제출
 - 자문위원회 경기도교육청에 최종안 제출; 초안 발표 후 의견 수렴과정 설명; 초안에 대한 전문가 및 공청회 의견 발표; 기자단 질의 및 응답
- 2010.03.07 경기도교육청 주최 토론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최
- 2010.03.22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
 - 교육청 내부 축조심의 및 법제위원회 심의
- 2010.06.07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제출 예정, 향후 경기도의회 상정·심의·의결 후 공포 수순

II.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의 구조와 쟁점사항²⁾

1. 들어가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했던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2009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의 초안 발표 이후 격렬한 반대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헌법연구자의 눈으로 보면, 학생인권조례안에 반대하는 의견 중 대부분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 때문이거나 헌법규범 또는 법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다.

2. 학생의 인권에 대한 헌법적 접근

가. 학생의 기본권주체성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하여 학생이 인권의 주체이냐는 물음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대놓고 그것을 부정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면, 2010년 2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1회 경기교육포럼에서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위헌적이고 초헌법적이란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³⁾ “인권조례안은 배우는 지위에 있는 학생을 사회계약설에서나 논의되는 자연상태의 자연인이나 이상적인 인격체로 전제하고 있다”며 “도덕권과 자연 상태를 강조하면 조례의 지위가 아니라 법률을 넘어서 초법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⁴⁾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2) 아래 내용은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헌법학적 접근,”(〈2010년 한국아동권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아동의 참여, 주최: 한국아동권리학회/ 국가인권위원회, 2010.5.7, 49-74)를 요약정리한 것임. 따라서 그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에 입각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자문위원회의 공식 견해와는 차이가 있음(자문위원회 공식 견해를 전거를 따로이 밝히지 않고 사용한 부분이 있음).

3) 발표문 또는 자료집을 구하지 못하여 신문에 의존하여 논의를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혹시 잘못 인용되었다면 당사자의 양해를 바랄 뿐이다. 또한 그와 관련한 논의 내용은 오동석,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헌법적 의미,” 주최: 경기도교육청, <토론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2010.3.7, 26-7에서도 다룬 적이 있다.

4) 세계일보 2010.3.3, <<http://www.segye.com/Articles/NEWS/WHOLECOUNTRY/Article.asp?aid=20100302005112&subctg1=01&subctg2=>>, 검색일: 2010.3.3(아래 “세계일보 2010.3.3”로 줄임).

그런데 헌법교과서들은 한목소리로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의 원리는 윤리적·도덕적 차원에서는 윤리적·도덕적 규범을 의미하지만, 법철학적 차원에서는 초국가적 자연법원리를 의미하며, 또한 현행헌법처럼 실정헌법에 수용될 경우에는 그것이 법적 가치화하여 범규범성까지 가지게 된다.”⁵⁾

“그러나 인격의 주체성은 언제나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추상적 내지 잠재적인 것이면 족하다.”⁶⁾ “자연인은 인간일반에게 고유한 가치인 잠재적 인격주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면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ㄱ) 정신이상자나 기형아도 본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 심지어는 “(ㄴ) 태아도 인간으로서의 실체를 이미 가지고 있고 또 생성과정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⁷⁾고 주장하기도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규범의 필수적인 전제이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의제”⁸⁾이다.⁹⁾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존엄을 “기본권보장의 핵”,¹⁰⁾ “모든 기본권보장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¹¹⁾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

나. 재학관계의 ‘특별권력관계’(?)

학생이 인권의 주체임을 긍정하는 경우에도 교육을 위하여 학교에서는 학생에 대하여 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것이 학교에서의 규율에 근거하는 한에서는 조례가 그보다 상위의 법규범인 점에서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 기대할 것은 이른바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학생의 재학관계를 특별권력관계로 관념한 적이 있었으며, 그 잔영이 남아 있다. 그것은 19세기 후반 독일의 권위주의적인 비스마르크헌법체제 공법이론에서 유래한다. 그 특징은 일반적인 국가-시민관계와 달리 특별권력관계에서는 기본권이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구체적 법률의 근거가 없이 포괄적인 지배관계가 성립하며, 따라서 국가의 침해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다룰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서도 당연히 법치주의가 적용되며, 다만 구체적 행정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가중제한이 가능할 뿐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의 한계가 적용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학교제도에서 진급·유급 여부 또는 새로운 교육과목(성교육)의 도입, 교육내용과 목표, 학교조직의 기본구조(예컨대 학교의 종류, 교육과정, 교사와 부모의 공동결정 등) 및 학생의 법적 지위(예컨대 입학, 퇴학, 시험, 진급), 징계처분 등 중요한 결정은 입법자가 스스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행정청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행정청 또는 학교가 학생의 인권과 관련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한 포괄적인 또는 특별한 권한을 가져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학교와 학생의 관계는 “인격주체 상호간의 관계”이다. 학생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법률행위의 제약성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즉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개별적 법률의 구체적 근거 없이 학교가 제한할 수는 없다. 학생은 일방적으로 훈육되고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다. 학생도 당연히 그리고 엄연히 기본적 인권의 주체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시민의 한 사람인 학생이 학교에서 자유·자율·참여·평등·비차별·안전·복지 등의 모든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375.

6) 권영성, 앞의 책, 377.

7) 권영성, 앞의 책, 380. 태아에게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는 견해로는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8, 391.

8)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9, 566.

9)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7, 515.

10) 헌재 1992.10.1. 선고 91헌마31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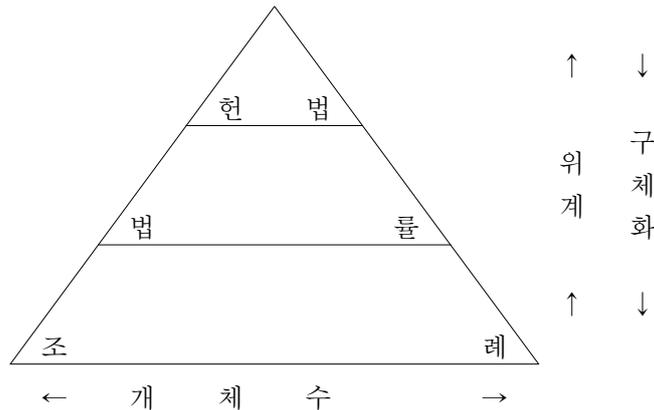
11) 헌재 1990.9.10. 선고 89헌마82 결정.

어야 한다. 법률적 위임이나 근거 없이 조례로서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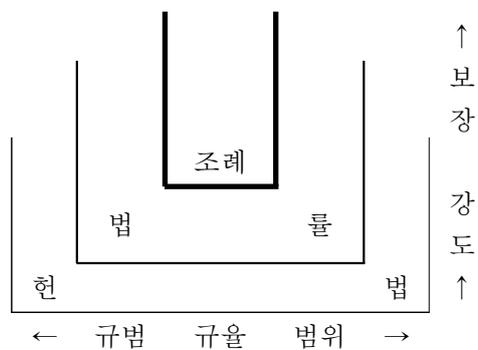
3. 학생인권조례의 헌법적 위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인권조례의 관계를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 법규범 형식에 따른 위계도



<그림 2> 법규범 형식에 따른 인권보장의 강도



4.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교권 침해의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이때 교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구분하여 논하여야 한다.

가. 교사의 인권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교사의 인권침해는 국가 또는 교육행정청 또는 학교관리자에 의한 경우가 전형적이다. 교사의 인권은 국가 또는 교육감 또는 학교관리자로부터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학생으로부터 침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주 예외

적인 경우인데, 이 경우도 민·형사상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다.¹²⁾

나, 교사의 교육권한(‘교육의 자유’)

헌법상 교사의 ‘교육의 자유’ 또는 교육권이 보장되는가, 보장된다면 그 헌법적 근거는 무엇인가가 문제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으로부터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¹³⁾ 그러나 다른 한편 직무권한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학교 교사와 그 집단은 공교육조직 내에서 자치적 권한으로서 독립한 ‘교육권한’을 보장받고 있다고 해석되며,¹⁴⁾ 이 범위에서의 교육권은 그 자체가 교사의 인권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보장의 일환을 이루는 교육인권적 가치를 가지는 제도이다.¹⁵⁾ 그것은 헌법과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학부모로부터 국가에 의해 학교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¹⁶⁾ 교사 개인이 가지는 자치권한으로서는 수업내용편성권, 교과서사용재량권 및 보조교재선정권, 교육평가권, 생활지도권, 징계권 등이 있다.¹⁷⁾

교사의 교육권한은 교사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인권과 달리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가지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직무상 권한이다. 다만 그 직무상 권한은 헌법상 자주성 및 전문성 원칙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헌법적 효력으로써 보장되어야 한다.¹⁸⁾ 헌법재판소도 학교교육에서 교사가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명명하고,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한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요컨대 그것은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사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1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다. 그 헌법적 의미는 학생의 수락권의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서 학생의 수락권이 더욱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¹⁹⁾

만약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 보장과 무관하게 교사의 전문성에 근거하는 직무상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조례는 위헌·위법의 것으로서 무효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때 교사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조례에 대한 것이어서 학생 또는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교사의 인권이나 권리 또는 직무상 권한에 대한 법적 침해는 대개 지휘감독권을 가진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 학교의 자율권한

학생인권에 대하여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면 될 것을 굳이 조례로 정할 까닭이 있느냐’ 또는 ‘학교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 아니냐’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나는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으로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자율성 또한 헌법의 같은 조항이 명시한 “대학의 자율성” 정도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보장범위 내에서 보장될 뿐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대해서조차 그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무효

12) 학생에게는 마찬가지로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교사에 의한 학생 인권의 침해는 대개 교사의 직무권한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의 직무권한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어서 단순히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13) 신현직, “교육기본권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 1990, 180.

14) 독일에서는 교사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귀속되는 자유재량권으로 이해한다. Hennecke, F., “Versuche einer juristischen Begründung von pädagogische Freiheit,” RdIB 1986, 234; 한국공법학회, 교육제도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원리의 비교법적 검토, 헌법재판소, 2003, 71 재인용.

15) 兼子仁, 教育法, 有斐閣, 1987, 273-4.

16) 한국공법학회, 앞의 책, 2003, 77.

17) 신현직, 앞의 글, 159.

18) 같은 의견: 한국공법학회, 앞의 책, 71.

19) 헌재 1992.11.12. 선고 89헌마88 결정, 헌관집 4권, 739[756].

임을 선언하는 마당에 학교의 규칙 또는 관행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그동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 다툼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은 인권의식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며, 전근대적인 특별권력관계론의 잔재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며,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학생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기에는 ‘스승과 제자’라는 전통적 윤리의식 또한 작용했을 것이다.

라.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의 ‘연대성’

‘스승과 제자’ 관계에 내재한 존경과 친밀성은 때로는 그 전근대적 관념성 때문에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의 보장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이미 교사의 경우 당연히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향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보장정도가 미약하다. 또한 초·중·고등학생이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또 미성숙하다는 ‘논리’로 교사는 과도하게 정치적 활동을 제약받고 있다. 특별권력관계에 더 잡은 전근대적 법의식은 학생은 물론 교사의 인권까지 축감하는 작용D학생고 있별권력관다. 학교에서 인권 보장은 학생과 교사를 가리지 않고 절실하게 요구특별권 교사는요청 ‘논리’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의 보장 문제가 교사의 교권과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것처럼 논의된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것이었다.

5.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의 규범구조와 쟁점사항

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의 규범구조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구조는 크게 총칙, 학생인권 규정, 인권 보장 및 구제 등의 세 부분이며, 그것은 각각 ‘제1장 총칙’, ‘제2장 학생의 인권’,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및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다.²⁰⁾

(1) 총칙

총칙은 조례를 제정한 목적과 개념 정의 그리고 인권 보장에 대한 일반원칙 규정 등으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도 일반원칙 규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설령 조례에 열거되지 않은 인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되며 그 또한 보장되는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흔히 조례에 열거된 인권만이 보장된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도 제37조 제1항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²¹⁾

다른 하나는 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한 규정이다. 즉 모든 인권이 무제한의 절대적 권리가 아닌 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도 인권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의 제한까지 허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권의 제한에 대하여 다시 한계를 지우는 규정이 필요하다. 헌법과 마찬가지로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되, 학교에서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학생의 참여 아래 제·개정되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하되 교육의 목적과 제한되는 인권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을 것을 요청한다.

20)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은 2010년 3월 22일 입법예고안에 따른다. 경기도교육청, <http://www.goe.go.kr/?menugrp=030101&master=bbs&act=view&master_sid=37&sid=60&Page=1&SearchColumn=&SearchValue=&SearchSchool=&SearchRecruit=>, 검색일: 2010.5.3.

21) 이에 대하여는 권혜령,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에 관한 연구: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9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대, 2008.

(2) 학생의 인권 목록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적인 부분은 학생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부분이다. 그 내용은 인권의 범위가 넓은 만큼 다양할 수밖에 없고, 조례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모든 인권을 다 망라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추상적인 규정이 때로는 구체적인 규정이 또 때로는 정책적 규정이나 노력의무 조항이 조례에 담겨지게 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에서 학생 인권의 구체화는 ① 학생 인권의 확인 및 학생 인권의 구체화, ② 학교에 대한 금지의무 부여, ③ 학교 및 교육감의 노력의무 부과 등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헌법상 기본권을 학생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안 제12조 제1항)는 조항이 그것이다. 이것의 헌법적 근거조항은 사생활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이다. 나는 법률의 구체적 근거 없이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복 착용이나 피머와 염색 등을 규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가능한 것은 어디까지나 교사의 일정한 조언 내지 권유 정도일 것이다. 다만 학생 스스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정도 기준을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학교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구체적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은 학교에 대하여 두발의 길이를 규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안 제12조 제2항). 왜냐하면 두발에 대하여 길이로써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과 무관하며, 최소한 그것을 정하는 문제만큼은 학생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학생 인권의 최소한의 보장내용이며 인권의 수비범위로서 학교에 대하여 구체적 금지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나는 헌법규범의 해석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적어도 경기도 내에서 이 조항은 학교의 자율권에 대한 한계를 의미한다.

마지막 차원의 것은 학교 또는 교육감에 대하여 적절한 노력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예컨대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안 제22조 제1항)는 규정이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환경권을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를 조례로써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때로는 이것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허한 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는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 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22조 제2항)고 그 구체적 예시를 들어가며 일정한 내용의 시설을 갖출 의무를 ‘법적으로는 느슨하게’ 부과한 것이다.

(3) 학생 인권의 보장 및 구제 제도

모든 권리는 선언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²²⁾ 그것은 권리의 실효성(實效性)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재판을 통한 보장일 것이다. 또한 조례인 경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별도로 둘 수도 있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보장은 무엇보다 인권에 대한 의식과 이해를 고양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이 인권교육 그리고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조사 및 시정권고 등의 수단을 택한 것은 그 때문이다. 실제 많은 나라에서 학생의 인권에 대한 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²³⁾

이에 대하여 “인권조례안은 법치주의를 훼손할 가능성을 내포한다”며 “인권조례안 제4장에서 볼 수

22) 인권의 ‘법을 통한 일반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견해로는 이상돈,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6, vii 머리말.

23)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조례안 개발연구*, 경기도교육청, 2009.11.30, 197-199.

있듯이 학생의 권리는 마치 초법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²⁴⁾ 그런데 이러한 비판은 수증하기 어렵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은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생인권옹호관은 직접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안 제42조 참조) 절대 초법적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되 일정 조치에 대한 권고를 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은 인권과 타율적 강제는 어울리지 않으며 또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것이 인권을 보장하는 최선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²⁵⁾

사실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리 강력하게 처벌해도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여 스스로 책임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듯이 끊임없이 얘기를 듣고 토론하며 권고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 가는 것이 더디지만 가장 확실하게 인권조례를 실현하는 일이다. 인권옹호관의 본질적인 역할은 그 촉진자 구실을 하는 것이다.

나.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의 쟁점사항

학생의 인권은 다양한 유형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을 모두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일반적 자유권, 교육 관련 권리, 자치와 참여의 권리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일반적 자유권

(가) 체벌 문제

일반적 자유권에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포함될 수 있다. 먼저 체벌에 관한 것이다. 체벌은 주로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인데, 엎드려뺨쳐, 운동장 돌기, 팔 들고 서 있기 등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도 학생의 신체상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면 체벌의 범주에 해당한다.²⁶⁾

폭력적 부모 아래에서 자라난 사람이 폭력적 부모가 되는 악순환의 문제는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학교에서의 체벌이 우리 사회의 폭력을 재생산 기제 중 하나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특히 남성의 경우 군대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폭력의 재생산 기제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체벌행위에 대한 형법적 판단 쟁점”에 대하여 “그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다.²⁷⁾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 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체벌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범적 당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체벌을 가한 교사를 형사 처벌할 수 없는, “용인될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체벌로 쉽게 학생들을 통제하려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며, “또 벌받을 만한 행동이 반드시 맞을 것은 아니며, 진정한 벌이나 지도란 학생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심각한 인권침해를 불러올 수 있는 체벌보다” “대안적 훈육방법”을 “개발하

24) 세계일보 2010.3.3.

25)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최종안 해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토론회, 주최: 경기도교육청, 2010.3.7, 54.

26) 김혜선, “체벌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대, 1994, 8. 체벌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여는 또한 오태열, “체벌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미시적·상호작용적 이해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상대, 2005, 29-33.

27) 헌재 2006.07.27. 선고 2005헌마1189 결정.

는 것이 바로 교육담당자의 직무”임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조례가 제정된 경우에도 체벌을 가한 교사가 모두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체벌이 가해진 상황이나 체벌의 강도 등이 고려되어 판단될 것이다. 다만 체벌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교사의 체벌 행위가 부당한 것이라면, 비록 체벌을 가한 교사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녀)는 징계될 수는 있다.

(나)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다음으로 조례안 중 “사상”이라는 표현이 문제였다. 본래 “학생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에게 사상 및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자문위원회 최종안 제16조 제2항)는 규정이었었는데(A안), B안이 채택되어 “사상”이라는 용어가 빠지고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다(안 제16조 제1항).

비록 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판례는 양심의 자유를 넓게 해석하여 사상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²⁸⁾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사상”이란 용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까닭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사상·양심은 인격적 자율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내면의 가치판단이며, 그것의 형성은 철저히 자율적이어야 한다. 부모와 교사 등 어느 누구도 학생에 대하여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균형 잡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교육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세뇌를 강요하는 전체주의국가와 다를 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업시간 외에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문제되었다. 이것은 어른들의 편견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목이었다. 집회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의사 표현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의해 아동[학생]에게도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이다.²⁹⁾

자문위원회의 최종안 A안은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교육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제17조 제3항),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제17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입법예고안에는 두 개의 조항이 삭제되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만 남았다. 사실 ‘교육 목적’ 자체가 특별권력관계를 인정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헌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학교장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일정한 조건 부가’에 그치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 없이 집회 자체를 봉쇄할 수는 없도록 학생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이었다. 실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논란이 될 소지가 큰 조항 중의 하나일 것이다. 다만 헌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학교 안이기 때문이라는 것만으로 무조건 학생들의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³⁰⁾

(다) 교복 문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나는 교복의 착용 여부 자체를 학생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어른들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는 옛 추억 때문에 획일적인 교복을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빈부의 격차 문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논리적인 상관관

28) 권영성, 앞의 책, 481; 헌재 1998.7.16. 선고 96헌바35.

29) McGoldrick, Dominic(1991),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Freeman, Michael D. A. 위음, Children’s Rights Volume II, ASHGATE, 2004, 89.

30)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학교운영 및 학생지도에 관한 중대하고 본질적인 간섭과, 남의 자유를 방해하는 또는 다른 학생에게 일정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한계로 제시”하였다. 표시열, 교육법: 이론·정책·판례, 박영사, 2008, 228.

제도 없고 빈부의 격차 문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조차 없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오히려 빈곤의 문제가 개인적 능력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문제임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하도록 알려주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이다. 만약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것은 시험점수와 그에 기초한 등수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교육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생의 비행을 막기 위해서라는 논거 또한 적절하지 않다. 교복이 그러한 수단으로서 적합한지도 문제이려니와 모든 학생을 잠재적 비행학생으로 치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교육 관련 권리

조례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교육과 관련된 권리는 조례의 핵심적 사항이다. 쟁점사항 중 하나는 야간자율학습이었다. 그런데 ‘야간자율학습’이란 용어는 그 자체가 현실과 모순이다. 학습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강제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학생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을 받아야 하며, 청소년기의 학생으로서 그 과정에서 적절한 휴식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학생들은 사실상 “강제노역”³¹⁾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과중한 학습활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의 육체적·정신적 발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자치와 참여의 권리

20세기 후반 국제사회에서 아동의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동에 대한 보호와 나란히 아동의 자기결정과 참여를 중시하는 것이다. 즉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절차적·수단적 권리로서 학생의 자치와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다. 사실 참여권의 핵심은 학교 규정을 준수해야 할 학생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그 규정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이 형식화되어 학생들이 학교내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하다.

자신의 법을 스스로 만드는 것은 민주 사회의 근간이다. 설령 대의제 민주주의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이 학생을 대표할 수 없다. 가능한 것은 학생을 중심으로 그들 모두가 함께 결정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도 학교내 의사결정, 특히 학생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의 결정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결정하는 훈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민주적인 시민으로 자라나기는 어렵다. 교육기본법이 교육의 목적을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을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학생은 미성숙하기는 하지만, 신민(臣民)이 아니라 성년이 되기 전에 이미 시민이다. 따라서 자신들에게 적용될 규범이라 할 수 있는 학칙 등 규정의 제·개정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대학에서조차 학생들이 참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심지어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 또는 대학교에서 교수조차 제대로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현실이 헌법규범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 어찌면 교사 또는 교수들의 처지가 그러한 것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져보거나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의 제정절차

법은 ‘적정한 절차’(due process)³²⁾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제정절차도 적정하여야 하

31) 헌법 제12조 제1항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다.

32) 흔히 “적법절차”라고 표현하는데, 모든 공권력 행사가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실제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제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이다.

는 것이 헌법의 일반원칙이다.³³⁾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제정과정 자체가 인권친화적이어야 하고 민주적이고 공개적이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원칙은 모든 법규를 제정하는 경우에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그 제정절차에서 더욱 모범적 전형을 보여 주어야 한다.

첫째, 조례 내용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인 점에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은 물론 그 보장정도에 있어서는 국제인권규범 수준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학생들이 조례안을 마련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과정 자체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어떠한 인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학습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경우 학생들과의 사전협의, 학생들의 ‘내가 만드는 학생인권조례’ 작품의 공모 그리고 학생참여기획단의 사이버참여 등이 있었지만,³⁴⁾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학생의 참여과정을 마련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는다.

둘째, 조례 제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은 학생의 의견을 주도적으로 반영하되, 이 과정 역시 교육적 측면에서 또 학교에서의 교육관계에서 조화 측면에서 보호자와 학교의 교사 및 학교관리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조례 제정은 또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조례의 발의권자가 교육감 또는 교육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인 것은 그 때문이다. 바람직하기로는 법적 발의권한을 발동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학생, 교사, 보호자, 학교관리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조례 초안이 마련된 후 그것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발의안을 확정하는 절차 또한 필요하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의 경우 조례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회는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관리자, 각 전문가 등과 사전협의,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조례에 비판적인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대화의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 변화의 계기가 폭 넓게 마련될 수 있음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넷째,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 내내 인권친화적이어야 할 것이다. 사실 법원의 판사가 판결문을 통하여 당사자 및 국민에게 설명을 하듯이 법규범 제정에서도 입법자는 입법의 필요성과 그 근거에 대하여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점은 국회 입법절차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인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조례 입법의 필요성과 그 근거에 대한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바람직하기로는 학생인권조례 자체가 초등학생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용어로 조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6. 나오며

법치의 시작은 ‘특별권력관계’의 권위주의적 닢에 걸려 있었던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방하는 일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리고 공무원조직에서 군인·경찰 등의 권위주의체제의 신민(臣民)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시민권 및 시민성을 회복하는 일이다.³⁵⁾ 교육을 위하여 그리고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왜 꼭 그것이 필요한가’를 입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일이다. 그리하여 인권친화적인 법치란 ‘아예 법 없는 세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은 있되 그 법조차 불필요한 경지일 것이다. 학생들에게 규범 없는 무법의 학교를 선사하는 게 학생인권조례의 목표는 절대 아니다. 그 규범을 자신의 약속으로 만들어 스스로 규범을 만들어가는 자율적인 인간의 형성이 학생인권조례의 목표이다. 그것은 말 그대로 유토피아라고 비판하기 전에 그러한 비판이 원칙을 저버리는 자기검열은

33) 현재 1992.12.24. 선고 92헌가8, 헌판집 4, 853[885].

34) 개략적인 과정에 대하여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추진 경과,” <토론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주최: 경기도교육청, 2010.3.7, 3-7.

35) 오동석, “시민의식과 집회·시위의 자유,” 경찰법연구 제7권 제2호, 한국경찰법학회, 2009.12.31, 254.

아닌지를 먼저 되돌아볼 일이다.

사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첫걸음은 이미 왜곡되거나 타락한 어른의 관점으로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하는 일이다. 아직 인생의 여백이 훨씬 많은 청소년들의 인생을 편견과 선입견의 누더기로 색깔하는 어른들이 문제인 것이다. 만약 헌법적 관점을 잃었다 생각하면, 복극성처럼 빛나는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원칙과 최소한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³⁶⁾에 따르면 된다.

36) 헌재 1991.7.22. 선고 89헌가106 결정.

<<부록: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안>>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학생의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환경의 개선)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 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위협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9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계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또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에 의해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정보의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참여권)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학교장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교육감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 ④ 학교와 교육감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4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교육감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교장과 교육감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와 교육감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교육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학교와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만으로 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29조(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원 및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30조(홍보)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일반인용과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 아르바이트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근로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학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4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과 교직원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사,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6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4.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④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⑥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5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경기도 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8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0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인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옹호관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1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경기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2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5.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한 공표
-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제43조(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사무국)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 ③ 사무국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사무국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지역교육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에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 등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

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7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2조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6조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8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9조(규칙)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며,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제48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전남지역 장애인 인권조례 제정 사례와 시사점

장 미 (목포경실련 사무차장)

이 글은 「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장애인편의시설사전점검조례)와 「전라남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전라남도장애인차별금지조례) 제정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함.

1. 조례 제정의 배경과 목적

(1)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조례

- ①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정보접근권의 보장이라는 장애인의 권익보호 측면은 물론이고,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내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음.
- ②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법의 취지가 민·관 모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설사 인지하고 있다할지라도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편의시설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인 설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
- ③ 법 집행이 현실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순전히 법률적으로만 보면, 시설주(공공과 민간부문 포괄)는 법률 위반이고 시설주관기관은 직무유기 또는 태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④ 특히 장애인편의시설은 설치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효용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용자(당사자) 중심의 사전점검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임.
- ⑤ 따라서 건축허가과정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가 제대로 설계도에 반영되었는지, 설계대로 시공하였는지를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민간점검요원이 직접 사전 점검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설치를 촉진하는 한편, 시설의 효용성을 높여 장애인의 이동권과 정보접근권을 신장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됨.

(2) 전라남도 장애인차별금지조례

- 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꾀하고,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목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과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 법률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장애인 차별행위 금지 △장애인 및 장애인관련자에 대한 차별 방지, △차별을 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 구제, △장애인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동법 제3조 4항과 제8조 1항, 2항).

② 따라서 「장애인 차별금지과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행정·재정·기술적인 지속적인 조치를 제도화 하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③ 민·관 협력을 통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조례 제정이 필요함. 장애인 차별금지과 인권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지와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필요로 하고, 동시에 전문가, 장애인 등 도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협력 등 민·관의 공동노력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음. 따라서 교육과 홍보, 차별행위 신고 등을 통해 도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장애인 차별금지과 인권보장에 관한 위원회 구성 등 지속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조례를 통해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조례의 주요 내용

(1) 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조례

① 목적

-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준공 등에 있어 설치 이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

② 사전 점검 대상

-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과 공원,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도로

③ 사전 점검 요원의 위촉 및 임기

- 사전점검요원은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 건축사협회, 학계 및 그 외 관련 분야의 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편의시설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10인 이내 위촉
- 위촉시 장애유형을 고려하며 임기는 2년

④ 목포시의 의무

- 시설주에게 사전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
- 매년 9월에 교육과 홍보 연간계획 수립
- 점검요원의 능력향상과 신규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
- 사전점검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분기별)

⑤ 사전 점검 결과의 반영

-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

(2)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① 목적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금지 실현 및 사회참여 확대

② 전라남도의 정책개발 사항 명시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장애인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
-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장애인 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 등

③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 역할

- 전라남도지사는 도와 소속기관, 시장·군수에게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해야 함.

④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가.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계획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및 시책 방향
-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정책개발
-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사례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련된 여건 변화와 전망
- 장애인 등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
-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세부 재원조달방안

나.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도 홈페이지 공고절차
-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위원회의 심의 의무화
- 기본계획 상시 게시 의무화(홈페이지)

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과 홍보 의무

- 교육대상 : 도, 소속 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도민/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

- 연간 교육계획 수립 :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 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도 홈페이지에 개설·운영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배부

⑥ 장애인 차별상담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

⑦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실태조사

- 의회 보고 의무화

- 장애인차별 및 인권증진에 관한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도 및 시·군의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함

-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 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음

⑧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위원회

- 심의사항 : 기본계획,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그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

- 자문사항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등 전반적인 사항

- 구성 : 15인 이내,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며 장애인단체,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전문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기타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

⑨ 효력발생시기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규칙, 예산 등 준비기간 감안)

3. 조례 제정과정 분석

(1) 시기별 사업내용 비교

<표 1> 과정별(시기별) 사업내용

시기 (과정)	사 업 내 용	
	장애인편의시설사전점검조례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조례 의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반복적인 편의시설 조사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발족 · 공무원 대상 편의시설 모니터교육 · 지방선거 대비 정책과제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및 홍보 ·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대응 · 장애인차별에 관한 주민·공무원 설문조사 (2009.8.26~9.10) 및 발표
조례안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안 준비 모임 구성 및 운영 · 조례안 작성을 위한 단체 간 1차 간담회 (2003.4.15) ·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2003.4.23) · 조례안 작성을 위한 단체 간 2차 간담회 (2003.5.20) · 주민발의조례안 명칭 및 내용 확정 (2003.5.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안 작성을 위한 활동가 집담회 2회 (2009.6.2, 2009.10.9) · 법률 및 사례 연구(2009.6~9):장애인차별금지법, 국제협약, 외국(영·미) 사례 등 분석 ·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단체 공동으로 개최 (2009.10.21) · 조례안에 관한 장애인단체 의견 수렴 간담회 2차례 개최(2009.12.30, 2010.2.9)
조례안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시에 조례제정 청구(2003.5.23) · 조례 청구 관련 기자회견(2003.6.3) · 청구인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 (6.3~6.24) · 조례청구인 명부를 목포시에 제출, 기자회견 (2003.6.25) · 목포시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 청구인단체 의견서 제출(2003.8.18) · 사회복지공무원 간담회(2003.8.25) ·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2003.9.4) · 목포시가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청원 소개의원 확정 및 협의 · 청원단체 예비 모임 · 전남장애인단체, 목포경실련 등 34개 단체 공동으로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 (2010.3.15) · 청원 후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로비, 면담 또는 전화(2010.3.20~4.15)
심의 및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시의회 의장 면담(2003.9.18) · 상임위에 조례안 상정(2003.9.25) · 의회사무국에서 심의보류를 요지로 하는 검토보고서 제출(2003.9.26) ·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2003.9.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전라남도 의견 수렴(2010.3.29) · 전라남도가 의회에 청원조례안 처리 연장 요청 공문 발송 · 전라남도의 연장 요청 의견에 대한 목포경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단체에서 수정조례안 및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2003.10.17) · 상임위원회에서 토론 진행 결과 심사보류(2003.10.24/30) · 의회의장, 상임위원장 등과 간담회 · 목포시 담당자와 3회에 걸쳐 조례안 조정 협의 · 목포시의회 자체 전체의원 간담회(2003.11.25) ·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수정 가결 및 본회의 회부(2003.12.8) · 상임위 통과 환영성명(2003.12.8) · 목포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2003.12.18) · 목포시에서 의회통과 조례에 대해 수용한다는 요지의 의견서 제출(2003.12.22) · 청구인 4,708명을 대상으로 감사엽서 발송(2003.12.27) · 목포시 조례 공포(2004.1.6) · 조례 공포 환영성명(200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의견서 제출(2010.4.13) · 전라남도가 수정조례안 작성(2010.4.15) · 전라남도 수정조례안에 대한 청원단체 의견서 제출(2010.4.16) · 전라남도과 전라남도의회 전문위원실, 청원단체 간 회의 및 합의안 도출(2010.4.16) · 전라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명의로 조례 발의 (2010.4.19) ·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발의 조례안 원안 가결(2010.4.23)
<p style="text-align: center;">제정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제정 관련 목포시청 공무원과 간담회(2004.2.20) · 장애인편의시설 전문가양성 교육과정 개설(2004.5~6월) · 조례 시행규칙안 작성(2004.5.19) · 조례의 본격적 시행을 환경하는 성명 발표(2004.8.19) · 조례 시행규칙 제정(2004.8.30) · 조례에 정한 사전점검요원 위촉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 성명(2004.9.2) · 목포시, 사전점검요원 위촉(10.25) · 조례의 운영개선에 관한 의견서 제출(2006.3.6) · 제2기 사전점검요원 위촉절차에 관한 제안서 제출(2006.9.8) · 조례의 취지를 곡해한 전라남도 감사결과 반박의견서 (2007.2.12) · 목포시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소속 의원 간담회(2007.5.14):사전점검 대상을 건축물에서 옥외 시설까지 확대 · 개정조례안에 대한 협의 수 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정 이후 사업계획을 위한 장애인단체 간담회 개최(2010.4.23/5.6) · 청원단체 간 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실천단 구성 결의(2010.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본예산 확보 요구 - 장애인차별금지조례 교육 및 캠페인(6월 예정) -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실행에 관한 토론회 개최 등 예정(실천단 소속 단체,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공동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점검 대상 확대를 요지로 하는 조례 제정(명칭변경으로 제정)에 관련된 조례안과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2007.8.27) ·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명칭변경, 점검대상 확대(2007.10.8) · 장애인편의시설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평가(이를 바탕으로 목포시에서 2기 점검요원 위촉) 	
--	---	--

(2) 조례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항목별 비교

<표 2> 조례의 항목별 비교

항 목	장애인편의시설사전점검조례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조례발의 주체	주민	의회 상임위원회 (청원수용)
발의 방법	청구인 서명	장애인단체 등 의회청원
근거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 차별금지과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여론 형성	가두서명, 호별방문, 기자회견, 토론회 등	설문조사, 교육, 토론회, 기자회견
제정의 긍정적 변수	· 지역사회 의 공감대 형성 · 폭넓은 시민사회 내부 협력	· 장애인단체 내부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 태도 · 지방선거라는 환경적 유리함
제정의 부정적 변수	· 사전점검을 초법적인 건축규제로 인식하는 의원의 반대	· 집행부의 부정적 수용태세 · 일부 장애인단체의 일탈행위
주요 협의 대상	의회와 합의	집행부와 합의

4. 조례의 의의

(1) 장애인편의시설사전점검조례

① 법적인 측면(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사회적 통념(장애인의 권익향상과 사회적 통합)의 측면 모두를 볼 때 장애인편의시설이 잘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 모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음. 이는 상위법 시행 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입법선도의 의미를 지님.

②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진행하여온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운동이 외부감시 기능에 머물러 있던 것을 ‘행정절차과정에서 실질적인 시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임. 법으로 정해져있는 건축의 각종 허가행정과정에 사용자중심의 점검결과를 반영하게 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같이 이루어낼 수 있는 한편, 시민참여를 동시에 보장함.

③ 이 조례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다 할지라도 실제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따르는 현상, 즉 공급자 위주의 편의시설 설치를 사용자 중심의 효과적인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개인과 단체가 목포시의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를 목포시가 허가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해 편의시설을 다시 반복하거나 수정하는데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음.

④ 지방자치법이 정한 주민의 조례청구권을 활용한 조례제정운동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서 장애인권의 향상을 위한 운동을 주민자치운동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였고, 시민단체와 장애인단체가 수 년 동안 꾸준히 협력한 결과로서 협력모델의 하나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또한 조례청구운동은 그 자체로서 시민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기능을 수행하였음.

⑤ 조례제정의 출발은 주민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목포시, 목포시의회와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한 가운데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목포시, 목포시의회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⑥ 2004년 조례 제정 이후에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문화를 막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됨.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2007년에는 목포시의회와 협력하여 건축물에 한정되어있던 사전점검 대상을 도로, 공원 등 옥외공간으로 확대시키는 한편 사전점검요원 위촉과 효율적 제도운영을 위한 수차례의 제안을 목포시에 지속적으로 해온 점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적 시행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님.

⑦ 이 조례는 15개가 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으로 확산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입법선도 기능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임.

(2) 장애인차별금지조례

① 이 조례안은 민·관 협력이라는 가버넌스 구조를 통해 장애인 인권문제를 해소하고자 작성되었고, 집행부와의 합의를 통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임.

② 전국 최초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조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안고 있는 한계를 지역 차원에서 극복, 보완하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③ 또한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의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한 것임.

④ 조례 제정 이후 사문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 대처가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조례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이고, 시민사회 내부의 인권네트워크 형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됨.

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7.10.08 조례 제2412호

(일부개정) 2009.08.03 조례 제2578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준공 등에 있어 설치 이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개정 2009·8·3>

제2조 (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 점검”이란 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그 사용예정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해당시설물(설계도서 포함)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8·3>

②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말한다.<신설 2009·8·3>

③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 및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와 같다.<개정 2009·8·3>

제3조 (사전 점검 대상) ①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과 공원,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도로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개정 2009·8·3>

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한다.<개정 2009·8·3>

제4조 (사전 점검 요원의 위촉 및 임기 등) ①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단체와 시민 단체, 대한건축사협회목포건축사회, 학계 및 그 외 관련 분야의 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편의시설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10명 이내로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개정 2009·8·3>

②점검요원은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점검요원에게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사전점검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점검요원의 의무) ①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점검요원은 사전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시장의 의무) ①시장은 해당 부서에서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법에 규정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매년 9월에 사전점검요원과 협의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③점검요원의 능력향상과 신규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

시 위탁할 수 있다.

④ 해당 부서에서는 편의시설 점검 시 사전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전점검결과는 분기별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사전점검 실시 대상과 실시 일시 및 조치요구사항, 점검결과의 반영여부, 조치 미이행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8·3>

⑥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이후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요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09·8·3>

⑦ 시장은 시 전역 및 구역, 개별 시설물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얻고 이 인증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09·8·3>

⑧ 시장은 사전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시 소재 공공 및 민간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적극 안내하여야 하고 인증추진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09·8·3>

⑨ 시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 자체적으로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자체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8·3>

제7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 시설주는 설치된 편의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8·3>

제8조 (사전 점검 보고서의 작성) ① 사전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요원의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8·3>

② 만일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즉시 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 (사전 점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전점검요원 전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사전점검 결과의 반영을 꾀하고 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신설 2009·8·3>

④ 시장은 사전점검 반영결과를 사전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9·8·3>

제10조 (재정조치) 시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세부사항)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3 조25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금지 실현 및 사회참여 확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②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③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 ④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라남도의 책무) 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 ③ 도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도는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⑤ 도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과 참정권 행사 등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⑥ 도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개발) ① 도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장애인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
3.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6.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와 소속기관, 시장·군수에게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5조 (장애인 등의 권리와 전라남도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장애인을 비롯한 전라남도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도와 시·군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③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정책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기본 방향
 2. 계획의 추진 목표 및 시책 방향
 3.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5.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6. 장애인 차별금지과 인권증진에 관한 정책개발
 7.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8.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사례
 9.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련된 여건 변화와 전망
 10. 장애인 등을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
 11.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세부 재원조달방안
 12.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 홈페이지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① 도지사는 도, 소속 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 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 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 ④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예방에 관한 홍보) ①도지사는 도 및 소속 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한다.

②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도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해야 한다.

③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해야 한다.

제11조(장애인 차별상담) 도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실태조사) ①도는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차별 및 인권증진에 관한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도 및 시·군의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 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위원회

제13조(목적) 도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위원회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등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등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

②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당연직위원은 행정부지사, 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④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되 장애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단체
2. 시민단체

3. 법조계
4. 학계 전문가
5.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기타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 회의)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19조(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지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등) 이 조례에 정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